

#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한 국민연금 가입상한연령 연장 방안 연구



이다미  
류재린·한겨레·권혁진·남재욱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 연구진

|       |     |                      |
|-------|-----|----------------------|
| 연구책임자 | 이다미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
| 공동연구진 | 류재린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
|       | 한겨레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
|       | 권혁진 | 경상국립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
|       | 남재욱 |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교수 |

연구보고서 2023-45

###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한 국민연금 가입상한연장 방안 연구

발 행 일 2023년 12월  
발 행 인 이 태 수  
발 행 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 소 [30147]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1~5층)  
전 화 대표전화: 044)287-8000  
홈페이지 <http://www.kihasa.re.kr>  
등 록 1999년 4월 27일(제2015-000007호)  
인 쇄 처 (주)정인애드

---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3  
ISBN 979-11-7252-006-9 [93330]  
<https://doi.org/10.23060/kihasa.a.2023.45>

## 발|간|사

2023년은 연금개혁 논의가 어느 때보다 활발한 시기이다.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외에도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정부와 국회, 관련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연금개혁에 관한 다양한 논의들이 진행되고 있다. 연금개혁의 범위가 모수 개혁으로 좁혀지는 가운데 국민연금의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은 각각의 인상 수준을 두고 입장 차가 두드러지지만 가입상한연령 연장의 필요성에는 크게 이견이 없다.

보험료 납부 의무가 주어지는 가입상한연령 연장은 60세 이후 고령자 고용 상황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제도 규정상 단순한 연령 조정에 그치지 않는다. 이에 본 연구는 가입상한연령 연장에 관한 노동시장 측면의 제반 여건과 이해관계자의 정책 요구 방향을 확인하고, 향후 노후 소득보장 및 재정 측면에서 나타날 수 있는 영향들을 장기적으로 전망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향후 연금개혁 과정에서 가입상한연령 연장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때 주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이 보고서는 이다미 부연구위원의 책임하에 연구진으로 본원 류재린 부연구위원과 한겨레 연구원, 그리고 경상국립대 권혁진 교수와 한국교원대 남재욱 교수가 참여하여 작성된 것이다. 본 연구의 자문위원으로 참여한 본원 이원진 부연구위원과 고려대 김원섭 교수, 그리고 진행 과정에서 보고서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성심성의껏 자문에 응해준 관련 연구자들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린다.

---



끝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의견이며,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밝혀둔다.

2023년 1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이 태 수**



# 목 차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           |
|----------------------------------------------------|-----------|
| Abstract .....                                     | 1         |
| 요 약 .....                                          | 5         |
| <br><b>제1장 서론 .....</b>                            | <b>7</b>  |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 9         |
| 제2절 연구의 구성 .....                                   | 14        |
| <br><b>제2장 가입상한연령 연장의 주요 쟁점 및 고령자 경제활동 관련</b>      |           |
| <b>기존 논의 검토 .....</b>                              | <b>17</b> |
| 제1절 국민연금 가입상한연령 연장의 주요 쟁점 .....                    | 19        |
| 제2절 고령자 경제활동 관련 기존 논의 검토 .....                     | 22        |
| <br><b>제3장 가입상한연령 연장을 위한 60세 이상 고령 노동시장의</b>       |           |
| <b>여건 검토 .....</b>                                 | <b>29</b> |
| 제1절 분석 개요 .....                                    | 31        |
| 제2절 60~64세 고령자의 경제활동 및 고용 특성 변화 .....              | 32        |
| 제3절 60~64세 고령자의 경제활동 유형별 특성 비교 .....               | 39        |
| 제4절 생애 연금가입 이력이 60~64세 고령자의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 .....     | 68        |
| 제5절 소결 .....                                       | 86        |
| <br><b>제4장 가입상한연령 연장에 관한 이해관계자의 정책 요구 방향 .....</b> | <b>91</b> |
| 제1절 분석 개요 .....                                    | 93        |
| 제2절 분석 방법 .....                                    | 96        |

|                                                       |            |
|-------------------------------------------------------|------------|
| 제3절 이해관계자의 정책 요구 방향 .....                             | 100        |
| 제4절 소결 .....                                          | 160        |
| <b>제5장 Dynamic micro simulation model을 활용한 가임상한연령</b> |            |
| <b>연장의 장기 전망 .....</b>                                | <b>169</b> |
| 제1절 분석 개요 .....                                       | 171        |
| 제2절 분석 모형과 시나리오 .....                                 | 173        |
| 제3절 시뮬레이션 결과 .....                                    | 193        |
| 제4절 소결 .....                                          | 232        |
| <b>제6장 결론 및 시사점 .....</b>                             | <b>235</b> |
| 제1절 국민연금 가임상한연령 연장을 위한 정책 제언 .....                    | 237        |
| 제2절 연구의 한계 및 후속 연구 제언 .....                           | 239        |
| <b>참고문헌 .....</b>                                     | <b>241</b> |
| <b>부 록 .....</b>                                      | <b>249</b> |
| 부록 1. 이해관계자 면접조사 질문지 .....                            | 249        |
| 부록 2. 취업확률에 대한 로짓분석 결과 .....                          | 252        |
| 부록 3. 소득지수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표준오차 .....                    | 253        |
| 부록 4. KIHASA SIM의 경제활동상태 이행확률 추정 .....                | 254        |
| 부록 5. KIHASA SIM의 소득추정 방법과 결과 .....                   | 257        |

# 표 목차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     |
|-----------------------------------------------------------------------------------|-----|
| 〈표 1-1〉 55~59세 가입자 수 대비 60~64세 가입자 수 비교 .....                                     | 11  |
| 〈표 1-2〉 60~64세 임의계속가입자 규모 및 인구 대비 비율 .....                                        | 11  |
| 〈표 3-1〉 60~64세 연령대의 인구 규모 및 비율 변화 .....                                           | 32  |
| 〈표 3-2〉 연령대별 경제활동참가율 변화 추이(2013~2022년) .....                                      | 33  |
| 〈표 3-3〉 55세 이상 취업자의 종사상 지위별 비율(2005~2022년) .....                                  | 34  |
| 〈표 3-4〉 60~64세 취업자의 근로형태별 규모(2005~2022년) .....                                    | 35  |
| 〈표 3-5〉 60~64세 임금근로자의 종사상 지위별 평균 3개월 급여수준 분포 .....                                | 36  |
| 〈표 3-6〉 60~64세 임금근로자의 평균 3개월 급여수준 분포 .....                                        | 37  |
| 〈표 3-7〉 60~64세 고령자의 취업자 및 임금근로자 추이 .....                                          | 37  |
| 〈표 3-8〉 60~64세 임금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률 .....                                              | 38  |
| 〈표 3-9〉 조사 당시 경제활동 상태에 따른 고령자의 경찰 유형별 비중 추이 .....                                 | 40  |
| 〈표 3-10〉 경찰 유형과 생애 주된 일자리의 근로형태별 연금 수급 비중과 금액: 여성 ..                              | 51  |
| 〈표 3-11〉 경찰 유형과 생애 주된 일자리의 근로형태별 연금 수급 비중과 금액: 남성 ..                              | 52  |
| 〈표 3-12〉 종속변수에 대한 기초통계 요약 .....                                                   | 69  |
| 〈표 3-13〉 주요 변수들의 기초 통계: 더미변수 .....                                                | 72  |
| 〈표 3-14〉 주요 변수들의 기초 통계: 연속형 변수 .....                                              | 73  |
| 〈표 3-15〉 취업확률에 대한 로짓분석 결과: 한계 효과 .....                                            | 77  |
| 〈표 3-16〉 성별 연금가입기간 구간 분포 .....                                                    | 78  |
| 〈표 3-17〉 교육수준별 연금가입기간 구간 분포 .....                                                 | 79  |
| 〈표 3-18〉 소득수준에 대한 OLS 분석 결과 .....                                                 | 82  |
| 〈표 4-1〉 심층 인터뷰 및 FGI 참여자 기본정보 .....                                               | 97  |
| 〈표 5-1〉 KIHASA SIM의 주요 생애사건과 활용 자료 .....                                          | 176 |
| 〈표 5-2〉 통계청(2021)과 송창길 외(2023(발간예정))의 인구변동요인 결과 비교<br>(중위가정 적용, 2070년까지) .....    | 178 |
| 〈표 5-3〉 통계청(2021)과 송창길 외(2023(발간예정))의 인구변동요인 결과 비교<br>(LLG 적용: 중위, 2120년까지) ..... | 179 |
| 〈표 5-4〉 경제변수 가정(기획재정부(2020. 9. 3.))의 중위가정) .....                                  | 179 |



|                                                     |     |
|-----------------------------------------------------|-----|
| 〈표 5-5〉 5차 재정계산의 가입률 가정 .....                       | 184 |
| 〈표 5-6〉 지역가입자의 성별-연령별 징수율 지수 .....                  | 185 |
| 〈표 5-7〉 종사상지위·고용형태·연령대별 공적연금 가입률 .....              | 187 |
| 〈표 5-8〉 시뮬레이션 분석을 위한 시나리오 구성 .....                  | 192 |
| 〈표 5-9〉 59세의 성-가입종별 징수율 가정 .....                    | 192 |
| 〈표 5-10〉 가입상한연령 조정 기간 동안의 59~64세의 가입률 변화 .....      | 195 |
| 〈표 5-11〉 출생코호트-생애 소득분위-시나리오별 가입기간 변화 .....          | 206 |
| 〈표 5-12〉 출생코호트-생애 상용기간 분위-시나리오별 가입기간 변화 .....       | 207 |
| 〈표 5-13〉 출생코호트-생애 소득분위-시나리오별 노령연금 수급률 변화 .....      | 212 |
| 〈표 5-14〉 출생코호트-생애 상용기간 분위-시나리오별 노령연금 수급률 변화 .....   | 213 |
| 〈표 5-15〉 출생코호트-생애 소득분위-시나리오별 노령연금 급여 변화 .....       | 218 |
| 〈표 5-16〉 출생코호트-생애 상용기간 분위-시나리오별 노령연금 급여 변화 .....    | 219 |
| 〈표 5-17〉 시나리오별 A값 변화 .....                          | 224 |
| 〈표 5-18〉 A값 변화에 따른 급여액 변화(각 시나리오 대비) .....          | 224 |
| 〈표 5-19〉 A값 변화에 따른 급여액(현행 대비) .....                 | 225 |
| 〈표 5-20〉 출생코호트-생애 소득분위-시나리오별 소득대체율 변화 .....         | 227 |
| 〈표 5-21〉 출생코호트-생애 상용기간 분위-시나리오별 노령연금 소득대체율 변화 ..... | 228 |
| 〈표 5-22〉 시나리오별 재정 전망 .....                          | 232 |
| 〈부표 1-1〉 사용자 및 소상공인 단체, 노조 대상 1:1 심층면접 질문사항 .....   | 249 |
| 〈부표 1-2〉 사용자(기업) 대상 FGI 질문사항 .....                  | 250 |
| 〈부표 1-3〉 개별 근로자 대상 FGI 질문사항 .....                   | 251 |
| 〈부표 2-1〉 취업확률에 대한 로짓분석 결과: odds-ratio .....         | 252 |
| 〈부표 3-1〉 소득지수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표준오차 .....               | 253 |
| 〈부표 4-1〉 경제활동상태 이행확률 추정 결과(남성) .....                | 255 |
| 〈부표 4-2〉 경제활동상태 이행확률 추정 결과(여성) .....                | 256 |
| 〈부표 5-1〉 소득방정식 패널분석 결과(AR(1) 확률효과 GLS 모형) .....     | 258 |

# 그림 목차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     |
|--------------------------------------------------------|-----|
| [그림 1-1] 고령층 인구, 취업자 및 고용률 추이(2011~2021년) .....        | 12  |
| [그림 2-1] 국민연금 사각지대 유형별 발생 원인 .....                     | 19  |
| [그림 2-2] 국민연금 A값의 변화 .....                             | 21  |
| [그림 3-1] 유형별 생애 주된 일자리의 평균 근속기간 .....                  | 41  |
| [그림 3-2] 유형별 생애 주된 일자리의 근속기간 구간별 비중 .....              | 43  |
| [그림 3-3] 경찰 유형별 생애 주된 일자리 근로형태 .....                   | 44  |
| [그림 3-4] 생애 주된 일자리의 근로형태별 경찰 유형 구성 .....               | 45  |
| [그림 3-5] 생애 주된 일자리 직종별 경찰 유형 구성 .....                  | 47  |
| [그림 3-6] 생애 주된 일자리 근로형태와 경찰 유형별 퇴직연령 .....             | 49  |
| [그림 3-7] 경찰 유형별 연금 수급자 비중과 월평균 수급액 .....               | 50  |
| [그림 3-8] 학력별 경찰 유형 구성 .....                            | 54  |
| [그림 3-9] 생애 주된 일자리와 조사 당시 일자리의 근로형태 변화: '재취업' 유형 ..... | 56  |
| [그림 3-10] 생애 주된 일자리와 조사 당시 일자리의 산업 변화: '재취업' 유형 .....  | 57  |
| [그림 3-11] 생애 주된 일자리와 조사 당시 일자리의 산업 변화: '재취업' 유형 .....  | 59  |
| [그림 3-12] 경찰 유형별 현재 일자리의 종사상지위 구성 .....                | 60  |
| [그림 3-13] 경찰 유형별 현재 일자리 사업장 규모 비교: '지속'과 '재취업' .....   | 62  |
| [그림 3-14] 경찰 유형별 현재 일자리 직종 비교: '지속'과 '재취업' .....       | 63  |
| [그림 3-15] 경찰 유형별 현재 일자리 산업 비교: '지속'과 '재취업' .....       | 64  |
| [그림 3-16] 종사상 지위별 총취업시간 .....                          | 66  |
| [그림 3-17] 직종별 총취업시간 .....                              | 67  |
| [그림 3-18] 성별과 교육수준에 따른 연금가입기간이 소득수준에 미치는 영향: 예측값 ..... | 84  |
| [그림 4-1] 근로자(가입자)의 국민연금 가입상한연령 연장에 관한 태도 형성 .....      | 163 |
| [그림 4-2] 기업(사용자)의 국민연금 가입상한연령 연장에 관한 태도 형성 .....       | 164 |
| [그림 5-1] KIHASA SIM의 순환도 .....                         | 175 |
| [그림 5-2] 통계청(2021)과 송창길 외(2023(발간예정))의 인구피라미드 비교 ..... | 180 |
| [그림 5-3] 경제활동상태 모듈의 결정 과정 .....                        | 182 |
| [그림 5-4] 가입종별 징수율(금액) 추이(2012~2022년) .....             | 188 |



|                                                    |     |
|----------------------------------------------------|-----|
| [그림 5-5] 성별·연령별 국민연금 가입률과 지역가입자(소득신고자) 비중 .....    | 189 |
| [그림 5-6] 국민연금 징수율(금액)추이 .....                      | 190 |
| [그림 5-7] 생애 소득분위별 가입기간 .....                       | 197 |
| [그림 5-8] 생애 상용기간 분위별 가입기간 .....                    | 197 |
| [그림 5-9] 생애 소득분위별 노령연금 수급률 .....                   | 199 |
| [그림 5-10] 생애 상용기간 분위별 노령연금 수급률 .....               | 199 |
| [그림 5-11] 생애 소득분위별 노령연금 급여 수준 .....                | 200 |
| [그림 5-12] 생애 상용기간 분위별 노령연금 급여 수준 .....             | 200 |
| [그림 5-13] 생애 소득분위별 실질 소득대체율 .....                  | 202 |
| [그림 5-14] 생애 상용기간 분위별 실질 소득대체율 .....               | 202 |
| [그림 5-15] 국민연금 재정수지 전망 .....                       | 203 |
| [그림 5-16] 출생코호트-시나리오별 가입기간 .....                   | 205 |
| [그림 5-17] 생애 소득분위-시나리오-출생코호트별 가입기간 변화 .....        | 208 |
| [그림 5-18] 생애 상용기간 분위-시나리오-출생코호트별 가입기간 변화 .....     | 209 |
| [그림 5-19] 출생코호트-시나리오별 노령연금 수급률 .....               | 211 |
| [그림 5-20] 생애 소득분위-시나리오-출생코호트별 노령연금 수급률 변화 .....    | 214 |
| [그림 5-21] 생애 상용기간 분위-시나리오-출생코호트별 노령연금 수급률 변화 ..... | 215 |
| [그림 5-22] 출생코호트-시나리오별 신규 수급자의 노령연금 급여 추이 .....     | 217 |
| [그림 5-23] 생애 소득분위-시나리오-출생코호트별 노령연금 급여 변화 .....     | 220 |
| [그림 5-24] 생애 상용기간 분위-시나리오-출생코호트별 노령연금 급여 변화 .....  | 221 |
| [그림 5-25] 연도-시나리오별 기준시나리오 대비 A값 비율 .....           | 223 |
| [그림 5-26] 출생코호트- 시나리오별 소득대체율 .....                 | 225 |
| [그림 5-27] 생애 소득분위-시나리오-출생코호트별 소득대체율 변화 .....       | 229 |
| [그림 5-28] 생애 상용기간 분위-시나리오-출생코호트별 소득대체율 변화 .....    | 230 |
| [그림 5-29] 시나리오별 재정수지전망 .....                       | 231 |



## Abstract

### **A Study on Raising the National Pension's Age Ceiling for Contributions to Strengthen Old-Age Income Security**

Project Head: Lee, Dah Mi

This study examines labour market conditions for the elderly in relation to raising the National Pension's age ceiling to strengthen old-age income security. It also analyses the policy perceptions and preferences of stakeholders, including employers and employees, as well as the potential income security effects and fiscal impacts of raising the age ceiling. The purpose is to provide a basis for a coherent proposal to extend the retirement age.

We examined the labour market conditions affecting the elderly to understand their implications for extending the retirement age. The results show that the extension of the retirement age has a positive impact on the acquisition of benefit entitlement and the increase in old-age income due to the additional years of contributions, but some disparities in outcomes are likely to emerge.

We analysed the policy needs of stakeholders, such as employers and workers, regarding the extension of the age ceiling

for contributions. The analysis shows that contributors (workers) have high uncertainty about whether they will be able to receive the NP's benefits in line with their contributions when they reach old age and have different expectations about their employability after age 60 depending on their current labour market situation. While employers are negative about the increased burden of insurance contributions as net contributors, they are more concerned about the cost of employing older workers than about the additional cost of social insurance. Both employers' organisations and trade unions have expressed the view that it is possible to raise the age ceiling without linking it to an increase in the retirement 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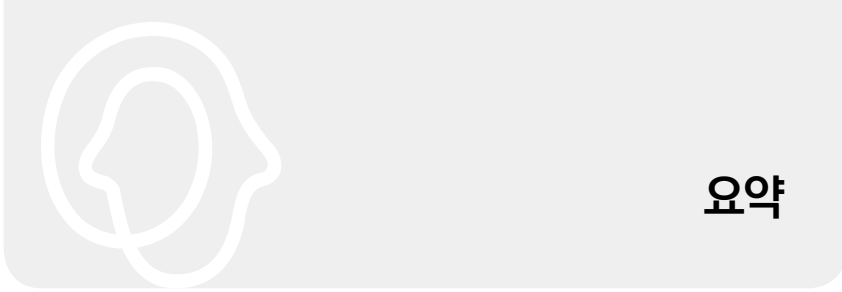
KIHASA SIM ('a dynamic micro-simulation model') was used to conduct a long-term projection of the impact of raising the age ceiling. The simulation showed that the average increase in contribution period and beneficiary rate would be about 28 months and that the effect would be greater in later generations and at higher income levels. On the fiscal side, the fund is projected to be exhausted one year earlier.

The results indicate that raising the contribution age for the National Pension is not solely determined by institutional norms but is instead a crucial consideration for the elderly labour market and pension system. While raising the age ceiling can enhance old-age income security, it should be accompanied by policies to support vulnerable labour market groups,

such as enhancing contribution support. The effectiveness of these measures varies across groups depending on individuals' work history and employment conditions after age 60.

**Key words :** National Pension, Age Ceiling for Contributions, Pension Reform, The Elderly Labour Market, Stakeholders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본 연구는 공적연금 본연의 목표인 노후소득보장 기능 강화를 위해 국민연금의 가입상한연령 연장을 둘러싼 고령자의 노동시장 여건을 다면적으로 검토하고, 관련 이해관계자의 정책 인식과 선호, 가입상한연령 연장 시 발생할 수 있는 노후소득보장 효과 및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가입상한연령 연장 시의 주요 고려사항과 정합성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 2. 주요 연구 결과

첫째, 가입상한연령 연장을 위한 고령자 노동시장의 여건을 검토하였다(제3장 참조). 그 결과, 가입상한연령 연장은 가입기간 추가 확보에 따라 수급권 획득 및 노후소득 증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나, 결과 측면에서는 계층별 격차가 일부 두드러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둘째, 가입상한연령 연장에 관한 사용자,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의 정책 요구 방향을 분석하였다(제4장 참조). 분석 결과, 가입자(근로자)는 자신이 고령이 되었을 때 기여한 만큼 급여 수급이 가능할지에 대해 불확실하다는 인식이 높고, 60세 이후 고용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재 본인이 처한 노동시장 상황에 따라 상이한 기대를 갖고 있었다. 사용자는 순기여자로서 보험료 부담이 증가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긴 하나, 보험료 추가 부담보다는 고령자 고용 그 자체에 대해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사용자 단체와 노조 모두 정년연장과 연계하지 않아도 가입상한연령 연장 자체는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셋째, KIHASA SIM(동태적 미시 시뮬레이션 모형)을 활용하여 가입

상한연령 연장에 대한 장기 전망을 실시하였다(제5장 참조). 시뮬레이션 분석 결과, 평균 28개월의 가입기간 증가 및 수급률 효과가 발생하고, 후세대로 갈수록, 소득분위가 높을수록 그 효과는 더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 측면에서는 기금소진 시점이 1년 더 앞당겨지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 3. 결론 및 시사점

국민연금의 가입상한연령 연장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규범 그 자체의 단일함수가 아니라, 고령자 노동시장과 연금제도의 정합성 확보가 필수 고려사항이 되어야 한다. 가입상한연령 연장은 그 자체로 노후소득 보장 강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지만 개인의 생애 근로이력, 60세 이후 고용 여건에 따라 계층별로 그 정도가 달라진다는 점에서 보험료 지원 확대 등 취약한 노동시장 집단을 지원하는 정책이 병행되어야 한다.

주요 용어 : 국민연금, 가입상한연령, 연금개혁, 고령 노동시장, 이해관계자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제 1 장

##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제2절 연구의 구성



# 제 1 장 서론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023년은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이 이루어지는 해로, 연금개혁 논의가 어느 때보다 활발하다. 이 중에서 모수 개혁의 하나인 국민연금 가입상한연령 연장은 개혁 논의 과정에서 큰 이견 없이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사안이다. 지금으로부터 5년 전인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2018) 당시에도 국민연금 가입제도 개선의 하나로 가입상한연령 연장이 제안되었고, 이후 이다미, 정해식, 전지현(2021), 성혜영, 한정림, 김아람(2022)을 비롯한 관련 연구들에서 가입상한연령 연장을 위한 정책 개선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논의를 계속 이어갔다.

지난 8월 실시된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공청회에서도 급여제도 개선을 위하여 가입상한연령 연장이 다시금 언급되었다. 가입상한연령을 현재 단계적으로 연장 중인 수급개시연령과 순차적으로 일치시켜 60세가 된 이후에도 가입기간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자는 것이 핵심이다. 다만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소득이 없을 때에는 가입 의무에서 제외되며, 수급개시연령이 65세가 되는 2033년까지는 과도기적으로 노사 합의에 따라 가입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을 언급하였다(국민연금재정계산위원회, 국민연금재정추계전문위원회, 국민연금기금운용발전전문위원회, 2023, p.37).

국민연금의 가입상한연령을 연장하는 것은 단순히 제도상 연령 조정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다. 보험료 납부기간을 최대 5년 연장한다는 점에서 보험료 지불능력, 즉 소득이 발생하는 근로 당시 고용 상황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따라서 가입상한연령 연장은 정년연장, 고령자 재고용 같은 고령 노동시장 전반의 여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

현재 국민연금은 60세에 도달하여도 ‘임의계속가입자’로 가입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허용하고 있다. 현재 국민연금은 60세 이후에도 가입자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는 방식으로 가입기간을 연장할 수 있지만, 여전히 임시방편의 성격이 강하다. 제도 성숙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노후소득의 절대적 부족이 예측됨에 따라 보험료 추납 혹은 사업장/지역임의계속가입자로 가입기간을 연장해 나가는 규모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성혜영 외, 2022). 실제로 임의계속가입자 규모는 매년 증가하여 2017년에 약 32만 명이던 것에서 2021년에는 50.6만 명에 이르렀다(〈표 1-2〉 참조). 이렇듯 제도 성숙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가입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방법들이 존재하나, 이는 ‘한시적’ 조치일 뿐, 노후소득의 불충분성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 되지 못한다(김혜진, 신승희, 유현경, 2018). 임의계속가입은 공적연금 도입 초기에 가입 이력이 부족하여 수급권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 수급개시연령에 도달한 이후에도 가입을 계속 유지하여 수급권을 확보하게 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현재 소득비례적 성격이 내재된 공적연금을 운영하는 국가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방식이다(정인영, 민기채, 2017).

〈표 1-1〉 55~59세 가입자 수 대비 60~64세 가입자 수 비교

(단위: 명, %)

| 구분   | 55~59세    | 60~64세  | 비율   |
|------|-----------|---------|------|
| 2012 | 1,690,856 | 88,585  | 5.2  |
| 2013 | 1,901,123 | 117,024 | 6.2  |
| 2014 | 2,094,317 | 168,038 | 8.0  |
| 2015 | 2,297,851 | 219,116 | 9.5  |
| 2016 | 2,523,775 | 283,136 | 11.2 |
| 2017 | 2,678,018 | 345,295 | 12.9 |
| 2018 | 2,768,684 | 470,601 | 17.0 |
| 2019 | 2,832,694 | 497,867 | 17.6 |
| 2020 | 2,834,620 | 526,558 | 18.6 |
| 2021 | 2,845,340 | 543,121 | 19.1 |
| 2022 | 2,887,301 | 500,829 | 17.3 |

자료: 통계청. (2023a). 국민연금 가입자: 종별·연령별·성별 가입자 현황.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556&tblId=DT\\_55601\\_K001019](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556&tblId=DT_55601_K001019)에서  
2023.10.6. 인출.)

〈표 1-2〉 60~64세 임의계속가입자 규모 및 인구 대비 비율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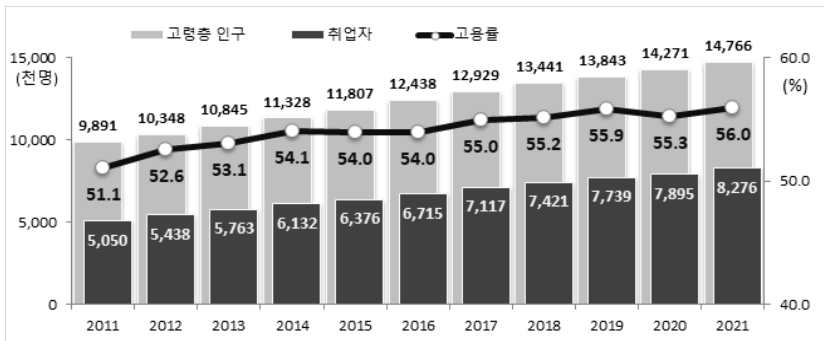
| 구분   | 전체                 | 사업장<br>임의계속가입자    | 지역<br>임의계속가입자     | 기타<br>임의계속가입자    |
|------|--------------------|-------------------|-------------------|------------------|
| 2017 | 327,203<br>(100.0) | 92,515<br>(28.3)  | 202,394<br>(61.9) | 32,394<br>(9.9)  |
| 2018 | 450,122<br>(100.0) | 130,273<br>(28.9) | 278,230<br>(61.8) | 41,619<br>(9.2)  |
| 2019 | 471,540<br>(100.0) | 136,682<br>(29.0) | 289,999<br>(61.5) | 44,859<br>(9.5)  |
| 2020 | 493,011<br>(100.0) | 146,244<br>(29.7) | 297,951<br>(60.4) | 48,816<br>(9.9)  |
| 2021 | 506,202<br>(100.0) | 153,926<br>(30.4) | 300,307<br>(59.3) | 52,039<br>(10.3) |

주: 괄호 안의 수치는 비율임.  
자료: 성혜영, 한정림, 김아람. (2022). 국민연금 가입연령 상한 조정을 위한 기초연구. p.56, 표  
3-13. 전주: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

그렇다고 제도 개선의 당위성만을 이유로 가입상한연령을 연장하게 되면 노동시장을 포함하여 다양한 측면에서 부작용이 크게 발생할 수 있다. 이에 앞서, 고령자의 경제활동 특성, 넓게는 ‘보험료 부담 여력’을 판단하기 위하여 고령자 노동시장의 여건 변화를 상세하게 포착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한 후 혹은 연금 수급자가 된 이후에도 계속 일하고 있는 고령자 규모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2011년 이후 55~79세 연령대의 경제활동참가율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여 2021년 58%, 고용률 56% 취업자 수는 827.6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통계청, 2021)([그림 1-1] 참조).

전술한 바와 같이, 가입상한연령 연장은 연금제도에 국한되지 않고, 정년연장을 비롯한 고령자 고용과 매우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사안이다. 그 예로, 공적연금이 제도적으로 이미 성숙한 서구 국가에서는 수급개시 연령까지 정년을 연장·폐지하거나, 정년 이후 재고용을 촉진하는 등 공적 연금과 고령자 고용 간 연령상 불일치를 개선하기 위한 개혁을 실시해 왔다(이다미 외, 2021).

[그림 1-1] 고령층 인구, 취업자 및 고용률 추이(2011~2021년)



자료: 통계청, (2021). 2021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 p.1.

([https://kostat.go.kr/board.es?mid=a10301030200&bid=210&tag=&act=view&list\\_no=390960&ref\\_bid=](https://kostat.go.kr/board.es?mid=a10301030200&bid=210&tag=&act=view&list_no=390960&ref_bid=)에서 2023.3.7. 인출.)

국민연금의 가입상한연령 연장과 관련하여 고려해야 할 쟁점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제도 적용의 ‘보편성’과 고령자 고용 기피 가능성에 관한 것이다. 60세 이후에도 계속 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일종의 가입 사각지대로도 볼 수 있다. 다만 사회보험 순부담자로서 고용주(사용자)의 비임금 비용 증가로 60세 이상 고령자의 고용을 기피할 수 있고, 근로자 입장에서는 보험료 납부에 따른 가치분 소득 감소로 인해 근로유인이 저하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사전적 대안 모색이 필요하다. 특히 사용자들이 평소 국민연금에 대한 부정적 인식 혹은 정부 주도 정책에 비협조적 성향을 갖게 되면 신고 기피나 보험료 체납 등 정책 불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로 인해 제도가 원래 의도한 정책 목표 달성의 장애요인들이 생겨날 수 있는데(문현경, 김혜진, 김아람, 2021), 가입상한연령 연장도 비슷한 맥락에서 우려가 발생한다. 고령자 고용률의 지속적인 증가 추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상당수의 고령자가 불안정 일자리에 종사하며, 이런 상황에서 별다른 고려 없이 가입상한연령을 연장하게 되면 납부예외, 보험료 체납이 다수 발생하여 행정상 가입자 관리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

둘째, 급여의 ‘적정성’ 문제이다. 60세 이후에도 가입기간을 추가적으로 확보하는 것은 최소 가입기간을 충족하여 수급권 확보 및 급여수준 인상 가능성을 높이지만 저소득 고령 가입자의 대거 편입으로 인해 전체 가입자의 급여액이 하락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이다미 외, 2021;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민간전문가자문위원회 활동보고서, 2023, p.17). 더 구체적으로, 저임금 사업장가입자나 저소득 지역가입자가 60세 이후 의무가입 대상으로 편입될 경우, A값 증가가 둔화하여 전체 가입자의 급여수준이 하락할 수 있고, 60세 정년 이후 임금수준이 크게 낮아지면

가입자 개인의 B값 하락으로 인해 급여수준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이다미 외, 2021).

셋째, ‘재정적 지속가능성’에 관한 것이다. 가입상한연령 연장은 고령화가 심각한 현 상황에서 보험료를 부담하는 생산가능인구를 증가시키는 효과를 발생시킨다. 다만 현재 국민연금은 수익비가 ‘1’을 초과하기 때문에 가입기간 증가로 인해 그만큼 급여수준이 높아지게 되면 장기적으로는 보험료 수입 증가에 따른 효과보다 급여지출의 부담이 더 커질 우려 역시 공존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국민연금 본연의 목표인 노후 소득보장 기능 강화를 위해 가입상한연령 연장을 둘러싼 고령자 노동시장의 여건을 다면적으로 검토하고, 연장 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영향들을 분석, 제시함으로써 좀 더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한 방안을 마련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 제2절 연구의 구성

### 1. 연구 내용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제2장(‘가입상한연령 연장의 주요 쟁점 및 고령자 경제활동 관련 기존 논의 검토’)에서는 국민연금 가입상한연령 연장을 둘러싼 주요 쟁점, 60세 이후의 고령자의 경제활동 및 은퇴 경로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검토한다.

제3장(‘가입상한연령 연장을 위한 60세 이상 고령 노동시장의 여건 검토’)에서는 60~64세 고령자를 중심으로 경제활동 특성 및 고용 여건을 검토

하고, 경제활동 참여의 영향 요인을 분석한다. 국민연금의 가입상한연령 연장을 비롯한 연령 조건들은 고령 노동시장과의 정합성을 필수조건으로 하는데, 만약 서구 국가와의 단순 비교 또는 고령자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만을 이유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게 되면 연금제도와 노동시장 양 측면에서 상당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제3장에서는 고령 노동시장을 분석하여 가입상한연령 연장의 실제 적용 가능성과 잠재적 수혜 계층을 가능해 볼 수 있다.

제4장(‘가입상한연령 연장에 관한 이해관계자의 정책 요구 방향’)에서는 가입상한연령 연장을 둘러싼 다양한 이해관계자 - 사용자, 근로자 - 의 제도 인지, 인식과 선호에 관한 면접조사의 질적 분석 결과들을 제시한다. 가입상한연령 연장에 대한 인식과 선호, 요구에는 각기 다른 요인들이 집단에 따라 서로 다른 영향을 미치며, 이때 개인의 판단에 영향을 주는 비합리적 요인들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제5장(‘Dynamic micro-simulation model을 활용한 가입상한연령 연장의 장기 전망’)에서는 60~64세 고령자의 경제활동상태와 소득 분포, 기준소득월액의 A값 포함 여부 등 여러 조합 시나리오를 통해 가입상한연령 연장에 따른 노후소득보장 효과와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제6장(‘결론 및 시사점’)에서는 지금까지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연금의 가입상한연령 연장 시의 주요 고려사항과 정책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글을 맺는다.

## 2. 연구 방법

제3장에서는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각 연도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 형태별 부가조사(8월) 및 고령층 부가조사(5월) 원자료를 통해 60~64세 고령자의 경제활동 참여 특성, 경제활동 유형별 특성, 잠재적 수혜계층을 비교 분석하였다. 또한 「한국노동패널」 24차 직업력 자료를 개인 단위로 매칭하여 생애 연금가입 이력이 고령자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였다.

제4장에서는 국민연금의 가입상한연령 연장과 이해관계를 갖는 사용자 단체 및 노조 실무자를 대상으로 개별 심층면접을, 만 50세 이상 개별 근로자 및 사용자 - 기업 대표, 중견급 인사담당자 - 를 대상으로 초점집단 인터뷰(FGI)를 실시하였다. 실제로 이해관계자들이 가입상한연령 연장이라는 제도 변화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그 인식에 따라 어떠한 선호를 나타내는지 파악하기 위해서는 인지 및 동의 여부를 설문조사 방식으로 단순히 질문하기보다는 면접조사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판단에서다.

이어서 제5장에서는 가입상한연령 연장의 다양한 정책 조합 시나리오를 분석하기 위해 동태적 마이크로 시뮬레이션 모델(Dynamic micro-simulation model)을 활용하였다. 가입상한연령 연장이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과 소득 분포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지만 그 영향의 방향과 크기를 예단하기란 쉽지 않다. 특히 60세 이상 고령자의 노동시장 지위에 따라 가입상한연령 연장의 가입기간 증가 효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평균적인 접근보다는 분포적 접근이 필수적이다.



## 제2장

### 가입상한연령 연장의 주요 쟁점 및 고령자 경제활동 관련 기존 논의 검토

제1절 국민연금 가입상한연령 연장의 주요 쟁점

제2절 고령자 경제활동 관련 기존 논의 검토



## 제 2 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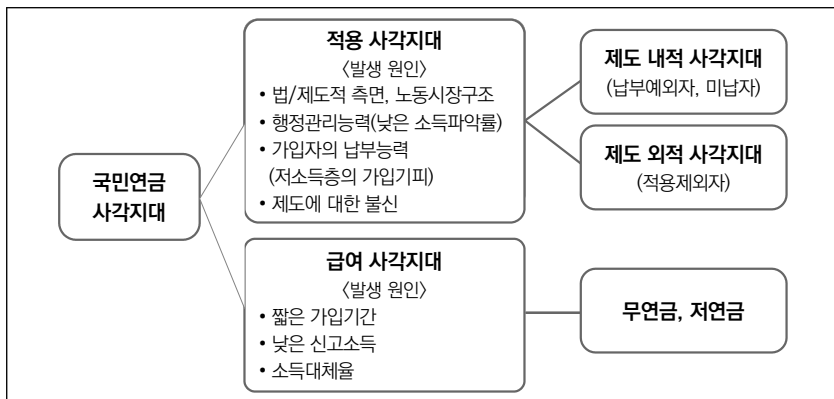
# 가입상한연령 연장의 주요 쟁점 및 고령자 경제활동 관련 기존 논의 검토

### 제1절 국민연금 가입상한연령 연장의 주요 쟁점

#### 1. 제도 적용의 보편성

현재 60세 이상 고령자를 국민연금 당연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은 가입 사각지대 측면의 문제로 해석할 수 있다([그림 2-1] 참조). 만 64세까지 가입할 수 있는 고용보험과 달리, 국민연금은 60세가 되면 가입 의무가 주어지지 않는다. 물론 60세가 되어서도 추납, 임의계속가입 등 별도의 보완책을 통해 가입기간 확대가 가능하긴 하나, 이는 본인이 전액 보험료를 부담한다는 점에서 18~59세 연령대 가입자와의 형평성 문제 역시 발생할 수 있다.

[그림 2-1] 국민연금 사각지대 유형별 발생 원인



자료: 김혜진, 김현수, 이은실, 김아람. (2020). 국민연금 적용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과제. p. 36. [그림 II-1]. 전주: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

현재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등을 비롯하여 가입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들이 실시 중인데, 60세 이상은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 지원에서 배제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 2. 60세 이상 보험료 체납 가능성 및 고령자 고용 기피에 관한 우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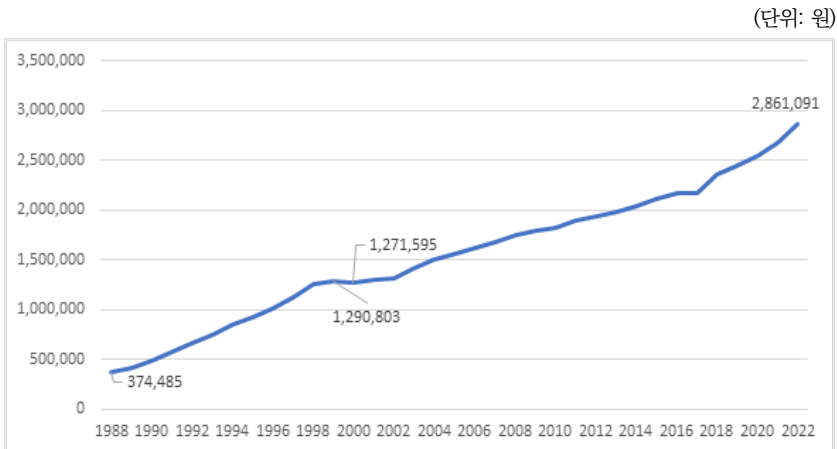
사업장가입자인 임금근로자는 보험료를 고용주와 나누어 부담하기 때문에 가입상한연령 연장 시 고령 근로자에 대한 고용기피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규모가 작은 영세사업장이거나 고용 불안정성이 높은 직종에서 보험료 체납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성숙, 홍성우(2011)에 따르면, 60세 이후 경제활동참가율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는 있으나 비정규직이거나 자영자인 경우에는 이들 상당수가 보험료 납부를 꺼릴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즉 보험료 미납이나 납부예외 규모가 커져 정책 당국 입장에서는 행정적 관리 차원의 문제가 상당할 수 있음을 우려한다. 특히 납부예외자의 증가는 관리상의 문제로, 제도 성숙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며, 가입자 기반 확충 및 편익 증진 차원에서 주요 정책 과제라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물론 이런 우려는 아직 실증되지 않은 것으로, 국민연금제도가 성숙하고 있는 현시점에서는 기우일 가능성이 존재한다. 기업이 60세 이상 고령자를 추가 고용하거나 재고용하는 것을 기피하는 가장 큰 이유는 현재 연공임금 특성상 이들에 대한 임금 부담 자체가 높기 때문이며, 고령자 고용 기피의 제1 원인이 국민연금 같은 사회보험료 부담에 따른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같은 우려는 이후 제4장에서 제시한 사업장 규모에 따른 사용자, 근로자 대상 심층인터뷰를 통해 그 가능성을 확인해 볼 수 있다.

### 3. A값 하락에 따른 급여감소의 가능성

국민연금에 의무가입하고 있는 다른 연령대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낮은 60~64세가 포함되면, A값의 증가가 둔화 또는 감소하여 전체 가입자의 연금 급여액이 하락할 우려가 제기된다. 1999년 도시 지역가입자 까지 국민연금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자, 바로 다음 해인 2000년에 A값이 약 2만 원 낮아졌다([그림 2-2] 참조). 그러나 A값 하락 가능성은 60세 이상 고령자가 가입자로 편입될 때에 국한하여 발생하는 문제가 아니다. 현재 100만 원 수준에서 소득신고를 하여 가입하고 있는 임의가입자의 경우에도 A값 하락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임의가입자와 임의 계속가입자 소득은 급여산정을 위한 A값 계산 시 제외하고 있다(성혜영 외, 2022).

[그림 2-2] 국민연금 A값의 변화



자료: 보건복지부. (2023. 1. 8.). 2022년 기준 재평가연도별 A값 및 재평가를 현황. p. 6. 보건복지부,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10100&bid=0027&cg\\_code=](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10100&bid=0027&cg_code=)에서 2023. 10. 19. 인출.)

#### 4. 급여지출 증가에 따른 연금재정의 악화

가입상한연령 연장은 인구구조 불균형이 심각한 현 상황에서 일정 기간에는 보험료를 부담하는 생산가능인구의 증가 효과를 발생시킨다. 다만 현재 국민연금은 수익비가 '1'을 초과하는 구조이므로 가입자가 많아지고 가입기간이 증가하면 그만큼 급여수준이 높아지게 되며 장기적으로는 보험료 수입 증가에 따른 효과보다 급여지출 부담이 더 커질 우려가 있다. 다만, 연금제도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노후 적정소득 보장에 있다는 점에서 재정 악화보다 더 우선시해야 하는 것이 급여 적정성 확대이다(성혜영 외, 2022). 이에 김성숙, 홍성우(2011), 이다미 외(2021) 등 기존 연구들 역시 가입상한연령 연장에 따른 재정 악화는 필연적 결과임을 이야기 하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 제2절 고령자 경제활동 관련 기존 논의 검토

국민연금의 가입상한연령 연장은 60~64세 고령자의 경제활동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설계,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동 연령대의 경제 활동은 현재 노동시장의 상황 외에도 고령자의 생애 근로이력을 포함한 다양한 요인들의 복합적 상호작용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절에서는 고령자 경제활동 및 은퇴에 관한 국내/외 문헌 검토를 실시하였다.

중고령자의 경제활동과 은퇴에 대한 국내/외 연구들이 양적, 질적으로 증가한 시기는 1990년대 중후반부터이다. 특히 서구 국가에서 연구자들은 이전 30여 년간 꾸준히 감소해 온 고령자의 경제활동이 199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다시 상승하기 시작한 현상과 그 원인에 주목하였다.

건강 및 교육수준의 지속적인 향상, 산업구조 변화 등이 중고령자들의 취업 가능성을 높인 것이 사실이나, 이러한 요인만으로는 1990년대 중후반을 기점으로 서구 복지국가에서 나타난 ‘U자형’의 고용률 변화를 설명하기에 역부족이었다. 이에 많은 연구자들이 1980~1990년대 서구 복지국가의 사회보장제도 개혁,<sup>1)</sup> 특히 공적연금 개혁이 고령자 경제활동에 미친 영향에 주목하였다.

당시 많은 선진국들은 고령화와 저성장에 대응하기 위해 사회보장제도, 특히 공적연금 개혁에서 중고령자 노동에 대한 암묵적 조세를 완화한 것, 즉 근로유인을 강화한 것이 주요 원인임을 강조한다.<sup>2)</sup> 하지만 한국에서 고령자 경제활동은 사회보장제도가 확대된 2000년대 이후에도 감소하지 않은 것은 물론, 최근에는 오히려 이전 시기보다도 더 활발한 경향이 나타난다는 점에서 국내에서는 한국 중고령자 노동시장의 특수성에 주목한다(이철희, 2006; 이승호, 2019; 이승호, 변금선, 고혜진, 2019에서 재인용). 이에 국내에서도 2000년을 전후로 하여 중고령자 노동시장에 대한 연구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초기 연구들은 당시 국민연금제도가 성숙하지 않은 당시 상황을 반영하듯, 중고령자의 (재)취업-미취업 결정 요인들에 대한 횡단면 분석들이 대부분이었다(손종철, 2010; 김영아, 김주봉, 2020 재인용). 예를 들어, 중고령자의 은퇴에 자산, 건강, 교육수준, 거주지역, 산업, 직종 등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들이 이루어졌다.<sup>3)</sup>

이후 2010년대에 들어서는 고령자의 은퇴를 단절적 사건이 아닌, 고용

1) 당시 각 국가의 제도개혁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Börsch-Supan & Coile(2020)을 참조할 것.

2) NBER에서는 ‘사회보장제도와 은퇴’(Social Security Programs and Retirement around the World) 프로젝트를 지난 1999년 이후 20여 년 동안 진행해 그 결과를 현재까지 총 9차례 발표하고 있다. 동 프로젝트에서는 12개 주요 선진국가를 대상으로 공적연금제도는 물론, 장애, 실업보험, 청년고용과의 관계 및 재정 문제 등과 고령자 은퇴와의 관계를 분석·비교하고 있다(Börsch-Supan & Coile, 2020).

3) 기존 연구들의 내용과 특징에 대해서는 이철희(2009)를 참조할 것.

형태 혹은 일자리가 변화하는 동학적 측면에 주목한 연구들이 이루어졌다. 은퇴가 생애 기간에 한 번 나타나는 단일 사건(event)이 아닌, 다양한 일자리 이동을 통해 완성되는 ‘연속적 과정(process)’이라는 점에 많은 연구자들이 주목하였다(Cahill, Giandrea, & Quinn, 2011; 이주영, 2020 재인용). 연구자들의 관심과 더불어, 양질의 패널자료들이 축적되고 연구자들에게 제공됨으로써, 우리나라 중고령 노동시장과 은퇴 과정의 특징에 관한 연구들이 활발해졌다. 예를 들어, 장지연, 이해정(2008)은 은퇴 과정을 13가지로 유형화하였고, 홍백의, 김혜연(2010)은 은퇴 과정을 8가지로 유형화하면서 소득이나 자산 등의 경제적 여건의 중요성에 주목했다. 박경하(2011)는 복지급여 수급 지위를 기준으로 은퇴 과정을 5가지로 구분하였고, 한신실(2018)은 8개 은퇴 유형별 경제적 여건의 변화에 주목하였다.

나아가 최근에는 생애과정이론(life course theory)<sup>4)</sup>에 기반한 연구들을 통해 우리나라 중고령 노동시장에 대한 이해의 범위가 점점 확대되고 있다. 예를 들어, 생애 근로이력이 고령자 은퇴 과정에 미치는 영향(이승호 외, 2019), 나아가 고령기 노동시장 지위와 경제적 여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이승호, 이원진, 김수영, 2020)도 이루어졌다. 중고령자의 출생코호트별 특성이 이들의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하거나(권혁진, 2019), 각 코호트가 경험하는 사회·역사적 사건이 은퇴 과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들(이주영, 2020; 이승호 외, 2019, 2020; 윤하림, 홍백의, 2020)도 이루어졌다.

이상의 내용들을 정리하면, 우리나라 중고령자의 은퇴 과정은 연령 차별적 노동시장의 구조적 제약, 과거 노동 이력 및 일자리 특성, 노후

4) 이주영(2020)에 따르면, 생애과정이론은 사회·역사적 요인들이 개인의 일생과 맺는 관계와 그에 따른 경로의존성에 주목한다.

소득 부족에 따른 경제적 필요성, 건강 및 가족적 이유 등과 같이 다양한 요인들로부터 영향을 받는다(김영아, 김주봉, 2020). 또한 다른 OECD 국가들과는 달리, 노후소득 부족으로 인해 저학력자 혹은 저임금 일자리 비중이 높다는 점에서 한국의 중고령 노동시장의 특수성은 곧 ‘생계형 노동’(이승호, 2019:9, 이승호 외, 2020에서 재인용)이라는 주장 역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노후 시기의 주요 소득원으로 점차 그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는 국민연금제도의 역할에 대해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장지연, 호정화(2002)와 이철희(2009)는 공·사적 연금제도와 기타 복지체계의 성숙과 발전을 통해 향후 고령자의 경제활동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기도 하였다. 이에 많은 연구들이 국민연금제도가 중고령자의 경제활동(혹은 은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이승렬, 최강식(2007)은 기대연금자산이 미약하지만 은퇴확률을 높인다는 결과를 제시하였으며, 전승훈(2010)은 기대연금이 조기노령연금 수급에는 영향을 미치지만 경제활동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높은 수준의 노령연금은 은퇴 가능성을 높인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박철성, 최강식(2018)은 국민연금 수급은 남녀 모두의 취업확률을 감소시키는 반면, 수급액의 영향은 남성에게만 유의하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반면에 국민연금이 중고령자의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은 분석 대상, 분석자료 혹은 수급하고 있는 연금 종류에 따라 달라지거나, 실증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들도 제시되고 있다는 점에서 국민연금제도와 중고령자 경제활동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여전히 진행형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권혁진(2011)은 선택가치이론(option value theory)에 기반하여 재무적 유인이 중고령자의 은퇴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한 결과<sup>5)</sup>,

5) 동 연구는 국민노후보장패널의 초기 버전에서만 제공했던 중고령자의 연금가입이력 자료를

연금액 수준이 낮은 특례노령연금 수급(액)은 오히려 수급자의 취업확률을 증가시키는 데 반해, 노령연금(감액, 조기) 수급(액)은 취업확률은 낮추는 방향으로 작용한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강소량(2015)은 매우 낮은 수준의 국민연금액이 고령자의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지 않다는 결과를 제시하면서 ‘낮은 수준의 연금액’은 노동소득과 대체관계가 아닌 보완관계임을 강조한다. 다양한 패널자료(고령화패널, 국민노후 보장패널, 노동패널)를 이용하여 고령자(60~74세)의 노동공급을 분석한 이승렬(2017)에서는 연금소득이 고령자의 경제활동을 감소시키는 실증 결과가 나타나기는 하지만, 활용하는 패널자료와 분석 대상 연금 종류에 따라 결과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은 물론, 이론적 예상과 부합되지 않는 결과들이 나타난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을 강조한다.<sup>6)</sup>

정리하면, 한국의 국민연금제도가 도입된 지 30여 년이 지났지만 중고령자의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이 분명하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다른 선진국들의 경우 연금제도 개혁이 어느 정도 일단락됨으로써 향후 그 영향이 안정적일 수 있는 반면(Börsch-Supan & Coile, 2020), 한국의 경우에는 제도 도입 이후 소득대체율 및 수급연령 등 다양한 모수적 개혁이 이루어진 것은 물론, 의무가입 대상 역시 점진적으로 확장된바, 그에 따라 연금 수급자의 특성이 세대별로 이질적일 수 있다.

더욱이 2000년대 이후 다른 선진국들과 마찬가지로 국민연금제도 역시 고령자의 근로유인을 높이기 위한 크고 작은 모수 개혁들이 이루어졌다.

활용함으로써 기대연금자산 등 재무적 유인 관련 변수들의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었다.

6) 이외에도 다소 모호한 결과들이 제시되어 신중한 해석이 필요한 연구들도 있다는 점에서 이승렬(2017)의 지적은 향후 연구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예를 들어, 이기주, 석재은(2011)에서는 국민연금 수급과 연금액이 은퇴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지 않지만, 은퇴에 따른 근로소득의 손실이 은퇴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연금제도가 은퇴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해석한다. 또한 강성호, 전승훈, 임병인(2008)에서는 2007년 소득 대체율 인하, 즉 연금액 수준을 낮춘 제도개혁이 오히려 노동공급을 낮춘다는 시뮬레이션 결과가 제시되기도 하였다.

예를 들어, 제1차 연금개혁(1998년)에서는 소득대체율을 인하(70% → 60%)했으며, 지급개시연령을 연장(2013~2033년 기간 동안 노령연금 60세→65세, 조기노령연금 55~59세 → 60~64세)했다. 제2차 연금개혁(2007년)에서는 소득대체율을 추가로 인하하였다. 이외에도 중고령자의 근로유인 제고를 목적으로 조기노령연금 수급에 대한 감액률 강화(1세별 감액률 5% → 6%), 연기연금 도입 및 연금 수급과 소득활동을 병행할 수 있는 소득기준 완화 등 다양한 모수 개혁들이 이루어졌다.

그 결과, 연금 수급자들은 연금가입기간이 동일하더라도 가입한 시기에 따라서 급여수준이 다를 수 있고, 그에 따라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도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한다.

이상의 연구 결과들은 국민연금제도가 중고령자의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여전히 명확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입상한연령 연장에 따른 정책 효과를 선형적으로 예측하는 것은 쉽지 않다.





## 제3장

### 가입상한연령 연장을 위한 60세 이상 고령 노동시장의 여건 검토

제1절 분석 개요

제2절 60~64세 고령자의 경제활동 및 고용 특성 변화

제3절 60~64세 고령자의 경제활동 유형별 특성 비교

제4절 생애 연금가입 이력이 60~64세 고령자의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

제5절 소결



## 제3장

# 가입상한연령 연장을 위한 60세 이상 고령 노동시장의 여건 검토

### 제1절 분석 개요

본 장에서는 국민연금의 가입상한연령 연장 시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60~64세 인구의 노동시장(이하 '고령 노동시장')의 특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가입상한연령 연장이라는 정책 변화의 효과가 주로 어떤 계층에게 귀착될 것인지를 가늠해 볼 수 있다.

먼저, 현재 경제활동 중인 고령인구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경제활동인구조사 8월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원자료를 활용하여 현재 의무가입대상에서 제외된 60~64세 연령대의 경제활동 상태 및 고용 특성의 시계열적 변화를 살펴보았다.

이어서 가입상한연령이 연장되는 경우, 주요 수혜 계층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집단의 특성, 즉 60세 이전 생애 근로이력의 질적·양적 특성에 따른 정책 대상의 범위와 정책 효과를 염두에 두고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경제활동인구조사 5월 고령자 부가조사」 원자료를 활용하여 분석 대상 연령대인 60~64세에서도 여전히 생애 주된 일자리를 유지하는 인구와, 60세 이전에 이직한 인구의 다양한 특성들을 비교·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한국노동패널」을 활용하여 개인의 59세까지의 생애 연금가입 이력이 60~64세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인과관계를 추론하였다.

## 제2절 60~64세 고령자의 경제활동 및 고용 특성 변화

### 1. 60~64세 인구 규모 및 경제활동 현황

현재 국민연금 의무가입연령에서 제외된 60~64세 인구 규모는 앞으로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통계청(2023b)의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동 연령대의 인구 규모는 2018년 338.9만 명에서 2023년 425.2만 명으로 증가하고, 이후 소폭의 감소세를 나타내다 다시 증가하여 2035년에는 426만 명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전체 인구 대비 비율로 살펴보면, 2018년 6.6%에서 2035년에는 8.4%로 점차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3-1〉 참조).

〈표 3-1〉 60~64세 연령대의 인구 규모 및 비율 변화

(단위: 명, %)

| 구분   | 전체 인구      | 60~64세 인구 | 전체 인구 대비<br>60~64세 인구 비율 |
|------|------------|-----------|--------------------------|
| 2018 | 51,585,058 | 3,389,068 | 6.6                      |
| 2019 | 51,764,822 | 3,627,949 | 7.0                      |
| 2020 | 51,836,239 | 3,814,370 | 7.4                      |
| 2021 | 51,744,876 | 4,064,463 | 7.9                      |
| 2022 | 51,628,117 | 4,144,198 | 8.0                      |
| 2023 | 51,558,034 | 4,252,206 | 8.2                      |
| 2024 | 51,500,029 | 4,200,087 | 8.2                      |
| 2025 | 51,447,504 | 4,143,522 | 8.1                      |
| 2026 | 51,397,309 | 4,029,785 | 7.8                      |
| 2027 | 51,348,388 | 4,032,306 | 7.9                      |
| 2028 | 51,300,095 | 3,991,598 | 7.8                      |
| 2029 | 51,250,905 | 4,161,658 | 8.1                      |
| 2030 | 51,199,019 | 4,209,740 | 8.2                      |
| 2031 | 51,142,848 | 4,302,480 | 8.4                      |
| 2032 | 51,082,971 | 4,369,964 | 8.6                      |
| 2033 | 51,018,619 | 4,410,485 | 8.6                      |

| 구분   | 전체 인구      | 60~64세 인구 | 전체 인구 대비<br>60~64세 인구 비율 |
|------|------------|-----------|--------------------------|
| 2034 | 50,947,857 | 4,346,220 | 8.5                      |
| 2035 | 50,868,691 | 4,260,394 | 8.4                      |

주: 중위 추계

자료: 통계청. (2023b). 성 및 연령별 추계인구(1세별, 5세별) / 전국.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PA001&conn\\_path=I3](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PA001&conn_path=I3) 에서 2023.9.27. 인출.)

동 연령대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013년 58.8%에서 2022년에는 64.3%로 동 기간 15세 이상 전체 연령대의 경제활동참가율(61.7% → 63.9%)과 비교할 때 큰 폭으로 증가해 왔다(〈표 3-2〉 참조). 한편, 동 연령대 취업자의 종사상지위 비율을 살펴보면, 자영자 비중은 2005년 35.5%에서 꾸준히 감소하여 2022년에는 24.9%로 10%p 가까이 감소한 것과 달리, 동 기간 상용직 임금근로자 비중은 11.5%에서 35.9%로 3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한편 일용직 임금근로자 비중은 15.9%에서 7.2%로 절반 수준으로 감소하였다(〈표 3-3〉 참조).

〈표 3-2〉 연령대별 경제활동참가율 변화 추이(2013~2022년)

(단위: %)

| 구분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
| 15세 이상 전체 | 61.7 | 62.7 | 62.8 | 62.9 | 63.2 | 63.1 | 63.3 | 62.5 | 62.8 | 63.9 |
| 15~19세    | 7.7  | 8.5  | 8.8  | 8.8  | 9.2  | 8.2  | 8.3  | 7.2  | 8.1  | 8.5  |
| 20~29세    | 61.7 | 63.1 | 63.6 | 64.5 | 63.9 | 64.0 | 63.9 | 61.2 | 62.2 | 64.5 |
| 30~39세    | 75.5 | 76.4 | 76.7 | 77.1 | 77.8 | 78.3 | 78.6 | 78.0 | 77.8 | 79.5 |
| 40~49세    | 80.0 | 80.9 | 81.0 | 81.0 | 81.1 | 81.0 | 80.2 | 79.1 | 79.2 | 79.7 |
| 50~59세    | 74.6 | 75.9 | 76.2 | 76.1 | 77.0 | 77.1 | 77.4 | 76.6 | 77.1 | 78.4 |
| 60세 이상    | 39.2 | 40.0 | 40.1 | 40.5 | 41.1 | 41.4 | 43.0 | 44.0 | 44.5 | 45.8 |
| 60~64세    | 58.8 | 60.0 | 61.2 | 61.6 | 62.5 | 61.4 | 62.1 | 62.5 | 62.2 | 64.3 |
| 65세 이상    | 31.2 | 31.8 | 31.1 | 31.3 | 31.5 | 32.2 | 34.0 | 35.3 | 36.3 | 37.3 |

자료: 통계청. (2023c). 경제활동인구조사-연령별 경제활동인구조사 총괄.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DA7002S&vw\\_cd=MT\\_ZTITLE&list\\_id=B11&scrId=&seqNo=&lang\\_mode=ko&obj\\_var\\_id=&itm\\_id=&conn\\_path=MT\\_ZTITLE&path=%252FstatisticsList%252FstatisticsListIndex.do](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DA7002S&vw_cd=MT_ZTITLE&list_id=B11&scrId=&seqNo=&lang_mode=ko&obj_var_id=&itm_id=&conn_path=MT_ZTITLE&path=%252FstatisticsList%252FstatisticsListIndex.do) 에서 2023.9.5. 인출.)

〈표 3-3〉 55세 이상 취업자의 종사상지위별 비율(2005~2022년)

(단위: %)

| 구분                |           | 2005 | 2010 | 2015 | 2020 | 2021 | 2022 |
|-------------------|-----------|------|------|------|------|------|------|
| 전체 연령<br>(15세 이상) | 상용직 임금근로자 | 31.6 | 38.6 | 48.5 | 53.8 | 54.0 | 55.6 |
|                   | 임시직 임금근로자 | 22.9 | 23.4 | 19.5 | 16.8 | 17.6 | 16.8 |
|                   | 일용직 임금근로자 | 13.1 | 10.4 | 5.9  | 4.9  | 4.5  | 4.1  |
|                   | 고용주       | 6.7  | 5.6  | 6.2  | 5.0  | 4.7  | 4.8  |
|                   | 자영자       | 18.7 | 16.2 | 15.4 | 15.5 | 15.4 | 15.3 |
|                   | 무급가족종사자   | 7.0  | 5.8  | 4.6  | 4.0  | 3.8  | 3.5  |
| 55~59세            | 상용직 임금근로자 | 18.8 | 25.8 | 37.6 | 48.1 | 49.8 | 51.9 |
|                   | 임시직 임금근로자 | 17.8 | 17.7 | 16.6 | 13.3 | 13.4 | 13.5 |
|                   | 일용직 임금근로자 | 15.8 | 14.1 | 8.7  | 7.1  | 6.8  | 5.7  |
|                   | 고용주       | 7.4  | 7.4  | 8.0  | 7.2  | 6.9  | 6.5  |
|                   | 자영자       | 30.7 | 26.1 | 22.2 | 18.8 | 17.9 | 18.0 |
|                   | 무급가족종사자   | 9.5  | 8.8  | 7.0  | 5.6  | 5.1  | 4.4  |
| 60~64세            | 상용직 임금근로자 | 11.5 | 18.6 | 25.0 | 33.3 | 34.5 | 35.9 |
|                   | 임시직 임금근로자 | 19.5 | 23.2 | 21.3 | 18.3 | 17.9 | 18.7 |
|                   | 일용직 임금근로자 | 15.9 | 12.9 | 8.9  | 8.2  | 8.4  | 7.2  |
|                   | 고용주       | 4.9  | 4.3  | 6.1  | 6.3  | 5.6  | 6.0  |
|                   | 자영자       | 35.5 | 31.5 | 30.2 | 26.8 | 26.0 | 24.9 |
|                   | 무급가족종사자   | 12.6 | 9.5  | 8.6  | 7.2  | 7.6  | 7.3  |
| 65~69세            | 상용직 임금근로자 | 5.6  | 10.2 | 16.9 | 23.8 | 24.2 | 25.9 |
|                   | 임시직 임금근로자 | 17.0 | 24.4 | 26.0 | 25.3 | 23.9 | 24.0 |
|                   | 일용직 임금근로자 | 15.3 | 14.1 | 9.9  | 6.4  | 7.2  | 7.3  |
|                   | 고용주       | 3.5  | 3.0  | 4.4  | 5.1  | 4.5  | 4.8  |
|                   | 자영자       | 44.1 | 35.5 | 34.0 | 31.0 | 31.3 | 30.2 |
|                   | 무급가족종사자   | 14.5 | 12.9 | 8.8  | 8.4  | 8.9  | 7.9  |

자료: 통계청. (각 연도).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8월). 원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다음은 동 연령대 취업자를 근로형태별로 구분하여 변화 추이를 살펴 보았다(〈표 3-4〉 참조). 정규직 근로자는 2005년 157.9천 명에서 2022년에는 692.1천 명으로 4배 가까이 늘어났다. 비정규직을 근로형태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동 기간 한시적 근로자는 183.7천 명에서 573.4천 명으로, 시간제 근로자는 53.3천 명에서 361.4천 명으로 늘어나 둘 다 괄목할 만한 증가세를 나타낸다. 비전형 근로자는 140천 명에서 350.5천 명으로 약 2.5배 증가하였다.

〈표 3-4〉 60~64세 취업자의 근로형태별 규모(2005~2022년)

(단위: 천 명)

| 구분   | 임금<br>근로자 | 정규직   | 비정규직  | 한시직   | 기간제   | 시간제   | 비전형   |
|------|-----------|-------|-------|-------|-------|-------|-------|
|      |           |       |       |       |       |       |       |
| 2005 | 447.6     | 157.9 | 289.7 | 183.7 | 141.1 | 53.3  | 140.0 |
| 2006 | 443.3     | 164.1 | 279.2 | 171.2 | 136.2 | 63.6  | 142.7 |
| 2007 | 494.6     | 187.9 | 306.7 | 183.2 | 137.0 | 64.4  | 163.7 |
| 2008 | 516.8     | 202.8 | 314.0 | 188.2 | 146.5 | 63.3  | 172.3 |
| 2009 | 572.1     | 196.0 | 376.1 | 257.6 | 222.3 | 67.7  | 183.8 |
| 2010 | 619.8     | 240.7 | 379.1 | 215.3 | 180.1 | 92.7  | 208.6 |
| 2011 | 645.8     | 237.0 | 408.8 | 235.3 | 198.1 | 94.2  | 228.1 |
| 2012 | 665.3     | 249.7 | 415.6 | 231.2 | 190.8 | 127.3 | 224.5 |
| 2013 | 747.4     | 316.6 | 430.8 | 229.8 | 198.7 | 140.0 | 231.0 |
| 2014 | 777.9     | 330.0 | 447.9 | 247.5 | 215.7 | 141.9 | 226.8 |
| 2015 | 920.8     | 399.3 | 521.5 | 291.6 | 241.8 | 171.0 | 263.6 |
| 2016 | 1,030.6   | 429.6 | 601.0 | 330.9 | 278.3 | 209.4 | 304.1 |
| 2017 | 1,085.0   | 460.6 | 624.4 | 347.1 | 286.6 | 215.5 | 293.9 |
| 2018 | 1,181.9   | 511.5 | 670.3 | 375.5 | 317.2 | 253.0 | 278.7 |
| 2019 | 1,288.3   | 530.3 | 758.0 | 467.5 | 374.1 | 283.4 | 288.3 |
| 2020 | 1,399.4   | 592.3 | 807.1 | 478.8 | 406.4 | 313.7 | 321.7 |
| 2021 | 1,500.8   | 585.2 | 915.6 | 559.0 | 473.1 | 331.0 | 361.4 |
| 2022 | 1,631.9   | 692.1 | 939.8 | 573.4 | 489.6 | 361.4 | 350.5 |

자료: 통계청. (각 연도).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8월). 원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국민연금의 가입상한연령 연장 시, 비교적 안정적으로 포괄할 수 있는 사업장가입자, 즉 임금근로자에 대한 가입 가능성을 파악하기 위해 이들의 소득수준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동 연령대 임금근로자의 최근 3개월간 평균임금을 종사상지위별, 정규직 여부로 구분하여 그 변화 추이를 살펴보았다. 상용직 근로자의 평균임금은 임시직, 일용직 근로자와 비교할 때 확연히 높은 수준인 것을 알 수 있다. 2022년 기준, 동 연령대 상용직 근로자의 평균임금은 291.6만 원, 임시직 172.7만 원, 일용직 194.1만 원으로 나타난다. 매년 상용직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임시직, 일용직보다 월등히 높은 것은 변하지 않는 것과 달리, 2021년부터는 일용직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임시직보다 높아져 2022년에는 일용직의 평균임금이 21만 원가량 높다(〈표 3-5〉 참조).

〈표 3-5〉 60~64세 임금근로자의 종사상지위별 평균 3개월 급여수준 분포

(단위: 만 원)

| 구분   | 상용직   | 임시직   | 일용직   | 전체    |
|------|-------|-------|-------|-------|
| 2005 | 160.1 | 69.3  | 40.8  | 107.6 |
| 2006 | 174.5 | 72.1  | 40.0  | 115.9 |
| 2007 | 176.1 | 75.2  | 48.9  | 121.7 |
| 2008 | 173.8 | 84.3  | 53.4  | 125.3 |
| 2009 | 164.7 | 83.6  | 48.9  | 123.1 |
| 2010 | 202.6 | 72.1  | 56.2  | 143.7 |
| 2011 | 215.5 | 81.3  | 58.4  | 150.6 |
| 2012 | 177.2 | 85.7  | 55.5  | 141.8 |
| 2013 | 195.1 | 89.7  | 62.1  | 152.9 |
| 2014 | 194.0 | 96.8  | 70.4  | 164.0 |
| 2015 | 229.0 | 124.1 | 117.3 | 170.6 |
| 2016 | 241.4 | 123.4 | 124.0 | 174.8 |
| 2017 | 246.5 | 129.9 | 144.8 | 187.4 |
| 2018 | 283.3 | 144.8 | 135.3 | 211.5 |
| 2019 | 283.4 | 160.4 | 153.4 | 222.5 |
| 2020 | 272.1 | 159.3 | 152.5 | 221.2 |
| 2021 | 267.2 | 163.8 | 173.2 | 223.7 |
| 2022 | 291.6 | 172.7 | 194.1 | 244.3 |

자료: 통계청. (각 연도).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8월). 원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한편,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구분하여 이들의 평균임금을 각각 15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400만 원, 그리고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 월액(A값)을 기준으로 제시하였다(〈표 3-6〉 참조). 월 200만 원 수준의 급여가 확보된다면 보험료를 납부한 이후에도 생활 유지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이다미 외, 2021). 동 연령대의 정규직 근로자 중 월 급여가 200만 원 이상인 비율은 2005년 18.2%에 그치던 것에서 2022년에는 82.7%로 크게 증가하였고, 비정규직 가운데 2022년에 동 구간에 속하는 비율은 47.9%로 정규직의 절반에 그친다. 2022년 기준, A값 이상의 비율은 정규직, 비정규직 각각 46.2%, 17.7%로 둘의 차이가 두드러지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6〉 60~64세 임금근로자의 평균 3개월 급여수준 분포

(단위: 만 원, %)

| 구분   | 정규직          |              |              |              |          | 비정규직         |              |              |              |          |
|------|--------------|--------------|--------------|--------------|----------|--------------|--------------|--------------|--------------|----------|
|      | 150만<br>원 이상 | 200만<br>원 이상 | 300만<br>원 이상 | 400만<br>원 이상 | A값<br>이상 | 150만<br>원 이상 | 200만<br>원 이상 | 300만<br>원 이상 | 400만<br>원 이상 | A값<br>이상 |
| 2005 | 30.2         | 18.2         | 13.9         | 8.8          | 14.3     | 9.6          | 3.5          | 0.8          | 0.5          | 1.1      |
| 2006 | 33.0         | 22.1         | 14.7         | 11.5         | 15.0     | 11.1         | 4.4          | 2.3          | 1.5          | 2.3      |
| 2007 | 36.2         | 22.0         | 14.2         | 10.1         | 14.4     | 11.4         | 5.7          | 2.4          | 1.3          | 3.1      |
| 2008 | 37.0         | 25.1         | 14.3         | 8.7          | 15.6     | 18.0         | 8.1          | 3.1          | 1.6          | 3.1      |
| 2009 | 42.1         | 26.9         | 17.2         | 10.2         | 18.0     | 12.3         | 3.9          | 1.2          | 0.6          | 1.4      |
| 2010 | 46.8         | 29.3         | 18.4         | 12.9         | 18.8     | 17.6         | 6.3          | 1.4          | 0.8          | 1.6      |
| 2011 | 47.6         | 27.6         | 16.0         | 10.8         | 17.6     | 21.9         | 9.3          | 4.0          | 2.8          | 4.3      |
| 2012 | 52.2         | 31.6         | 16.7         | 11.7         | 17.6     | 23.1         | 10.6         | 2.6          | 1.1          | 3.9      |
| 2013 | 57.6         | 33.9         | 15.7         | 9.5          | 17.8     | 26.4         | 10.9         | 5.1          | 2.6          | 6.0      |
| 2014 | 63.2         | 38.6         | 19.2         | 10.9         | 21.8     | 28.8         | 12.2         | 4.5          | 2.7          | 4.8      |
| 2015 | 64.4         | 39.9         | 18.2         | 10.3         | 20.9     | 35.2         | 14.3         | 3.8          | 2.0          | 4.4      |
| 2016 | 68.2         | 43.5         | 19.6         | 12.7         | 21.5     | 40.9         | 17.2         | 5.7          | 2.7          | 6.9      |
| 2017 | 75.1         | 48.3         | 20.9         | 12.8         | 24.4     | 46.0         | 21.6         | 6.2          | 3.0          | 8.0      |
| 2018 | 85.2         | 60.0         | 29.4         | 17.6         | 33.0     | 52.1         | 24.9         | 8.3          | 2.7          | 9.3      |
| 2019 | 90.7         | 63.4         | 31.8         | 20.5         | 35.3     | 59.7         | 34.4         | 9.1          | 3.7          | 10.9     |
| 2020 | 90.3         | 67.5         | 33.1         | 18.7         | 36.7     | 58.5         | 35.0         | 10.7         | 3.4          | 13.2     |
| 2021 | 93.6         | 74.2         | 34.9         | 18.1         | 39.0     | 62.1         | 39.4         | 12.7         | 4.3          | 14.6     |
| 2022 | 94.4         | 82.7         | 41.0         | 20.4         | 46.2     | 66.5         | 47.9         | 14.5         | 5.2          | 17.7     |

주: 2022년 7월, 국민연금 A값 2,651,724원

자료: 통계청. (각 연도).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8월). 원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표 3-7〉 60~64세 고령자의 취업자 및 임금근로자 추이

(단위: 천 명, %)

| 구분   | 전체<br>취업자 수(A) | 60~64세<br>취업인구 수(B) | 전체<br>임금근로자 수(C) | 60~64세<br>임금근로자 수(D) | (B)/(A)<br>*100 | (D)/(C)<br>*100 |
|------|----------------|---------------------|------------------|----------------------|-----------------|-----------------|
| 2005 | 22,778.80      | 1,061.6             | 14,948.23        | 447.6                | 4.7             | 3.0             |
| 2006 | 23,211.42      | 1,049.9             | 15,420.43        | 443.3                | 4.5             | 2.9             |
| 2007 | 23,581.51      | 1,085.4             | 16,006.21        | 494.6                | 4.6             | 3.1             |
| 2008 | 23,824.55      | 1,113.9             | 16,257.71        | 516.8                | 4.7             | 3.2             |
| 2009 | 23,797.15      | 1,169.1             | 16,608.72        | 572.1                | 4.9             | 3.4             |
| 2010 | 24,214.35      | 1,217.6             | 17,189.25        | 619.8                | 5.0             | 3.6             |
| 2011 | 24,783.74      | 1,315.7             | 17,714.87        | 645.8                | 5.3             | 3.6             |
| 2012 | 25,120.46      | 1,347.3             | 17,941.19        | 665.3                | 5.4             | 3.7             |
| 2013 | 25,512.97      | 1,438.2             | 18,403.08        | 747.4                | 5.6             | 4.1             |
| 2014 | 26,183.02      | 1,512.5             | 18,991.81        | 777.9                | 5.8             | 4.1             |
| 2015 | 26,368.72      | 1,670.0             | 19,474.44        | 920.7                | 6.3             | 4.7             |
| 2016 | 26,695.98      | 1,826.6             | 19,743.26        | 1,030.6              | 6.8             | 5.2             |

38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한 국민연금 가입상한연령 연장 방안 연구

| 구분   | 전체<br>취업자 수(A) | 60~64세<br>취업인구 수(B) | 전체<br>임금근로자 수(C) | 60~64세<br>임금근로자 수(D) | (B)/(A)<br>*100 | (D)/(C)<br>*100 |
|------|----------------|---------------------|------------------|----------------------|-----------------|-----------------|
| 2017 | 26,904.3       | 1,945.5             | 20,006.05        | 1,085.0              | 7.2             | 5.4             |
| 2018 | 26,906.83      | 2,056.1             | 20,045.07        | 1,181.9              | 7.6             | 5.9             |
| 2019 | 27,358.37      | 2,210.2             | 20,558.95        | 1,288.2              | 8.1             | 6.3             |
| 2020 | 27,084.69      | 2,343.0             | 20,445.89        | 1,399.4              | 8.7             | 6.8             |
| 2021 | 27,602.70      | 2,470.2             | 20,992.44        | 1,500.8              | 8.9             | 7.1             |
| 2022 | 28,409.96      | 2,640.7             | 21,724.09        | 1,631.9              | 9.3             | 7.5             |

자료: 통계청. (각 연도).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8월). 원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이어서 동 연령대 근로자의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 가능성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지표로 고용보험 가입률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고용보험은 근로시간 기준으로 국민연금과의 가입요건 차이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국민연금 가입 가능성을 파악할 수 있다(이다미 외, 2021).

〈표 3-8〉 60~64세 임금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률

(단위: %)

| 구분   | 정규직    |        |        | 비정규직   |        |        |
|------|--------|--------|--------|--------|--------|--------|
|      | 35~54세 | 55~59세 | 60~64세 | 35~54세 | 55~59세 | 60~64세 |
| 2005 | 62.0   | 54.0   | 42.4   | 31.7   | 29.5   | 22.9   |
| 2006 | 62.9   | 53.7   | 35.5   | 33.1   | 35.3   | 24.0   |
| 2007 | 62.6   | 58.7   | 41.8   | 35.9   | 35.6   | 34.3   |
| 2008 | 63.6   | 58.2   | 41.8   | 35.7   | 41.7   | 41.2   |
| 2009 | 66.3   | 57.4   | 49.5   | 39.0   | 50.0   | 54.3   |
| 2010 | 66.4   | 53.4   | 53.4   | 38.3   | 44.8   | 48.0   |
| 2011 | 68.5   | 56.0   | 48.2   | 42.7   | 46.0   | 43.6   |
| 2012 | 70.2   | 56.6   | 48.4   | 45.2   | 47.2   | 46.1   |
| 2013 | 71.9   | 58.7   | 52.3   | 46.2   | 48.1   | 45.2   |
| 2014 | 73.7   | 63.3   | 53.9   | 47.0   | 48.3   | 51.2   |
| 2015 | 75.0   | 65.4   | 60.1   | 46.5   | 45.9   | 48.2   |
| 2016 | 75.5   | 67.6   | 61.4   | 46.5   | 43.9   | 49.0   |
| 2017 | 76.6   | 70.6   | 62.8   | 49.5   | 47.0   | 49.3   |
| 2018 | 78.1   | 71.3   | 65.2   | 48.5   | 45.3   | 52.2   |
| 2019 | 78.7   | 72.9   | 69.0   | 52.4   | 46.8   | 53.0   |
| 2020 | 80.9   | 75.7   | 73.4   | 54.9   | 52.3   | 54.3   |
| 2021 | 81.4   | 75.4   | 78.9   | 65.8   | 64.5   | 58.8   |
| 2022 | 82.7   | 78.5   | 78.7   | 69.4   | 66.7   | 62.4   |

자료: 통계청. (각 연도).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8월). 원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동 연령대 임금근로자를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구분하여 고용보험 가입률을 살펴본 결과(〈표 3-8〉 참조), 2022년 기준, 정규직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78.7%로 55~59세(78.5%)와 비교할 때 거의 차이 나지 않는다. 한편, 비정규직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62.4%로 정규직보다 약 16%p 낮은 편이며, 현재까지 계속 증가해 왔음에도 정규직과 비교할 때 가입률 개선이 두드러지지 않고 있다.

### 제3절 60~64세 고령자의 경제활동 유형별 특성 비교

#### 1. 분석자료 특성과 경제활동 유형 구분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5월 고령자 부가조사」는 응답자의 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이하 ‘생애 주된 일자리’)에 대한 정보를 조사하여 제공한다. 동 자료는 생애 근로 경험이 있는 경우, 생애 주된 일자의 근속기간, 조사 당시 생애 주된 일자의 이직 여부와 이직연령, 생애 주된 일자의 특성 - 근로형태, 직종, 산업, 이직 사유 등 - 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를 고려하여 조사 당시 경제활동상태에 따라 개인들을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정의할 수 있다. ① 조사 당시에도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계속 일하고 있는 자(‘지속’), ②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이직 후 조사 당시 다른 일자리로 재취업한 상태인 자(‘재취업’), ③ 취업상태가 아닌 자(‘이직’), ④ 생애 근로 경험이 없는 자(‘생애무직’)로 구분할 수 있다.

개인의 청·장년기 당시 경제활동의 양과 질은 각 유형에 따라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 ‘지속’ 유형은 60~64세에도 생애 주된 일자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청·장년기에 경제활동이 상대적으로 가장 활발했던 개인들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집단인 것에 반해, ‘생애무직’ 유형은 그 정의상 생애 경제활동이 전혀 없었던 집단으로서 ‘지속’ 유형과는 대비된다. 한편 ‘재취업’과 ‘이직’ 유형에 속한 개인들은 생애 주된 일자리를 이직한 상태에서 조사 시점 당시 취업 여부에 따라 비교적 단순하게 구분됨에 따라 두 유형 간 차이점은 뚜렷하지 않을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sup>7)</sup> 이 네 유형에 속한 인구 비중의 추이는 다음의 <표 3-9>와 같다. 여기서 가장 눈에 띄는 결과는 60~64세 남성의 경우, ‘재취업’, ‘지속’ 유형에 속한 비중이 상당하다는 점이다.

<표 3-9> 조사 당시 경제활동상태에 따른 고령자의 경할 유형별 비중 추이

(단위: %)

| 구분     |            |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
| 남<br>성 | 60~<br>64세 | 지속   | 31.3 | 31.9 | 31.8 | 33.1 | 33.1 | 34.3 | 32.7 | 30.9 | 30.2 | 33.3 |
|        |            | 재취업  | 41.2 | 41.7 | 41.8 | 38.3 | 42.3 | 38.8 | 38.9 | 40.0 | 41.3 | 41.7 |
|        |            | 이직   | 27.3 | 26.3 | 26.1 | 28.2 | 24.4 | 26.7 | 28.3 | 28.8 | 28.2 | 24.7 |
|        |            | 생애무직 | 0.3  | 0.1  | 0.3  | 0.4  | 0.2  | 0.2  | 0.2  | 0.2  | 0.3  | 0.3  |
|        | 55~<br>59세 | 지속   | 47.8 | 48.8 | 48.3 | 50.3 | 50.6 | 51.5 | 47.3 | 49.0 | 46.9 | 49.4 |
|        |            | 재취업  | 36.5 | 38.3 | 36.5 | 34.4 | 36.1 | 35.1 | 37.3 | 34.4 | 37.3 | 36.7 |
|        |            | 이직   | 15.4 | 12.6 | 14.7 | 14.9 | 12.8 | 13.0 | 15.1 | 16.1 | 15.5 | 13.6 |
|        |            | 생애무직 | 0.2  | 0.3  | 0.5  | 0.3  | 0.5  | 0.4  | 0.3  | 0.5  | 0.4  | 0.2  |
| 여<br>성 | 60~<br>64세 | 지속   | 23.0 | 24.0 | 23.6 | 23.9 | 25.5 | 26.2 | 24.5 | 25.3 | 23.3 | 25.1 |
|        |            | 재취업  | 24.3 | 24.3 | 25.9 | 25.3 | 23.3 | 22.2 | 26.0 | 25.9 | 27.4 | 28.2 |
|        |            | 이직   | 44.6 | 45   | 44.8 | 45.1 | 45.0 | 46.0 | 44.1 | 43.8 | 44.7 | 43.3 |
|        |            | 생애무직 | 8.0  | 6.7  | 5.7  | 5.7  | 6.1  | 5.7  | 5.4  | 5.0  | 4.5  | 3.4  |
|        | 55~<br>59세 | 지속   | 30.9 | 30.7 | 31.4 | 32.4 | 33   | 35.2 | 34.1 | 35.2 | 34.1 | 33.8 |
|        |            | 재취업  | 25.8 | 26.5 | 26.2 | 26.1 | 27.0 | 25.6 | 28.8 | 26.0 | 27.9 | 31.7 |
|        |            | 이직   | 37.2 | 38.1 | 38.1 | 37.0 | 35.7 | 35.3 | 33.8 | 35.6 | 35.3 | 32.9 |
|        |            | 생애무직 | 6.1  | 4.8  | 4.2  | 4.4  | 4.3  | 3.9  | 3.3  | 3.2  | 2.7  | 1.6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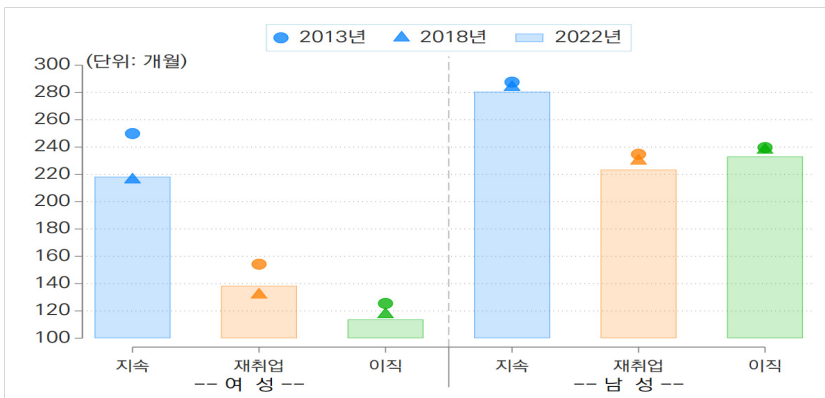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각 연도).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자 부가조사(5월). 원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7) 고령자 부가조사에서는 생애 주된 일자리의 시작과 끝 시점을 명확하게 조사하지 않고, 근속기간만을 조사한다는 한계가 있다.

## 2. 60~64세 인구의 경제활동 유형에 대한 정의와 유형별 특성 비교

60세 이후에도 생애 주된 일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이들의 평균 근속 기간은 남녀 모두 다른 유형에 비해 상당히 길게 나타난다(그림 3-1 참조). ‘지속’ 유형에 속한 여성의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의 평균 근속기간은 2022년 기준, 218.3개월인 것에 반해, ‘재취업’과 ‘이직’ 유형에 속한 개인들은 각각 138.4개월, 113.8개월 수준으로 더 짧게 나타난다. 다시 말해, 60~64세 동안에도 생애 주된 일자리를 유지하거나 혹은 다른 일자리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유형에 속할수록 생애 근로이력이 길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지속’ 유형에 속한 남성의 경우, 평균 근속기간은 280개월로 다른 유형과 비교할 때 약 50~60개월 길게 나타난다. ‘재취업’과 ‘이직’ 유형의 평균 근속기간은 각각 223.5개월, 233.1개월로,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나온 이직자의 평균 근속기간이 약간 길게 나타난다. 이는 생애 주된 일자리를 이직한 남성의 경우, 60~64세의 경제활동 여부와 생애 근로이력 간 관계가 명확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그림 3-1] 유형별 생애 주된 일자리의 평균 근속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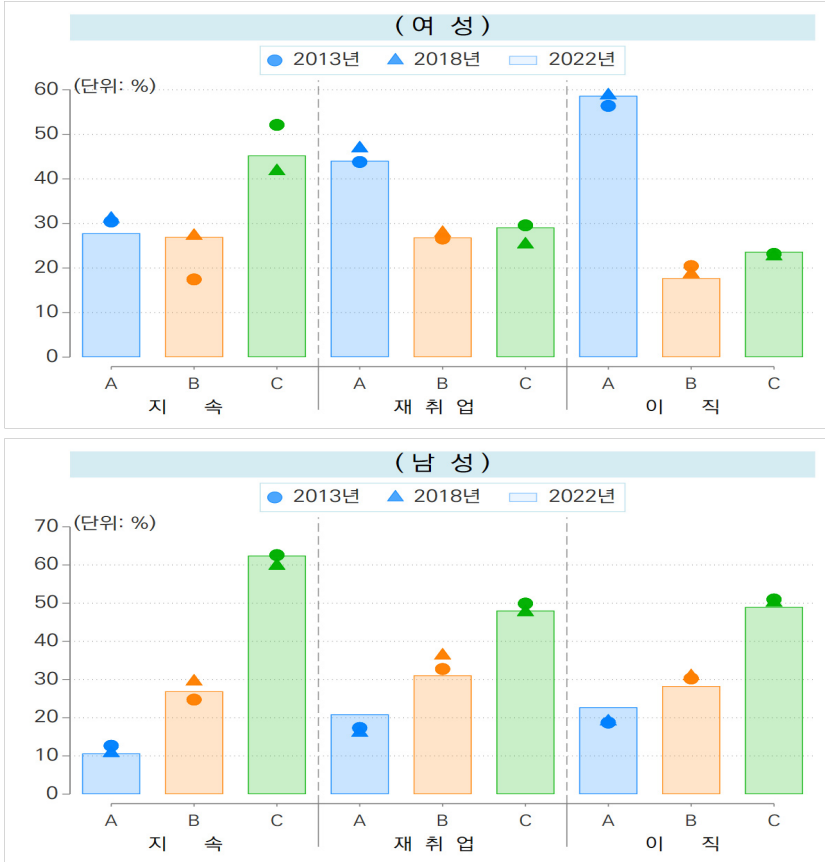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각 연도).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자 부가조사(5월). 원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한편, 생애 주된 일자리의 근속기간은 성별, 경제활동 유형과 큰 관계 없이 2013년 이후 점차 줄어드는 경향을 나타내나, 평균적으로 국민연금의 수급권 확보를 위한 최소 가입기간인 120개월을 초과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생애 주된 일자리의 근속기간 구간별로 구분하여 인구 비중을 살펴 보고자 한다.

여성의 경우, 생애 경제활동의 활발함에 따른 유형 구분이 적절한 것을 알 수 있다([그림 3-2] 참조). ‘이직’ 유형에 속한 여성 가운데 58.7%는 생애 주된 일자리의 근속기간이 10년 미만이나, ‘지속’의 경우 20년을 초과한 여성이 45.3%에 이른다. 상대적으로 생애 경제활동이 활발했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속’ 유형의 경우, 생애 주된 일자리의 근속기간이 10년 미만인 여성의 비중이 27.8%이며, ‘재취업’의 경우 44.1%에 이른다.

이처럼 60~64세에 경제활동을 하는 여성 가운데 생애 주된 일자리의 근속기간이 10년 미만인 여성의 비중이 상당히 크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국민연금 가입상한연령이 연장되는 경우, 이들 여성집단의 가입기간 증가로 연금 수급권 확보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근속기간이 10년 이상 20년 이하인 이들까지 모두 포함한 총 비중이 각 유형의 절반 이상이라는 점까지 고려하면 가입상한연령 연장에 따른 가입기간 연장 효과는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효과는 생애 주된 일자리의 근속기간과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완전히 일치하는 것을 전제로 할 때 가능하다. 현행 국민연금은 가입 시 연령 외 근로시간 요건을 포함하며, 경제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가입을 하지 않는 납부예외자가 여전히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그림 3-2] 유형별 생애 주된 일자리의 근속기간 구간별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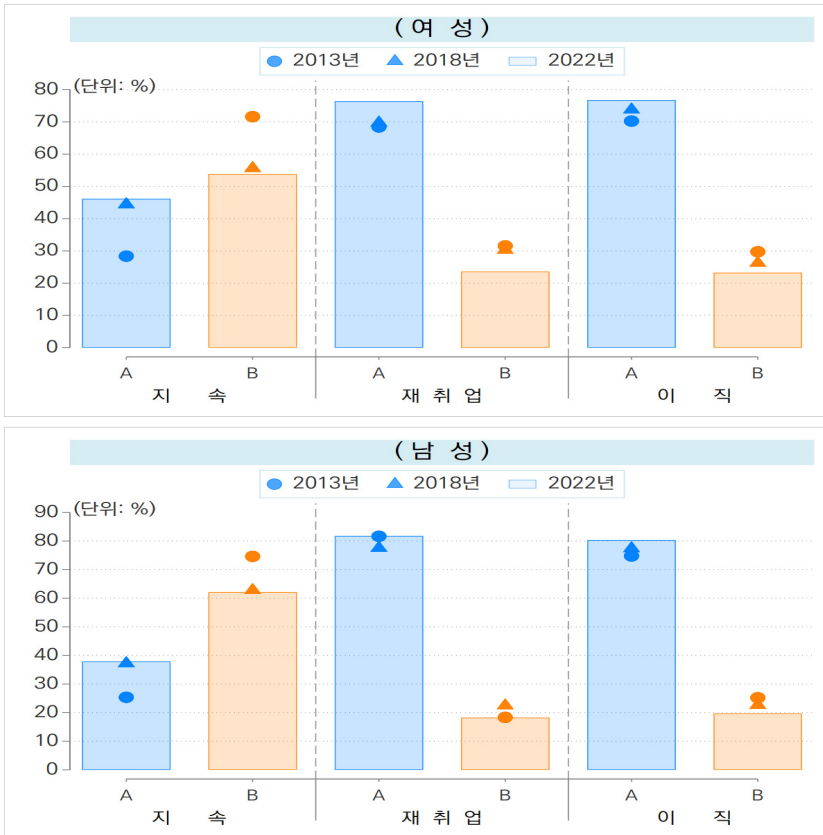


주: A=10년 미만, B=10~20년 이하, C=20년 초과  
 자료: 통계청. (각 연도).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자 부가조사(5월). 원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다음 [그림 3-3]은 경제활동 유형별 생애 주된 일자리의 근로형태를 보여준다. 여기서 ‘지속’ 유형은 조사 당시 일자리가 생애 주된 일자리와 동일한 반면, 나머지 두 유형은 조가 당시 이직한 일자리를 의미한다. 남녀 모두 ‘지속’ 유형의 경우 비임금근로 비중이 여성 53.8%, 남성 62.1%로 임금근로에 비해 다소 높은 반면, 다른 두 유형의 경우에는 임금근로

비중이 남녀 모두 압도적으로 높은 편이다. 국민연금 가입 시 비임금근로자는 지역가입자인 경우가 대다수라는 점을 고려하면 ‘지속’ 유형이더라도 가입이력이 충분하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아울러 ‘재취업’ 혹은 ‘이직’ 유형에 속하는 개인이더라도 가입이력이 ‘지속’ 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충분하다고 단정 짓기 어렵다.

[그림 3-3] 경황 유형별 생애 주된 일자리 근로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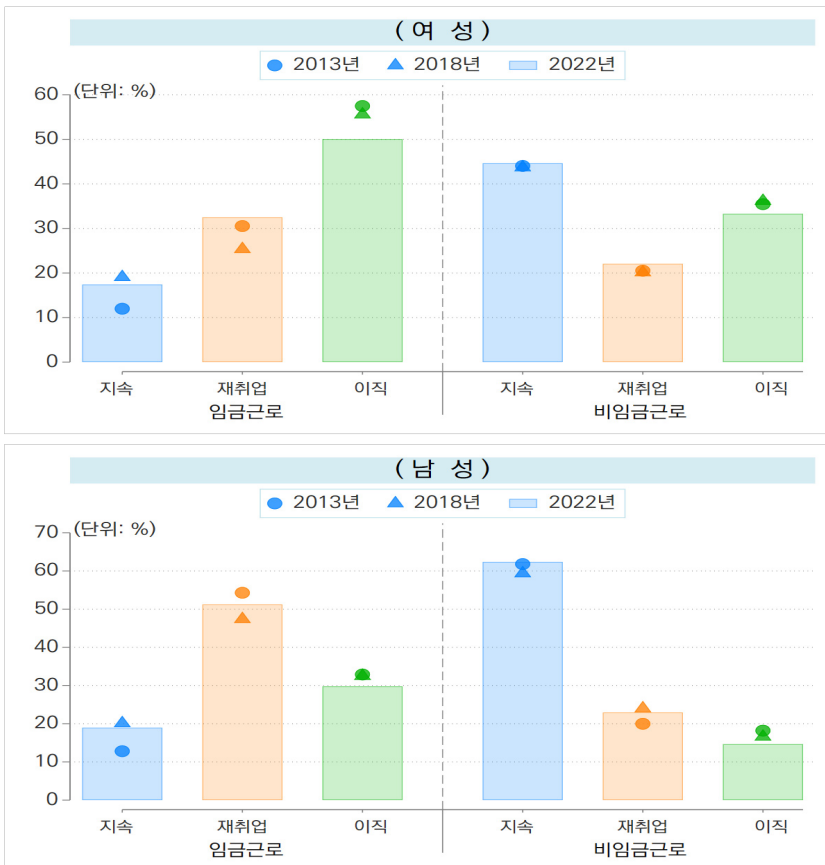
주: 1) A=임금근로, B=비임금근로

2) ‘지속’의 경우 생애 주된 일자리는 조사 당시 일자리임.

자료: 통계청, (각 연도),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자 부가조사(5월), 원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한편, [그림 3-3]은 생애 주된 일자리가 비임금근로인 경우, 60~64세에도 유지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를 좀 더 명확하게 확인하기 위해 생애 주된 일자의 근로형태를 중심으로 각 유형의 비중을 살펴보았다([그림 3-4] 참조).

[그림 3-4] 생애 주된 일자의 근로형태별 경찰 유형 구성



주: 1) '지속'의 경우 생애 주된 일자리는 조사 당시 일자리임.

자료: 통계청. (각 연도).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자 부가조사(5월). 원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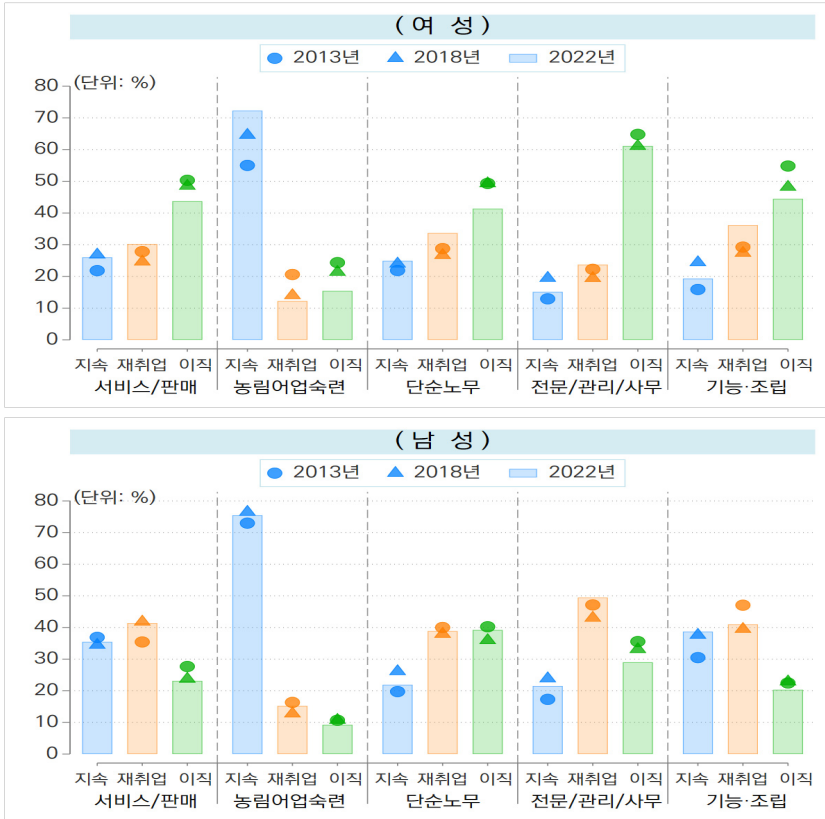
생애 주된 일자리가 비임금근로인 경우, 남녀 모두 60세 이후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편이다. 특히 남성은 그 가능성이 62.4%에 이르고, '이직' 가능성은 14.7%로 가장 낮다. 여성의 경우, '지속' 가능성은 44.6%인 반면, '이직' 가능성은 33.3%에 이른다. 한편 60~64세에 다른 신규 일자리에서 근로할 가능성은 남녀 모두 22% 수준으로 비슷하게 나타난다. 생애 주된 일자리가 임금근로일 때 여성이 해당 일자리를 60~64세에 지속할 가능성은 20%에도 미치지 못하지만, 이직할 가능성은 50%, 재취업할 가능성은 30% 수준에 이른다. 다만 지난 10년 동안 여성의 이직 가능성은 낮아지고, 경제활동을 지속할 가능성은 높아지고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sup>8)</sup> 한편 남성의 경우에는 시간에 따른 변화가 크지 않다. 생애 주된 일자리가 임금근로일 때 60세가 넘어서도 지속될 가능성은 20%로 여성과 유사하지만, 재취업할 가능성은 51.2%로 여성보다 더 오래 노동시장에 남아 경제활동을 할 것으로 예측된다.

다음의 [그림 3-5]는 생애 주된 일자리의 직종에 따른 각 유형별 구성 비중을 보여준다. 먼저, 남녀 모두 생애 주된 일자리가 농업어업숙련직인 경우 60세를 넘어서도 해당 일자리를 지속하는 비중이 남성 75.5%, 여성 72.3%로 매우 높다. 여성의 경우, 농업어업숙련직을 제외한 모든 직종에서 이직할 가능성이 가장 높게 나타난다. 특히 전문/관리/사무직의 경우 이직 가능성은 61.1%로 가장 높고, 이어서 기능 및 조립(44.5%), 서비스/판매(43.7%), 단순노무(41.4%) 순으로 높게 나타난다. 한편 60세가 넘어서도 생애 주된 일자리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직종은 서비스/판매(26.0%)와 단순노무(24.9%)로 고용의 질이 상대적으로 낮은 직종일 가능성이 크다.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이직하고 60세가 넘어 다른 일자리

8) 임금근로에서 '이직'과 '지속' 비중은 2013년에 각각 57.5%와 12.0%였으며, 2022년에는 17.4%와 50.1%로 변화하여 여성의 경제활동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에서 경제활동을 할 가능성은 전문/관리, 농림어업을 제외한 세 직종에서 30~36% 수준으로 유사하게 나타난다.

[그림 3-5] 생애 주된 일자리 직종별 경향 유형 구성



주: 1) '지속'의 경우 생애 주된 일자리는 조사 당시 일자리임.

자료: 통계청. (각 연도).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자 부가조사(5월). 원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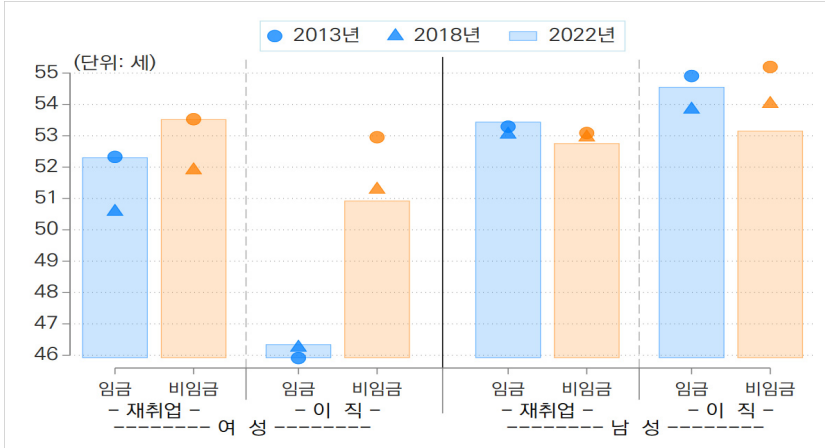
남성의 경우, 여성과 가장 큰 차이는 생애 주된 일자리의 직종에 크게 상관없이 이직할 가능성이 낮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이직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직종은 단순노무직으로 39.2%에 지나지 않는다. 남성이 농림어업

직 외에 60세가 넘어서도 생애 주된 일자리를 지속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직종은 기능·조립직으로 38.7%이며, 서비스/판매는 35.5%, 단순노무, 전문/관리/사무직의 경우 각각 21.9%, 21.5%로 유사한 편이다. 한편 ‘재취업’ 비중의 직종별 차이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생애 주된 일자리가 전문/관리/사무직인 경우, 그 비중이 49.5%로 상당히 높다는 것이다. 기능·조립, 서비스/판매, 단순노무의 경우 ‘재취업’ 비중이 39~41% 수준임을 고려하면 생애 주된 일자리가 꽤 양질이었던 이들의 재취업 가능성이 8~10%p 더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어서 [그림 3-6]은 60~64세 인구의 평균 퇴직연령(‘이직’, ‘재취업’)을 생애 주된 일자리의 근로형태에 따라 비교한 것이다. 여기서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은 ‘이직’ 유형에 속한 여성 중에서 생애 주된 일자리가 임금근로였던 여성의 퇴직연령이 약 46세로 가장 낮다는 것이다. 생애 주된 일자리가 비임금근로였던 여성의 퇴직연령은 약 51세로 약간 더 높지만 남성과 다른 유형에 비하면 여전히 낮다.

다시 말해 60~64세에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여성은 비교적 이른 나이에 생애 주된 일자리를 퇴직한 여성일 가능성이 높다. 60~64세에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다면 가입상한연령이 연장되더라도 그에 따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이직’ 유형에 속한 여성들의 다양한 특성을 파악하는 것은 향후 정책의 효과성과 대상 간 형평성 측면에서 중요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생애 주된 일자리의 근속기간이 짧고 빠르게 퇴직하는 여성들은 국민연금 가입이력이 상대적으로 불충분한 계층일 가능성이 크다. 더욱이 여성 중에서 ‘이직’ 유형의 비중은 2013년 이후 최근까지 45% 내외로 절반에 가깝다. 남성의 경우에도 60~64세에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다면 가입상한연령 연장에 따른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그림 3-6] 생애 주된 일자리 근로형태와 경찰 유형별 퇴직연령



자료: 통계청. (각 연도).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자 부가조사(5월). 원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본 연구에서 가입상한연령 연장의 효과를 추정하는 것은 대단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이를 위해 각 개인의 생애 연금가입 이력을 명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으나, 이러한 정보를 제공하는 자료는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sup>9)</sup>

다만 본 연구에서는 고령자 부가조사의 연금 수급 여부와 월평균 수급액에 관한 정보를 활용하여 매우 제한적이기는 하나, 경제활동 유형별 특징을 좀 더 세밀하게 파악하려고 한다. 여기서 반드시 유의해야 하는 것은 동 자료에서 제공하는 연금 변수는 공·사적연금을 구분하지 않는다는 것이다.<sup>10)</sup> 따라서 연금 수급 여부와 수급액은 개인의 생애 근로 과정을 요약·제시하는 하나의 대리변수(proxy)로 이해해야 한다. 생애 근로 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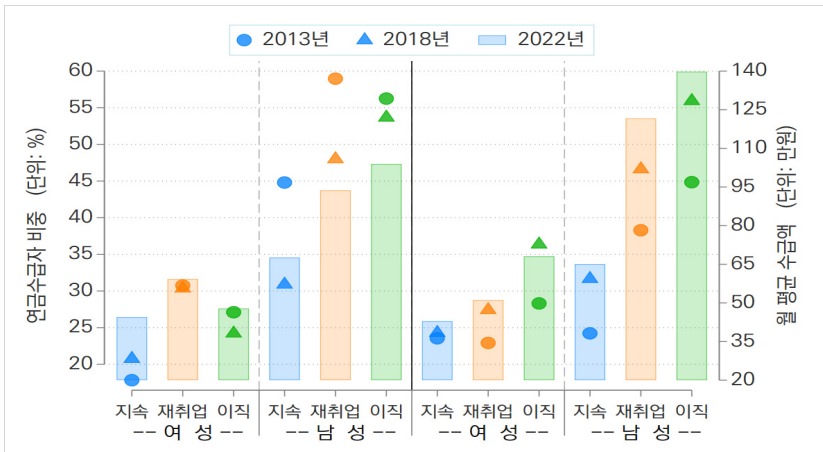
9) 본 연구에서는 노동패널의 직업력 자료상 사회보험 가입정보를 바탕으로 연금가입이력이 60~64세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한다(본 장의 4절 내용 참고).

10) 해당 변수에는 기초연금도 포함되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60~64세 인구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기초연금 수급자 정보는 포함하지 않는다.

정이 안정적이고 길수록, 연금 수급의 가능성과 수급액이 높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생애 근로 과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개인의 학력에 따른 경제활동 유형별 차이를 파악하였다.

다음의 [그림 3-7]은 성/경제활동 유형별 연금 수급자 비중과 월평균 수급액을 비교한 것이다. ‘이직’ 유형에 속한 여성의 연금 수급 비중은 27.6%로 ‘지속’ 유형(26.4%)보다 높지만 ‘재취업’ 유형(31.6%)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월평균 수급액은 ‘이직’ 유형에 속한 여성의 경우 약 68만 원으로 다른 유형과 비교할 때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3-7] 경활 유형별 연금 수급자 비중과 월평균 수급액



자료: 통계청. (각 연도).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자 부가조사(5월). 원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생애 주된 일자리의 근로형태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표 3-10> 참조), 경제활동 유형에 관계없이 생애 주된 일자리의 근로형태가 임금근로일 때 연금 수급자 비중과 수급액 모두 비임금근로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연금 수급자 비중의 경우, 경제활동 유형에 따른 차이가 크지 않지만 연금

수급액은 좀 더 유의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생애 주된 일자리의 근로 형태가 비임금근로인 여성의 경우, 2022년 기준, 월평균 수급액이 34~40만 원 수준으로 경제활동 유형에 따른 차이가 크지 않은 편이다. 반면에 생애 주된 일자리의 근로형태가 임금근로인 여성은 ‘이직’ 유형일 때 수급액이 76.7만 원으로 가장 높고, 이어서 ‘재취업’(55.6만 원), ‘지속’(46.0만 원) 순으로 나타난다. ‘이직’ 유형의 경우, 수급액 수준이 비임금 근로 대비 두 배가 넘는 수준으로 나타나 생애 주된 일자리에 따른 격차가 다른 유형에 비하여 훨씬 크게 나타난다.

〈표 3-10〉 경찰 유형과 생애 주된 일자리의 근로형태별 연금 수급 비중과 금액: 여성  
(단위: %, 만 원)

| 구분  |       | 연금 수급자 비중 |      |      | 월평균 수급액 |      |      |
|-----|-------|-----------|------|------|---------|------|------|
|     |       | 2013      | 2018 | 2022 | 2013    | 2018 | 2022 |
| 지속  | 임금근로  | 27.6      | 25.3 | 28.0 | 42.6    | 42.1 | 46.0 |
|     | 비임금근로 | 14.0      | 17.1 | 25.1 | 31.3    | 34.0 | 40.1 |
| 재취업 | 임금근로  | 33.6      | 33.9 | 32.0 | 37.4    | 49.2 | 55.6 |
|     | 비임금근로 | 24.5      | 22.2 | 30.4 | 25.8    | 40.4 | 35.9 |
| 이직  | 임금근로  | 28.0      | 25.1 | 28.7 | 52.9    | 84.0 | 76.7 |
|     | 비임금근로 | 25.0      | 21.8 | 24.1 | 41.7    | 36.1 | 34.3 |

자료: 통계청. (각 연도).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자 부가조사(5월). 원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이어서 남성의 연금 수급자 비중과 월평균 수급액을 경제활동 유형별로 비교한 결과(그림 3-7 참조), ‘이직’ 유형의 수급자 비중과 수급액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2022년 기준, ‘이직’ 유형에 속한 남성의 연금 수급자 비중은 47.3%로 가장 높고, 이어서 ‘재취업’(43.7%), ‘지속’(34.6%) 순이다. 평균 수급액 역시 ‘이직’ 유형이 140만 원으로 가장 높고, ‘재취업’ 유형은 122만 원으로 두 유형은 비교적 유사한 수준을 나타낸다. ‘지속’ 유형에 속한 연금 수급자의 월평균 수급액은 65만 원으로 앞의 두 유형과 비교할 때 매우 낮은 수준이다.

한편, 남성의 경우 연금 수급자 비중이 2013년 이후 최근까지 계속 감소하는 모습을 나타낸다. 이는 2013년부터 국민연금의 수급개시연령이 연장되고, 2015년부터 연기연금이 시행된 영향으로 볼 수 있다. 물론 이 같은 제도 변화는 여성에게도 동일하게 영향을 주게 되나, 여성의 지속적인 경제활동 참여 상승이 그 영향을 상쇄하여 성별에 따라 다른 추이를 발생 시킨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다음의 <표 3-11>을 살펴보면, 여성과 유사하게 경제활동 유형별 특징, 즉 임금근로일 때 비임금근로에 비하여 월평균 수급액이 더 높고, 비임금근로의 경우 수급액 차이가 경제활동 유형과 무관하게 유사한 수준이다. 다만, 각 경제활동 유형 내 근로형태에 따른 격차가 여성보다 남성에게서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특징은 연금 수급자 비중 측면에서 ‘재취업’과 ‘이직’ 유형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한편 ‘지속’ 유형은 생애 주된 일자리의 근로형태가 비임금근로인 경우 다른 유형과 달리 그 비중이 임금근로보다 더 높은 것이 여성과는 다른 점이다.

<표 3-11> 경찰 유형과 생애 주된 일자리의 근로형태별 연금 수급 비중과 금액: 남성

(단위: %, 만 원)

| 구분  |       | 연금 수급자 비중 |      |      | 월평균 수급액 |       |       |
|-----|-------|-----------|------|------|---------|-------|-------|
|     |       | 2013      | 2018 | 2022 | 2013    | 2018  | 2022  |
| 지속  | 임금근로  | 37.2      | 26.4 | 27.6 | 42.7    | 65.2  | 79.3  |
|     | 비임금근로 | 47.4      | 33.6 | 38.8 | 37.0    | 56.6  | 59.0  |
| 재취업 | 임금근로  | 63.4      | 51.4 | 46.6 | 84.9    | 113.4 | 130.5 |
|     | 비임금근로 | 39.1      | 36.1 | 31.0 | 29.7    | 45.3  | 61.7  |
| 이직  | 임금근로  | 62.0      | 61.2 | 51.2 | 108.0   | 140.2 | 152.4 |
|     | 비임금근로 | 39.3      | 28.0 | 31.4 | 44.8    | 40.5  | 55.8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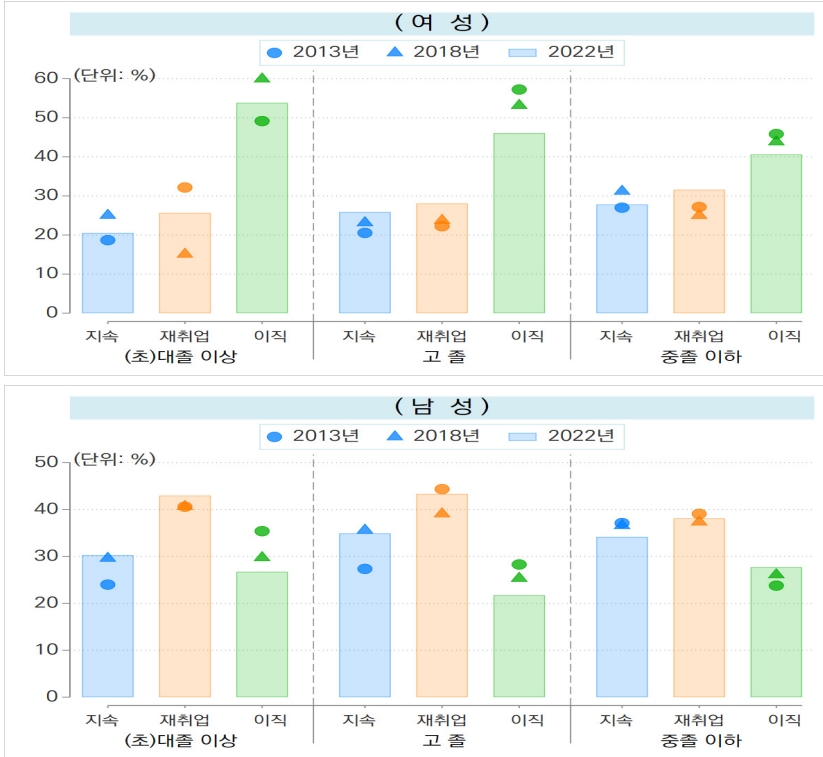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각 연도).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자 부가조사(5월). 원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그림 3-8]은 학력을 기준으로 경제활동 유형별 구성 비중을 보여준다. 여성의 경우, 학력과 무관하게 ‘이직’ 유형이, 남성은 ‘재취업’ 유형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는 성별 인구 중에서 해당 유형의 인구 비중이 다른 유형과 비교할 때 절대적으로 크기 때문이다. 물론 이 점을 고려하더라도 (초)대졸 이상 여성 중에서 ‘이직’ 유형의 비중이 53.8%로 가장 높고, 학력이 낮은 경우 그 비중이 줄어든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여성의 경우, 학력이 낮을수록 60~64세에 노동시장에 남아 경제활동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다만 여성인구의 고학력화와 경제활동이 계속 증가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이러한 현상이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예측하는 것은 쉽지 않다.

남성의 경우, 전반적으로 학력에 따른 경제활동 유형 구성이 유사한 모습을 나타낸다. 다만, (초)대졸 이상과 중졸 이하의 ‘이직’ 유형 비중이 각각 26.7%, 27.7%로 유사하고, 고졸(21.7%)에 비해 다소 높다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 남성의 경우, 60~64세에 노동시장을 떠날 가능성은 학력이 상대적으로 높거나, 아니면 낮을 경우 더 크다는 것을 시사한다. 전자는 노후소득이 충분할 가능성이 높아 정책적 관심은 크지 않을 수 있으나, 후자는 그렇지 않아 문제 집단이 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그러나 남성의 경우 동 연령대에 노동시장에 남아 있는 인구 규모가 절대적으로 많다는 점에서 그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다.

정리하면, 가임상한연령 연장 시 생애 근로 과정이 불안정한 여성의 경우에는 가임 이력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을 기대할 수 있다. 한편 주요 정책 대상이 60~64세에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이들을 고려하면 수혜 대상은 여성보다는 남성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3-8] 학력별 경황 유형 구성



자료: 통계청. (각 연도).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자 부가조사(5월). 원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 3. 60~64세 경제활동 유형별 현재 일자리 특성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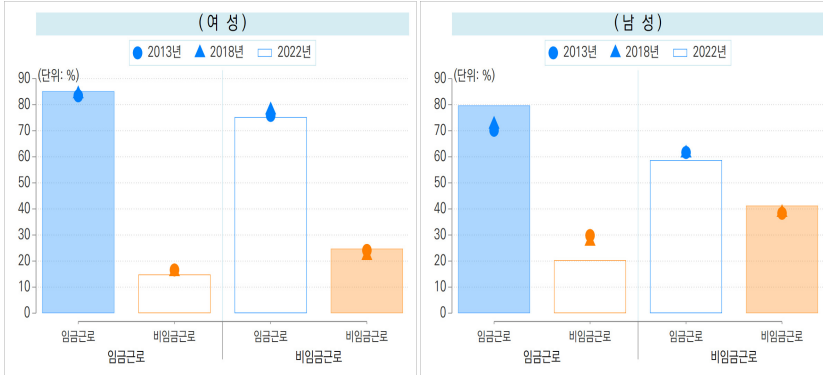
본 소절에서는 크게 두 가지 사항을 검토한다. 먼저, ‘재취업’ 유형에 속한 개인들의 ‘조사 당시 일자리’와 ‘생애 주된 일자리’의 특성을 비교한다. 다만 동 자료에서 제공하는 생애 주된 일자리 정보는 근로형태, 직종, 산업에 한정되므로 매우 제한적이다. 이어서 ‘지속’ 유형과 ‘재취업’ 유형에 속한 60~64세 고령자의 조사 당시 일자리를 비교함으로써 가입상한연령 연장 시 예상되는 효과를 간접적으로 가늠해 보고자 한다.

‘지속’ 유형에 속한 개인들의 조사 당시 일자리는 ‘생애 주된 일자리’라는 점에서 일자리의 안정성이 비교적 높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64세로 가업상한연령을 연장하게 되면 이들의 가입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재취업’ 유형에 속한 개인들의 조사 당시 일자리는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이직한 이후의 일자리라는 점에서 일자리의 안정성과 급여 수준은 ‘지속’ 유형에 비해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두 유형 간 조사 당시 일자리를 비교하는 것은 생애 주된 일자리를 이직하는 경우 어떤 일자리로 재취업 혹은 이행하는지, 나아가 가업상한연령 연장 시 가입 여건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한다.

#### 가. ‘재취업’ 유형

‘재취업’ 유형에 속한 개인들의 생애 주된 일자리와 조사 당시 일자리 이행의 특징을 근로형태, 직종 및 산업 측면에서 살펴본다. 다음의 [그림 3-9]는 근로형태의 변화를 성별, 경제활동 유형별로 비교한 것이다. 근로형태의 경우, 남녀 모두 생애 주된 일자리가 임금근로일 때 재취업하는 일자리 역시 임금근로일 가능성이 80% 수준으로 매우 높고, 남성의 경우 그 가능성은 2013년 이후 증가하는 추이를 나타낸다. 이와 달리 생애 주된 일자리가 비임금근로인 경우 재취업 일자리는 비임금근로를 유지하기 보다는 임금근로로 전환할 확률이 높다. 특히 여성에게서 이러한 가능성은 약 70%를 초과할 정도로 상당히 높게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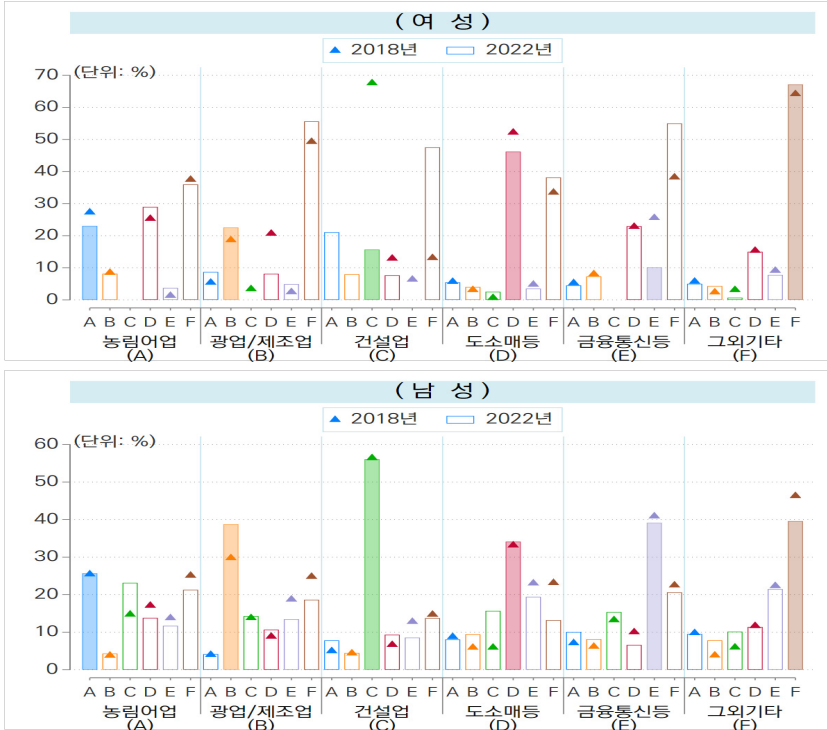
[그림 3-9] 생애 주된 일자리와 조사 당시 일자리의 근로형태 변화: '재취업' 유형



주: 1) 색 음영으로 채워진 막대그래프는 각 범주의 유지확률을 의미함.  
 2) x-축 첫 줄 라벨은 조사 당시 일자리, 둘째 줄 라벨은 생애 주된 일자리를 의미함.  
 자료: 통계청. (각 연도).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자 부가조사(5월). 원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다음의 [그림 3-10]은 생애 주된 일자리의 산업 변화를 보여준다. 여기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여성의 경우, 이전의 생애 주된 일자리에 관계없이 '재취업'하는 일자리 대부분이 '그 외 기타(서비스)', 즉 서비스 산업으로 전환되거나 유지할 확률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도소매/음식숙박업을 제외한 모든 산업에서 '그 외 기타(서비스)' 산업으로 이행할 확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도소매/음식숙박업인 경우에 동종 산업을 유지할 확률이 45% 수준으로 가장 높지만 '그 외 기타(서비스)'로 이행할 확률 역시 40%에 육박할 정도로 높은 것은 물론, 최근으로 오면서 증가하는 추이를 나타낸다. 다음으로 이행 가능성이 높은 산업은 '도소매/음식숙박업'으로 나타난다. 생애 주된 일자리가 '농림어업', '금융통신 등', '그 외 기타'인 경우, '도소매/음식숙박업'으로 이행할 가능성이 높다. 여성의 경우, 생애 주된 일자리와 동일한 산업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은 산업은 '그 외 기타'와 '도소매'인 반면, '금융통신 등'은 그러한 확률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림 3-10] 생애 주된 일자리와 조사 당시 일자리의 산업 변화: '재취업' 유형



주: 1) 색 음영으로 채워진 막대그래프는 각 범주의 유지확률을 의미함.

2) x-축 첫 줄 라벨은 조사 당시 일자리, 둘째 줄 라벨은 생애 주된 일자리를 의미함.

3) A=농림어업, B=광업·제조업, C=건설업, D=도소매·음식숙박업, E=금융·통신·전기·운수업, F=그 외 기타(사업·개인·공공서비스 등)

자료: 통계청. (각 연도).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자 부가조사(5월). 원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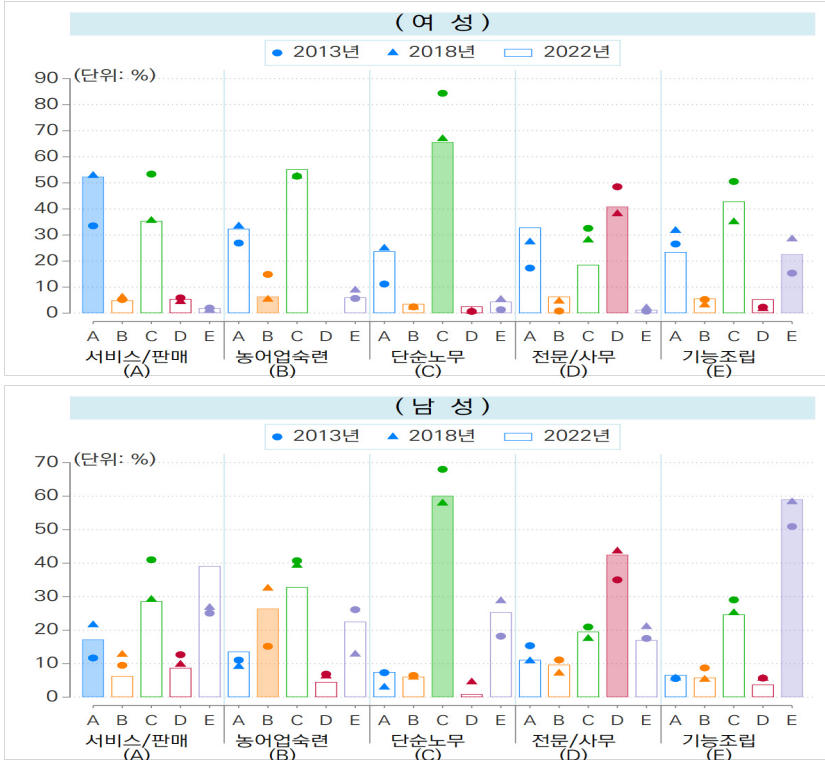
반면 남성의 경우, 생애 주된 일자리가 속한 산업에 '재취업'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점이 여성과 대비되는 결과이다. 특히 생애 주된 일자리가 '건설업'이면 재취업 일자리도 여기에 속할 확률이 57%로 가장 높고, '광업/제조업', '금융통신 등', '그 외 기타(서비스)'인 경우 그 확률은 40%로 유사한 수준이다. 다시 말해, 남성은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다른 사업으로 재취업할 가능성이 낮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생애 주된 일자리를 이직한

이후 ‘건설업’으로 이행할 확률이 다른 경우보다 더 높다는 점은 특이한 지점이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생애 주된 일자리와는 다른 산업으로 이행하는 경우, 특정 산업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다음의 [그림 3-11]은 생애 주된 일자리와 조사 당시 일자리의 직종 변화를 보여준다. 남녀 모두 생애 주된 일자리가 ‘단순노무’직인 경우에 재취업 일자리 역시 ‘단순노무’직일 확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남녀 모두 생애 주된 일자리 직종을 유지할 확률이 높은 직종으로 ‘전문/사무’직도 높게 나타난다. 즉 숙련도가 상대적으로 높거나 낮은 직종에서 일한 경우, 재취업 일자리도 생애 주된 일자리와 유사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남성은 ‘기능/조립’직, 여성은 ‘서비스/판매’직의 유지확률이 남녀 각각에서 두 번째로 높은 것 또한 유사한 맥락에서 해석될 수 있다.

여성의 경우, 생애 주된 일자리와 다른 직종으로 이행하는 경우, ‘단순노무’직과 ‘서비스/판매’직으로 이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중요한 부분이다. 이는 여성의 ‘재취업’ 일자리가 생애 주된 일자리에 비해 고용의 질이 낮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직’ 유형에 속한 여성인구 비중이 매우 높고, 이들 중 상당수는 학력이 높으면서 생애 주된 일자리 또한 양질의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쉽게 단정하기는 어렵다. 남성의 경우, 생애 주된 일자리와 다른 직종으로 이행하는 경우 ‘단순노무’직과 ‘기능조립’직으로 이행할 확률이 높게 나타난다. 예를 들어, ‘단순노무’직으로 이행할 확률은 대체로 20~30%로 나타나고, ‘기능조립’직은 직종별로 편차가 약간 존재하나 생애 주된 일자리가 ‘서비스/판매’직인 경우 해당 직종으로의 이행이 최근 증가하여 2022년에는 40% 수준에 이른다. 그 외 직종의 이행확률은 20% 내외에 그친다.

[그림 3-11] 생애 주된 일자리와 조사 당시 일자리의 산업 변화: '재취업' 유형



주: 1) 색 음영으로 채워진 막대그래프는 각 범주의 유지확률을 의미함.

2) x-축 첫 줄 라벨은 조사 당시 일자리, 둘째 줄 라벨은 생애 주된 일자리를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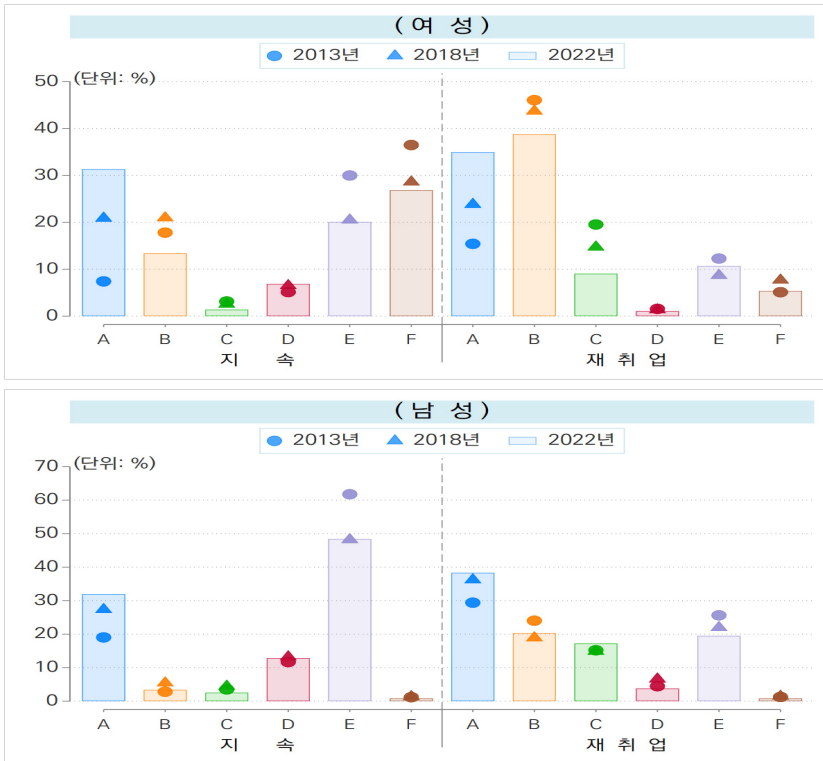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각 연도).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자 부가조사(5월). 원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 나. '지속'과 '재취업' 유형의 비교

다음의 [그림 3-12]는 '지속', '재취업' 유형 간 종사상지위 구성을 보여 준다. 여기서 가장 주목할 만한 특징은 '재취업' 유형에 속한 개인들의 일자리에서 상용근로 비중이 남녀 모두 상당히 높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남성의 경우 해당 비중은 38.3%로 가장 높고, 여성은 34.9%로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일반적으로 상용근로는 다른 종사상지위에 비하여 일자리

의 안정성이 높고, 연금 가입 가능성 역시 높다. 이러한 맥락에서 2013년 이후 ‘재취업’ 유형 내 상용근로 비중이 남녀 모두 증가하는 한편, 여성의 증가 속도가 더 빠르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림 3-12] 경찰 유형별 현재 일자리의 종사상지위 구성



주: A=상용근로자, B=임시근로자, C=일용근로자, D=고용주, E=자영자, F=무급가족종사자  
 자료: 통계청. (각 연도).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자 부가조사(5월). 원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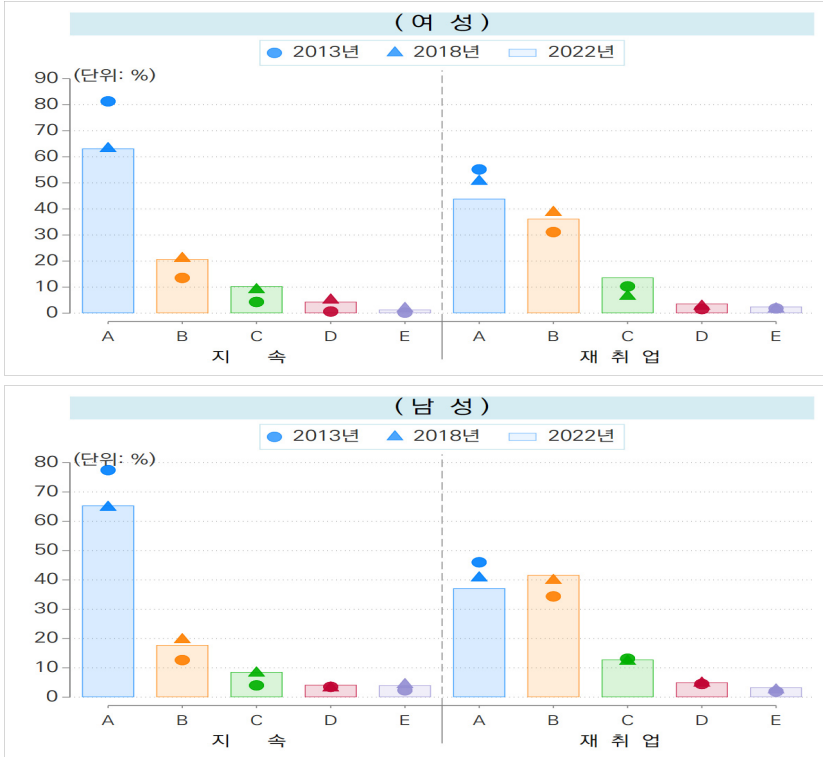
한편 ‘지속’ 유형과 비교 시 ‘재취업’ 유형의 특징은 임시·일용근로 비중은 더 높고, 비임금근로, 특히 자영자 비중이 낮다는 점이다. 지역가입자 가운데 납부예외 가능성이 높은 자영자 비중이 낮은 점은 일견 긍정적

이지만, 일자리 안정성이 낮은 임시·일용근로 비중이 높은 것은 유의할 필요가 있다. 다만, 2013년 이후 ‘이직’ 유형 내 비임금근로 비중은 별다른 변화가 없지만 임시·일용근로 비중이 정체 혹은 감소하며, 특히 여성의 경우 남성보다 그 속도가 빠르다는 점이 다소 긍정적이라 볼 수 있다.

다음의 [그림 3-13]은 ‘지속’ 유형과 ‘재취업’ 유형에 속한 개인들이 일하는 사업장 규모를 보여준다. 전반적으로 ‘지속’ 유형과 비교할 때 ‘재취업’ 유형에 속한 개인들이 일하는 사업장 규모가 오히려 더 크다고 평가할 수 있다. ‘지속’ 유형의 경우 ‘5인 미만’ 사업장 비중이 남녀 각각 63.2%, 65.4%로 매우 높지만, ‘재취업’ 유형에서 동 비중은 여성은 43.9%, 남성은 37.2%로 크게 낮아 5인 이상 사업장 비중이 전반적으로 높은 편이다. 다시 말해, 이 같은 결과는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이직한 이후 재취업 일자리가 더 열악하다고 쉽게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연금 가입의 가능성이 낮아지는 것이 일반적임을 감안하면,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이직 후 재취업하는 일자리가 연금 가입에 있어서 더 열악하다고 평가하기는 쉽지 않다.

한편, 앞의 [그림 3-12]는 자영업의 축소와 그에 따른 임금근로의 증가라는 전반적인 노동시장 구조 변화와 무관하지 않다는 점에서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노동시장 구조의 변화에는 고용형태의 다변화 속에서 전통적 정의에 따른 상용근로의 질적 하락 현상 역시 수반되고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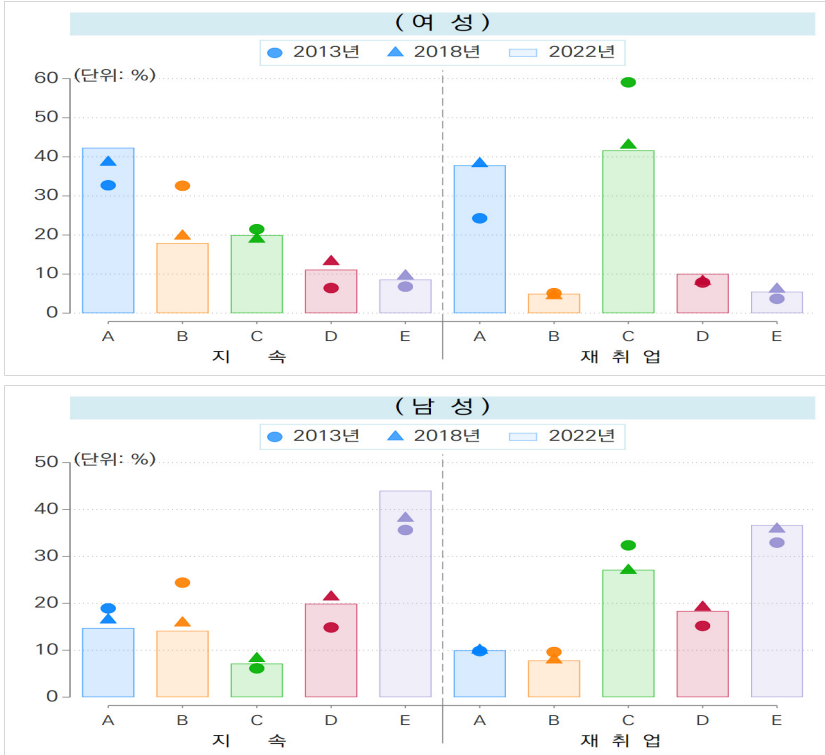
[그림 3-13] 경찰 유형별 현재 일자리 사업장 규모 비교: '지속'과 '재취업'



주: A=5인 미만, B=5~29인, C=30~99인, D=100~299인, E=300인 이상  
 자료: 통계청. (각 연도).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자 부가조사(5월). 원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이러한 맥락에서 '재취업' 일자리의 직종 중 '단순노무'직 비중이 남녀 모두 상당히 높다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그림 3-14] 참조). 예를 들어, '재취업' 여성 중 '단순노무'직 비중은 41.6%, 남성은 27.1%에 이르는데, 그 비중을 '지속' 유형과 비교할 때 여성은 약 2배, 남성은 약 4배나 더 큰 수치이기 때문이다. 다른 직종의 경우에 '지속' 유형과 '재취업' 유형의 차이가 크지 않다는 점은 생애 주된 일자리의 유지 여부에 따라 가입상한 연령 연장의 영향이 상이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크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림 3-14] 경찰 유형별 현재 일자리 직종 비교: '지속'과 '재취업'



주: 1) A=서비스/판매, B=농림어업숙련종사자, C=단순노무자, D=전문가/관리자/사무, E=기능 및 조립종사자

자료: 통계청. (각 연도).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자 부가조사(5월). 원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다음의 [그림 3-15]는 '지속'과 '재취업' 유형에 속한 개인들의 조사 당시 일자리의 산업별 비중을 보여준다. '재취업' 여성의 비중이 가장 큰 산업은 '그 외 기타'로 약 50%에 이르고, '도소매·음식숙박업'의 비중은 약 23%로 두 번째로 높다. 두 산업의 비중이 다른 산업에 비해 크다는 점은 두 유형 간에 유사한 특징이 있어서라고 볼 수 있다. 한편 '재취업' 유형의 경우 '그 외 기타' 비중이 상당히 높게 나타난다. 이는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여성의 경우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이직한 이후 '그 외 기타', 즉

서비스 산업으로 재취업할 확률이 매우 높아서 나타난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남성의 경우에는 ‘지속’ 유형에 비해 ‘재취업’ 유형의 경우 ‘그 외 기타’, 즉 서비스업과 건설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고 금융·통신·전기·운수업과 농림어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지만, 두 유형 간 산업별 비중은 대체로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여성과 달리, 남성의 경우 재취업 일자리가 생애 주된 일자리와 같은 산업에서 이루어질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그림 3-15] 경찰 유형별 현재 일자리 산업 비교: ‘지속’과 ‘재취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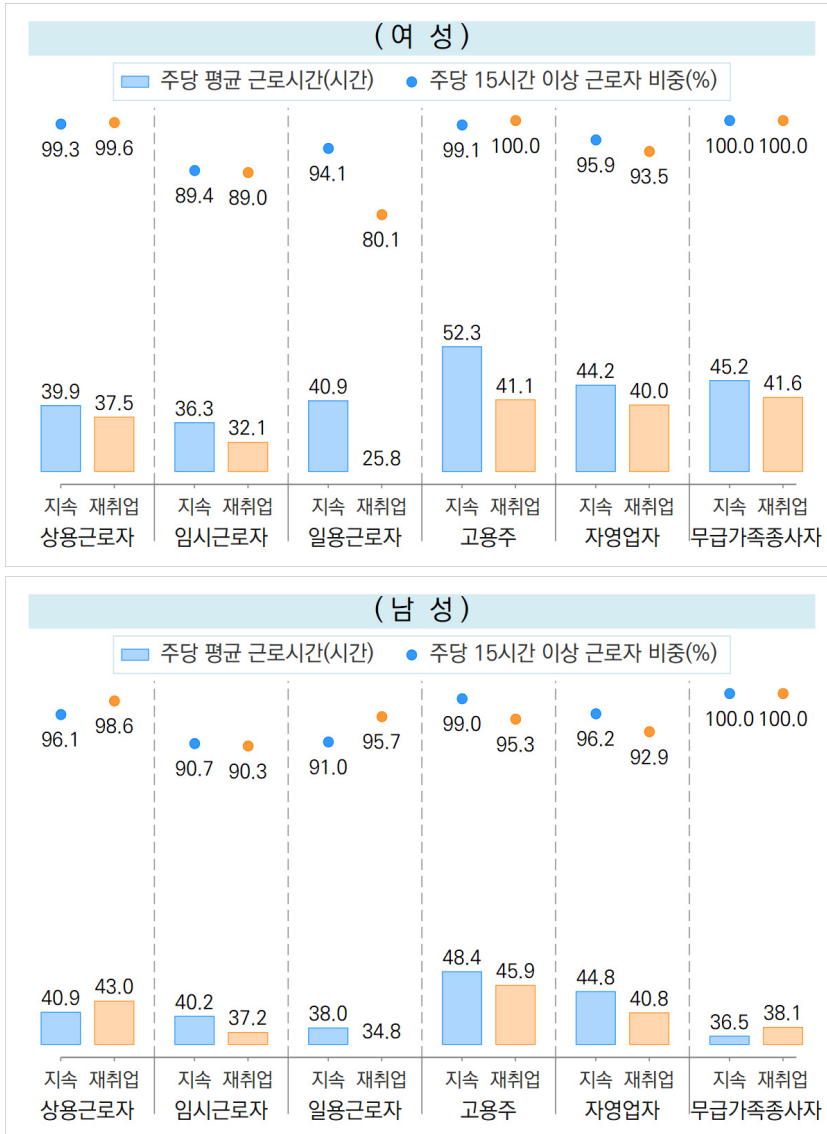


주: 1) A=농림어업, B=광업·제조업, C=건설업, D=도소매·음식숙박업, E=금융·통신·전기·운수업, F=그 외 기타(사업·개인·공공서비스 등)  
 자료: 통계청, (각 연도).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자 부가조사(5월). 원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다음의 [그림 3-16], [그림 3-17]은 종사상지위와 '직종별 주당 15시간 이상 근로자 비중'과 '주당 평균 근로시간'에 대해 '지속'과 '재취업' 유형을 비교한 것이다. 전반적으로, 종사상지위 혹은 직종에 관계없이 '지속' 유형에 비해 '재취업' 유형에 속하는 개인의 경우 대부분 근로시간이 짧은 편임을 알 수 있다. 다만, 일용근로 여성의 경우, 두 유형 간 주당 평균 근로시간 차이가 약 15시간 - '지속' 40.9시간, '재취업' 25.8시간 - 정도로 크게 나타나고, 이외의 경우는 차이가 대부분 주당 5시간 미만에 지나지 않는다.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국민연금 가입은 월 60시간 미만(주당 평균 15시간) 단시간 근로자는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 비중을 보면, 일용근로 여성의 경우 그 비중이 80.1%로 가장 낮고, 이외의 경우는 모두 90% 이상으로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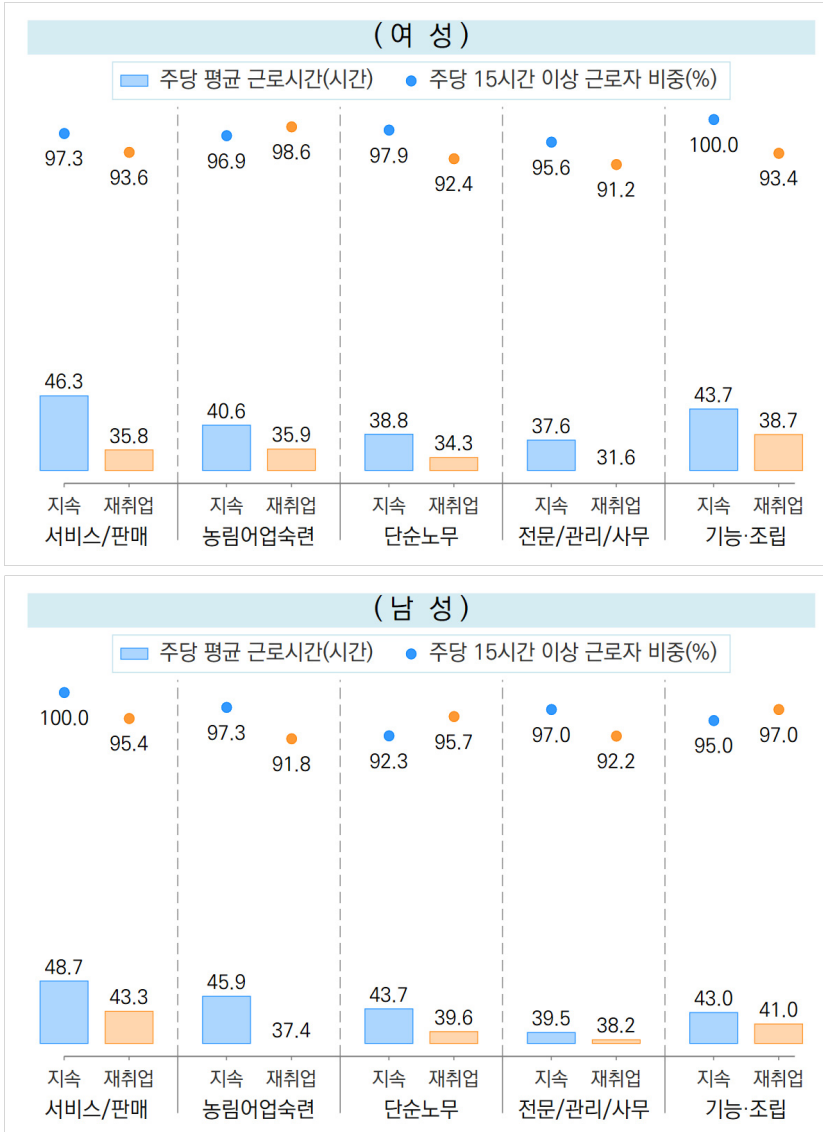
즉 근로시간 측면에서 볼 때 국민연금의 가입상한연령을 연장하더라도 상당수의 60~64세 근로자는 의무가입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생애 주된 일자리를 이직한 이후 '재취업'한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지속' 유형에 속한 개인들에 비해서 유의하게 낮은 수준이라고 평가하기도 어렵다는 점 역시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림 3-16] 종사상지위별 총취업시간



자료: 통계청. (각 연도).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자 부가조사(5월). 원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그림 3-17] 직종별 총취업시간



자료: 통계청. (각 연도).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자 부가조사(5월). 원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 제4절 생애 연금가입 이력이 60~64세 고령자의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

본 절에서는 만 59세까지 누적된 생애 근로 이력과 국민연금 가입 이력을 중심으로 60~64세 고령자의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노동패널」 24차 직업력 자료(한국노동연구원, 2022)를 활용하여 조사 대상 개인들의 만 59세까지의 생애 근로개월수, 국민연금 가입개월수 등 관련 정보를 구축하였다.

### 1. 분석 모형 및 활용 변수

본 연구에서는 생애 근로 및 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취업확률과 월평균 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다음의 모형에 따라 분석한다(식 1 참조).

$$\begin{aligned}
 E_i = & \beta_1 \cdot lpp_i + \beta_2 \cdot lwrk_i + \beta_3 \cdot pbn_i + \beta_4 \cdot pwn_i & (\text{식 1}) \\
 & + \beta_5 \cdot sex_i + \beta_6 \cdot sex_i \cdot lpp_i + \beta_7 \cdot edu_i + \beta_8 \cdot edu_i \cdot lpp_i \\
 & + \gamma \cdot X_i + \omega \cdot H_i + \alpha \cdot Y_t + \epsilon_i
 \end{aligned}$$

여기서  $i$ 는 2016~2020년 동안 60~64세 연령에 속한 개인을 의미한다. 즉, 5개년 자료를 풀링(pooling)하여 60~64세 연령대에 속한 고령자들의 연간 단위의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해 분석한다. 변수들의 구체적인 정의와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E_i$ 는 종속변수로 취업확률 분석에서는 연간 단위로 최소 1개월 이상 취업했으면 '1', 1년 동안 취업 경험이 없으면 '0'의 값을 연도별(2016~2020년)로 부여한다. 이때 분석 대상 인원의 64.1%가 취업 경험이

있고,<sup>11)</sup> 이들 중 77.6%는 12개월 내내 일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sup>12)</sup> 한편, 월평균 소득에 대한 분석은 취업 인원만을 대상으로 하는데, 취업 일자리의 종사상지위가 무급가족종사자인 경우는 정의상 취업자이지만 소득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분석에서 제외한다. 이때 종속변수는 취업 일자리의 월별 근로·사업소득을 ‘월평균 임금 대비 비율(%)’로 산출, 즉 ‘평균 임금 증가율’로 현가화한다. 다음의 <표 3-12>에서 평균임금 대비 소득수준을 보면 일부 상위 계층을 제외한 대부분의 임금수준은 평균 임금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에서 60~64세 고령자 일자리의 질은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일 것으로 추정된다.

<표 3-12> 종속변수에 대한 기초통계 요약

| 구분                    | 변수값이 0 이상인 비중(%) | 변수값 > 0 |      |      |      |      |      |       |
|-----------------------|------------------|---------|------|------|------|------|------|-------|
|                       |                  | 평균      | 표준편차 | 백분위수 |      |      |      |       |
|                       |                  |         |      | p1   | p25  | p50  | p75  | p99   |
| 연간 근로개월수 (60~64세)(개월) | 64.1             | 10.8    | 2.6  | 1    | 12   | 12   | 12   | 12    |
| 월평균 소득지수 (평균임금 대비, %) | -                | 59.6    | 56.4 | 6.6  | 32.3 | 47.2 | 69.6 | 271.8 |

주: 1) 평균임금은 10인 이상 사업장 임금근로자의 임금(「KLI 노동통계」, 각 연도)

2) 한국노동패널의 개인 종단면 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임.

자료: 저자 작성.

- 11) 참고로, 본 연구에서 구축한 자료를 통해 산출한 60~64세 인구의 연간 고용률(개인 종단면 가중치 적용)은 통계청(각 연도)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른 고용률에 비해 약 4%p 높게 추정된다.

| 구분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
| 경제활동인구조사(통계청)(%)    | 59.7 | 60.6 | 59.4 | 59.8 | 60.4 |
| 본 연구의 분석자료(노동패널)(%) | 62.0 | 64.0 | 64.3 | 64.5 | 65.6 |

- 12) 분석 대상 중 취업 경향이 있는 인원의 근로개월수별 분포는 다음과 같다.

(단위: %)

| 1개월  | 2개월  | 3개월  | 4개월 | 5개월  | 6개월  | 7개월  | 8개월  | 9개월  | 10개월 | 11개월 | 12개월 |
|------|------|------|-----|------|------|------|------|------|------|------|------|
| 1.44 | 1.29 | 1.12 | 1.6 | 1.37 | 2.07 | 2.09 | 2.87 | 2.93 | 2.68 | 2.95 | 77.6 |

다음으로, 본 분석에서 활용하는 독립변수들에 대한 정의 및 처리 내용을 설명한다. 본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독립변수인  $lpp_i$ 와  $lwrk_i$ 는 개인  $i$ 의 18~59세 동안의 국민연금 가입개월수( $lpp_i$ )와 근로개월수( $lwrk_i$ )를 의미한다. 이 두 변수는 본 연구에서 구축한 월별 일자리 패널자료에서 추출한 변수로 이하 분석에서는 자연로그로 선형 변환하여 투입한다. 이때 성별(남성=1, 여성=0)과 교육변수(중졸 이하, 고졸, (초)대졸 이상)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개월수 변수( $lpp_i$ )가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상호작용항을 추가·투입한다(회귀계수  $\beta_6$ 와  $\beta_8$ ).

$pbn_i$ 와  $pwn_i$ 는 개인  $i$ 의 국민연금 수급 여부와 수급액 변수로 노동패널의 ‘개인자료’에서 제공하는 사회보험 수급 정보 중 국민연금에 대한 내용을 추출·투입한다. 각 연령별로 국민연금 수급 상태이면 1, 미수급이면 0을 부여하고, 월 연금수급액은 10인 이상 사업장 임금근로자 평균액 대비 비율(%)로 정의·설정한다. 다음으로  $X_i$ 와  $H_i$ 는 개인  $i$ 의 인적·가구 특성 벡터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인적 특성으로 연령, 주관적 건강 상태, 장애 및 활동제약 유무, 가구주 여부, 배우자 유무 변수들을 포함하였다. 가구 특성으로는 자가 거주 여부, 수도권 거주 여부, 분가 자녀에게 도움을 주는 경우, 분가 자녀에게 도움을 받는 경우, 순자산 유무 및 순자산 지수, 그리고 연도별 경제상황을 통제하기 위해 연도 더미변수(2016~2020년)를 포함한다.

이때, 주관적 건강상태 변수는 5점 리커트 척도의 설문에 대해 ‘보통 이상’이라고 응답한 경우 ‘1’을 부여한다. 장애 혹은 활동제약 더미변수는 장애 및 활동제약에 대한 6개 설문 중에서 최소 하나라도 ‘있다’고 응답한 경우 1을 부여한다. 순자산은 개인이 속한 가구의 총자산(금융자산+부동산 자산)에서 총부채를 제외하여 산출하였으며, 순자산액이 0을 초과하면 ‘1’, 0 혹은 음수인 경우에는 ‘0’을 부여한 더미변수를 생성하였다. 순자산

지수는 순자산액을 10인 이상 사업장 임금근로자의 평균액으로 나눈 값을 자연로그로 선형 변환하여 분석에 포함한다.

한편, 월평균 소득에 대한 분석에서는 이상의 통제변수들 외에 취업한 일자리의 직종과 종사상지위에 대한 더미변수를 추가로 포함·분석한다. 직종은 총 5개 범주(단순노무직(기준값), 농림어업숙련직, 서비스/판매직, 기능 및 조립직, 전문·관리·사무직)로 구분하였으며, 종사상지위의 경우에도 무급종사자를 제외한 5개 범주(상용(기준값), 임시, 일용, 고용주, 자영자)로 구분한다.

마지막으로, 자연로그를 취하여 선형 변환하거나, 10인 이상 사업장 임금근로자의 연도별 평균임금 대비 비율(%)로 변환되는 변수들의 원자료상의 값이 '0' 혹은 '음수' 값인 경우에는 해당 변환에 의해 결측값이 생성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경우 '0.000001'을 값으로 부여하여 분석에 포함한다.<sup>13)</sup>

다음으로 <표 3-13>과 <표 3-14>는 본 연구에서 활용하는 주요 변수들의 기초 통계량이다. 주관적 건강상태와 관련하여 '보통 이상'이라는 응답 비율이 84.6%, 동시에 장애 및 활동제약이 있는 경우가 13.2%라는 점에서 보듯이 60~64세 고령자들의 건강상태가 상당히 좋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분가 자녀에게 도움을 받는 고령자 비율이 절반 정도 수준인 동시에, 분가 자녀에게 도움을 주는 고령자도 약 1/3에 이른다. 교육수준의 경우 '중졸 이하'의 비중이 46.8%에 이르는데, 이는 분석 대상 개인들이 1950년대 중·후반 세대이기 때문이며, 향후 동 비중은 빠르게 줄어든 것으로 예상된다.

13) 이러한 경우에 해당되는 변수들은 생애 근로개월수, 생애 연금 가입월수, 월평균 연금액 비율 및 순자산 지수이다. 이들 변수들의 경우 '0' 혹은 '음수' 값들을 제외하는 경우 자료의 손실이 상당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본 연구의 목적을 감안하면 '0'값 자체도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생애 근로 경험은 있지만 생애 국민연금 가입 경험은 없는 자의 경제활동 역시 의미가 있을 수 있다.

〈표 3-13〉 주요 변수들의 기초통계: 더미변수

(단위: %)

| 변수                | 비중   | 변수                | 비중   | 변수       |          | 비중   |
|-------------------|------|-------------------|------|----------|----------|------|
| 건강상태<br>(보통 이상=1) | 84.6 | 배우자<br>(유=1)      | 81.4 | 분가<br>자녀 | 도움받음(=1) | 52.6 |
|                   |      |                   |      |          | 도움 줌(=1) | 29.8 |
| 장애 활동제약<br>(있음=1) | 13.2 | 주거점유 형태<br>(자가=1) | 73.8 | 교육<br>수준 | 중졸 이하    | 46.8 |
| 가구주 여부<br>(가구주=1) | 58.2 | 수도권 거주<br>(거주=1)  | 48.2 |          | 고졸       | 36.1 |
| 성별<br>(남성=1)      | 47.0 | 국민연금 수급<br>(수급=1) | 21.1 |          | (초)대졸 이상 | 17.1 |

주: 한국노동패널의 개인 종단면 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임. (관측치: 8,078건)  
자료: 저자 작성.

다음으로 〈표 3-14〉는 연속형 변수들의 분포상 특징을 살펴보기 위한 주요 백분위수들이다. 여기서 보면, 분석 대상 중 생애 근로 경험이 있는 인원의 비중은 90.0%이며,<sup>14)</sup> 이들의 평균적인 근로기간은 약 23년(275.5개월)이며, 중위값은 약 25.7년(308개월)이다.

반면 생애 근로기간 동안 국민연금 가입 경험이 있는 인원의 비중은 38.5%로, 생애 근로 경험이 있는 인원 중 절반 이상이 국민연금에 가입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sup>15)</sup> 국민연금 가입 경험이 있는 인원의 평균적인 가입 개월은 약 103개월에 지나지 않으며, 그중에서 상위 35%만이 최소 가입기간(120개월)보다 긴 이력을 가진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연금 수급자가 적은 것은 물론, 수급 시 연금액도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14)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본 연구는 2016~2020년 기간 동안 60~64세 개인들에 대한 풀링(pooling) 자료를 사용한다. 따라서 〈표 3-13〉와 〈표 3-14〉의 비중 등은 엄격하게 말하면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전체 인구에서 해당 범주에 속한 '인구' 비중이라기 보다는 분석 대상에 포함된 '연인원'을 기준으로 산출한 수치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15)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은 1952년 출생자(2016년, 64세)부터 1960년 출생자(2020년, 60세)로 구성된다. 따라서 국민연금에 가입한 경험이 있는 인구는 향후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표 3-13〉에서 알 수 있듯 분석 대상 인원 중 수급 인원 비중은 약 21.1%이며,<sup>16)</sup> 수급자 중 상위 1% 연금액 수준도 연도별 평균임금 대비 43.1%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

다음으로 분석 대상 인원 중 순자산을 보유(순자산액 > 0)한 인원 비중은 약 64.9%이며, 이들 중 1억 원 이상의 순자산을 보유한 인원의 비중은 약 25%에 지나지 않는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순자산을 연도별 평균 임금으로 나눈 값에 대해 자연로그를 취한 값으로 선형 변환하여 분석에 포함한다.

〈표 3-14〉 주요 변수들의 기초통계: 연속형 변수

| 구분                           | (변수값>0)<br>비중(%) | 변수값 > 0 |       |      |     |      |      |       |
|------------------------------|------------------|---------|-------|------|-----|------|------|-------|
|                              |                  | 평균      | 표준편차  | 백분위수 |     |      |      |       |
|                              |                  |         |       | p1   | p25 | p50  | p75  | p99   |
| 생애 근로개월수<br>(18~59세)(개월)     | 90.0             | 275.5   | 132.9 | 6    | 173 | 308  | 393  | 460   |
| 생애 국민연금 가입월수<br>(18~59세)(개월) | 38.5             | 102.9   | 95.1  | 2    | 24  | 74   | 158  | 416   |
| 국민연금액 비율<br>(평균임금 대비, %)     | 21.1             | 14.2    | 9.8   | 1.1  | 7.7 | 11.0 | 18.2 | 43.1  |
| 순자산<br>(백만 원)                | 64.9             | 119     | 283   | 1    | 15  | 40   | 100  | 1,503 |
| 순자산<br>(평균임금 대비, 배)          | 64.9             | 31.6    | 75.0  | 0.3  | 4.1 | 10.2 | 25.6 | 401.8 |

주: 1) 한국노동패널의 개인 종단면 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임.

2) (a)는 0.0001임.

3) 평균임금은 10인 이상 사업장 임금근로자의 임금(「KLI 노동통계」, 각 연도)임.

자료: 저자 작성.

16) 본 연구에서 구축한 월별 일자리 패널자료상 18~59세의 가입이력만으로 국민연금 수급 인원을 추정해 보면 약 14%(=가입경험인원 비중(=0.4)×가입경험인원 중 120개월 이상자(=0.35))인데, '개인 자료'에서 추출·가공한 국민연금 수급 비중은 이보다 높은 약 21.1%로 나타난다. 현실에서는 최소 가입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60세가 넘어서도 임의계속가입 및 추납 등을 통해 수급 자격을 획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수 있다.

## 2. 분석 결과

### 가. 경제활동 참여 요인

취업확률 요인에 대한 분석은 크게 세 개의 모형으로 구성, 수행한다. 먼저, 본 연구의 핵심인 생애 근로와 연금가입 이력, 연금 수급 관련 변수들만 포함한 단순모형을 설정하여 분석한다. 다음으로, 성별과 교육수준 변수를 투입함과 동시에, 성별에 교육수준에 따른 생애 국민연금 가입 월수와의 상호작용항을 포함한 모형을 [확장모형 1]로 정의, 분석한다. 이어서 고령자의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알려진 개인 및 가구 특성 변수들을 모두 포함한 [확장모형 2]로 정의, 분석한다.

다음의 <표 3-15>는 취업확률 요인에 대한 로짓분석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이때 본 연구에서 가장 주목하는 생애 근로와 연금 관련 변수들은 모형과는 무관하게 유의수준 1%하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난다.<sup>17)</sup> 생애 국민연금 가입월수와 생애 근로개월수의 경우 기타 요인들이 추가됨으로써 한계효과 추정치가 소폭 줄어드는 경향이 있지만 독립 변수 추가에 따른 것으로 충분히 이해될 수 있다. 한편 국민연금 수급 및 월평균 연금액 변수 역시 분석 모형과는 무관하게 통계적 유의성은 물론, 추정계수 수준도 상당히 유사한 편이다. 정리하면, 이들 네 변수들이 취업 확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추정 결과는 통계적으로 강건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17) 한편 네 변수들은 다른 변수들에 비해 그 상관성이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생애 근로개월수와 국민연금 가입개월수 간의 상관계수는 0.66이다. 그러나 로짓분석의 경우, 선형회귀모형과 달리 OLS 추정치가 사용되지 않으므로 공선성을 별도로 진단하지는 않는다. 다만 다음의 소득결정요인에 대한 분석에서 다중공선성을 진단한 결과, 모든 독립변수들의 VIF가 6 이하의 값으로 나타나므로 위 네 변수들의 공선성 문제는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더욱 구체적으로 <표 3-15>의 분석 결과를 해석하면([확장모형 2] 참조), 생애 근로개월수가 1% 증가하는 경우, 취업 가능성은 약 8%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생애 근로 경험에 많은 개인일수록 고령 노동시장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는 기존 연구 결과와도 유사하다. 하지만 국민연금 관련 변수들의 추정 결과 해석 시에는 상당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 그 이유는 국민연금 가입월수가 상대적으로 긴 경우, 그리고 국민연금 수급자가 비수급자에 비해 60~64세 동안 취업 가능성이 높은 것에 반해, 연금액 수준이 높을수록 취업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작다는 다소 모순적인 결과가 병존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같은 결과는 국민연금이 아직 충분히 성숙하지 않아 나타난 결과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앞의 <표 3-14>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분석 대상 인원 가운데 생애 근로 유경험 비중은 90%인 것에 반해, 연금 가입개월이 최소 한 달 이상인 인원의 비중은 그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38.5%이다. 또한 연금 가입이력이 있더라도 120개월 미만 인원이 65%에 달한다는 점에서 수급권 획득 자체가 어렵거나, 수급 하더라도 급여수준은 평균임금보다 크게 낮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국민연금의 제도 특성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하나는 현행 제도에서 연금 수급자가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 감액되는 소득수준이 상당히 높다는 점에서 연금 수급 여부가 취업확률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점이다. 다른 하나는 1988년 제도 도입 당시 의무가입 대상은 10인 이상 사업장근로자로 한정되었으며, 이후 적용 대상 범위가 점차 확대되어 당연적용 대상에 1인 사업장까지 포함된 것은 2006년이다.<sup>18)</sup> 이때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은 1952~1960년에 출생한 자들로서 제도 시행 당시 이들의 연령은 20대 후반에서 30대 중후반이었다. 다시

18)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 도입과 발전. ([https://www.nps.or.kr/jsppage/info/easy/easy\\_01\\_02.jsp](https://www.nps.or.kr/jsppage/info/easy/easy_01_02.jsp)에서 2024. 1. 20. 인출.)

말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일자리에서 일했던 자들은 연금 가입 기회가 나뉠 수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이들은 수급권을 획득하기 어렵거나, 획득하더라도 급여수준이 불충분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상의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최소 가입기간을 충족한 결과, ‘연금 수급자’라는 지위는 생애 근로 여건이 상대적으로 양호했던 것 그 이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가능성이 높다. 즉, 연금 수급권을 확보했다고 하여 그 자체만으로 경제활동을 하지 않아도 될 만큼 급여수준이 충분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생애 근로 여건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경우 60세를 넘어서도 취업 기회가 상대적으로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연금 수급 여부와 연금 가입월수 변수가 취업확률에 미치는 정(+) 방향의 분석 결과를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연금 수급자라고 하더라도 급여수준이 높지 않고, 제도적으로도 소득활동을 전혀 제약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자신에게 주어진 취업 기회를 충분히 활용하려는 유인은 더욱 강화될 것이다.

한편 그 비중은 매우 작을 수 있지만 분석 대상 중에는 연금가입기간과 소득수준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결과, 연금수급액이 상당한 수준이 개인들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연금가입기간이 30년을 초과하는 자의 비중이 연금 가입 경험이 있는 인원 중 2~3%에 지나지 않았지만 이것이 현실적으로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제도 시행 이후 확대 과정을 고려할 때 해당 개인들은 양질의 일자리를 계속 보유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 결과, 이들이 수급하는 연금액 수준은 꽤 높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연금액 수준이 일정 수준의 노후생활을 하기에 적정하다면, 이는 경제활동에 대한 유보임금(reservation wage) 수준을 높일 것이고, 그로 인해 근로유인을 감소시킬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월평균 연금액 수준이 취업확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표 3-15>의 결과를 이해할 수 있다. 즉

월평균 연금액 수준이 높을수록 취업확률을 낮추는 방향(-)으로 작용하지만, 평균임금 대비 연금액 수준이 1%p 증가할 때마다 취업확률은 약 0.9% 감소될 것으로 추정된다.

〈표 3-15〉 취업확률에 대한 로짓분석 결과: 한계 효과

| 구분               |          | 단순모형               | 확장모형 1             | 확장모형 2             |
|------------------|----------|--------------------|--------------------|--------------------|
| ln(생애 근로개월수)     |          | 0.1117*** (0.003)  | 0.0933*** (0.003)  | 0.0798*** (0.003)  |
| ln(생애 국민연금 가입월수) |          | 0.0218*** (0.003)  | 0.0224*** (0.003)  | 0.0145*** (0.003)  |
| d.국민연금 수급        |          | 0.0531** (0.022)   | 0.0428** (0.021)   | 0.0650*** (0.021)  |
| 월평균 연금액 비율       |          | -0.0072*** (0.001) | -0.0083*** (0.001) | -0.0089*** (0.001) |
| 성별터미(남성=1)       |          |                    | 0.1369*** (0.013)  | 0.0334* (0.020)    |
| d. 교육수준          | 중졸 이하    |                    | 0.0207* (0.012)    | 0.0500*** (0.011)  |
|                  | (초)대졸 이하 |                    | 0.0209 (0.017)     | 0.0174 (0.018)     |
| 연령               |          |                    |                    | -0.0134*** (0.004) |
| d.건강(보통 이상)      |          |                    |                    | 0.1256*** (0.019)  |
| d.장애 및 활동제한 유무   |          |                    |                    | -0.2358*** (0.021) |
| d.가구주 여부         |          |                    |                    | 0.1699*** (0.024)  |
| 가구원 수            |          |                    |                    | 0.0123** (0.006)   |
| d.배우자 유무         |          |                    |                    | 0.0284 (0.020)     |
| d.자가 여부          |          |                    |                    | 0.0141 (0.013)     |
| d.수도권 거주         |          |                    |                    | -0.0169 (0.011)    |
| d.분가 자녀에게 도움 줌   |          |                    |                    | 0.0653*** (0.012)  |
| d.분가 자녀한테 도움받음   |          |                    |                    | -0.0178 (0.012)    |
| d.순자산 유무         |          |                    |                    | 0.0247* (0.015)    |
| 로그(순자산 비율)       |          |                    |                    | -0.0131*** (0.004) |
| 연도터미             | 2017     | 0.0085 (0.020)     | 0.0099 (0.020)     | 0.0137 (0.019)     |
|                  | 2018     | 0.0799*** (0.018)  | 0.0724*** (0.017)  | 0.0657*** (0.017)  |
|                  | 2019     | 0.0643*** (0.018)  | 0.0597*** (0.018)  | 0.0470*** (0.017)  |
|                  | 2020     | 0.0605*** (0.018)  | 0.0574*** (0.018)  | 0.0458*** (0.017)  |
| N                |          | 8,078              | 8,078              | 8,078              |
| Pseudo R2        |          | 0.1943             | 0.2110             | 0.2793             |

주: 1) \*\*\* p<.01, \*\* p<.05, \* p<.1이며, 괄호(-)는 표준오차임.

2) d.(변수명)은 터미변수를 의미하며, 교육수준 터미변수의 기준값은 '고졸'임.

자료: 저자 작성.

한편 <표 3-15>에서 생애 국민연금 가입월수가 취업확률에 미치는 한계효과는 성별 혹은 교육수준에 따른 영향도 함께 고려한 것이다. <부표 3-1>를 통해 그 결과를 살펴보면, 여성에 비해 남성의 취업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지만(→ 성별 더미변수의 추정계수),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취업 확률에 미치는 영향은 여성에 비해 남성이 상대적으로 작은 것으로 추정된다(→ 성별 더미변수와 연금 가입개월수 변수의 상호작용항의 추정계수). 이는 분석 대상 코호트의 경우, 남성이 여성보다 생애 일자리가 절대적으로 양호하므로 연금가입 경험과 가입개월수 역시 절대적으로 많아서 나타난 결과로 볼 수 있다(<표 3-16> 참조). 즉 여성의 경우 내부적으로 연금가입기간이 길수록 생애 근로 여건이 양호하다고 할 수 있지만 남성과 비교할 때 여성의 연금가입기간은 상대적으로 짧을 수밖에 없고, 그 결과 최소 가입기간을 충족하는 여성은 매우 드물 것이다. 반면, 남성은 가입기간이 20~30년에 이르고 연금수급액도 상대적으로 큰 경우, 근로 유인을 감소시키는 요인이 여성에 비해 더욱 크게 작용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3-16> 성별 연금가입기간 구간 분포

(단위: %)

| 구분                | 연금가입<br>경험 없음 | 10년 미만 | 10년이상<br>~20년 미만 | 20년 이상<br>~30년 미만 | 30년 초과 | 계     |
|-------------------|---------------|--------|------------------|-------------------|--------|-------|
| 여성                | 69.9          | 24.8   | 4.6              | 0.6               | 0.04   | 100.0 |
| 남성                | 52.0          | 25.4   | 17.4             | 2.6               | 2.7    | 100.0 |
| 연금가입개월 구간 내 여성 비중 |               |        |                  |                   |        |       |
| 여성<br>비중          | 60.3          | 52.4   | 22.8             | 21.5              | 1.7    | -     |

주: 한국노동패널의 개인 종단면 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임.  
자료: 저자 작성.

다음으로,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취업확률에 미치는 영향은 교육수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된다. <부표 2-1>의 [확장모형 1], [확장모형 2]의 결과에서 보듯 교육수준과 가입기간 변수의 상호작용항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이는 <표 3-17>에서 보듯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연금가입 경험 인원의 비중이 높고, 가입기간도 상대적으로 긴 경향이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인 분포는 매우 유사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다만, 교육수준별 취업확률은 중졸 이하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더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연금가입기간이 유사하더라도 교육수준이 낮은 경우 노후소득이 불충분하거나 경제활동의 필요성이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그 결과를 이해할 수 있다.

<표 3-17> 교육수준별 연금가입기간 구간 분포

(단위: %)

| 구분           | 연금가입<br>경험 없음 | 10년 미만 | 10년 이상<br>~20년 미만 | 20년 이상<br>~30년 미만 | 30년 초과 | 계     |
|--------------|---------------|--------|-------------------|-------------------|--------|-------|
| 중졸<br>이하     | 65.19         | 25.23  | 7.15              | 1.24              | 1.19   | 100.0 |
| 고졸           | 62.04         | 23.61  | 11.94             | 1.18              | 1.23   | 100.0 |
| (초)대<br>졸 이상 | 50.19         | 27.94  | 17.27             | 3.04              | 1.57   | 100.0 |

주: 한국노동패널의 개인 종단면 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임.  
자료: 저자 작성.

그 외 통제변수들이 취업확률에 미치는 영향은 일반적으로 예상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연령이 높을수록, 건강할수록, 장애 및 활동제약이 없는 경우, 가구주인 경우,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분가 자녀에게 도움을 주는 경우, 순자산이 있는 경우 및 순자산이 적을수록, 60~64세 개인이 취업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2016년에 비해 2018~2020년의 취업확률이 4~6% 더 높은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다른 세대보다 경제활동이 활발했던 베이비 부머 세대에 속하는 인원의 비중이 점차 더 커진 것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배우자 유무, 자가 여부, 수도권 거주 여부, 자녀에게 도움받는 경우가 취업확률에 미치는 영향은 실증적으로 확인 되지 않는다.

## 나. 60~64세 취업자의 소득결정요인

다음의 <표 3-18>은 60~64세 취업한 고령자의 소득결정요인에 대한 OLS 분석 결과이다.<sup>19)</sup> 전술한 바와 같이, 동 분석에서 종속변수는 ‘월 소득(근로 및 사업소득)을 10인 이상 사업장 임금근로자의 연도별 월평균 임금으로 나눈 비율(%)’ 값을 연간 단위 평균으로 산출한 값이다. 이때 분석 대상 인원 중 원칙적으로는 취업자만을 대상으로 하지만, 정의상 소득이 없는 무급가족종사자는 분석에서 제외한다. 독립변수로는 앞의 취업확률 분석에 포함한 변수들 이외에 직종과 종사상지위에 대한 더미변수를 포함하였다.<sup>20)</sup>

소득결정요인 분석에서도 본 연구에서 주목하는 생애 근로 및 연금 관련 변수들만을 포함한 단순모형으로 정의, 수행하고, 이후 추가 통제변수들을 포함할 때 주요 변수들의 추정계수 변화를 비교, 검토한다.

먼저, 단순모형의 경우, 주요 네 변수들 가운데 국민연금 가입기간 변수를 제외한 세 변수들이 통계적으로 유의했으나, 기타 통제변수들을 추가한 결과, 생애 근로개월수 변수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추정

19) 회귀분석 결과 중 표준오차는 <부표 3-1> 참조할 것.

20) 일자리가 속한 사업에 대한 변수를 포함하여 분석한 결과, 추정계수가 대부분 유의하지 않아서 최종 분석에서는 제외하였다. 또한 사업장 규모에 대한 변수도 존재하지만 상당히 많은 관측치에서 결측이 생겨 동 변수 역시 최종 분석에서는 제외하였다.

계수가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특히 주요 소득결정요인 중 하나인 직종과 종사상지위 변수의 포함 여부에 따라 분석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이 두 변수를 포함하지 않은 단순모형의 설명력은 4%에 지나지 않지만 이들 변수만을 포함한 [확장모형 1]의 설명력은 32.3%로 크게 증가하고, 이외 통제변수를 추가한다고 하더라도 모형 설명력의 변화는 크지 않다고 평가할 수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분석 결과를 검토하면, 가장 주목할 만한 특징은 본 연구에서 포함한 변수들 중 생애 근로개월수 변수가 모형에 관계없이 60~64세 취업자 소득에 미치는 영향이 실증적으로 확인된다는 점이다. 반면에 국민연금 수급과 연금소득 수준이 취업확률에는 나름의 영향을 미친다고 하더라도 취업 일자리의 소득수준에 따른 선택에는 영향을 주지 않음을 의미한다. 이는 국민연금의 제도 특성, 즉 수급자라고 하더라도 ‘소득이 있는 업무’의 기준이 되는 소득이 상당히 높은 수준이기에 취업과 수급이 둘 다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제도 미성숙으로 인해 상당수의 수급자가 받는 연금액 수준이 취업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때문이다. 또한 연금액이 얼마인지가 경제활동 여부에 대한 의사결정에는 나름의 영향(-)을 미치지만, 일자리 질에 대한 의사결정까지는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소득수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해석은 성별과 교육수준과의 상호작용에 대한 해석과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표 3-17>의 결과는 연금가입기간이 소득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직접적인 영향과 성별 혹은 교육수준과의 상호작용에 따른 경로로 각각 구분하여 추정할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때 직접적인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지만 성별과 교육수준과의 상호작용에 따른 영향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다시 말해, 연금가입기간 증가에 따른 소득수준 증가가 여성에

비해 남성이 상대적으로 더 빠른 것을 의미한다. 교육수준에 따른 차이를 보면, 중졸 이하자의 경우 연금가입기간 증가에 따른 소득수준 증가가 고졸자에 비해 빠른 반면, 대졸자는 오히려 연금가입기간 증가에 따라 소득수준이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sup>21)</sup>

〈표 3-18〉 소득수준에 대한 OLS 분석 결과

| 구분               |           | 단순모형       | 확장모형 1     | 확장모형 2     | 확장모형 3    |
|------------------|-----------|------------|------------|------------|-----------|
| ln(생애 근로개월수)     |           | 9.340***   | 3.746***   | 1.678***   | 1.204***  |
| ln(생애 국민연금 가입월수) |           | -0.772     | 0.742*     | 0.646      | 0.37      |
| d.국민연금 수급        |           | -22.058*** | -11.252*** | -9.669**   | -6.975    |
| 월평균 연금액 비율       |           | 1.199**    | 0.611      | 0.353      | 0.08      |
| 직종               | 농림어업숙련    |            | 0.613      | -1.895     | -7.444**  |
|                  | 서비스/판매직   |            | 0.764      | 5.144***   | 2.578     |
|                  | 기능 및 조립   |            | 11.444***  | 6.682***   | 5.439***  |
|                  | 전문/관리/사무직 |            | 44.408***  | 35.517***  | 32.095*** |
| 종사<br>상지<br>위    | 임시        |            | -11.934*** | -10.062*** | -8.661*** |
|                  | 일용(기타 포함) |            | -5.577***  | -5.301***  | -3.823**  |
|                  | 고용주       |            | 82.520***  | 73.527***  | 70.013*** |
|                  | 자영자       |            | 3.533*     | 0.366      | 0.49      |
| d.성별(남성=1)       |           |            |            | 15.704***  | 6.285***  |
| d.남성*LPP         |           |            |            | 0.683      | 0.948*    |
| 교육<br>수준         | 중졸 이하     |            |            | -5.755***  | -3.802**  |
|                  | (초)대졸 이상  |            |            | 22.293***  | 20.779*** |
| d.중졸 이하*LPP      |           |            |            | 0.961*     | 0.901*    |
| d.(초)대졸 이상*LPP   |           |            |            | -4.542***  | -4.685*** |
| 연령               |           |            |            |            | -1.121*   |
| d.건강(보통 이상)      |           |            |            |            | 0.459     |
| d.장애 및 활동제한 유무   |           |            |            |            | -2.242    |
| d.가구주 여부         |           |            |            |            | 11.890*** |
| 가구원 수            |           |            |            |            | 0.955     |
| d.배우자 유무         |           |            |            |            | 6.739***  |
| d.자가 여부          |           |            |            |            | 4.535***  |
| d.수도권 거주         |           |            |            |            | 2.532     |

21) 국민연금 가입개월수 변수의 기울기는 여성은 0.37, 남성은 1.318(=0.37+0.948), 중졸 이하 1.271(=0.37+0.901), 고졸 0.37, (초)대졸 이상 -4.315(=0.37-4.685)

| 구분             |      | 단순모형      | 확장모형 1    | 확장모형 2    | 확장모형 3    |
|----------------|------|-----------|-----------|-----------|-----------|
| d.분가 자녀에게 도움 줌 |      |           |           |           | 7.805***  |
| d.분가 자녀한테 도움받음 |      |           |           |           | -3.641**  |
| d.순자산 유무       |      |           |           |           | -9.192*** |
| ln(순자산 비율)     |      |           |           |           | 5.889***  |
| 연도             | 2017 | 0.357     | 1.006     | 0.745     | 0.66      |
|                | 2018 | -1.621    | -0.989    | -2.078    | -1.906    |
|                | 2019 | 0.157     | 2.189     | 0.728     | 0.655     |
|                | 2020 | 0.977     | 3.26      | 1.343     | 1.75      |
| 상수항            |      | 10.748*** | 21.525*** | 26.385*** | 81.05**   |
| N              |      | 4,746     | 4,745     | 4,745     | 4,745     |
| Adj. R2        |      | 0.0392    | 0.3228    | 0.3569    | 0.3830    |
| F-value        |      | 33.662    | 68.282    | 58.025    | 44.535    |
| Root MSE       |      | 53.033    | 44.525    | 43.388    | 42.499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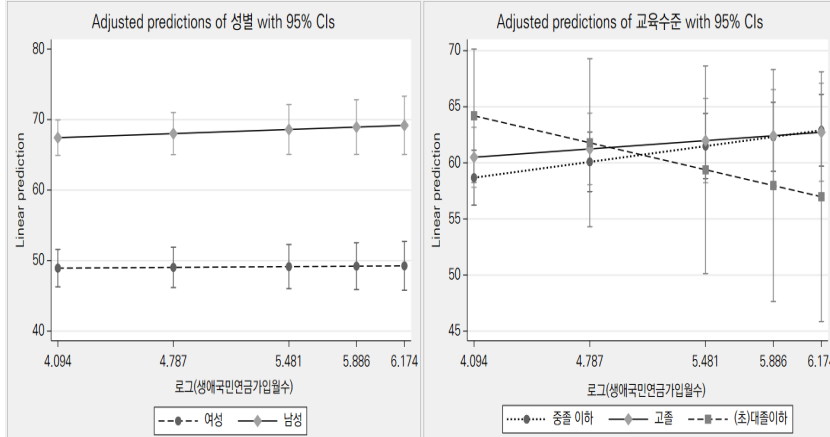
주: 1) \*\*\*  $p < .01$ , \*\*  $p < .05$ , \*  $p < .1$ 이며, 괄호(-)는 표준오차임.

2) LPP는 ln(생애 국민연금 가입월수), d.(변수명)은 더미변수를 의미하며, 교육수준 더미변수의 기준값은 '고졸'임.

자료: 저자 작성.

다음의 [그림 3-18]은 이상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연금가입기간과 성별 혹은 교육수준에 따라 소득수준 예측값을 추정한 결과이다. 성별에 따른 예측값의 차이를 보면, 절편은 남성이 여성에 비해 뚜렷하게 큰 상태에서 연금가입기간에 따른 소득수준의 변화 속도 차이(0.9%)가 크지 않지만, 여성에 비해서는 이 역시 더 빠르다는 점에서 성별 소득수준의 차이는 완만함에도 그 차이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교육수준의 경우, 절편에 대한 추정치는 학력이 높을수록 크지만 연금가입기간에 따른 소득수준의 변화 속도는 중졸 이하자가 고졸자에 비해 빠르므로 가입기간이 대략 30년인 경우 60세 이상 일자리의 소득수준은 매우 유사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한편 (초)대졸 이상의 경우에는 연금가입기간 증가에 따라 일자리의 소득수준이 낮아지는 추정 결과에 따라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면 다른 이들에 비하여 일자리의 소득수준이 높지만, 가입기간이 더 길어지면서 일자리의 소득수준이 오히려 더 낮을 것으로 예측된다.

[그림 3-18] 성별과 교육수준에 따른 연금가입기간이 소득수준에 미치는 영향: 예측값



주: 1) 기타 통제변수들은 각각의 평균값으로 가정함.  
 2) x-값은  $\ln(\text{생애 국민연금 가입개월수})$ 로, 순서대로 60개월, 120개월, 240개월, 360개월 및 480개월을 의미함.  
 자료: 저자 작성.

이는 취업확률에 대한 분석 결과 해석 시 언급한 바와 같이, 연금가입 기간이 생애 보유했던 일자리의 안정성에 대한 하나의 대리 지표일 수 있다는 점과, 노동시장에서 학력 간 임금격차가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해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연금가입이력이 유사하다는 점에서 생애 기간 일자리의 안정성이 유사하더라도 학력이 높다면 임금수준도 높았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나아가 이는 연금수급액 수준은 물론, 연금 이외의 노후 준비 정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sup>22)</sup> 따라서 연금가입기간이 짧은 경우, 60세 이후 경제활동에 대한 필요성은 학력과는 다소 무관하게 모두 높을 수 있다. 이때, 학력이 높은 자는 고임금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는 기회가 상대적으로 더 클 것이다. 반면에 연금가입기간이 20년을 넘어서는 경우, 고학력자는 생애소득수준이 저학력자에 비해서 높으므로 연금수급액

22) 연금액 수준은 가입기간과 더불어 생애월평균소득(B값)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뿐만 아니라 이외의 노후준비 정도가 높을 것이다. 따라서 이들은 60세 이후에 취업하더라도 소득 자체가 주요 목적이 아닐 수 있고, 전일제 근로보다는 시간제 혹은 임시적인 일자리를 선호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저학력자의 경우에는 연금가입기간이 고학력자와 유사하다고 할지라도 생애소득수준이 낮으므로 연금급여액 수준은 낮을 가능성이 높고 노후준비도 충분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연금가입기간이 유사한 고학력자에 비해서는 더 높은 소득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을 것이고, 연금가입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저학력자에 비해서는 양질의 일자리에 취업할 기회는 상대적으로 더 클 것이다.

마지막으로, 60세 이후 일자리의 소득수준 요인에 관한 분석 결과는 일반적인 예상과 대체로 부합한다. 예를 들어, 직종 중에서는 전문/관리/사무직종의 소득수준이 높고, 기능 및 조립 종사자가 그다음으로 높다. 단순노무와 서비스/판매직은 차이가 없는 반면, 농림어업숙련직 소득수준이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종사상지위로 보면, 고용주가 가장 높고, 다음으로는 자영자와 상용근로자가 유사한 수준이다. 그러나 임시직과 일용직을 비교하는 경우 일용직이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난 결과는 주목할 만하다. 연령이 낮을수록, 가구주인 경우, 배우자가 있는 경우, 자가 점유인 경우, 분가 자녀에게 도움을 주는 경우, 순자산이 없거나, 혹은 순자산이 클수록 소득수준이 높은 경향이 나타난다. 한편, 건강, 장애 및 활동제약, 거주지역이 소득수준에 미치는 영향은 실증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취업확률과는 달리 연도별 특성이 소득수준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즉, 최근으로 올수록 고령자들이 취업할 가능성은 점점 높아지지만 취업 일자리의 임금수준은 평균임금과 비교할 때 별다른 변화 없이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제5절 소결

본 장의 주요 분석 결과와 그에 따른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생애 근로기간 및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연금 수급권이 있는 60~64세 개인의 취업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지만 연금액이 높을수록 취업확률은 부분적으로 상쇄·축소된다. 다시 말해, 이미 노후생활에 적절한 연금소득이 있는 경우에 취업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작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가입상한연령을 연장함으로써 가입기간이 증가하여 연금액이 증가하는 정책의 효과는 노후소득이 불충분한 계층, 즉 연금액이 적거나 수급권이 없는 계층에게서 더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측된다.

한편 가입상한연령을 연장한다면 60~64세에는 수급권 자체가 발생하지 않아 연금액의 취업확률 감소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 같은 경우에도 개인들은 65세가 되었을 때 예상되는 기대연금액을 고려하여 경제활동 여부를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 다시 말해, 가입상한연령 연장은 기대연금액을 증가시켜 근로유인을 높일수도 있지만 동시에 근로유인을 낮추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일반적으로 60~64세 일자리의 임금수준이 생애소득수준 대비 낮은 것을 고려하면 추가적인 연금가입으로 인한 기대연금액 증가는 제한적일 수 있다. 따라서 연금가입이력이 어느 정도 충분한 개인들에게 가입상한연령 연장의 효과는 중립적인 반면, 노후소득이 불충분하거나 연금가입이력이 충분하지 못한 계층에게는 수급권 획득 혹은 연금액 증가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둘째, 생애 근로기간은 길지만 연금 수급을 위한 최소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하였거나, 불충분한 개인의 60세 이후 취업확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주요 원인이 생애 근로 여건의 불안정성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가입상한연령 연장이 이들의 가입유인을 제고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긴 하나,

그렇다고 하여 당초 의도한 정책 효과가 곧장 실현되는 것은 아니다.

셋째, 60~64세 취업자의 소득결정요인에 대한 분석 결과에 따르면, 국민연금 수급 여부와 연금액, 연금가입기간이 취업자의 소득수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가입기간은 성별 혹은 교육수준과의 상호작용, 즉 간접적으로 취업자의 소득수준에 영향을 주게 된다. 이는 제도 도입 이후 이루어진 의무가입 대상 확대 과정과 무관하지 않다.

본 연구의 분석 대상 중 이 같은 확대 과정에서 20~30여 년의 가입기간을 확보할 수 있었다는 것은 생애 근로기간에 보유한 일자리가 매우 안정적이었거나, 혹은 근로 여건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일을 계속 해야만 했던 개인일 가능성이 높다. 즉 연금가입기간이 유사한 개인들도 생애 소득은 상당히 다를 수 있다. 생애소득수준이 높고 연금가입기간이 긴 개인은 노후준비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은 반면, 가입기간은 길지만 생애소득수준이 낮은 개인은 노후준비의 여력이 없었을 가능성이 크다. 교육수준으로 보면 전자는 상대적으로 고학력자로 노동시장 참여의 목적이 소득 자체보다는 이외의 요인이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반면에 후자는 속하는 개인들은 저학력자일 가능성이 높고, 노후준비가 불충분하여 60세 이후에도 경제활동의 필요성이 클 것이다. 다시 말하면, 후자에 속한 개인들의 경우, 연금가입기간은 유사하지만 생애소득수준이 높은 자들에 비해서는 더 높은 소득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고, 생애소득수준은 유사하지만 연금가입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자들에 비해서는 양질의 일자리에 취업할 기회가 더 클 것이다.

따라서 가입상한연령이 연장되는 경우 연금수급권을 획득하거나 혹은 연금액 수준이 높아질 수 있는 집단은 후자, 즉 생애소득수준은 낮지만 생애 연금가입 기간이 어느 정도 안정적인 집단일 가능성이 높다. 한편,

생애소득수준은 높지만 연금가입이력이 짧은 집단에서도 정책적 효과가 나타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그 규모는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다. 다른 한편 생애소득수준도 높고 연금가입이력도 긴 집단의 경우 추가적인 연금 가입 유인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왜냐하면 이들이 60세 이후 취업하는 일자리의 소득수준은 비교적 낮은 경향이 있는데, 이때 추가적인 연금가입은 생애월평균소득(B값)을 낮춤으로써 연금액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들에게 추가적인 연금가입은 ‘가입기간 ↑ → 연금액 ↑’와 ‘생애월평균소득 ↓ → 연금액 ↓’가 동시에 작용함으로써 정책적 효과는 다소 중립적일 수 있다.<sup>23)</sup>

넷째, 국민연금이 여전히 성숙 중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60~64세 인구의 경제·사회적 환경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분석 대상 세대(혹은 코호트)의 특성을 고려하여 생애연금가입기간을 생애 근로기간 보유했던 일자리의 관측되지 않는 특성을 나타내는 하나의 대리변수(proxy)로 간주하였다. 하지만 60~64세 연령대에 새로운 세대가 지속적으로 진입하게 됨에 따라 동 가정의 유의성과 대표성은 점차 희석될 것이다. 더욱이 고령화가 심화됨에 따라 향후 이들이 직면하는 노동 시장 환경 역시 빠르게 변화할 것이라는 점에서 향후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한편, 이러한 맥락에서 본 장에서 실시한 분석의 성과와 한계는 「한국 노동패널」의 ‘직업력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 대상의 일자리 정보를 월별 패널자료로 구축하고 그들의 생애 근로 및 연금가입 기간을 산출·분석

23) 일각에서는 60~64세 취업자의 임금수준이 낮아 연금급여 결정의 또 다른 결정요인인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소득 월액(A값)’을 저하시킨다는 우려를 제기한다(이다미 외, 2021). 하지만 ‘A값’ 저하가 문제라면,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기준인 기준소득월액 상한을 현실화한다든가, 혹은 소득활동을 하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임의가입의 기준소득(2023년 현재 지역가입자 중위수 소득 100만 원)을 상향 조정하는 것이 좀 더 합리적일 수 있다.

하였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해당 변수들이 60~64세 취업과 소득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나아가 가입상한연령 연장 방안에 따른 정책적 수혜집단의 특성을 파악하고자 한 것은 본 분석의 의의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의 목적을 충분하게 달성시키기에 생애 근로 및 연금가입 기간에 대한 정보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특히, 분석자료의 특성상 1999년 이전 일자리에 대한 정보는 회고적 설문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연금제도 특유의 제도적 복잡성 등으로 인해 일반적인 패널조사 자료만으로는 개개인의 생애소득수준과 정확한 연금액을 파악할 수 없었던 점은 본 연구가 극복하기 어려웠던 한계임이 분명하다.





## 제4장

### 가입상한연령 연장에 관한 이해관계자의 정책 요구 방향

제1절 분석 개요

제2절 분석 방법

제3절 이해관계자의 정책 요구 방향

제4절 소결



## 제4장

# 가입상한연령 연장에 관한 이해관계자의 정책 요구 방향

### 제1절 분석 개요

본 장에서는 국민연금제도의 주요 이해관계자인 기업과 노동자들이 가입상한연령 연장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고, 그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무엇이며, 이들의 동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어떤 조치들이 필요한지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주요 이해관계자를 대표하는 단체(사용자 단체, 노동조합, 소상공인 단체) 소속의 전문가 3인을 대상으로 개별 심층면접을 실시하고, 기업 인사담당자 11명, 기업에 재직 중인 45세 이상 근로자 13명을 대상으로 초점집단면접(Focus Group Interview, FGI)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국민연금 가입상한연령 연장은 그 자체만 놓고 보면 국민연금에 대한 가입자의 법정 의무가입기간을 결정짓는 규칙에 불과하다. 만약 우리가 이 점에만 주목한다면 이해관계자는 단지 가입기간 증가에 따른 기여 증가에 대한 부담과 급여 상향에 대한 기대에 따라 인식과 요구를 형성할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이미 기존 연구들에서 밝혀진 것처럼 가입상한연령 연장은 국민연금을 포함한 노후소득보장제도의 맥락과 가입자의 소득을 결정짓는 고령자 노동시장의 맥락 위에서 함께 작동한다(이다미 외, 2021; 성혜영 외, 2022). 여기에 가입상한연령 연장의 주요 배경이 되는 인구 고령화의 영향까지 고려하면 가입상한연령 연장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인식, 선호, 요구는 매우 종합적인 사회경제적 맥락 위에서 결정될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가입상한연령 연장의 주요 이해관계자인 가입자와 기업의 선호는 이와

같은 사회경제적 맥락에 대한 그들의 인식과 해석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예컨대 국민연금제도와 고령자 노동시장에 대해 모두 긍정적인 기대를 가지고 있는 가입자라면 가입상한연령 연장에 대해 더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국민연금제도를 불신하거나 60세 이후 경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적다고 여기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부정적이거나 무관심할 수 있다. 또한 이해관계자의 선호가 언제나 합리적으로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고려하면, 제도나 제도 환경에 대한 부정확한 이해가 가입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

가입자 개인과 기업은 가입상한연령 연장 자체뿐 아니라 정년제도에 대한 서로 다른 입장으로 인해 가입상한연령에 대해 상이한 요구를 가질 수도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빨리 퇴직하고 노인 빈곤율이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가입자 개인은 가입상한연령 연장의 전제 조건으로 정년연장을 희망할 가능성이 있다. 반면 기업으로서는 가입상한연령 연장 자체보다도 정년연장에 대한 부담이 더 클 것으로 예측할 수 있는데, 이는 최근 노동시장 개혁의 주요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연공형 임금체계 개혁 의제와도 관련된다(문무기, 2022; 오계택, 2022). 가입상한연령 연장에 따른 보험료 부담만 놓고 봤을 때는 개인과 기업의 부담이 같은 방향으로 증가한다고 볼 수 있지만, 정년연장을 고려하면 개인과 기업의 부담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작동할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가입상한연령 연장에 대한 인식과 선호, 요구에는 다양한 요인이 집단별로 서로 다른 영향을 미친다는 점과 개인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비합리적 요소까지 고려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해관계자의 인식이 형성되고 요구로 표출되는 맥락을 고려하고, 사안에 대해 복잡적이고 상세하게 이해하기 위해, 이에 적합한 연구 방법인 질적 연구에 기초하여 분석하였다(Creswell & Poth, 2021: 74-76). 물론 이는 본

보고서의 다른 장에서 양적 데이터에 기초한 분석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기도 하다.

국민연금은 임금근로 계약하에 있는 사업장가입자뿐 아니라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한 지역가입자를 포괄하고 있다. 따라서 가입상한연령 연장은 모든 경제활동 참가자에게 영향을 미치지만 본 장의 분석에서는 기업과 노동자의 입장에 좀 더 초점을 맞추었다. 이는 일차적으로는 가입상한연령 연장에 대한 기업과 가입자 개인의 상이한 입장을 살펴보고자 했기 때문이다. 또한 지역가입자의 상당수가 납부예외 상태에 있거나 상황에 따라 납부예외를 선택할 수 있다고 여기고 있음을 고려할 때(한정림, 김경아, 2014; 한신실, 2021), 이들의 가입상한연령 연장에 대한 입장이 불분명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고려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입상한연령 연장 과정에서 지역가입자가 납부예외 상태로 전환될 수 있다는 우려도 고려할 필요가 있기에 소상공인 단체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이를 보완하고자 하였다.

이어지는 절에서는 본 장의 분석을 위한 면접 대상자와 분석 방법에 대해 간략히 설명한다. 이후 이해관계자의 정책 요구 방향에 관한 분석 결과는 제3절에서 상세하게 제시하고, 제4절에서 본 장의 내용을 간략히 요약하고 함의를 제시하였다.

## 제2절 분석 방법

### 1. 연구 참여자

질적 접근의 경험 연구를 위해 이해관계자 단체의 전문가(관련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개별 심층면접과 기업 인사담당자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FGI를 실시하였다. 우선 이해관계자 단체로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연금 특위를 비롯하여 연금개혁 관련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해온 사용자 단체인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그리고 사용자 단체의 성격과 자영업자(지역가입자) 대표의 성격을 모두 가진 소상공인연합회를 선정하였다. 개별 심층면접에는 각 단체에서 연금 제도 혹은 사회보장제도 관련 논의를 담당하고 있는 관계자가 참여하였다.

개별 기업 및 근로자의 입장을 파악하기 위해서 4개 그룹에 대한 FGI를 실시하였다. 그룹을 구성하면서 기업-근로자의 구분 이외에 기업 규모를 고려했는데, 고령자 고용 상황이나 국민연금 기여금 지불능력 등에서 기업 규모에 따른 격차가 클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는 상시근로자 100인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결과적으로 100인 이상-기업, 100인 미만-기업, 100인 이상-근로자, 100인 미만-근로자의 4개 초점집단을 구성하였다. 특히 고령자 고용 현황의 경우 업종이나 직종에 따른 차이도 있을 것으로 보았지만, 연구 참여자의 수적 제한을 고려할 때 업종을 할당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다만 참여자 모집 시 가급적 제조업과 서비스업, 사무직과 기술직이 모두 포함될 수 있도록 하였다.

가입상한연령 연장에 관한 기업의 입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사용자’를 면접할 필요가 있으며, 개인으로 보면 기업의 대표자가 이에 가장 잘 부합할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기업의 대표자를 참여자로 모집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따라서 인사담당 임원이나 책임자급 인사관리자를 중심으로 모집하였다. 인사관리자들은 기업을 대표하지만 동시에 그 자신은 근로자이기도 하기에, 이들의 의견에는 사용자로서의 의견과 근로자로서의 의견이 뒤섞일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연구진은 이들과의 FGI 진행 시 기업을 대표하여 의견을 제시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질문에 따라서는 근로자 개인으로서의 의견을 들려달라고 하여 양자의 차이를 분명히 함과 동시에 비교하고자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의견이 온전히 사업주(사용자)로서의 의견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본 연구의 한계다. 이에 대해서는 사용자 단체인 경총 전문가와의 인터뷰를 통해 보완하였다.

실제로 연구에 참여한 참여자들에 대한 정보는 <표 4-1>과 같다.

<표 4-1> 심층 인터뷰 및 FGI 참여자 기본정보

| 구분                 |      | 개인 특성 |    | 업종 및 담당업무 |          | 비고         |
|--------------------|------|-------|----|-----------|----------|------------|
| 그룹                 | 참여자  | 성별    | 연령 | 업종        | 업무       |            |
| 이해관계자<br>단체<br>전문가 | S1   | 남성    |    | 경총        | 사회정책팀장   | 개별<br>심층면접 |
|                    | S2   | 여성    |    | 한국노총      | 정책2본부 국장 |            |
|                    | S3   | 남성    |    | 소상공인연합회   | 정책홍보본부장  |            |
| 100인<br>이상<br>기업   | E1-1 | 남성    | 58 | 시설관리서비스   | 인사관리자    | 임원         |
|                    | E1-2 | 남성    | 42 | 기계제조업     | 인사관리자    | 임원         |
|                    | E1-3 | 남성    | 51 | 건설업       | 인사관리자    | 임원         |
|                    | E1-4 | 남성    | 40 | 여행업       | 인사관리자    | 임원         |
|                    | E1-5 | 남성    | 41 | 정보통신업     | 인사관리자    | 임원         |
|                    | E1-6 | 남성    | 48 | 제조업       | 인사관리자    | 임원         |
| 100인<br>미만<br>기업   | E2-1 | 여성    | 47 | IT/콘텐츠    | 인사관리자    | 임원         |
|                    | E2-2 | 여성    | 31 | 소프트웨어개발   | 인사관리자    | 차장         |
|                    | E2-3 | 여성    | 35 | 제조업       | 인사관리자    | 임원         |
|                    | E2-4 | 여성    | 42 | 제조업       | 인사관리자    | 과장         |
|                    | E2-5 | 남성    | 54 | 통신시스템     | 인사관리자    | 임원         |

| 구분                |      | 개인 특성 |    | 업종 및 담당업무 |      | 비고              |
|-------------------|------|-------|----|-----------|------|-----------------|
| 그룹                | 참여자  | 성별    | 연령 | 업종        | 업무   |                 |
| 100인<br>이상<br>근로자 | W1-1 | 남성    | 53 | 시설관리업     | -    | 외국계<br><br>공공부문 |
|                   | W1-2 | 여성    | 49 | 무역업       | 해외영업 |                 |
|                   | W1-3 | 남성    | 53 | 교육서비스업    | -    |                 |
|                   | W1-4 | 남성    | 56 | 의류제조업     | 경영관리 |                 |
|                   | W1-5 | 여성    | 51 | 건설업       | 보조감리 |                 |
|                   | W1-6 | 남성    | 52 | 시설관리업     | 관리직  |                 |
|                   | W1-7 | 남성    | 49 | 상조회사      | 인사팀  |                 |
| 100인<br>미만<br>근로자 | W2-1 | 남성    | 59 | 기계제조      | 사무직  |                 |
|                   | W2-2 | 여성    | 58 | 도시가스      | 서비스직 |                 |
|                   | W2-3 | 남성    | 55 | 제조업       | 기술직  |                 |
|                   | W2-4 | 여성    | 51 | 교육서비스업    | 사무직  |                 |
|                   | W2-5 | 여성    | 54 | 판매업       | 사무직  |                 |
|                   | W2-6 | 여성    | 46 | 운수업       | 사무직  |                 |

자료: 저자 작성.

## 2. 연구 내용 및 방법

개별 심층면접 및 FGI는 반구조화된 질문지에 기초하여 이루어졌다.<sup>24)</sup> 연구 참여자에게는 우선 간략한 자기소개를 요구한 후 연금제도에 관한 인식, 국민연금 가입상한연령 및 수급개시연령의 불일치와 관련한 이해 및 인식, 가입상한연령 연장과 관련된 주요 이슈(보험료 부담, 고령자 고용, 연금개혁)에 관한 견해, 그리고 가입상한연령 연장 시 그 방식이나 조건, 정부지원 필요성 등에 관한 인식을 질문하였다.

연구 참여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질문은 다음과 같이 조정하였다. 이해 관계자 단체 대표의 경우 정책 이해도가 높고 전문성이 있으며, 해당 이해 관계자들을 대표한다. 따라서 이들에게는 가입상한연령 변경과 직·간접

24) 그룹별 질문내용은 〈부록 1〉을 참조할 것

적으로 연관된 정책 이슈 전반에 관한 견해와 정책적 요구에 대해 중점적으로 질문하였다. 개별 근로자의 경우는 정책을 이해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해도를 확인하는 질문을 포함했으며, 정책에 대한 견해는 가급적 본인의 구체적인 경험에 기초해 응답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하였다. 반면 기업 인사담당자의 경우는 기업 입장에서의 응답과 개인 입장에서의 응답이 구분되도록 하는 것에 주의하였고, 주된 질문은 현재 소속된 기업의 상황과 인사관리 방식에 기초해볼 때 가입상한연령 연장 및 그에 수반된 변화에 대해 어떻게 보고 있는지에 초점을 맞췄다.

개별 심층면접 및 FGI는 사전에 연구진 회의 및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구성된 가이드라인에 기초하였으며(Moser & Korstjens, 2018), 개별 심층면접은 약 1시간 30분, FGI는 약 2시간에 걸쳐 진행하였다. 면접은 조사 전문업체에서 마련한 별도의 회의실에서 진행하였으며, 면접 시작 전에 연구의 목적과 내용을 설명하고, 연구 참여자의 권리, 개인정보 보호, 비밀 유지 원칙에 대해 서면 동의를 얻는 ‘고지된 동의(informed content)’ 절차를 따랐다. 기업 인사담당자 및 근로자에 대한 FGI 시행 시에는 사전에 제도의 현황(가입상한연령과 연금수급연령 간의 불일치)에 관한 설명자료를 제공하고, 질문에 앞서 간단한 프리젠테이션을 통해 이를 인지하고 응답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면접 내용은 음성파일로 녹취하였고 이를 전사한 녹취록을 바탕으로 질적 내용 분석(qualitative content analysis)을 수행하였다(Weber, 1990). 질적 내용 분석을 위한 부호화(coding) 과정을 연구진 간에 상호 검토함으로써 동료 검증을 통한 분석의 타당도(validity)를 확보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전 과정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생명윤리위원회 제 2023-050호(2023. 6. 26.)」에 의해 참여자 모집을 포함한 면접 방법에 관한 IRB 승인을 받았으며, 승인받은 절차에 따라 진행되었다.

## 제3절 이해관계자의 정책 요구 방향

### 1. 가입상한연령 연장

#### 가. 제도 현황에 관한 인지

면접 전에 연구진들은 이해관계자 단체 전문가를 제외하면 기업 인사담당자 및 근로자, 특히 개별 근로자의 경우 가입상한연령과 수급개시연령 사이의 공백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기업 인사담당자들은 물론 개별 근로자들 역시 사전 안내 자료를 보기 전에도 공백이 있다는 것에 대해 알고 있었다는 응답이 더 많았다. 인사담당자들의 경우 업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알게 되었다는 응답이 있었고, 근로자들은 국민연금공단의 안내나 연금에 대한 개인의 관심에 따라 알게 되었다고 응답했다. 본 연구에 참여한 개별 근로자들이 중년 이후(45세 이상) 연령대라는 점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집으로 국민연금공단에서 한 번씩 오잖아요.** 네가 얼마 냈고 몇 년간 얼마 내고, 그거 보고 몇 년 전에 알았던 거 같아요. 내가 다 냈어도 몇 년 있다 받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E2-4)

**업무를 하다 보면** 부장님이나 이사님들은 가입이 안 되는 연령대이기도 하고요. (사회자: 60세 이상이신가요?) 네. 그런 식으로 알기도 하고 **안내 자료로 교육을 하고 있기도 해요.** (E2-2)

그러나 가입자들의 사안에 대한 인지가 정확한 것만은 아니다. 대다수 참여자들이 가입상한연령 연장을 국민연금 재정 문제와 관련지어 이해하고 있었다. 재정이 부족하니 보험료를 더 걷겠다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정확한 인식이 아니다. 기존 연구들이 지적하는 것처럼 가입상한연령 연장의 보험재정 효과는 수급개시연령 연장과 달리 복합적이다. 단기적으로 보험료 납부가 증가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지급액이 상향되어 연금재정이 악화될 가능성도 있다. 특히 모든 계층의 수익비가 1이 넘는 현행 연금제도가 그대로 유지될 경우 연금재정은 악화될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성혜영 외, 2022, p.88). 오히려 기존 연구들은 가입상한연령 연장의 효과를 국민연금 사각지대 축소나 개별 가입자의 연금수급액 상향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보지만(김성숙, 홍정우, 2011; 우해봉, 한정림, 2017; 김태일, 신영민, 2022), 이해관계자 조직 담당자들을 제외하면 이를 잘 모르고 있었다. 최근에 국민연금의 보험료 부담이 높아졌다는 식의 부정확한 인지를 가진 경우도 확인되었다.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저는 인지가 되거든요. 이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겠구나. **국민연금 금액을 최근에 늘린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도 얼마나 필요하면 바로 늘렸겠냐. (E2-1)

실제로 제가 보기에는 **국민연금이 자꾸 고갈이 되니 늦춘 거예요.** 지급을 늦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갭이 난 거 같고요. 그리고 지금도 고갈이 되어 있고 자식 세대는 못 받는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어떻게든 가입을 해서 국민연금 수급액을 늘리려고 하는 게 아닌가.** (W1-2)

가입상한연령 연장에 관한 부정확한 인지는 단지 인지로만 남지 않는다. 이는 가입상한연령 연장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형성하는 단초가 된다. 가입상한연령 연장이 재정 부족을 메우기 위해 가입자의 부담을 초래하는 것이기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냥 방송에서 듣고 표면적으로 느낄 때는 연금 운용에 **기금들이 줄어들고 하나까 기간만 늘려서 카드 돌려막기 식으로 하는** 느낌이 강해서 동의하지 않습니다. (W1-4)

진짜 솔직하게 어필을 하면, **자금이 부족하니 더 내야 되고 그게 주된 원인이고** 그거 때문에 사회적 약자를 도울 수 있다는 식으로 접근하는 게 낫지, 연령 차이가 나고 외국은 퇴직하면 바로 받는데 우리는 갭이 있다. 그래서 늘려야 된다. 모르는 분은 그럴 수 있겠네, 할 수 있겠지만 **내용을 알면 아무런 호소력 없는 내용**이거든요. (W1-7)

물론 가입상한연령 연장에 대한 가입자들의 의견이 부정적이기만 한 것은 아니며, 부정적 인식을 갖게 된 데 제도에 대한 잘못된 이해만이 작용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가입상한연령 연장에 대한 구체적인 찬반 의견을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 나. 가입상한연령 연장에 관한 찬반 의견

가입상한연령 연장에 관한 찬반 의견 및 그 근거는 연구 참여자 집단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났다. 기업 인사담당자들의 경우 기업의 입장에서 응답할 때 대체로 부정적으로 응답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가입상한연령을 연장하면 어쨌든 기업으로서는 재정적 부담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가입상한연령 자체에 대한 부정적 의견은 100인 미만 기업보다는 100인 이상 기업에서 좀 더 두드러졌는데 이는 100인 미만 기업의 경우 피용자 중 60대는 물론 50대 근로자조차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sup>25)</sup>

제가 볼 때는 **기업에 부담 없이 연령 연장으로 가되 의무가입이 아니라**, 시점이 의무가입이 끝나잖아요. 5년간 임의가입을 해서 본인이 판단을 해서 개인연금을 들 거냐, 예를 들어 국민연금을 들거냐 선택을 할 거 아니에요. 국민연금이 좋다고 하면 국민연금으로 해서 기간만 더 늘려 주면 기업도 사람 채용하는 데 부담이 없잖

25) 이는 연금제도보다는 오히려 고령자 노동시장의 현황과 관련이 깊다. 이에 관해서는 본 절의 2항에서 좀 더 상세히 살펴볼 것이다.

아요. 본인도 그렇게 가고요. 그런 방법도 괜찮지 않을까. **의무가입으로 해 놓으면 기업 측에서 반발이 심할 거 같아요.** (E1-1)

**연장하는 거 말고 수급개시연령을 앞으로 당기는 거는 안 됩니까?** 60세요. %를 조정한다든지, 왜 그러냐면 근로라든지 회사라든지 리스크는 있겠습니다만, 갭을 없애자는 게 방침이라면 연장보다는 차라리 리스크를 안고 꺾더라도 앞으로 당기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 (E1-2)

**근로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시행이 되면 좋겠고** 기왕이면 강제적으로 법적으로 규제를 했으면 좋겠고, 그런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 오늘 하나 10년 뒤에 하나 이거를 지킬 기업이 누가 있나, **이때까지 일을 할 사람의 비율이 얼마나 늘어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은** 들기는 해요. (E2-2)

근로자들의 경우 찬반의 양상이 좀 더 다양하게 나타났다. 가입상한연령 연장이 고용연장과 이어질 경우 사업장가입자들은 국민연금에 대한 사용자 기여가 연금총액을 높이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60세 이후 고용이 가능하다고 기대하는 참여자들의 경우 이 점에 주목하여 가입상한연령에 대해 긍정적인 견해를 제시하는 경우가 나타났다.

직장이 없을 때는 굳이 돈 내지 않는다면, **직장이 있으면 회사에서 반 내 주고, 그렇다면 저는 찬성**, 굳이 반대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W1-1)

저는 동의해요. 저희 회사는 특성상 재취업을 많이 하신 분들이 많아요. 정년퇴직을 공기업 쪽에서 하셔서 재취업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60대 초반 분들이 많으신데 만날 국민연금 받으실 생각만 하시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그거 말고도 제 주위에는 60세 이후에도 쉬시는 분들이 없거든요.** 하다못해 그냥 힘든 일이라도 다 하세요. 그래서 저는 **그분들도 낼 수 있는 만큼 내고 나중에 받으면 좋겠다** 항상 생각을 해요. 그분들도 그것을 싫어하지 않으시고요. (W1-5, 가입상한연령 연장 찬성)

만약에 제가 언제까지 일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꼭 65세까지 일을 한다고 하면**

직장인은 회사에서 일부 부담을 해 주고 저는 내는 거잖아요. 저는 다른 개인연금도 들어서 노후준비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국민연금도 못 받을 거라는 생각은 안 하고 있거든요. 나라에서 운영을 하는 거니까요. 넣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일을 하고 있고 저 같이 불입한 기간이 길지 않은 사람이라면 끝까지 부어서 65세 타기 직전까지 보는 거에 찬성이예요. (W2-4)

그러나 이와 달리 국민연금제도 차체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거나, 고령자 노동의 현황이나 필요성에 대해 비판적 시각을 가진 경우 가입상한연령 연장에 대해서도 반대하는 경향이 확인된다. 전자의 경우 연금 기여금은 증가하지만 혜택은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후자의 경우 연장해봤자 60세 이후에 기여금을 납부할 만큼 충분한 소득이 없을 것이라는 비판이 반대의 배경이 된다. 가입상한연령 연장에 대한 찬반은 연장 자체만이 아니라 이를 둘러싼 제도 환경에 대한 인식과 경험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지금 보시면 60세 때 받던 거를 65세로 늘렸는데 정부에서 바꾼 거잖아요. (중략) 국민 중 누구도 국민연금으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턱없이 부족하잖아요. 정확하게 해야 된다고 봐요. 어떻게 보면 자금이 고갈되고 많은 사람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늘려야 된다. 그런데 본인들이 늘려 놓고 갭을 줄이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는 접근방법이잖아요.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실질적으로 금액을 늘린다거나 운용하는 이런 부분을 관리책임을 지겠다 하면서 늘리거나 해야 되는데 (중략) 접근이 잘못되었다고 보거든요. (W1-7)

저도 반대하는 입장인데요. 60세 넘으면 보통 회사에서 정규직보다는 촉탁직으로 하거든요. 아무리 경력이 많아도 촉탁직을 하면서 급여가 적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국민연금은 제외가 되면 좋겠고요. (W2-2)

의무가입은 아니었으면 좋겠는 게, 저희 회사에 60세 이상이신 분들이 꽤 많거든요. 그런데 국민연금 안 내니까 회사에서 되게 좋아하세요. 보험료도 요즘 너무 비싸서,

그런데 60세가 넘어 가고 나서는 촉탁이나 이런 걸로 일을 하시고 폐이가 많이 적어 지는데 굳이, 본인이 원하는 사람만 냈으면 좋겠어요. 65세까지 신청을 해서 내고 싶은 사람만 내고 회사를 다니더라도 내고 싶지 않으면 안 냈으면 좋겠어요. (W2-6)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인식이나 평가가 가입상한연령 연장 논의에서 중요하다는 것은 찬성 의견을 표명한 근로자에게서도 확인되었다. 가입상한연령 연장에 대한 찬성 의견에 부연하여 현재 연금제도의 문제점이 ‘다 고쳐진 상태’가 되어야 찬성할 수 있다고 설명한 것이다. 반대로 가입상한연령에 대한 반대 의사를 표명한 근로자는 반대의 사유로 고령자 고용을 위한 사회적 기반 마련이 우선이라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지금 했던 기간, 어떠한 정책이라든가 개선을 하지 않고 그냥 그게 고쳐진다면, 말 그대로 고쳐지는데 저 제도가 들어온다면 더 플러스가 되겠느냐, 아니면 다 고쳐진 상태에서 저게 들어오면 더 마이너스가 되겠느냐, **지금 이 시점에서 제 관점은 다 고쳐진 상태에서 저 제도가 들어온다면 국민연금 운영하는 데 개인적으로 좋을 거 같고.** (W1-1, 가입상한연령 연장 찬성)

이게 시작이 되면서 처음에는 가입연령 60세에 62세 정도로 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문제가 생겨서 그런 거 같은데, 65세로 늘린 거 같은데 그러면 실제 일을 더 하고 싶은 사람이든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든 **사회적 정년에 대한 개념이 위로 더 올라가야 되지 않나 싶어요.** (W2-3, 가입상한연령 연장 반대)

그렇다면 가입상한연령 연장을 반대하는 경우 현재의 가입-수급의 공백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을까? 이에 대해 상당수의 참여자들은 수급개시연령을 당겨서 공백을 없애자는 의견을 제시한다. 60대의 노동시장 참여가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기여 기간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급여시점을 앞당기자는 것이다.

**줄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거의 다 60세로, 공무원이나 대기업도 만 61세에 거의 은퇴를 하잖아요. 61세가 되어 그만두면 그다음 해 바로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났었다고 이자가 붙어나는 것도 아닌데 몇 년 4~5년 동안 났었다 받아야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만두면 그만큼 소득이 없으니까 불안하고, 나이가 들면 병원 가야 되는 일도 많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 따져서 내가 그만두는 시기 다음해부터 받아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W2-2)**

저 같은 경우는 다른 연금이 없어요. 국민연금 하나만 믿고 있거든요. 저 같이 연금을 준비 안 하는 사람은 국민연금이 희망이 될 수 있어요. (중략) 연금 내고 싶고 그거를 타고 싶어요. **그런 상황 때문에 할 수 없기 때문에 공백 기간을 줄이거나 없애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다시 늘린다고 하면 당연히 더 반대죠. (W2-5)**

그러나 수급개시연령을 낮추어 갭을 줄이자는 의견 역시 넓게 보면 제도에 대한 오인(誤認)에 해당한다. 면접 참여자 다수가 가입상한연령 연장의 목적이 국민연금 재정 불안정에 있다고 생각하면서 동시에 가입-수급 사이의 공백을 수급 연령을 낮추어 맞추자고 제안하는 것은 모순적이다. 이는 연금재정을 크게 악화시키는 선택이기 때문이다. 참여자들이 국민연금의 재정적 불안정에 대해 어렵듯이 인지하고 있지만 제도의 변화가 재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정확히 알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수급개시연령 하향 조정에 동의하면서 그로 인한 재정적 문제를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는 기업 인사담당자들은 수급개시연령을 낮추어 가입-수급 공백을 없애되 보험료를 상향 조정하거나 조기노령연금에 대한 감액 제도를 통해 재정적 손실을 메우자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현재의 기여-급여 구조하에서도 이미 재정불균형으로 인한 보험료 상향 조정 논의가 있는 상황임을 고려하면 이 또한 연금제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에 기초한 의견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저는 전혀 반대의 얘기라서, 일을 할 수 있을 때 지금, 그러니까 국민연금을 가입한 시기에 회사가 절반을 부담을 하되, 연금의 비율을 좀 높여야 장기적으로 재원 확보가 되고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으니까 **차라리 일을 할 수 있는 시기에 요율을 대체로 높이는 방안을** 생각했어요. (E1-4)

나라에서 어렵다고 하면 늦게 주려고 하지 말고 줄여서 정상적인 시기에 주는 게 오히려 반발을 줄이는 길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노년에는 젊었을 때처럼 언제까지 건강할지 보장할 수 없지 않습니까. 자기가 원하는 시기에 적은 금액이라도 받아야 만족감이 있거든요. **절반을 받더라도 받아야 만족감이 생기는데 그거 자체를 늦춘다고 하니 금액을 덜 주더라도 받아 가는 게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E1-3)

흥미로운 점은 가입상한연령 연장에 동의하지 않는 참여자 중에서도 상당수가 본인이 60세 이후에 소득이 있다면 국민연금에 기여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했다는 점이다. 이는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 첫째, 가입상한연령 연장에 부정적인 의사를 가진 참여자들은 60세 이후 국민연금에 기여해야 한다는 사실 자체보다는 이를 ‘의무화’한다는 것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가지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둘째, 가입상한연령 연장에 부정적인 이유의 핵심은 60세 이후에 적절한 시장소득을 가지고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에 있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 실제 응답에서는 두 가지 측면이 모두 확인되었다.

거기에 대해서 예전에 생각한 적이 있는데, **100% 강요하는 게 아니고 선택할 수 있으면 자기가 책임을 지고 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동의를 해요. 내가 벌 수 있는 만큼 낼 수 있는 거고, 능력 있는 사람은 더 내면 받는 거고, 안 내는 사람은 당연히 덜 받는 거죠. (W1-6)

요새는 백세시대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경제적 능력이 안 되면 모르겠는데 경제적 능력이 되어서 그거를 내면 심적으로 굉장히 편할 거 같아요. 다른 거에서 조금

아끼더라도 이거 내고 나면 내 노후생활이 편해질 거 같아서 낼 거 같아요. (W2-2)

저도 똑같아요. 제가 다른 연금이 없다고 했잖아요. 노후에 대해서 안심이 되고 있는데 **제가 60세 이상 일을 한다고 하면 그만큼 이자가 붙고 할 테니까 그럴 경우 당연히 투자를 하겠죠.** (W2-5)

상대적으로 제도 이해도가 높은 이해관계자 단체 전문가들은 기여-급여 사이의 공백을 줄이기 위해 가입상한연령을 연장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동의를 나타냈다. 다만 노조 대표가 가입기간 연장을 통한 노후소득보장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과 달리 사용자 단체 대표는 좀 더 유보적인 입장이었다. 사용자 단체 대표는 이미 임의가입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가입상한연령 연장이 전체 국민연금 개혁에서 중요한 요소인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였다. 특히 가입상한연령 연장 논의와 정년연장 논의의 연계 가능성을 경계했는데, 이는 이후에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볼 것이다.

실제 뒤늦게 이제 연금을 가입해가지고, **10년을 채우지 못하는 분들 때문이라도** 그분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당연히 연금을 수급할 수 있도록 **그 기간을 이렇게 열어주는 것에 대해서도 되게 동의를 하는 거고...** (S2)

보통 이제 해외 다른 나라들의 어떤 제도와 비교해 봤을 때 그 **가입상한연령과 연금 수급개시연령 간의 어떤 시간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다른 나라 제도와 비교해 봤을 때 좀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인데요. **그거를 일치시키면 금상첨화** 겠죠,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S1)

저희는 일단 이게 연금개혁의 차원에서 이렇게 모든 걸 접근을 하고 있는데, 일단 지금의 연금개혁의 필요성은 재정 안정성 확보가 우선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 (중략) 연금 보험료율만 올려서 될 문제도 아니고, 연금 수급개시연령만 좀 미룬다고 될 일도 아니고, 사용할 수 있는 옵션들이 많을 텐데 이 옵션들을 종합적으로 패키지로 묶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은 그런데 사실은 가입상한연령을 높인다 하는 것은 현행 틀에서도 저는 충분히 그 취지를 달성할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임의계속 가입 제도가 있잖아요. (S1)

#### 다. 가입상한연령 연장의 효과 인식

가입상한연령 연장에 관한 견해는 이 개혁이 어떤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지에 대한 서로 다른 평가와 기대에 따라 달라진다. 이를 고려하여 가입상한연령 연장의 효과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인식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가입상한연령의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났는데, 첫 번째는 재정적 효과였다. 근로자의 경우 다소 막연히 기여금의 납입기간 증가가 재정적 효과를 가질 것이라는 의견을 보였다면, 전문가의 경우 장기적인 지출 증가 요인을 고려하더라도 인구 변화에 대한 단기적인 효과 정도는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국민연금이 모자라니까 수급을 충당하기 위해서 하는 거는 당연한 건데 그렇다고 수급이 저희가 안 내게 된다면 다른 데서 끌어 와서 연금을 주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만큼 거기에 맞게 적게 책정이 되어 나올 거예요. 그나마 직장이 있고 다니면 수급이 충당이 되면 어느 정도 수급에서 맞춰지지만 수급이 없으면 아예 그때 받는 돈보다 적어질 거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W1-1)

한 5년 정도를 더 걷어들이는 거는 좋지만 줄 때는 그만큼 더 나가기 때문에 연금 재정 안정화에 과연 기여할 것이냐, 저는 그렇지도 않고 그건 모르는 일인데, 다만 이런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베이비붐 세대가 한꺼번에 은퇴함으로써 연금 보험료, 연금 급여를 지급해야 되는 그 시점을 좀 이연시키거나 분산시키는 효과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런 차원에서 도입 가능한 옵션 중에 하나라는 것이지 이게 재정 안정화를 가져올 것이라고는 절대로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S1)

가입상한연령 연장에 관한 가입자들의 긍정적 기대가 좀 더 분명하게 나타난 것은 추가적인 기여금 납부가 노령연금액을 높일 것이고, 그 결과 노후소득 증가를 기대할 수 있다는 측면이었다. 특히 가입상한연령 연장이 이루어질 경우 사업장가입자는 60세 이후에도 기업의 기여를 기대할 수 있으며, 이 점이 가입자들에게 가장 분명한 기대를 주는 것으로 보인다.

**반을 회사에서 대 준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무리 국민연금을 적게 받더라도 내가 낸 거 반을 못 받겠냐. **어차피 회사에서 반 내 준 거니까, 더 많이 받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계속 그게 시행이 되어서, 내가 선택을 했는데 회사에서 너가 선택했으니까 반을 내주겠다고 하면 저 같은 경우는 할 거 같아요. 본인이 100%를, 9%를 제가 한다면 안 할 거 같고요. (W1-1)

내가 받을 금액이 높아지기 때문에 **노후에 대해서도 더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을 거 같아요. (W2-2)

당연히 더 널 의향이 있는데 매스컴에서 보면 2055년? 불안한 감도 있지만 여전히 국민연금은 특히 부부합산을 했을 때는 나중에 퇴직 준비할 때 가장 큰 포션일 거라 지금 일단 **정부의 정책을 보고 좀 더 내면 많이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E1-6)

그러나 가입기간 연장의 비교적 분명한 혜택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그것이 연금급여를 그다지 높이지 못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여기에는 단순히 가입기간 증가에 따른 급여 증가 정도가 높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도 있었고, 부분적으로는 제도에 대한 오인도 작용하고 있었다. 국민연금을 단순히 투자 정도로 인식하고 이(자)율이 그리 높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다.

지금 국민연금제도에서 제가 추가로 선택해서 **납부를 한다고 해서 많이 늘어나고** 그런 개연성은 제가 보기에는 **많이 없어 보여서** 그럴 필요성은 못 느낄 거 같아요.

(W1-7)

저도 굳이, 알아보니까 기간이 늘었는데 금액은 많이 늘지 않더라고요. (W1-4)

차라리 그 돈으로 다른 데 투자를, 사실 국민연금이 5년 더 낸다고 그 사이 이율이 엄청나게 올라갈 거는 아닌데 만약에 의무가입이 되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반반 부담이 된다면 얼마든지인데, 만약에 당신이 100% 내는 걸로 해서 낼 수 있냐고 한다면 굳이 저는 그거를. (W2-4)

국가의 국민연금제도 운영에 대한 불신이 가입상한연령 연장에 대해 다른 형태의 부정적 견해를 가져오기도 한다. 현재의 가입-수급 공백이 수급개시연령을 60세에서 65세로 옮긴 결과 발생한 것이니만큼 가입상한연령을 상향 조정하면 다시 수급개시연령을 상향 조정하지 않겠냐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소상공인을 대표한 전문가는 제도의 잦은 변화 자체가 제도에 대한 신뢰성을 낮추는 요인이라고 지적하였다.

말씀 드린 게 의무가입연령만 놓고 볼 때 동의를 하잖아요. 항상 불안한 게 뭐냐면, 그렇게 나오면서 분명히 제가 생각하기로는 정부가 두 번째로는 정년퇴직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러다가 그게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 국민연금을 70세에 받는 걸로 생각을 하고 단계적으로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W1-1)

64세나 60세라는 연령이 과연 의미가 있을까 생각이 들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60세였다가 65세로 늦춰지고 우리 때 70세로 안 늘어난다는 보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때 되면 65세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또 다시 5년이라는 갭이 생길 텐데요. (W1-2)

첫 번째는 비용의 증가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신뢰도를. 왜냐하면 어느 정도 기간이라는 게 무슨 이게 정부의 어떤 정책이 당연히 탄력적으로 운영되는 건 맞긴 하지만 이렇게 중요한 자기 자산과 직결되는 부분에 있어서 자주 변동되는 것은 국민적 신뢰도를 좀 낮춰주는 거 아닌가 특히 소상공인들의 신뢰도도 낮춰주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요. (S3)

고령자 노동시장의 불안정 역시 가입상한연령 연장의 효과를 낮추는 요인이라는 점을 이해관계자들은 분명히 인지하고 있었다. 근로자 개인들은 가입상한연령을 연장해도 자신이 그 시점에 보험료를 부담하기에 적정한 소득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는 우려를 제시한다. 이는 한 편으로 가입상한연령 연장을 통한 노후소득 증대 효과를 제한하는 요인이며, 동시에 가입자들이 연장된 기간 동안 기여금을 납부하는 것을 부담스럽게 하는 요인이다. 이와 같은 문제 인식은 주로 100인 미만 기업 종사자에서 제시되었다.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불평등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저희 같은 중소기업은 급여가 높지 않기 때문에 60 넘어서 그 급여를 유지한다고 해도, 저도 어머니가 계시고 아이도 학교를 다니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60 넘어서 어느 정도 수입을 얻기는 어려울 거 같아요. (중략) **여력이 있다면 납부할 의향이 있는데 그걸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여요.** (W2-1)

60세 이상 넘었을 때 국민연금을 말씀하셨는데 회사에 쪽 그 급여로 다닌다고 하면 국민연금을 내는 거는 문제가 없을 거 같은데 **만약에 55세 이상이어서 축적적으로 간다고 하면 금액이 적겠죠. 그러면 국민연금 내는 거에 대해서 부담스러울 거 같아요.** (W2-5)

가입상한연령 연장 시 임금근로자는 기업의 기여를 기대할 수 있지만, 자영업자의 경우 이를 기대하기 어렵다. 이 점은 소상공인이나 60대까지 고용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임금근로자들이 가입상한연령 연장에 대해 우려를 갖는 또 한 가지 이유다. 60대 이후 소득이 높지 않을 텐데 4.5%도 아닌 9%의 보험료율은 부담이 될 것 같다는 인식이다.

퇴직을 하고 다른 일을 하는데 내가 받는 수익은 똑같은데 보험료가 2배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이것 또한 60세 이후 4.5%로 해서 줄여 준대거나. (E2-4)

혜택은 그렇다고 크게 늘어나지도 않아요. **이 사람들이 돈이 크게 늘어나지 않을 거예요.** (중략) 소상공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 이렇게 애들의 평균값이 아마도 저는 100이 안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평균값이 그럼 100이 안 된다면 거의 50에서 100 사이일 거거든요. 아주 그냥 기본적으로 그럼 50에서 100 사이를 받는 것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다고, 또 나 이걸 계속 하라는 거냐, **그것은 자기에 대한 혜택이 아니라 남을 위한 혜택이라고 자기들은 생각할 거예요.** (S3)

노조를 대표한 전문가는 가입상한연령 연장이 의미 있는 제도 변화가 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노동시장 불평등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기존의 연구에서도 확인된 것처럼 가입상한연령 연장은 일부 안정된 일자리를 가진 이들만의 혜택이 될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보험료 부담으로 인한 납부예외 유인을 증가시킬 가능성도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안 없이 제도를 변화시킬 경우 당초의 기대효과보다 부작용이 더 클 우려가 있다.

일부 이제 정규직 노동자들에게는 이제 적용이 되는 문제이긴 하지만 실제 **근로 생애에 있어서의 소득 불평등이, 노후에 있어서의 소득 불평등하고도 이제 연결이 되고 있는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이제 개선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있는 거죠. (S2)

이게 제도가 형해화되지 않으려면 **사각지대가 없어야 되는데** 임금 사업장 가입자 외에 이제 **지역가입자랑 기타 이제 비경활인 분들이나** 이런 제도가 이제 어떻게 따라오느냐에 문제지 않을까. (S2)

## 라. 보험료 부담

보험료 납부에 대한 부담이 발생한다는 것은 연금급여가 높아진다는 것과 함께 가입상한연령 연장의 일차적인 영향이다. 실제로 ‘다’ 목에서 살펴본 것처럼 가입자들 역시 충분한 소득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보험료 납부가 부담이 될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 점은 기업도 마찬가지로 가입상한연령 연장에 따른 보험료 부담에 대한 우려를 표현하였다.

아무래도 기업 입장에서 비용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데 **고령층을 채용하는 것도 부담스러운 입장에서 보험료까지 부담이 되는 상황이라** 상대적으로 젊은 친구들을 많이 채용을 해야 되는 입장인데 고령층을 채용하게 되면 그만큼 젊은 사람들의 채용이 줄어 들 수밖에 없거든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 회사에서는 전혀 반길 수 없는 내용입니다.** (E1-3)

저도 사측의 입장으로 말씀을 드리면 반대의 입장이 될 거 같은데요. **저희도 고령자가 될수록 차이가 많이 나는 편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보험료도 당연히 높게 책정**이 되다 보니까 그 비용 부분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 같아요. (E1-4)

그런 게 고려가 된다고 한다면 기업에서 연장이 우려가 되는 상황이라면, 예를 들어서 제조업에서 공장에서 일하시는 분인데 예를 들어 **60세 이상 되는 분들이 많아, 그런 분들은 이런 4대 보험, 의료보험도 우려가 될 거 같아요.** (E2-1)

대기업은 괜찮을 거 같은데 **중소기업은 아무래도 형편이 어려운 데는 영향이 클 거 같은데요.** 회사측에서 4.5%를 부담한다면요. (W1-3)

그러나 이와 반대로 가입상한연령 연장 시 부과되는 추가적인 보험료 부담은 기업 입장에서 큰 비용이 아니라는 의견도 있었다. 채용 전반에 드는 비용을 생각하면 중소기업이라고 할지라도 크게 부담되는 수준은

아니라는 것이다.

보험료에 대해서도 크게 상관하지 않고 있습니다. (E1-4)

이 연금을 부담하는 거 때문에 그 연령을 쓰기 어렵다 이 문제는 아닌 거 같아요. (E2-3)

**그게 과연 기업에 부담이 될까.** 예들 들어서 직원들 간식 한 번 안 사다 두면, 저는 진짜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회사에서 직원들 국민연금 내 주는 게 부담스러우면, 치킨집 직원처럼 1인 근로자는 그럴 수 있어요. 그게 아닌 이상은. (E2-4)

보험료 부담이 모든 고연령자 채용에서 동일하게 나타나는 문제는 아니다. 오히려 경우에 따라서는 꼭 필요한 인력이라면 보험료 정도는 문제가 아니라거나, 대상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점을 시사하기도 했다. 사실 기업의 입장에서 고용 자체의 필요성을 느낀다면 임금의 4.5% 부담은 크게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다. 요컨대 기업의 입장에서 보험료 부담은 ‘고령자 고용이 얼마나 필요한가?’의 문제에 좀 더 가깝다.

**저희 회사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60세가 그렇게 많을까?** 사실은 보험금도 얼마 안 들 거 같아요. 한창 일하는 40~50대만큼 월급을 줄 거 같지도 않고요.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는 그런 분을 뽑으려고 한 적이 있는데, 대기업에서 은퇴를 하시고 기술적인 면은 있으셔서 저희 기업에 도움이 되려고 뽑으려고 한 적이 있는데 잘 안 되긴 했는데 **그런 분을 모셔 와서 그 정도의 보험료를 충분히 낼 수 있다**라고 회사 입장에서는 생각을 할 거 같아요. (E2-4)

만약에 **고령인 분들의 역할이 있어서 써야 되는 상황**이어서 **사용을 하는 경우**라면 저는 크게 부담이 되지는 않을 거 같아요. 사용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 봤을 때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연령을 채워서 정년을 하시는 분도 없거니와 그 이유는 **그 연세가 되시면 실질적으로 담당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이어서 할 일이 정말 있어서

필요로 해서 있는 경우라면 그 부분은 사실상 상관없을 거 같아요. (E2-3)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하는 연령은 2023년 기준 49.4세로 매우 빠른 편이다(통계청, 2023). 그만큼 기업의 고령 인력 채용 자체가 적다. 따라서 대기업이나 공공부문의 임금체계가 연공임금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혜택을 보는 근로자는 많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고령 인력 채용에서 임금체계는 고려의 대상이 된다. 임금체계에 따른 기업의 부담은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의 퇴직에 일정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는 요인이다.

연공임금체계에 따른 기업의 부담은 보험료가 아닌 임금에 대한 부담이지만, 국민연금 보험료가 임금에 비례하도록 설계되어 있는 상황에서 보험료 부담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좀 더 넓게 보면 고령자 고용 자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기도 하다.

저희는 촉탁직이라는 거 자체가 활발하지 않다 보니까, **고령자들은 급여를 높이 받고 있고 상대적으로 어린 친구들은 적게 받고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으니까 4.5%에 대한, 사실 4.5%에 대한 부담을 생각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급여에 대한 부담이 큰 거 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새로운 급여 테이블, 5년의 갭을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회적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요. (E1-4)

저희도 마찬가지로 호봉제이고요. 나이가 높으면 높을수록 임금이 높고, 회사가 사람을 고용할 때 **임금 자체에 대한 부담**을 느끼기 때문이에요. (E1-6)

그거 4.5%가 이게 또 맞물려 들어가는 얘기인데, 고령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은퇴 시점에 도달하는 **인생에서 최고 높은 임금 수준에 있는 근로자**를 거기서 더 더 올라가게 만드는 **그걸 유지를 해가지고 4.5%를 분담하라 하면** 기업들이 어렵고 임금도 어려운데 이것도 간접비용... 이런 준조세에 준하는 이런 사회보험 비용까지 부담하라면 힘들죠. (S1)

종합하면, 가입상한연령 연장의 1차적인 부담이라고 할 수 있는 보험료는 그 자체로 부담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가입자 개인에게나 기업에게나 고령자 고용의 현황과 맞물렸을 때 그 부담이 분명해진다. 가입자로서는 60세 이후에 적절한 소득이 있다면 추가적 납부를 통해 노후소득을 확보할 유인이 충분히 있지만, 많은 경우 그와 같은 소득을 기대하기 힘들다고 예상한다. 기업으로서는 보험료 자체는 큰 부담이 아니지만 고령자 고용 자체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경우가 많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고령자의 생산성이 높다고 여기지 않는 상황에서 연공임금체계의 영향으로 임금 부담 및 그 임금에 정률로 부과되는 사회보험 기여금 부담은 청년층을 고용하는 것에 비해 과도하다고 여기고 있다.

## 마. 고령자 고용에 대한 영향

가입상한연령 연장의 효과나 부담이 고령자 노동시장의 상황과 밀접히 연관되어 나타난다고 할 때 앞에서는 주로 고령자 노동시장의 현황이 가입상한연령 연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반대로 가입상한연령 연장이 고령자 노동시장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 가입상한연령 연장은 60세 이상 근로자에 대한 비임금 노동비용을 높이는 효과를 갖기 때문이다.

이해관계자들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상당수의 참여자들은 가입상한연령 연장에 따른 비임금 노동비용 증가가 고령자 고용을 위축시키는 효과를 가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저는 관리부 쪽인데 저희도 마찬가지로 금액 나가는 거 올리면 항상 4대 보험을 탁탁 치세요. 금액이 너무 커, 이리시거든요. 그게 당연히 기업자 입장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연금을 더 늘린다? 나이도 많다? 능률도 떨어지는 사람이다?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는 고용을 안 하죠.** 요즘에 청년들도 얼마 받는데, 다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W2-5)

워낙에 일하시는 분들 연령대가 높아지기는 했는데 그분을 쓸 때 국민연금이 없으니까, 국민연금이 건강보험보다 금액이 훨씬 더 적거든요.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는 좋아하셔서, **그거를 다시 4.5%를 회사에서 내 줘야 한다면 회사가 딜레마에 빠질 거 같아요.** (W2-6)

임의가입이 아니고 의무가입이라면 근로자나 사측에서 9%를 5대 5로 연장이 된다는 건데 **저희 같은 경우 시스템상에 정년연장을 3회 정도 한다고 했는데 그거 자체를 다시 검토를 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고, 왜냐면 저희 같은 경우도 보험료가 어느 정도 포션을 일정 정도 차지하기 때문에 **굳이 그런 부분을 감수하면서 해당자들을 연장해 줄 필요가 있나?** (E1-5)

이와 반대로 가입상한연령 연장 자체가 고령자 고용에 대해 갖는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예측도 적지 않았다. 그러나 이 예측은 이미 기업들은 고령자를 제한적으로만 고용하고 있다는 것에 기초한다. 소규모 기업의 경우 현재의 60세 정년하에서도 대부분의 근로자가 60세 이전에 퇴직하고 있으며, 가입상한연령 연장과 무관하게 어차피 이와 같은 경향이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다. 대기업의 경우도 채용되고 있는 고령자가 제한적인 필수 인원이기에 이들에 대한 보험료 부담 증가는 큰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이었다. 앞에서 가입상한연령 연장에 따른 보험료 부담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예측과 동일한 사유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임팩트는 크게 작용하지 않을 거 같습니다.** 왜냐면 실질적으로 인원을 채용을 할 때 예산을 고려하면서 인원을 채용하기보다는 결원이나 프로젝트나 실태를 반영해서 사람이 더 필요하겠구나, 손이 모자라겠구나, 이런 니즈에서 출발을 하다 보니까... (E1-2)

(고령자 고용이) **원래 어렵지 않았나요?** 이거 때문에 딱히 더 어려울 거 같다는 생각은 안 듭니다. (W1-2)

나이 리미트나, 채용 안 되는 부분 때문에 60세 이상을 채용한다 이러지는 않을 거 같아요. **연장되든 안 되든 큰 의미가 없을 거 같아요.** (W2-3)

보험료를 이유로 고용을 회피하는 거는 거의 드물지 않을까 **워낙에 소규모 사업장은 크게 이 호봉제나 이런 임금체계 자체가 사실은 없는 데가 너무 많기도 하고.** (S2)

고령자 노동시장의 현실을 염두에 둔다면, 가입상한연령 연장이 고용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기업 규모에 따라, 직종에 따라 다를 것이라고 전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실제로 이해관계자들도 지불능력이 높은 대기업 보다는 중소기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며, 기업이 필요를 더 느끼는 숙련 직종보다는 비숙련 직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했다. 비임금 노동 비용의 증가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일자리부터 줄이게 된다는 것이다.

월급이 어느 정도 수준이 되시는 분들은 회사에서도 상관이 없는 거 같은데, **청소나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의 경우 타격이 크겠죠.** 회사에서 50%를 내야 한다면 60세 이상들은 안 받고 젊은 분들에게만 기회를 주겠죠. (W1-5)

대기업은 괜찮을 거 같은데 **중소기업은 아무래도 형편이 어려운 데는 영향이 클 거 같은데요.** 회사 측에서 4.5%를 부담한다면요. (W1-3)

저희는 **소기업이라서 되게 영향이 많을 거 같아요.** 왜냐면 너무 어려워서 4대 보험료도 늦춰 주고 하더라고요. 날짜를 연기해 주더라고요. (W2-6)

저희 회사도 비슷한데요. **중소 제조업체 같은 경우는 아주 크지는 않겠지만 영향을 미칠 거 같아요.** (W2-1)

## 바. 제도 시행 방향

찬반을 떠나 가입상한연령 연장을 시행할 경우 정부의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가장 많이 제시된 의견은 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보험료 부담 경감과 관련해서는 저소득 근로자, 자영업자, 소상공인에 대한 보험료 지원 정책과 기업에 대한 보험료 지원 정책이 모두 제안되었다.

섭섭할 거 같아요. 내가 60세 이상의 개인사업자면 계속 9% 내야 되는 거잖아요. 이 사람은 근로자이고 싶은 거는 그 사람의 선택이고 나는 사업을 하고 싶었던 건데 뭐가 차등을 두기보다는 별이의 구간을 설정을 해서 60세 이상은 보험료 몇 %를 감면해 주는 것도 좋은 거 같아요. (E2-2)

일단 고령자들이 보통 이제 60세에서 64세 사이의 고령자들이 들어갈 고용시장은 일자리의 질이 높지는 않잖아요.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되게 소규모고, 그리고 또 고용 형태로 보면 단시간 근로도 많을 거예요. (중략) 사회보험을 어떻게든 적용을 시켜서 그래야지 일자리의 질이 조금이라도 높아질 수 있다라는 게 저희 기본 입장이기도 하고 그런 거를 이제 주장함으로써 이제 정부가 이분들에 대한 지원을 당연히 해야 되고, 지금의 이제 두루누리로는 조금 한계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S2)

우리가 기존에 보험 체계에서도 많은 지원을 좀 하고 있잖아요. 고용보험도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 대한 보험 지원을 해주고 있고, 지원을 해주는데 그게 이제 **가입자 본인에게 대한 지원은 없는 거예요.** (중략) 계속 이렇게 방관을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단계적 설계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간이 과세 구간 8천만 원 이하 또는 1억 미만, 1억 2천 미만 이런 식의 어떤 단계를 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상세하게 완충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기를 바라는 거죠.** 지원책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S3)

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한 정책 역시 제안되었다. 가입상한연령 연장에

따라 추가적으로 부담하게 된 기간에 대해서라도 일정한 지원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정부로부터의 보험료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가입자와의 부담을 재분배하자는 의견, 국민연금 기여금 외의 다른 형태로 기업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 등 다양하게 나타났다.

정부정책이 뒷받침이 되어야 하는 거는 맞는데,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개인에게는 걷는데 기업에게는 안 걷는다거나, 면제를 해 준다거나** 이 정도의 혜택은 줘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E1-3)

사실 갭을 없애야 된다는 거는 사회적으로 동의를 할 수 있을 거 같아요. 그러나 비용의 부담 때문에 반대하는 입장이니까 4.5%는 아니라도 요율의 조정을 통해서 사측의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이거는 장기화시킬 수 있는 (중략) **개인이 7%, 회사가 2%를 한다든지 5년의 기간 동안 요율 조정이 필요한 시기인 거** 같아요. (E1-4)

기업들에게 좀 **건강보험료율도** 이제 7%, 6% 이제 그거 6% 중반 떼고 4~5% 할 때 이명박 정부나 이럴 때 그때는 조금 올려도 그때는 워낙에 낮았기 때문에 괜찮았는데, 이 점이 많이 현실화돼서 더 이상 그때의 인상률을 그대로 가져가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더 낮춰서 가져가야. 보험료를 자체를 안정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또 **법인세도** 아니 왜 그렇게 굳이 그러냐, **어떻게 좀 숨 쉴 수 있게 해주면**, 연금 보험료를 9%에서 12% 해봐야 사용자 1.5% 더 내는 건데 그게 어렵다고. (S1)

가입상한연령 연장의 도입과 관련한 이해관계자 의견 중 흥미로웠던 부분은 가입상한연령 연장과 정년연장을 연계하지 않는 것이 도입에서 유리할 것이라는 점에 정년연장의 핵심적 이해관계자인 사용자 단체와 노동조합의 의견이 일치했다는 점이다. 다만 미묘한 관점의 차이가 있었는데, 사용자 단체의 의견이 ‘정년연장과 연계할 이유가 없다’는 관점이라면, 노조는 ‘정년연장과 연계하지 않아야 도입이 가능할 것이다’는 관점에 가까웠다.

자꾸 이 가입상한연령과 관련해서 연장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 정년과 자꾸 묶는데 저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봐요. 정년연장이 되면 좋죠. 또 아니면 정년연장이 아니더라도 고용연장이 돼서 어쨌거나 만 64세가 끝나는 날까지 내가 일정한 월 소득이 있고, 그걸 그만큼 납부를 하고 더 많은 연금보험료를 타는 아주 이상적인 그런 모습도 가능하겠지만 굳이 그렇게 정년을 연장하지 않더라도 정년 60세 되면 은퇴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지역가입자가 되죠. **지역가입자가 되면 신고 소득에 따라서 내는 거잖아요.** 내가 소득이 없으면 납부예외 신청을 하면 되고요. (S1)

고민이긴 한데 사실 정년연장이 연금 가입상한연령의 선결 조건은 아니라고 봐요. **당연히 그렇게 같이 가야 되는 거지만 이게 선결 조건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실제 너무 지금 그렇게 되면은 이게 너무 느려질 것 같아서.** 그리고 사실 저희도 이제 현실적으로는 이 현장에서 정년연장의 효과를 보는 사업장의 규모는 많지 않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고 (중략) 굳이 정년연장은 저희가 노동계가 당연히 요구를 해야 되는 주장이긴 하지만 이게 이제 선결 조건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있어요. (S2)

노사 양측이 가입상한연령 연장과 고용연장을 분리하는 것에 동의하고 있다는 점은 이 제도를 도입하는 시점에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양측의 미묘한 입장 차이를 보면, 사용자 단체가 정년 연장 논의로의 연계를 경계하고 있는 반면, 노동조합은 다음 단계로 접근해야 할 과제로 보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점은 결국 가입상한연령 논의가 고령자 고용에서 정년연장이냐, 고용연장이냐의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 2. 고령자 노동시장과 고용

가입상한연령 연장의 핵심이 60~64세의 소득이 있는 가입자들이 국민연금에 기여하도록 하는 것에 있다고 보면 ‘소득이 있는 가입자’를 결정하는 요인으로서 고령자 고용 문제와의 연관성을 피할 수는 없다. 제도의

도입 시점에서 고령자 고용 문제는 논외로 하고 가입상한연령 연장에만 초점을 두더라도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가입기간 연장을 통한 노후소득 제도라는 제도 도입의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는 고령자 노동 시장 문제에 주목할 수밖에 없다. 이하에서는 이와 같은 관점에서 고령자 고용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 가. 고령자 고용 확대의 필요성과 경향

대부분의 이해관계자들은 고용기간이 종전보다 연장되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였다. 이는 인구구조의 변화와 생애과정의 변화 같은 사회 환경적 요인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는 점에서 이해관계자 간 입장 차이에 특별히 영향을 받지 않는다. 면접 참여자에게 고령자 고용에 대한 견해를 물었을 뿐 아니라 개인적인 은퇴 계획을 물었을 때도 대부분은 적어도 60대까지 일하고 싶다고 응답했다.

예전의 60세가 아니잖아요. 지금 60세는 예전 40~50세로 평균을 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실 저도 몇 년 안 있으면 60세인데 지금 같아서 20년 더 일할 수 있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또 실질적으로 많이들 활동을 하고 계시고 하실 수 있는 능력들도 다 계시거든요. 지금의 60세는 옛날의 60세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정년이 늘어가는 게 젊은 세대 이런 거를 떠나서 **일할 수 있을 때 단계적으로** 늘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실 거예요.** 저희들 세대에 서는요. (W1-1)

젊은 사람의 장점도 있지만 나이 든 사람의 직장생활의 경력과 사람을 다루는 분위기 이런 것도 무시 못한다고 생각을 해서 **기회가 주어지면 정년이 연장되어서 조금 더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면 좋겠어요.** (W2-4)

지금 우리 인구구조로 봤을 때는. 당장 지금 5년 전에 40만 명 태어났던 신생아를 지금 26만 명이 태어났는데 40%가 줄었는데 이거를 어떻게 늘립니까? 그러니까 **있는 인구를 일터에 더 오래 붙잡아둬야 되는데.** (S1)

일부 참여자들은 가입상한연령 연장과 관련해서도 고령자의 고용 기간 증대는 필수적인 조건이라고 설명한다. 현실적으로 직장에서 충분한 고용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국민연금 기여금의 납부 기간만 연장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한편으로 이는 60세 이후에 보험료 납부는 의무화되고 경제활동은 자영업 중심이 될 경우 사용자 기여금의 상실로 인해 보험료 부담은 더욱 증가하게 되는 상황을 우려한 것이기도 하다. 국민연금의 가입-수급 간 공백뿐 아니라 노동시장까지 고려한 퇴직-가입-수급 간 공백을 없애는 접근이 필요하다는 시각이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공공기관이나 대기업 이런 데 정년까지 계속 가는 거죠. 법적으로 60세로, 말이 조금씩 나오는데 5년 전부터 일본처럼 **정년을 연장**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시스템까지 가야지 노동자들이 아무래도 안심하고 적극적으로 따라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게 **밀바탕에 깔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저런 제도가 시행**되어 버리면 유럽처럼 폭동 나는 거예요. (W1-6)

국민연금, 퇴직연금도 적립이 되고 개인연금 들어가는 것도 있고, 저는 기본적으로 생각이 **65세에 연금을 주면 65세까지는 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예요.** 왜냐면 움직일 수 있을 거 같고 60세가 할아버지도 아닌 거 같고, 옛날에는 환갑이면 할아버지라고 했는데 지금은 잔치도 안 하잖아요. 70세 돼도 안 하시는데, 60~70세 공백기가 되게 애매한 시기인데 저 같은 경우는 **자꾸 연금 주는 시기가 뒤로 가니까 그 전까지는 집사람 눈치도 보이고 일을 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구요. (W2-3)

전체적으로 사람들이 **65세까지 일하는** 거를 다 믿고 회사 쪽에서 아무런 그런 게 없을 때 시작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으면 고스란히 피해는 저희가** 받겠죠. (W2-5)

어떤 참여자들은 인구변화와 생애과정 변화에 대응하는 핵심은 국민연금 같은 복지제도보다 고령자 고용에 있다는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다. 가입상한연령 연장은,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더라도, ‘복지’ 차원의 문제인데 좀 더 근본적인 대안은 ‘노동’에 있다는 것이다. 참여자에 따라서는 복지제도 자체에 대한 부정적 견해로 인해 이와 같은 견해를 보이기도 했지만, 노동시장의 변화가 국민연금제도 안정화의 전제조건이라고 보는 시각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다.

국민연금이라는 게 복지가 가장 큰 목적이잖아요. 과연 이런 부분들을 늘려서 일부 계속 근로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국민연금이 기간 늘리고 그런 거에 포커스를 맞출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근로시장이나, 어떻게 보면 젊은 사람들도 취업하기 어려운 시대잖아요.** (W1-4)

연금도 보험료 내는 만큼 많이 내면 많이 갖고 가는 게 상식적인 건데 연금이라는 전제에 복지라는 게 깔려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복지가 과해지면, 프랑스 같은 경우도 멀쩡하게 생겼는데 거지예요. (중략) 정리를 하자면 **우선적으로 고용안정이나 내가 나이를 먹어도 건강하다는 전제라면 노동을 계속 이어 나갈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이** 되기를 바라는 거랑. (E1-2)

노동시장 참여자들의 이와 같은 바람과 발맞추어 실제로 고령자 고용이 확대되는 경향은 분명하게 확인된다. 기업 규모나 업종에 따른 차이는 있지만 과거에 비해 고용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면접에 참여한 이해관계자는 이 점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었다.

회사 입장에서는 진짜 숙련된 사람이 필요한데 막상 사람을 고용을 해야 되는데, 없어서 고용이 힘든 경우가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정년이 지났어도 그 일에 숙련이 되면 그만두기 아쉽고 해서 촉탁으로 쓰는 경우도 있고 그렇거든요.** 젊은 사람들이 진짜 힘든 그런 일은 많이 안 하려고 해서 기술직이라든지 촉탁직을 쓰는 회사들이

있더라고요. (W2-2)

저희는 오히려 반대인 게 저희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60대 이후 퇴직자 분들을 축적하고 있는데 회사에서는 지금 정년이 연장된다는 거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정년까지 계셨던 분들이 기여가 쌓여 있기 때문에 한 분이라도 더 많이 계셨으면 생각하고 있습니다. (E1-5)

사용자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저희는 현장에서는 되게 고령 인력들을 사용하고자 하는 요구가 굉장히 점점 높아지고 있고, 네 저희는 최대한 그 상황에서 근로 조건이 저하되지 않도록 싸울 수밖에 없는 거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인력이 필요하면 당연히 인력을 어떤 식으로 간에 채용을 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인건비 문제를 알아서 조정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S2)

## 나. 고령자 노동시장의 현실과 문제점

그러나 잘 알려진 것처럼 우리나라 고령자 노동시장의 상황이 노동 시장에 참여하고자 하는 고령 노동자에게 우호적인 것은 아니다. 2020년 기준 저임금 근로자(중위임금 2/3 이하)의 비중은 전체 근로자 중 21.1%이지만, 60~64세의 경우 33.6%로 높게 나타난다(전성진, 2023, p.44). 특히 60~64세 인구는 55~59세 인구와 비교할 때도 상용직 비중이 크게 낮고, 비경제활동인구 비중이 높은 것으로 확인된다(전성진, 2023, p.46).

이해관계자들과의 인터뷰 과정에서도 고령자 노동시장의 현실과 그로 인한 문제들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다. 가장 두드러진 문제 인식은 고령자의 노동이 증가하고 있다고는 해도 기존 일자리에서 계속 고용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점이다. 50대 중반 이후까지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계속 근로하는 것은 현재도 상대적으로 상황이 좋은 일부 노동시장의 이야기일 뿐이다.

공기업 아니면 60세 이상까지 근로를 하는 분이 많지 않을 거 같아요. 현실이 그렇잖아요. (W1-7)

새로운 일자리를 구한다는 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저희 회사도 마찬가지인데 젊은 사람이 없거든요. 가장 젊은 사람이 40대니까요. (W2-1)

FGI에 참여한 근로자들은 설사 법정 정년을 상향 조정한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상황에 크게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도 법정 정년은 60세이지만 많은 기업에서 60세 정년이 지켜지지 않는 상황이고, 이 상황에서 국민연금의 가입상한연령을 연장하거나 심지어 법정 정년을 조정하는 것 역시 그다지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단지 법제도뿐 아니라 고령자 노동시장의 현실이 개선되어야 가입상한연령 연장의 의미가 있다는 시각이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 갭을 줄이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나 생각이 듭니다만 지금 65세까지 일할 수 있는 기업이 얼마나 될까요? 저는 그거를 감안해 주셔야 할 거 같아요. 과연 그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W1-2)

저는 사실 법정 정년이라는 게 크게 의미가 있나 싶거든요. 왜냐면 지금도 60세라고 하지만 대기업도 같은 연배나 선후배 보면 그게 아니거든요. 법정 정년만 65세로 늘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고요. 그것보다는 실질적으로 기업에서, 기업에서는 이익을 취득하는 게 목적이니까 어쩔 수 없을 수는 있겠지만 사회적 합의에 의해서 어느 정도는 보장된 금액에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라든지 그런 게 우선되어야 의미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 의미가 없을 거 같아요. (W1-4)

참여자들은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의 계속고용 가능성은 직종이나 성별에 따라 상이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고연령 여성은 남성에 비해 고용될 가능성이 낮고, 업종·직종이 숙련 노동을 필요로 하는지, 고용이 확대되는

추세인지에 따라서도 차이가 나타난다. 전반적으로는 50대 이후 자신의 기존 일자리에서 계속 고용되기를 기대할 수 있는 일자리는 소수이며, 대개는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야 하지만 기존의 일자리에 비해 고용의 질은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

**저는 여성분들이 더 취업하기 어려워서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래도 그 나이가 되면 책임자나 헤드급을 원하시기 마련인데 아무래도 제가 있는 업종 자체가 보수적인 곳이다 보니까 남성분들을 더 선호하시는 거 같아요. (W1-2)

업종마다 틀릴 것 같아요. **사무직 이런 쪽은 주위에 보면 상당히 어렵고요.** 저도 대학을 상경계 쪽으로 나와서 그쪽으로 했는데 은행을 다니는 친구들은 거의 55세 정도에 나와서, 물론 거기는 많이 받잖아요. 그냥 주식투자 하는 친구도 있고 일반 대기업 다녔던 친구들 보면 남들처럼 55세에 건설회사 나와서 그냥 있고, 한 친구는 기술 쪽 전기기사 자격증 따서, 그쪽은 일이 많더라고요. 그렇게 **전환하지 않으면 자기가 배웠던 것을 가지고 하는 게 사무직 쪽은 정말 어려운 거 같아요.** (W1-4)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기업 입장에서는 **고용이 확대되는 인더스트리 같은 경우는 고려를 할 수 있을 거 같아요.** 반도체나 배터리 회사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증가가 됨에 따라서 숙련된 노동자가 필요하니까 고려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산업들, 침체되는 산업이나 내연기관 그런 쪽에서는 지금 의사결정에서 청년연장이 온다면 받아들이기 힘든 입장이지요. (E1-6)

극과 극인 거 같아요. **기업에서 55세 이후 근로자로 남는다는 거는 정말 인정 받았다, 정말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인 거고,** 저는 기업에서는 찾기 힘들 거 같고 과거 60세들보다 지금 취업한 60세 이상이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분들은 기업에서 받아 주기 때문이라기보다는 **그분들의 생존을 위해 직업을 어떻게든 찾은 분들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말씀하셨을 때 딱 떠오른 직업이 요양보호사, (중략) 마트 캐셔 분들이라든지요. (E2-1)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이미 50대 이상으로 고용되어 있는 사례는 매우

적으며, 법정 정년과 무관하게 50세가 되면 퇴직을 종용받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이들에게 고령자 고용이 증가하는 경향이나 65세까지의 가입상한 연령 연장은 현실성 없는 제안으로 느껴진다.

(가입상한연령 연장에 대해) 동의를 하고 안 하고 전에 현실감이 없기는 하거든요. 왜냐면 저는 중소기업에서 일을 하고 있고 100명 미만인데 보통의 회사는 제조업 말고는, 흔히 말하는 스타트업이라든지 회사들은 60세, 사실 저희도 대표님 제외 하고 50대 한 명이거든요. 이전에 다닌 몇 개 회사에서도 50 넘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요. (중략) 정년퇴직은 직장생활 초반에 한 큰 조직 말고는 한 번도 없었어요. 50~100명 규모의 조직을 다녔는데 한 명도 없었거든요. 기업들의 문제는 아니었던 거 같고 사회구조의 상황인 거 같아요. 되게 현실감이 없어요. (E2-1)

저희 같은 회사들은 어쩔 수 없는 거 같아요. 50대는 굉장히 임원들인데 실무를 하지 않을 거란 말이죠. 100명의 규모에서는 대기업이 아닌 이상 업무를 나눠서 한다기보다는 한 명이 일당백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고연령대 관리자급보다는 실무 인원이 더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40대 후반이 맥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 같아요. (E2-4)

제가 봤을 때 저희 나이에도, 아무리 성차별 타파하자고 해도 특히 여자 입장에서 더욱더 60세 정년을 채우는 게 힘들거든요. 저희 아빠만 봐도 푸시가 내려와서 나오셨어요. 정년이 한참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퇴직금 더 챙겨 줄 테니 지금 나가는 게 더 좋을 거 같다. 중소기업은 퇴직금을 더 챙겨 주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고 너 내일 나가, 하면 나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거든요. 그렇다고 은행이나 공기업이나 대기업은 그나마 챙겨 주는 거라도,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이 많죠. (E2-2)

따라서 고용의 다수를 차지하는 중소기업 종사자들에게 현실적인 고령 근로는 자영업으로의 전직이 아니라면 축탁직 재고용이 된다. 그런데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축탁직 재고용을 고용의 방식이 아니라 일종의 프리랜서 계약으로 대체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고용에 수반되는 각종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는 고령 근로자들이 자영업으로 완전히 전직

하든 아니면 촉탁직으로 재고용되든 결과적으로 사회보험료 전체를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상황임을 의미한다. 이는 가입상한연령 연장에 따른 가입자의 부담을 높이는 요인이다.

촉탁직을 권장을 하려면 저희 같은 경우 1년 프리랜서, 2년 프리랜서를 하면 굳이 4대 보험을 가입 안 시키거든요. 비용도 비용이거니와 사업소득, 기타소득으로 빼 버리면 당사자에게 떼면 되는 거고, 비용에 대한 부담 때문은 아닌 거 같고 서로 머리가 아파서, 만약에 그런 식으로 가게 돼서 국민연금을 가입을 시키려면 또 다른 제도가 계속 붙어야 될 거 같아요. (E2-2)

많은 기업에서 그렇게 하거든요. 부담이 되죠. 굳이 안 내도 되는 4대보험인데 기업과 일하는 분 간의 암묵적 합의, 저희는 물어 보거든요. 그분이 어쨌든 법적으로는 4대 보험 가입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니까. (E2-1)

저희는 심지어 20대들도 단기계약 근무를 할 때 그분의 의사를 물어봐요. 왜냐면 그분들은 단기로 일하면서 소득세와 4대 보험 가입을 하면 가져가는 비용이 적어지는 거고 그만큼 기업에서 재정적 부담이 있으니까 물어 보고 서로 도움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 거 같아요. (E2-5)

결과적으로 고령자 고용이 늘어나는 경향이라고 해도 근로자들은 50대 중반 이후에 소득을 유지하기 힘들 것이라고 여기고 있다. 촉탁직 재고용이 됐든 자영업 등으로의 전직이 됐든 고용은 불안정해지고 소득은 상당히 감소한다. 그나마 촉탁직 재고용조차 기업의 의무는 아니기에 모든 고령 근로자가 기대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저는 당장 내년이 정년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걱정이 됩니다. 내년에 촉탁 일을 하게 될지 아닐지는 사장 마음이니까, 지금도 새로운 일을 찾으려고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마땅히 할 일이 없어요. 경비나 그런 일을 찾아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사실 암울한 상태죠. 돈 들어 갈 데는 많은데 어떻게든 버티긴 버텨야 되는데

이번 주에도 납부를 해야 되는데. (W2-1, 59세)

60세가 넘으면 같은 일을 해도 급여가 많이 줄어드는 거 같아요. 61세 전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61세 넘으니까 매년마다 계약갱신을 하는 촉탁직도 많이 발생을 하고요. 나이가 많다는 거 때문에 무시를 당한다고 해야 하나?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회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는 옛날보다 지금이 더 강해진 거 같아요. 생활을 해야 되고, 옛날에는 자녀들이 많이 도와줬는데 지금은 그러지 않잖아요. (W2-2)

50대 중반은 여전히 지출이 많은 연령이다. 이 점을 고려하면 종사상 지위 변화에 따른 보험료 부담 증가와 함께 개인 및 가구의 실질소득 감소 우려가 가입상한연령 연장에 대한 근로자들의 입장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 다. 정년연장 vs. 고용연장

고령자 고용이 증가하는 것이 어느 정도 필연적이라고 했을 때 그 증가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근로자의 입장에서 현재 노동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고용연장은 선별적으로 재취업할 기회가 부여되는 대신 재취업 시에도 고용의 질이나 임금수준은 현저히 낮아지는 경향에 가깝다. 이 점을 잘 알고 있는 근로자들은 고령자 고용연장이 촉탁 재고용 같은 불안정한 일자리 기회의 부여가 아닌 정년연장의 방향을 지향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의무가입연령이 연장이 되려면 정부정책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거는 법적으로 은퇴 기간을 늘려야죠. 그거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면 전혀 실효성이 없는 거고요. (W1-2)

점점 나이들이 들고 있으니까 나라에서 어느 날부터 정년이 65세야, 내쫓는 거

안 돼, 65세까지 일하고 싶다면 시켜줘야 돼, 그렇게 하면 당연히 가입해 줘야 하는 거 같아요. 회사 입장에서는요. 다 같이 100살까지 사는데 65세까지는 본인이 원할 때는 일하는 거야, 이러면 그게 **회사에서 그 사람 5년 더 일찍 내보낸다고 크게 회사가 급여 안 줘서 부자되고 그러지 않을 거 같아요.** (중략) 그거를 생각해 보면 **회사의 문제가 아니라 나라에서 정년을 늘려 주면 될 거 같아요.** (E2-4)

그러나 정년연장은 기업이 60세에 도달한 근로자와의 고용을 ‘나이’를 이유로 종료할 수 없는 상황을 의미한다. 기업으로서는 상당한 부담을 안게 된다. 앞의 보험료 부담 부분에서도 살펴본 것처럼 기업은 보유할 필요성을 느끼는 일부 고령 인력을 고용하는 것을 바랄 뿐이지 전체 근로자의 고용기간 연장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점은 인구 고령화에 따른 고령자 고용 필요성 증대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선호가 정년연장보다는 축적적 재고용 등의 선택적이고 유연한 고용으로 기울게 되는 배경이다.

정년을 연장한다기보다는 **고용을 유연하게 해서** 정년이 되면 은퇴를 하되 말씀하신 대로 계약직이나 이런 제도를 활용해서 급여를 조정하고 현실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연장을 시켜버리면 굉장히 부담이 될 거예요.** (E1-3)

제가 만약에 대표 입장이라면 부담스럽네요. 왜냐면 사실 회사에서도 좀 더 새로운 젊은 쪽을 선호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이런 식으로 의무적으로, 요즘 분위기가 **법정 정년을 연장할 수 있다는데** 그거는 위험한 생각이거든요. 법적으로 연장을 한다, 일반회사들이 그거를, 물론 대기업 정도는 따라갈 수 있을 거 같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기업은 할 수 있겠지만 중소기업이 하기에는.** (E2-5)

제가 회사의 경영진이나 인사결정권자로 봤을 때는 굳이 메리트가 없는 인력을 65세까지, 만약에 규제화가 되면, 지금 사실 대기업이나 공기업이나 그렇지 중소기업은 **정년이라는 게 있어도 강제를 해도 편법으로 그만두라고 하면 그만둘 수밖에 없는 실정**이거든요. (중략) 사실 저희 대표님은 어린 사람이 들어올수록 편하다 주의예요. 막 부려 먹고 막말할 수 있고요. 그런데 회사 입장에서는 현실성이 없어요.

그리고 중소기업이잖아요. 급여가 부담이 사실 돼요. (E2-2)

정년연장은 기업 입장에서 선택적이고 유연한 고령자 고용이 어려워지는 요인이기도 하지만 동일한 인원을 고용했을 때 실질적인 부담이 증가하는 요인이기도 하다. 평균 근속을 고려할 때 우리 노동시장에서 임금연공성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근로자는 주로 대기업과 공공부문으로 한정되지만(성재민, 2021), 연공임금이 지배적인 임금체제로 자리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생산성의 차이가 없다고 가정했을 때 고령 근로자의 채용은 사용자에게 추가적 부담이 될 수 있다.

기업 시점에서 말씀을 드리면,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회사도 고령층이 점점 늘어나다 보니까 **고령층이 페이 자체도 높거든요.** 이분들이 차지하는 예산이 경영 측면에서 상당히 부담이 되는데 **아무리 임금 피크제가 적용이 된다고 해도 젊은 분들 대비해서는 가져 가시는 포션이 크다** 보니까 기업 측면에서는 플러스보다 마이너스가 확연히 드러날 거 같아서 기업 관점에서는 반길 만한 메리트는 딱히 안 보입니다. (E1-2)

저희 같은 경우는, 다른 회사도 비슷하겠지만 연봉제이고 능력 위주로 한다고 해도 **연차가 올라가면서 급여도 올라가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아무래도 직급도 오르고 연차가 오른 사람들이 급여를 많이 가져가는 것도 맞아요. **회사 입장에서는 부담스럽죠.** 왜냐면 그분들은 매니저로 빠졌는데, 현장을 뛰는 것도 아니고 현장에서는 서운한 부분도 있겠죠. 물론 그분들도 예전에 현장을 뛰던 분들이신데 **그분들이 기간을 더 의무적으로 연장을 했다면 법적으로 더 일할 수 있는 그런 게 된다면 회사 입장에서는 더 부담스러운 거죠.** (E2-5)

이와 같은 기업의 부담은 특히 중소기업 현장에서 정년연장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고령자 고용이 이루어지지 않는 배경이 된다. 기업의 지불능력이 낮고, 고령자 고용이 임금체제와 유연성 측면에서

이중의 부담이 되는 상황에서 규제 순응도가 낮아지는 것이다. 이는 규제와 지원에서 상당히 정교한 접근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정년연장 및 그와 연계된 가입상한연령 연장이 모두 일부의 혜택으로 귀결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한다.

저는 50세를 바라보는 나이니까 정년을 생각하고는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있는 인원들이 우리 회사에서 한 10년은 일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저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랬을 때는 기업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 보면 저는 사실은 기업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울 거 같기는 해요. **이 인원들이 앞으로 10년을 더 일한다, 제가 20년을 일을 하면서 임금 피크라는 제도가 있기는 하지만 그거를 적용했던 회사는 한 번도 없었던 말이죠.** (E2-1)

**사실은 여기처럼 숫자로 해서 만 60~64세로 하자는 거는 너무 획일적이잖아요.** 실제 회사 입장에서는 저희도 마찬가지로 연령대가 많이 올라가 있어요. 30대가 주축이었다면 언제부턴가 40대 중반까지 올라가 있거든요. 물론 그렇게 연령대가 올라오면서 기술적인 경력도 따라오니깐 좋은데 문제는 아무래도 나이가 있다 보니까 새로운 기술에 대한 접근성이라든지 저희만 하는 게 아니라 고객사들도 있지 않습니까. **(중략) 획일적으로 늘려 놓는다고 해서 기업 입장에서 그대로 따라간다는 거는 어폐가 있는 거 같아요.** (E2-5)

물론 그렇다고 해서 법정 정년의 효과성이 없다는 결론으로 선불리 접근해서는 안 된다. 60세 정년의 노동시장 영향과 관련해서도 그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연구도 있지만(남재량, 2018; 정진호, 2022), 50대 후반 노동시장에 유의미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연구도 있다(성재민, 2023). 따라서 가입상한연령 연장에 맞추어 정년연장이 이루어질 경우 그 효과 역시 사전적으로 쉽게 예상하기 어렵다. 정책결정자로서는 두 가지 가능성을 모두 고려해 선택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분명한 것은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 속에서 고령자 고용에 대한 사회적 필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며, 이에 대응하는 고령자 고용정책은 본 연구의 주제인 국민연금 가입상한연령 연장의 측면에서도 중요하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고령자 고용연장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기업과 근로자의 입장은 정년연장이냐, 축탁 재고용과 같은 유연 노동이냐를 두고 상이하게 나타난다. 기업으로서는 축탁 재고용 같은 방식을 통해 고령 근로자 중 기업에 필요성이 크다고 여기는 소수의 핵심 인력이나 비용이 아주 낮은 - 따라서 근로자 입장에서는 일자리의 질이 낮은 - 근로자만을 선택해서 유연한 계약형태로 고용하기를 희망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기업의 요구가 관철될 경우 고령자 노동은 계속해서 취약할 가능성이 크며, 이는 근로자 입장에서 가입상한연령 연장 같은 사회보장적 조치에 대한 부담을 높인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정년연장을 통해 기존의 일자리에 좀 더 오래 머무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이 경우 기업은 가입상한연령에 따른 보험료 부담 이전에 임금 부담이 커질 것을 우려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가입상한연령 연장도 부정적으로 이해하게 될 것이다. 여기에 기업의 부담 증가가 사전적 고용조정 등의 방법을 통해 법정 정년 규제에 미순응하는 경우를 증가시킬 우려도 있다.

가입 상한 연령을 높였다 하더라도 조금 room을 좀 주신다면, 65세까지 가든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걸 여력이 없다고 한다면 정년 60세로 놔둬도 물론 이제 고용 관계가 이제 종료가 되는 거죠. 굳이 정년과 별개라기보다는 정년에 굳이 그렇게 엮을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이것만 딱 대놓고 보면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기업에다가 어쨌든 조금 기업에 좀 유연성을 좀 주는 게 제일 이제 근본적인 처방이라고 봐요. (S1)

정년 문제도 저희가 정년 법제화를 주도적으로 추진을 했었던 단체이기도 하고 그 정년을 연장해야 된다는 근거는 연금 수급 연령이랑 맞추자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60세 법제화를 이제 그 근거로 해서 했었고 실제 다른 외국에서는

그렇게 가고 있는 분위기니까 근데 이게 65세까지 넘어갔는데 이 공백에 대해서는 정년도 따라오지 못하고 국민연금도 이제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그냥 뒤서는 안 된다는 인식이 큰 거죠. (S2)

## 라. 고령자 고용 확대를 위한 지원

인구구조와 생애과정의 변화 속에서 고령자 고용 증가는 필연적이지만 이를 위한 방향에서 기업과 근로자의 이해는 상충되고 있다. 고령자 고용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면접에 참여한 이해관계자들은 고령자 고용 및 이와 연관된 가입상한연령 연장을 위한 여러 가지 법적·정책적·제도적 과제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그리고 짐작할 수 있는 것처럼 이해관계자의 상황에 따라 제시된 제안에는 차이가 있었다.

앞에서 중소기업의 경우 현재도 50대 이상의 고령 근로자의 고용이 적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2013년 개정으로 법정 정년이 60세인 점을 보면 법정 정년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는 얼핏 정년에 대한 규제가 중소기업 현장에서 무용하다는 결론이 될 수도 있지만, 중소기업 인사 담당자들은 오히려 반대의 의견을 제시했다. 국민연금의 가입상한연령 연장이 중소기업에서 유의미하기 위해서는 고령자 고용을 강제하는 규제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에 이런 고령화된 인력이 기업에 보장이 되려면 정부에서 일정 비율을 가져갈 수 있게, 기업마다 몇 명 근무하면 어느 정도 비율이 있어야 된다고 하면 억지로라도 있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중략)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부 차원에서 조치가 되지 않는다면 기업에서는 그럴 이유가 없을 거 같아요. (E2-1)

만약에 이 제도가 잘 유지가 되려면 **법적으로 강제가 되어야 돼요. 무조건 비율적으로**, 과연 그렇게 했을 때 기업에 이익이 되는가, 나라에 이익이 되는가, 크게 보면 의문이고 이게 중소기업의 생리에 있어서 타격감도 주지 않을까. (E2-2)

중소기업은 너네 판단에 맡겨, 그러면 당연히 나가라고 하겠죠. **이렇게 하면 너네에게 제재가 있어, 그러면 대기업 같은 경우 높은 사람이랑 품수 써서 방법 만들겠지만 중소기업은 하라는 거 하고** 거기서 안 벗어나려고 하고 그 틀에 맞춰 하고 있는 거 같아요. 오히려 저희 회사는 그렇게 틀이 만들어지면 그렇게 하는 거구나 하고 할 거 같아요. (E2-4)

기업의 고령자 고용을 촉진하는 수단으로 기업에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사실 현재도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이나 고령자 고용지원금 같이 기업의 고령자 고용을 지원하는 제도들은 마련되어 있다. 연구에 참여한 인사담당자와 근로자들의 기존 제도에 대한 인지나 견해를 확인하지는 못했지만, 전반적으로 법정 정년이라는 규제에 상응하는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입장이었다.

연장이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지금 상황에서 의무가입만 연장이 된다고 하면 퇴직을 한 다음에 이 사람이 새로 취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이상 되시는 분들이 새로운 데를 간다고 하면 예상되는 게 뻐한 게 어디서 경비라든가 일용직이라든가 그런 데를 가신다는 건데 그런 데가 아닐 수도 있는데 **제가 만약에 60세 이상을 고용하는 입장이라고 한다면 정부에서 세무조사 유예라든가 그런 식으로 혜택을 주는 방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1-5)

저도 같은 의견인데 65세로 연장을 시키는 거는 기업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거고 **예를 들면 세제 혜택을 주거나 공제를 넓게 준다거나 하면** 아무래도 유연하게 회사에서는 급여 테이블을 조정하면서 세제 혜택도 받아가면서, 지금보다는 활발해지지 않을까. (E1-6)

대신에 다른 나라에서 들은 걸로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기업에 정부가 재정을**

지원해 주더라고요. 그 사람을 계속 데리고 있으라고. 기업도 부담이 되니까, 그러면 사회적으로 부담이 덜어질 거잖아요. 큰 그림이 있지 않으면, 갭이 커지면 5년 동안 다른 일을 해서 매우든가,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W2-3)

개별 근로자나 인사담당자들과 달리 사용자를 대표하는 단체의 전문가들은 기업의 정년연장 부담 자체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우선 임금 연공성에 따른 고령자 고용 부담 완화를 위해 임금체계의 조정이 필요한데 여기에는 단기적으로 임금 피크제를 더욱 유연하게 적용하도록 하는 것과 좀 더 장기적으로 임금체계 자체를 변화시키는 것이 모두 포함된다.

전제조건으로 해서 임금 피크제의 탄력성을 좀 더 넓혀줘야 한다. 지금은 80%, 60% 이렇게 그런 포인트가 있잖아요. 그거를 좀 자율적으로 정리가 되어야 이런.. 왜냐하면 그 사업주 입장에서는 또 다른 비용이거든요. 또 다른 비용. 사업자는 이미 끝났다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미 끝났죠. 저는 이제 어차피 근로자 입장을 얘기하는 것보다는 사업주의 입장에서는 볼 수밖에 없어요. 사업주 입장에서는 또 다른 비용이에요. (S3)

저희가 **직무 성과 중심 임금 체계**라고 한다면 호봉제가 아닌 이쪽으로 좀 와라 유연성을 좀 주자는 차원에서 그런 표현을 용어를 쓰고 있는데요. 하여튼 **연공서열적인 그런 임금 체계 또는 인사 체계에서 좀 탈피를 분명히 해야 될 것이고** 그게 곧 유연성이라고 보고요. 그렇게 되면은 기업에서 할 수 있는 옵션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게 확보가 되면. 굳이 정년연장? 못할 이유 없습니다. 어차피 나이가 들어서 성과가 떨어져? 그 성과가 평가에서 뭐 이렇게 조정이 되니까, 근데 나이가 들었는데도 성과가 좋고 더 왕성하고? 그러면 더 줘야죠. 당연히 그런 체계를 좀 만들어주면 좋겠다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임금 체계가 아직도 호봉제적인 요소가 남아 있는 곳은 조금 직무 성과급제 요소를 좀 한 번쯤은 검토를 해야 된다는 차원** 그렇습니다. (S1)

사용자 단체들은 고령자 고용을 증가시키기 위한 방안이 민간에 대한 고용규제를 완화하는 것이라는 입장 역시 밝혔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고령자 고용에 대한 근로자와 기업 간의 상충이 고용의 양보다는 오히려 고용의 질을 두고 나타나고 있음을 고려하면, 이와 같은 의견은 상충적 입장의 절반만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규제 완화를 통해 고령자 일자리의 양을 늘릴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고용안정성이나 임금수준은 더 낮아질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북유럽 선진국은요, **고령자에는 차등이 적용이 돼요.** 그다음에 청소년들은요, 차등 적용해요. 목적이 다르다는 거야. 개들의 최저임금의 제도는 목적성이 있어요. (중략) 일할 사람에 대한 평등권을 무조건 중요시해요. 하지만 그 일을 하면서의 취약성에 대해서 인정을 하는 거예요. 세 집단에게 적용하거든요. 하나는 청소년 어린 친구들, 또 하나는 60대 노인들, 그다음에 경단녀. **이 세 개 집단에 대해서는 차등 경영을 법적으로 보장해줘요.** 거기서 주는 메시지가 있잖아요. (S3)

저희들이 어쨌든 주도해 나가고자 하는 방향은 뭐냐 하면 **사용자들에게 아까도 말씀드렸드시피, room을 주고요.** 고용연장이 됐든 정년연장이 됐든 room을 좀 주시고, 그러면 또 임금 부분에서 지금의 어떤 호봉제 중심의 **임금체계를 유연하게 유연성을 좀 주시면** 이것은 “가입상한연령을 높이는 것에 대해서 크게 반대할 게 아니다. 왜냐하면 이대로 그럼 가자는 얘기냐? 지금 이대로 이대로 지금 기금 고갈 될 때까지 가자는 얘기냐? 나중에 더 큰 보험료 폭탄을 맞을 건데?” 이렇게 저희가 설득은 가능하리라고 보거든요. (S1)

그게 이제 당장은 그거를 불을 일으키기 위해서 정부가 뭐 어떤 지원을 하지만, 정권이 바뀌면 뭐든지.. 지속 가능한 방식은 아닌 것 같고요. 문제는 **민간이 알아서 고령자를 고용할 수 있는 기업문화, 그런 틀을 만들어 제도적인 틀을 만들어주면 될 문제지,** 지금 저는 사실 정부지원금 가지고 하는 거는 사실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보고요. (S1)

기업의 고용에 대한 정부의 간접적 지원이나 규제적 수단의 동원을 넘어 좀 더 근본적으로 고령자들이 노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다만 이에 관해서는 주로 기업 문화나 사회적 분위기 등 구체적인 정책으로 보기에는 모호한 논의가 많았다.

실제 보면 주위에서 오래 근무하신 분들 보면 애들 때문에 자기가 예전에 다른 데 가 있는데, 예를 들면 그쪽 부서에서 자문을 하다가 감사실로 갔는데 감사하고 할 때 같이 따라 나와서 한다거나 하면 되게 애매하더라고요. 체력적으로도 집중력이 떨어지고 하거든요. 그 사람도 역할을 주기는 해야 되는데 **회사 자체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클리어하게 조정하고 사회 전체적으로도 기업들이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어야** 하지 않나 싶거든요. (W1-4)

기업 문화가 왜 55세인데 나갈 생각을 하나는 거죠. **회사, 기업 문화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일본 같은 경우도 옛날에 미팅해 보면 할아버지가 들어오시더라고요. 영업도 하고 설계도 하고 베테랑으로 1인 3역을 하시던데 **그런 정도로 오래된 시니어 사람들이 더 대우를 받을 수 있는, 나가라고 하지 말고 그런 게 빨리 되지 않으면** 돈 늦게 주고, 회사는 빨리 자르려고 하는데 어떡해요. 그런 문화가 빨리 정착되어야죠. (W2-3)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과 공공부문에서 고령자에게 맞는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은 곱씹을 만하다. 실제로 고령자 고용에 관한 연구들은 기업에서 고령자 고용을 위한 직무환경이나 역할의 설계가 얼마나 이루어지는지에 따라 고령자들의 생산성이 감퇴하는 정도는 크게 달라진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Ilmarinen, 2005; 박명준 외, 2015). 이는 기업이 고령자 고용을 생산적이지 않다고 여기는 것이 고령자 자신의 문제보다 기업 내 노동환경과 고령 근로자의 특성이 정합적이지 않기 때문일 가능성을 시사하기 때문이다.

저 같은 경우는 기업도 노력을 해야 되지만 전제조건이 일자리가 창출이 되어야 하잖아요. 제가 볼 때는 공공부문이 확대가 되어야 하지 않겠나. 왜냐면 기업이 창출하는 거는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실적이 별로 없습니다. **실제 60세 이상 분들이 할 수 있는 공공부문 일자리를 확대를 해서** 그 사람들이 퇴사를 하더라도 계속 국민 연금을 의무가입할 수 있도록 점차 확대를 해 준다고 하면 **사회적인 인식이 개선되고 한다면** 기업들도 제도가 좋아졌다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기업 쪽에서도 한둘씩 더, 부담스러워도 정부 차원이니까요. **정부가 앞장서야지 기업 보고 이거를 하라는 거는 제가 볼 때는 모순이에요.** (E1-1)

민간 쪽에서 정말 노인들, 연세 지긋하신 분들의 캐릭터를 살릴 수 있는 방법들. 장애우나 몸이 불편하신 분들도 특정한 제품이라든지 특정한 분야에 대해서 굉장한 능력을 발휘하는 부분으로 매출의 성과를 낸 기업들도 좀 사례를 본 적이 있어서 **시니어들의 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 (중략) 민간 부분의 역할을 좀 더 늘리고, 정부는 세제지원, 아니면 공간 털어서 % 조정을 안 할 수 있도록 갭이 생기는 부분을 행정 차원에서의 서포트가 있으면 좋지 않을까. (E1-2)

### 3. 국민연금에 대한 인식과 신뢰

국민연금 가입상한연령 연장에 관한 견해는 고령자 노동시장의 상황에 대한 인식뿐 아니라 국민연금제도 자체에 대한 인식의 영향을 받는다. 국민연금제도를 어느 정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 제도에 대한 신뢰가 있는지, 제도의 중요성과 효과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등에 따라 가입상한연령 연장에 대해서도 서로 다른 견해가 나타난다. 이하에서는 국민연금에 대한 인식과 가입상한연령 연장에 관한 이해관계자 입장의 관계에 대해 살펴본다.

## 가. 국민연금제도에 관한 오인(誤認)

연구 참여자들의 대부분이 국민연금 가입상한연령과 수급개시연령 간의 공백에 대해 알고 있지만, 그 배경에 대한 인지가 정확하지 않다는 점은 앞에서 언급하였다. 사실 연구 참여자들의 제도에 대한 오해는 국민연금제도의 여러 측면에서 확인되었다.

예컨대 기초연금의 재원이 국민연금 기금에서 나온다고 인식하거나 국민연금이 물가변동을 보정하여 실질 가치를 유지한다는 점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들이 확인되었다. 또한 공무원 연금과 같은 특수직역연금의 손실액을 국민연금 기금에서 보상한다고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

기초노령연금이요. 그러면 누가 돈을 내요? 돈 안 내죠. 젊은 사람들은 다 그 소리 예요. 나이 들면 20만 원씩 나오는데 뭘 돈을 내고 하냐고. 할 말 없죠. 그러면서 돈 고갈된다고 하고, 앞뒤가 안 맞는다는 거죠. (W1-6, 가입상한연령 연장 반대)

국민연금 홍보영상 같은 거 보면 나라만 망하지 않으면 지급된다고 하는데 사실 나라가 어려워지고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국가가 어려워지고 부도 상태가 되면 엄청난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거잖아요. 그때 가서 원화 가치가 떨어졌는데 그거를 수령한들 휴지 조각처럼 못 받는 거나, 베네수엘라 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화폐가치가 확 떨어져서 10만 원 수준이 되면 못 받는 거나 진배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신뢰가 안 가지 않나. (W2-1 가입상한연령 연장 반대)

국민연금에 불신이 많이 있는 거 같거든요. 국민연금보다 교육공제, 공무원 쪽 고갈이 더 심한데 그쪽으로 상당 부분 메꿔 주면서 다 퍼 주는 게 아니냐, 투명하지 않으니까 실제 국가는 고갈인데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대해서 알 수가 없으니 그런 불신도 많기 때문에 더 내고 더 받을지 못 받을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더 투명해졌으면, 운영이 어떻게 되고, 불신이 해소될 거 같아요. (E1-6)<sup>26)</sup>

이와 같은 명백한 사실관계의 오인 외에도 제도의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민연금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갖는 경우들도 나타났다. 예컨대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 사실상 수급이 불가능하다거나 조기노령연금의 감액률이 지나치게 크다는 인식은 평가적 측면을 가지고 있기에 사실관계에 대한 오류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제도에 대해 정확히 이해한다고 볼 수는 없다.

**국민연금은 사망보험이 없잖아요.** 젊을 때 돌아가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유족연금에 대한 것도 많이 반영해 줬으면 좋겠어요. **너무 거의 받을 수가 없는 거 같더라고요.** 40~50대에, 제가 지금 만약에 죽게 되면 저희 아이는 받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몇 십년 낸 거잖아요. 나는 못 받았지만 사망보험금이라는 거 자체가 남은 가족들을 위해서 주는 건데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다 줄 수는 없겠지만 강화를 해 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W2-6, 가입상한연령 연장 부정적)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몇 년 앞당겨 댔다고 까이는 거 있잖아요.** 너무 금액이 커요. 그렇다고 이자가 붙어나는 것도 아닌데 내가 받아야 되는 금액에서 너무 많이 삭감이 되더라고요. **그런 거는 좀 아닌 거 같아요.** 내가 성실히 국민연금을 부어왔는데, 그런 것부터 개선이 되면 좋겠어요. (W2-2, 가입상한연령 연장 반대)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인지는 국민연금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형성하는 원인이 되고 있었다. 이는 가입상한연령 연장에 대한 태도에도 영향을 미친다. 인사담당자가 아닌 근로자 자격으로 면접에 참여한 참여자 중 국민연금제도에 대해 부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경우는 모두 가입상한연령 연장에 대해 부정적이거나 명백한 반대의 의사를 표명했다.

26) 기업 인사관리의 가입상한연령 연장에 의견은 기업 입장에서 답변할 것으로 요구받았기 때문에 개인의 가입상한연령 연장 관련 의견은 불확실한 측면이 있다.

## 나.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불신 및 중요성 인식

제도에 대한 인지와는 조금 다르지만 국민연금제도 및 제도를 운영하는 공단과 국가에 대해 어느 정도 신뢰하고 있는지 역시 중요하다. 이 점이 가장 뚜렷하게 드러난 것은 기금운영에 대한 사안이다. 적지 않은 참여자들이 국민연금의 기금운영에 대한 불신을 표명했고, 제도를 불신하는 경우 가입상한연령 연장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좀 더 강했다.<sup>27)</sup>

운영하는 금액이 63조 정도 된다고 하잖아요. 손실을 많이 봤다 이런 것도 있고 약간 늘리려고 하는 그럼 부분이 강해 보여서. (W1-7, 가입상한연령 연장 반대)

인터넷에서 읽어 보니까 운용 펀드매니저 이런 사람들이 지방이니까 잘 안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운용하고 이런 것도 일반적인 운용하는 사람들보다 수준도 낮아서 실적도 안 좋다. 대우가 안 좋으니까 좋은 사람들이 안 간다는 얘기도 있고, (중략) 그거 포함해서 운용이 어떻게 되고 실적이 어떻게 되고 알기 쉽게 전달하고 공표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W1-4, 가입상한연령 연장 반대)

이거는, 맞는지 모르겠는데 언제 뉴스를 봤더니 국민연금 운영 실적이 마이너스더라고요. 참 마음이 아팠어요. 저희가 내는 게 아니잖아요. 주식은 제가 투자를 하는 거니까 마이너스라도 제 의지니까, 국민연금은 무조건 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 많은 사람들, 그중에는 삼성 다니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크게 했는데 그 돈이 수익성을 갖지 않고 방만하게 운영을 해서 막 쓴단 말이에요. 그거에 대해 국가가 얼마나 제재를 하는지 궁금했거든요. (중략) 불안함을 느끼고 거기에 대해서 더욱더 진중하게 국민연금을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거부터 해야 된다고 생각을

27) 국민연금 기금 운영에 대한 견해 역시 연금 운영의 투명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나 수익률에 대한 부정확한 인식에 기초한 경우가 많아 국민연금제도에 관한 오인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장기간 운영되는 기금의 수익률이나 투명성을 위한 장치의 적절성에 대한 판단 등을 객관적 사실에 대한 이해의 문제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제도에 대한 신뢰 카테고리로 구분하였다. 어느 쪽으로 구분하든 그로 인한 영향은 유사하다.

해요. 어떻게 하면 고갈이 안 되고 잘 운영을 해서 잘 볼릴 수 있는가 그것부터 먼저 국가가 생각을 하고. (W2-5, 가입상한연령 연장 반대)

국민연금이 고갈되는 거는 연금구조 변화 때문에 그런 건데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기금위원회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몇 년 전에 국민연금을 정치적인 이유로 유용을 해서 다른 데 엉뚱한 데 투자를 해서 국민에게 피해를 끼친 다거나 상속 문제에, 이런 문제는 일벌백계로 처벌을 하고 안정성을 강화시키는 정책적 의지가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W2-1, 가입상한연령 연장 반대)

기금운영의 투명성에 관한 인식뿐 아니라 기금소진에 대한 우려 역시 제도에 대한 신뢰에 영향을 미친다. 연구 참여자들은 언론보도 등을 통해 국민연금 기금소진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었는데 이에 대한 부정적 인식 역시 가입상한연령 연장에 대한 부정적 입장으로 연결되는 경향을 보였다.

**기금 자체가 고갈된다는 얘기가 많이 있어요.** 운용 자체가 수익이 마이너스 6~7% 이렇게 될 때도 있고요. 그런 불안을 **국민연금 납부를 더 늘려서 보충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옳지 않다고 봐요.** (W1-3, 가입상한연령 연장 반대)

국민연금 고갈이 너무 빨라진다고 하잖아요. 되게 걱정이 많이 돼요. **제가 타야 될 때 국민연금이 소진이 되어서 없으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도 많이 들고 그러거든요. 국민연금을 나라에서 좀 더 알차게 관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W2-2, 가입상한연령 연장 반대)

**저도 사실 언젠가 고갈될 거라는 거를 알고 있는 거 같아요.** 그 부분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정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국민에게 알려 주는 형식이 되어야지 '눈 가리고 아웅'하고 있다는 거를 사실 알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솔직한 정부의 반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E1-4)

가입상한연령 연장에 동의하는 가입자 중에서 기금이나 기금 운영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 경우에는 기금 문제를 개선하는

것이 가입상한연령 연장에 동의하는 조건이라는 입장이었다.

수령이 일치하게 하려는 의도 자체는 지금 선생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문제점들이 있지만 **그거를 고치고 개선한다는 조건하에서** 이렇게 했을 때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저는 그거를 바탕으로 찬성을 한다고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만약에 **자금을 운용하고 개선이 된다는 조건하에** 이게 플러스가 된다면 훨씬 좋은 쪽으로, 물론 그런 쪽이 **고쳐지지 않는다면 밀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W1-1, 가입상한연령 연장 동의)

국민연금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보험료 기여 측면에서도 나타난다. 자신이 내는 돈을 받지 못할 것으로 인식하거나 사업자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 기여의 격차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기도 했다. 사실 국민연금의 경우 건강보험과 달리 기여와 급여가 비례하고 모든 계층에서 수익비가 1보다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 지역가입자가 납부예외 상태에 있는 것을 반드시 이익이라고 볼 수는 없다. 미래의 수급권을 고려하면 오히려 사업자가입자가 이익을 본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그러나 가입자들은 자신의 기여에 비례하여 급여를 수급할 것이라는 신뢰가 없기 때문에 지역가입자의 비기여를 이익을 보는 시각이 생겨나고 있다.

근로자들에게는 사실 연금의 느낌이 아니라 세금의 느낌이에요. 못 받는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처음에 사회생활할 때는 본인이 희망하면 일시금으로 받고 이런 게 있었거든요. 이제는 아무리 희망해도 안 주잖아요. **내가 내고 있지만 내 돈이 아닌 거죠.** (E2-4)

지금 직장 가입자들은 소득이 다 오픈이 되잖아요. 어차피 국세청에 원천신고가 되고 그거를 기준으로 과표를 잡아서 맥시멈 금액으로 산정을 하잖아요. 문제는 제가 볼 때 확대되면서 **개인사업자라든가 지방에 있는 중소기업자들의 소득이 오픈이 안 돼요.** **그분들이 재산이 상당히 많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분들이 주먹구구식으로

소득이 얼마라 하면 그걸로 가입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왜냐면 고소득자인데도 자기가 **납부하기 싫어서 소득신고를 적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다 수면 위로 끌어내서 지금 재정 고갈된다고 하니까 직장인들만 봉으로 하지 않고, 직장인들 얼마나 불쌍해요. 세금 원청징수 떼고 없잖아요. (E1-1)

**내가 많이 내서 나중에 많이 받을 수 있다, 이런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상태다 보니** 더 내고 덜 받자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선뜻 사회의 동의가 이루어지기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많이 내면 나중에 많이 받을 수 있다, 그러면 동의를 할 수 있죠. 많이 내는데 나중에 적게 받아 가라 그렇게 하다 보니까 동의를 할 수 있을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E1-3)

요컨대 국민연금에 관한 불신과 부정적 인식은 여기에 내 돈을 불입하는 것이 어떻게 돌아올지 모른다는 생각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가입상한연령 연장은 가입기간 증대를 통한 연금액 인상보다는 보험료 부담의 증가, 연금으로 돌아올지 모르는 투입의 증가로 인식되는 것이다.

사람들 보면, 밑에 댓글 읽어 보면 **다 빨리 받아서 다른 데 투자하는 게 훨씬 낫겠다** 하는 사람도 있고, 엄청 불안해하고 있는 거 같은데요. (W1-4, 가입상한연령 연장 반대)

어떤 분들은 그런 말도 합니다. **많이 넣을수록 손해다**. 중간중간 실업 상태가 있잖아요. 1년이 될 수도 있고요. 국민연금 납부유예라고 하냐요? 3년 동안 실천할 수도 있고 대부분이 하는데 **안 내는 게 더 낫다**, 이런 의견이 꽤 있더라고요. (W1-7, 가입상한연령 연장 반대)

사실 국민연금 자체가 부정적인 인식이 많은 거 같아요. 제 주변에도 **이민을 한 번 가서 털어 버리던가 해야지**, 하는 의견도 많고요. 내가 받을 수 있을지도 사실 의문이기도 하고요. (W2-2, 가입상한연령 연장 반대)

저희 아이가 대학교 4학년인데 취업을 생각을 하고 알아보고 하잖아요. **애한테 이런 얘기를 하면 내가 나이가 되면 과연 받을 수 있을까 그런 얘기를 해요.** 없어지고 있으니까 노인들은 많아지는데 애들은 없으니까 점점 줄어들고 있겠죠. (W2-6, 가입상한연령 연장 반대)

국민연금제도의 중요성이나 효과성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의견이 제시되었다. 다만 이와 같은 의견이 직접적으로 가입상한연령 연장에 대한 찬반으로 연결된 것은 아니다. 국민연금제도가 자신의 노후보장에 중요하고 효과적이라고 여기는 경우에도 가입상한연령 연장을 통한 가입기간 증대에 동의할 수 있지만, 반대의 경우에도 가입상한연령 연장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다. 추가적 납입을 통해 연금금액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연금 받는 게 좋기는 하지만 **노후에 큰 비중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았거든요.** 개인연금과 같이 해서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냥 그랬어요. (W1-5, 가입상한연령 연장 찬성)

**국민연금은 크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안심을 하고 있고요. 제가 든 보험에서 20~30만 원 플러스, 와이프랑 저랑 200~300 정도 되면 두 노부부가 한 200~300, 한 달에 쓰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되게 도움이 된다, 든든하다고 생각을 해요. (W1-1, 가입상한연령 연장 찬성)

국민연금은 나중에 최소한의 장치로 나오는 거라는 생각을 하지 이게 내 노후 대책이 될 거라 생각은 한 번도 안 해 봤고 다른 걸로 고정수입을 발생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 생각을 제일 많이 하죠. (W2-6, 가입상한 연령 연장 반대)

다만 국민연금의 중요성이나 효과성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장기적으로 가입상한연령 연장을 비롯한 제도 개선에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크다. 국민연금제도의 신뢰성과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까닭이다.

이해관계자 단체를 대표한 전문가들 역시 국민연금제도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하고 있었다. 다만 단체의 입장에 따라 조금씩 다른 시각을 보인다. 노동조합 대표가 매스컴에 의해 형성된 국민연금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것에 강조점을 두고 있다면, 소상공인 단체 대표는 국민연금의 낮은 급여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국민연금은 다 개인의 계좌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낸 만큼 이거를 받지 않으면 내가 사적연금을 드는 게 차라리 낫지 내가 왜 여기를 드느냐는 이상한 그런 논리들? 이거를 어떻게 앞을까. 그러니까 매스컴에서 나오는 이 프레임을 어떻게 하면 이걸 앞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사실은 되게 많이 하고 있고 그게 이제 저희의 숙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S2)

우리가 최저임금처럼 노후생활에 최소한에 들어가는 비용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 그 설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꾸 그냥 시간만 끄는 거는 저는 설계의 문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제가 이제 뭐 나이 몇 살에 최소 우리가 생계비 있잖아요. (중략) 그 정도도 못 되는 연금인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연령을 올린다면, 그럼 누구를 위한 그건가라는 퀘스천이 생기는 거죠. 누구를 위한. 그러니까 전제조건은 최소한의 생계비를 유지할 수 있는 연금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S3)

## 다. 국민연금 개혁 방향

국민연금 가입상한연령 연장은 종합적인 연금개혁 패키지의 한 요소다. 현재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주로 재정 안정성 측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가입상한연령 연장은 재정적으로도 부담을 초래하지 않으면서 실질 가입기간 연장을 통해 급여 적절성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

국민연금 이해관계자 대상의 개별 심층면접 및 FGI 과정에서도 국민

연금 개혁에 관한 논의들이 제시되었다. 국민연금 개혁 전반은 본 연구의 범위를 벗어나는 측면이 있기에 여기에서는 가입상한연령 연장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연구 참여자 중 많은 수가 가입상한연령 연장의 목적을 연금재정 안정화로 이해하고 있었고, 이것이 일정 부분 오인이라는 점을 앞에서 설명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관계자들은 연금재정 안정화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이를 위해 보험료율 인상, 과세 구간 확대, 보험료 기여 상한 상향 조정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이와 같은 방안을 제시한 참여자들은 이 제도들이 가입상한연령 연장을 대신할 수 있다고 인지하는 경향이 있었다.

국민연금 같은 경우 % 조정도 하나의 선택지로 고려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면 지금 세간에서 기금이 바닥이 난다, 언제 고갈이 난다, 진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런 거에 대한 걱정이 항상 존재하다 보니까 본인이 부어 놓은 거에 대한 재원을 좀 더 빨리 받을 수 있는 게 기업이나 근로자도 안정적인 마인드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E1-2)

가장 현실적인 방안은 소득이 있을 때 좀 더 %를 부과해서, 그거는 사람마다 틀리겠지만 10~15%라고 봤을 때 그게 가장 현실적으로 연금 고갈의 방안이 될 거 같고요. (E1-6)

9%의 요율 말고 과세구간을 넓히는 건 어때요? 차등을 둔다기보다는 상한선을 넓혀서, 선진국일수록 고액연봉자에게 50~60% 가져간다고 하잖아요. 그거는 아닌 거 같고요. 세수가 부족하다든가 좀 더 많은 사람에게 혜택을 드리고 싶으면, 가끔씩 정말 급여가 적은 친구들 급여를 볼 때면 그 몇만 원이 되게 미안한 경우들이 많아요. 특히 국민연금은 통장을 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E2-2)

5백몇십만 원이 상한선이라고 하면 되게 낮은 거 같아요. 1천만 원 이상씩 급여를 받는 사람도 있잖아요. (E2-1)

연구 참여자들은 역시 국민연금제도에 관한 불신이 제도를 개혁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가장 큰 문제라는 점에 동의하고 있었다. 그리고 국민연금이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투명한 정책 커뮤니케이션, 정책 홍보, 그리고 민주적 논의 과정의 중요성을 공통적으로 강조하였다. 그간 정부의 연금 논의가 투명하지 못했고, 상황을 모면하는 것으로만 느껴졌다는 점이 불신의 중요한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충분한 정책홍보를 가입상한연령 연장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하는 참여자도 있었다.

**제일 큰 문제는 불신이거든요.** 불신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사실 장기정책에 대한 실책을 인정할 필요가 있어요. 고령화 사회를 예측을 못 하고 1990년대 초부터 이거를 시작했는데 이런 상황이 올 거라고 누구도 몰랐잖아요. 그러다 보니 처음부터 예측 못 한 상황이었다 인정을 하고 개선책을 찾겠다고 동의를 구하는 데서부터 시작을 해야 하는데, 지금은 단지 덜 내고 덜 받고 더 내고 더 받고 이런 식으로 땀질을 하려고 (중략) 실책을 한 거를 확실히 인정을 하고 이거를 어떻게 해서 현실적으로 개선을 해야 되는데 **국민적인 합의가 필요하니 고통스럽지만 어떤 방법으로 개선을 해 나가자. 장기적으로 어떻게 해 나갈 수 있다고 비전을 제시해야.** (E1-3)

바꾸려는 정당성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홍보나 이런 거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왜 해야 되며 이런 부분, 약자들이, 어떻게 보면 버는 분들이 이거를 함으로써 더 소외되고 약자들에게 혜택이 간다. **실제 그런 거를 많이 홍보를 하고 그거 때문에 해야 된다.** 그런데 지금 보면 아까도 접근방식이 갭이 생겼으니 퇴직하고 5년 동안 갭을 메우기 위해 해야 된다. (중략) 되게 피상적으로 보이잖아요. (W1-7)

국민들 반발이 되게 많을 거예요. 이거를 했을 때 효과나 세부적으로 어떤 점은 잘못되었는데 고쳐가겠다고 믿음? 신임? 이런 거를 먼저 주지 않는 이상은 이게 도움이 된다 하더라도 절대 양분화가 되어서, 양분화가 아니라 거의 반대를 하실 거예요. 2~3년, 3~4년? 국민들이 그게 맞는 거 같다고 50% 이상 찬성을 할 때까지 **홍보를 하고 계속 믿음을 준 다음에 하는 게 좋을 거 같아요.** (W1-1)

전부 얘기 듣고 하는 거는 어렵겠지만 자꾸 알리고 해서 사실에 근접해서 실질적인

상황들을, 부족하니까 앞으로 근로할 사람들이 많지 않고 하는 거는 자명하잖아요. 그런 사실들을 얘기를 하고 자꾸 알리는 부분, (중략) 세대별, 지역별로 모아서 만들어서 자꾸 알리는 것도 중요할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W1-4)

전 국민에게 피부적으로 와 닿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가 그런 정책을 시작한다면 충분한 시간을 갖고 대국민 설득에 나서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론도 그렇고 홍보도 마찬가지지만 급작스럽게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거죠. (W2-1)

3개 이해관계자 단체의 연금개혁의 방향성에 관한 의견은 조금씩 차이가 있었다. 사용자를 대표하는 경총의 경우 연금개혁의 목적은 재정 안정화임을 분명히 하고 있었으며, 노후소득보장의 적절성은 다층체계를 염두에 두고 구축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한다. 또한 소득대체율 상향 조정에 대한 분명한 반대의견과 함께 가입상한연령 연장 역시 개혁 패키지의 한 구성요소일 수는 있지만 필수적인 것은 아니라는 견해를 밝혔다. 이는 연금제도의 순기여자 지위에 있는 기업의 부담을 최우선에 두고 있는 입장이라고 하겠다.

아마 지금 우리 전문가 집단들이 지금 가장 애로사항이 소득대체율을 이대로 갈 거냐 낮출 거냐 더 높일 거냐 이런 걸 거예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소득대체율을 올리는 것은 반대합니다. 근본적인 처방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올라가게 되면 나중에 보험료율도 더 올라가야 되요. 나중에, 그럴 듯해요. (중략) 그냥 종합적으로 가자는 겁니다. 종합적으로 시간을 그냥 패키지로 두고, 10년 프로젝트 아니면 20년 프로젝트가 됐든 단계적으로 가든 거는 이제 협의하기 나뉘고 정확한 과학적 계산이 이제 되어야 하겠지만, 일단은 최소한 이번에 연금개혁의 목적은 보험료율을 좀 올리고 그래서 좀 후세대의 부담이 전가되지 않도록 하는 데 방점을 찍어야 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S1)

그러나 전체를 놓고 봤을 때는 우리 국민들이 좀 노후라고 하는 거를 대비하기 위한 어떤 인식도 조금 제고할 필요가 있겠지만, 굳이 국민연금 하나가 아니라 다른 중층적인

것들을 좀 같이 해가지고 **종합적으로 노후 소득을 접근해야지**, 국민연금만 가지고 소득 대체율을 높이면 노후 소득이 강화되는 것처럼... 자기 소득은 강화 되겠죠. 내 자식들은 어떻게 하라는 얘기에요. (S3)

반면 노동조합은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화 필요성에 동의하면서도 연금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를 위해 저 소득 근로자뿐 아니라 최근 증가하고 있는 특고, 플랫폼 노동자 등 비임금 근로자를 위한 보험료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다층노후소득 보장체계의 중요성에 관한 인식은 경총과 다르지 않았으나 기초연금의 확대를 통한 불평등 해소에 강조점을 두었다.

그러니까 두루누리를 이렇게 확대? 그러니까 10인 미만의 월 소득 260인가로만 주는 게 아니라, 그 이름을 가지고 이런 **근로자성을 가지고 있는 비임금 근로자를 위한 지원 사업까지도 확대를 하는 게 좋겠다**. (S2)

기존의 입장이랑 다르지 않은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수치나 이런 것들보다는 **기초연금은 당연히 이제 저소득층이나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소득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으로 좀 올려놓고**, 국민연금은 이제 그 위층의 역할 그러니까 내가 기여한 만큼 또 보험료를 받는 그런 역할들을 좀 가져가고, 퇴직연금은 그거의 이제 연장선에서 조금 더 좀 여유 있는 그런 노후생활을 위한 그런 기능으로 자리 잡는 것이 맞다 생각을 하고 있죠. (S2)

소상공인 단체의 전문가는 노동조합 대표와 마찬가지로 상대적으로 취약한 집단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만 노동조합과 상이한 점은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심의 지역가입자 지원의 맥락에서 공무원 연금과 국민연금의 통합 필요성을 제안한 것이었다. 또한 경총과 비교했을 때는 재정 안정화보다 노후소득의 적절성을 강조하는 경향을 보였다.

정부 입장에서는 애네 주체는 3대 주체 중에서 국가, 국민, 개인, 기업이라는 이 주체 중에서 이 연금이라는 것은 이 세 개를 다 조율해줘야 하는데, 공무원이라는 존재는 여기란 말이죠. 근데 여기서 국가가 여기 너무 많이 개입을 해줬다는 거지. 근데 여기는 개입을 별로 많이 못했다는 거지. **개인 소위 말하면 지역가입자라든지 소상공인들이 여기에 대한 개입이 뭐가 있었냐는 이 주체 중에서.** 그래서 이런 경제 주체 중에서의 분배가 공정하지... 뭔가 그 공정하다는 표현을 쉽게 쓰면 안 되지만 **여하튼 간에 이 분배에 대한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거죠. 분배에 대한 재설계.** 그래서 그 분배에 대한 재설계로서 대안으로 **모든 연금을 통합한다는 것도 고민해야 한다.** (S3)

저는 이제 개인적인 생각에 보면 이제 국민연금으로 국가가 다 보장 못 하니까 개인연금으로 커버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국가가 보장하지 못하고 개인도 보장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과연 누가 보장하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취약계층이라고 해서 이제 기초연금을 주지 않습니까? 한 20% 제가 알기로는 30만 원인가 좀 올랐다고 20만 원이 올랐다는 얘기, 올랐다고 하는데 **그걸로 어떻게 노후생활을 할 수 있는가?** (S3)

이처럼 이해관계자 단체들은 각자가 대표하는 계층에 따라 연금개혁에 대해 상이한 의견을 표출하고 있었다. 사용자 단체가 재정 안정성을 강조하는 반면 소상공인 단체는 급여 적절성을 훨씬 더 강조하고 있었고, 노동조합 대표는 양자의 중간 정도 위치에서 두 가지 목표의 조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한다. 사용자 대표와 노동조합 대표가 다층소득보장체계의 시각을 가질 것을 제시하고 있는 반면, 소상공인 단체는 국민연금과 공무원 연금의 통합 및 이를 통한 지역가입자 지원 확대를 강조하였다.

세 이해관계자 단체가 공통적으로 제안하고 있는 것은 연금개혁의 결정 과정에 대한 것이었다. 세 단체 모두 사회적 대화의 필요성에 동의하는 가운데 노조 대표는 노동자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우려를 표현하였다. 사용자 대표는 반대로 현재 연금개혁에 대한 사회적 대화가 멈춰 있는 상황이지만, 일정 기간 전문가 중심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도 부정적

이지 않다는 입장이었다. 소상공인 단체 대표는 지역과 업종 수준에서 중층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했다.

저희는 당연히 이제 가입자, 이해관계자, 사회보험 가입자들이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 방식이어야 되고, (중략) 일단은 노사 그리고 지역가입자들이 배제된 상태에서는 책임 있는 결정은 나오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 어떻게든 간에 불만을 잠재우고 가는 거는 가입자 당사자들이잖아요. 안에서의 그런 여러 가지 목소리들을 그래도 정리를 해 나갈 수 있는 거는 당사자 단체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참여하는 그런 사회적 합의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S2)

노동계의 입장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예 허공에다 얘기한다고 해야 하나? 그러니까 어떤 문제 제기를 하면 그건 됐고, 하고 이게 넘어가는. 거기다가 (중략) 그리고 의결을 해야 될 안건인데 은근슬쩍 보고 안건으로만 해서 넘어가는 문제들, 이런 것들이 좀 축적이 되고 있고, 국민연금공단 안에 기금운용 본부 안에다가 이렇게 위원회 만든다고 추진을 하고 있어서 그것도 저희가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 상태죠. 아마 이번 정부 하에서는 계속 그러지 않을까 그러면서 점점 가입자들, 노동자들의 몫은 줄어드는 방향으로 갈 것 같아요. (S2)

사회적 대타협의 과정은 반드시 있어야죠. 근데 이제 그게 지금까지 없었으니까, 좀 그게 아니고 언젠가는 있어야죠. 당연히 그리고 그럴 때가 올 거라고 봅니다. 지금은 이제 처음부터 노사가 힘 빼고 할 게 아니고 전문가들이 좀 이렇게 중지를 좀 모아주시고 그럼 그 안에서 노사가 또 이제 접근할 수 있는 좀 그런 옵션들을 많이 좀 만들어 주시면, 그거는 이제 대화를 통해서 충분히 양보를 통해서 접근하면 될 문제라서요. 사회적인 대타협도 안 하고 바로 할까요?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노사가 직접적인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럴 때가 올 거라고 봅니다. (S1)

다양한 그 지역하고 업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사회에 그래도 광역 17개 시도가 있고 또 그 다음에 대표적인 업종들이 있잖아요. 그들의 의견은 최소한 수렴해 주셔야 하지 않는가 그러니까 일단 업종, 지역은 좀 그래도 대표자들을 좀 만나서 그들의 의견을 좀 들어주시는 게 아마도 그래도 이들의 의견을 좀 받았다고 들어 가야 하지 않나. (S3)

#### 4. 다층노후소득보장에 관한 인식

국민연금 개혁과 비교했을 때 기초연금, 퇴직연금, 사적연금 등 타 연금 제도에 관한 인식이나 선호는 가입상한연령 연장과의 직접적 관련성이 낮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면접 조사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은 국민연금 외 연금제도에 관한 인식과 선호를 드러냈고, 적어도 그중 일부는 간접적으로나마 가입상한연령 연장과의 관련성이 있어 간략히 제시한다.

우선 가입상한연령 연장과 가장 직접적으로 관련성을 보인 노후소득 보장제도는 기초연금이었다. 참여자들은 국민연금에 대한 추가적 납입에 부정적인 이유 중 하나로 기초연금을 꼽았다. 국민연금과 달리 기초연금은 기여금 납부 없이 수급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국민연금과 연계 감액제도가 운영되고 있어 국민연금 기여자를 역차별한다는 관점이었다.

**우리나라는 내든 안 내든 무조건 다 주잖아요. 그 돈이 어디서 나오냐고요. 80세 까지 넘더라도 능력이 되어서 돈 버시면 나는 더 내겠다. 좀 더 수령하시면 거는 찬성이예요. 그런데 80 되신 분이 퇴직하고 난 다음에 기초연금은 그거대로 받고 사적인 연금대로 받고. (W1-6)**

이게 65세가 되면 기초연금이 나오잖아요. 30만 원 정도로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국민연금 얼마 이상 타면 기초연금이 깎이더라고요.** 그것도 어떻게 갈 거냐. 월령 30만 원 주는 거를 연계시켜 깎는다는 게 복지 차원에서 앞뒤가 안 맞는 게 아닌가, **자꾸 국민연금 확대하려는데 깎아버리고, 앞뒤가 안 맞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것도 어떻게 해결해 줘야 하지 않나. (E1-1)

그러나 동시에 기초연금의 수준이 너무 낮아 수급자들의 생활을 보장할 수 없다는 점에 대한 비판적 의견도 제시된다. 기초연금에 관한 이와 같이 모순된 인식은 단지 서로 다른 이해관계자의 상이한 시각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그간 많은 연구에서 지적된 것처럼 우리나라의 다층 노후소득보장체계 내에서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관계에 여전히 모호한 측면이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최옥금·홍정민, 2021; 정찬미·이상은, 2022).

**그 기초연금이 실제적으로 너무 적지 않나.** 왜냐면 사실 국민연금 같은 경우 직장 생활 하면서 가입한 사람들, 가입 안 한 사람도 많이 있잖습니까. 가입을 했다고 해도 직장생활을 적게 해서 10년 넣은 사람도 많은데 그런 사람들은 노후에 재산이 없어서 기초연금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데 그게 너무 적은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 의견으로는 기본생활을 할 수 있는 수준으로 올려야 되는데.** (W2-1)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취약계층이라고 해서 이제 기초연금을 주지 않습니까?** 한 20% 제가 알기로는 30만 원인가 좀 올랐다고 20만 원이 올랐다는 얘기, 올랐다고 하는데 **그걸로 어떻게 노후생활을 할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고. (S3)

퇴직연금은 대부분의 참여자에게서 노후소득보장제도로 기능하고 있지 못했다. 인터뷰에 참여한 근로자들은 대개 장기간 노동시장에 참여한 중고령자들임에도 불구하고 퇴직연금을 노후보장의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는 경우는 한두 명에 불과했다. 나머지 대부분의 경우는 노동시장에서 직장 이동 등을 겪으면서 중간 정산했거나 대체로 일시금으로 사용하는 금액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기초연금이 다층체계 내에서 타 제도와의 관계를 정립해야 하는 과제가 있다면, 퇴직연금은 연금제도로서의 자리매김 자체가 과제임을 확인할 수 있다.

**보통 회사를 옮기면서 반값이요.** 그거를 계속 연금에 두지는 않으니까, 대부분 있지 않지 않을까 싶어요. (W1-7)

저는 퇴직연금을 넣고 있기는 한데 **대부분 퇴사하시면서 그냥 받아가시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도 22년 차인가 23년 차인가 그 정도 되었는데 중간에 한 번 정산을

하고 십몇 년 치가 있거든요. 페이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그렇게 해도 노후자금으로 쓰기는 좀 부족할 거 같고, 큰 목돈이 되어서 한 번 써 버리고 말 거 같지, 그거를 가지고 사용하기에는 좀 적은 거 같아요. (W2-6)

퇴직연금이 저희는 넣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 중간에 3~4년에 한 번씩 찾아 썼거든요. 그것도 찾는 것도 복잡하더라고요. 조건이 되어야 하는데 장인, 장모님 병원비도 있고 해서 그런 용도로 찾아 썼습니다. 지금은 사실 몇 년 치가 있기는 있는데 큰 도움은, 내년에 퇴직하면 일시불로 찾아야 되는데 큰 도움 되는 거는 없는 거 같아요. (W2-1)

국민연금이 이해관계자들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퇴직연금이 연금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지 못한 상황은 이해관계자들이 사적연금에 기대도록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면접 참여자들 중 상당수는 국민연금보다 사적 연금이 신뢰할만하다고 여기고 있었다. 물론 여기에는 국민연금의 실질 가치 보장, 모든 계층에서 '1'이 넘는 현재의 수익비, 기금의 안정성에 대한 우려 등과 관련한 부정확한 인지나 불신이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사용자 단체의 전문가는 사적연금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 확대를 요청하기도 했다.

사족이지만 제가 오래전에 한 달에 10만 원씩 10년 정도 연금을 부었는데 지금은 그걸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국민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더 많아요. 누가 사실 국민연금을 자의적으로<sup>28)</sup> 들겠어요. (W1-2)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정말 좋은 거 같아요. 주택연금은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W1-7)

국민연금 하나로 해결될 문제도 아니고, 오히려 사적연금을 좀 세제 혜택을 주면서

28) 대화의 맥락상 '자의로'를 '자의적으로'로 잘못 이야기한 것으로 판단된다.

**좀 활성화하고**, 어떤 그런 형편이 안 되는 분들은 이제 결국은 이제 정부가 또 더 두텁게 보호를 해줘야 되겠죠. **개인연금을 지원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공적연금 하나의 틀 내에서만 모든 걸 다 해결할 수는 없어요. (S1)

그러나 막상 사적연금을 이용하고 있는 혹은 이용 경험이 있는 이해관계자들은 사적연금의 보장성이 취약한 수준임을 지적하기도 했다. 사적연금에 대한 이와 같은 엇갈린 인식은 사적연금이 좋다고 여겨서라기 보다는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사적연금에 대한 선호로 이어지는 측면이 있다는 가설을 생각해보게 한다.

아까 선생님께서 개인연금이 국민연금보다 더 많이 나온다고 하는데 진짜예요? 제 연금은 국민연금보다, 하도 이자율에 따라가잖아요. 1~2%여서 제가 계산해 봤는데 전혀 미치지가 못해요. 10만 원 이렇게 내도 실제 받는 돈은 한 달에 30만 원밖에 못 받는데. (W1-1)

저도 어릴 때 부모님이 연금보험을 하나 들어 놓으셨더라고요. 55세, 3년 뒤에 타 먹을 수 있는데 그게 12만 원이더라고요. **그거밖에 안 나와요**. 그 당시에는 이자율이 상당히 높았거든요. **지금 그 금액으로 하면 다른 보험회사 알아보니까 5만 원 이예요**. (W1-6)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나 기초연금과의 관계의 모호성, 연금제도로 자리 잡지 못하고 있는 퇴직연금 등 우리나라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의 현실은 이해관계자들이 공적연금체계 전반에 대한 불신을 갖게 되는 배경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해관계자들은 사적연금을 더 선호하게 되고, 이는 현재 국민연금 개혁에 필수적인 보험료 상향 조정이나 가입상한연령 연장 같은 개혁방안 전반에 대한 거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설사 그것이 부정확한 정보에 기초한 것일지라도 ‘나에게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면 사적연금을 가입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연금의

기여율을 높이거나 기여기간을 늘리는 것을 반길 리 없기 때문이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결국 국민연금뿐 아니라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전체의 틀에서 국민의 노후가 보장된다는 인식이 자리 잡을 때 국민연금의 개혁도 지지를 받을 수 있다.

개인적으로 **제가 선택할 수 있다면 국민연금 안 내고** 다른 보장보험이나 연금보험 들고 싶어요. (W1-2)

확실한 노후대책은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국민들의 노후를 보장해 줄 수 있는 정책**, 이거를 펴 수 있게끔, 그런 정책을 펴 수 있는 그런 국민투표를 하는 게 확실한 노후대책 이라고 생각합니다. (W2-1)

## 제4절 소결

### 1. 주요 내용 요약

본 장에서는 국민연금 가입상한연령 연장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인식과 요구를 파악하기 위해 이해관계자 단체 전문가 3명과 45세 이상 근로자 11명, 기업 인사담당자 13명에 대한 개별 심층면접 및 FGI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질적 내용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파악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연구 참여자들은 대체로 국민연금 가입상한연령과 수급개시연령 사이의 공백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지만, 가입상한연령 연장의 주된 목적이 연금 재정 안정화에 있다는 부정확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이와 같은 부정확한 인식은 가입상한연령 연장에 대한 태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는데 가입상한연령 연장이 가입자의 이익보다는 제도의 안정화를 위한

조치라고 생각하는 것에서 기인한다.

가입자들은 가입상한연령 연장이 보험료 부담을 높이더라도 연금재정에 기여함과 함께 가입자의 연금수급액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효과는 국민연금제도의 운영 및 고령자 고용 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여긴다. 따라서 국민연금을 포함한 연금제도에 관한 인식 및 고령자 노동시장의 고용 가능성 및 고용의 질에 대한 인식은 가입상한연령 연장에 대한 근로자들의 견해를 형성하는 주요한 맥락이다.

가입자들은 고령자 고용 확대가 필요하고 실제로 확대되는 양상이 나타난다고 인식하고 있었지만, 자신이 고령이 되었을 때 국민연금에 기여할 만한 충분한 소득을 얻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불확실하다는 입장이었다. 성별, 직종, 현재 종사하는 기업의 규모 등 노동시장 상황에 따라 고용 가능성에 대해 상이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으며, 기대가 낮을수록 가입상한연령 연장에 대해서도 부정적인데 보험료 납부에 따른 부담 증가가 크게 느껴지기 때문이다. 만약 고령자 고용시장에서 정년연장이 이루어져 현 직장에서 근무기간이 늘어날 경우 가입상한연령 연장이 노후소득보장에 기여하는 바가 크겠지만, 현재의 선별적인 촉탁 재고용 환경에서는 가입상한연령이 연장되어도 기여기간을 늘리는 것이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한편 정년연장이 이루어지더라도 기업이 이를 준수하지 않을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확인되었는데 현재도 중소기업 현장에서 60세 정년은 지켜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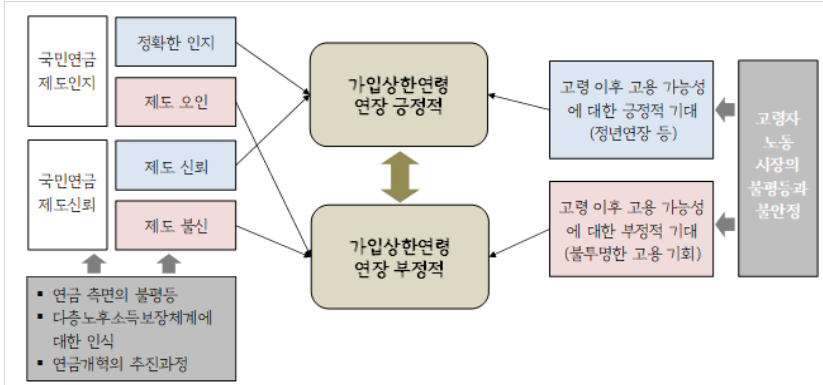
가입자들의 연금제도에 대한 인식 역시 가입상한연령 연장에 대한 견해를 형성하는 중요한 맥락이다. 가입자들이 국민연금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거나 기금 운용 및 재정 안정성에 대한 불신을 가지고 있을수록 가입상한연령 연장에 대해서도 부정적이다. 제도를 불신하기에 가입상한연령 연장이 기여를 늘릴 뿐 실질적인 급여로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제도를 포함한 노후소득보장체계 전반이 얼마나 효과적이고 중요한지에 대한 인식은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에 영향을 미치기에 간접적으로 가입상한연령 연장에 대한 인식에도 영향을 미친다. 가입자들이 가입상한연령 연장에 대해 이해하는 바를 그림으로 정리하면 [그림 4-1]과 같다.

기업은 연금제도에 대한 '순기여자' 위치에 있기에 가입상한연령 연장에 대한 기본적 태도 역시 부정적이다. 이를 보험료 부담의 증가로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좀 더 심층적으로 살펴보면 기업의 진정한 부담은 4.5%의 보험료 부담보다는 고령자 고용 자체에 있다. 물론 기업 역시 인구 구조와 생애과정 변화를 배경으로 고령자 고용의 증대가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하고 있지만 필요한 인력을 선별적인 비정규직으로 채용할 수 있는 축탁 재고용 방식을 선호한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현재 고령자 고용 자체가 매우 제한적일 뿐 아니라 선별적 축탁 재고용도 프리랜서 형태의 계약을 맺고 있다는 점에서 현재의 고령자 노동시장 상황이 유지된다면 가입상한연령 연장은 실질적 부담이 되지 않는다.

반면 가입상한연령 연장이 정년연장의 압력으로 작용할 경우 선별적 재고용을 유지할 수 없게 된다. 물론 현재 중소기업 현장에서 60세 고용이 지켜지지 않는 것처럼 추가적인 정년연장에 대해서도 규제 회피로 대응할 가능성이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기업으로서는 부담이 증가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비록 그 범위는 제한적일지라도 주요 기업의 임금체계의 기초로 자리하고 있는 연공임금의 영향도 작용하는데, 연공임금은 고령자의 생산성에 비해 높은 임금을 설정함으로써 고령자 고용의 부담을 증가시키기 때문이다. 특히 고령자의 임금이 높다는 것은 임금에 비례하는 사회보험기여금 부담 역시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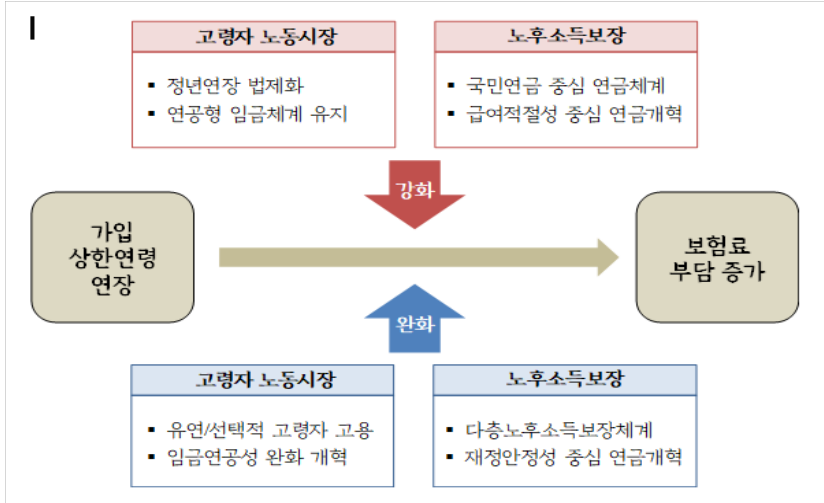
[그림 4-1] 근로자(가입자)의 국민연금 가입상한연령 연장에 관한 태도 형성



자료: 저자 작성.

국민연금의 순기여자로서 기업은 보험료 상향이 곧 연금급여 상향을 의미하는 가입자에 비해 보험료 상향에 좀 더 민감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에 연금개혁 측면에서 재정 안정화를 위한 보험료 상향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여기지만, 동시에 소득대체율 상향 조정 등을 통해 추가적 보험료 부담이 발생하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사용자 단체에서는 이에 대해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를 통한 노후소득보장 제도가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실제로는 사적연금에 대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어 현재의 연금불평등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반면 사용자 단체의 성격과 가입자 단체의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는 소상공인 단체의 경우 지역 가입자-납부예외자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지금까지 언급한 기업의 입장은 [그림 4-2]에 요약되어 있다.

[그림 4-2] 기업(사용자)의 국민연금 가입상한연령 연장에 관한 태도 형성



자료: 저자 작성.

가입자와 기업, 그리고 중간적 위치에 속한 소상공인에 이르기까지 가입상한연령 연장을 둘러싼 이해는 이처럼 상당 부분 갈등하는 측면들을 가지고 있다. 여기에는 가입상한연령 연장 자체만이 아닌 우리나라의 노동시장 불평등이나 그와 연관되어 나타나는 연금불평등이 영향을 미치고 있기에 해결의 방향은 간단하지 않다. 노동조합 대표와 사용자 단체 대표가 공통적으로 정년연장 문제와 연계하지 않을 경우 가입상한연령 연장 자체는 도입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제시하고 있지만, 여기에는 딜레마가 있다. 가입상한연령 연장이 특히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있는 개인들의 가입기간을 연장함으로써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한다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고령자 고용과 연계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모든 이해관계자가 동의한 단 한 가지 원칙이 있다면, 제도 개혁의 과정에 대한 것이다. 제도 개혁을 가입상한연령 연장으로 좁혀서 보든 국민연금, 더 넓게는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전반으로 넓혀서 보든 모든

이해관계자는 정부의 충분한 정책 커뮤니케이션과 의견수렴, 이해관계자 간 논의를 통한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강조하였다. 특히 가입자들은 현존하는 국민연금에 대한 오인과 불신의 상당 부분이 정부의 불충분한 정책 커뮤니케이션에 있다고 여기고 있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 2. 정책적 함의

본 장의 목적은 가입상한연령 연장을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하는 것 보다는 이해관계자들의 인식에 대해 살펴보고 이들의 선호와 요구를 파악하는 것에 있다. 특히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해관계자들의 인식과 요구는 여러 영역에서 상충되는 측면이 있기에 본 장의 고찰만으로 바람직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상충하는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고려하는 몇 가지 정책적 방향에 대해서만 언급하기로 하겠다.

첫째, 가입상한연령 연장이라는 모수 개혁은 이 제도적 규범 자체만의 함수가 아닌 고령자 노동시장 및 노후소득보장체계 개혁이 필수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물론 노동조합 대표와 사용자 단체 대표가 공통적으로 이야기한 것처럼, 단기적으로는 정년연장과 별개로 가입상한연령 연장을 먼저 적용할 수도 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 개혁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고령자 고용 및 노후소득보장의 연계라는 종합적 관점에서 장기적 방향을 설계해야 한다.

둘째, 모든 이해관계자가 동의한 것처럼 연금제도와 관련한 투명한 정책 커뮤니케이션과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를 갖추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전 국민 연금 토론’을 포함한 이해관계자와의 광범위한 협의를 통해 국민들에게 연금개혁의 필요성과 불가피성을 이해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연금개혁을 실현했던 영국의 사례와 같이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정책 커뮤니케이션은 어려운 과제를 실현할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이 된다(김영순, 2014). 본 장의 분석을 통해 가입자들의 연금제도에 대한 오해와 불신이 깊고, 그 오해와 불신이 가입상한연령 연장을 포함한 연금개혁에 대한 지지를 얻는 데 제약이 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투명한 정책 커뮤니케이션과 이해관계자 간 협력을 통한 연금제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신뢰성을 회복하는 것은 모든 종류의 연금개혁의 전제조건이 되어야 한다.

셋째, 가입상한연령 연장 문제에 있어서는 고령자 고용의 문제가 핵심적인 이해관계 충돌의 지점이 된다. 가입자들로서는 60대까지도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는 것이 핵심적 과제이지만, 기업으로서는 정년연장에 대한 강한 우려를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은 대립되는 이해 중 어느 쪽이 바람직한 정책 방향인지를 판별하는 것은 이 연구의 범위 밖에 있다. 다만 양자의 이해 중 한쪽을 온전하게 희생시키지 않으면서도 고령자 노동시장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하는 것은 중요하다.

우선 연공형 임금체계에 대한 조정은 가입상한연령 연장이 아니더라도 우리 노동시장의 해묵은 과제라고 볼 수 있으며, 이미 현 정부에서 ‘노동개혁’의 명목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 방향이기도 하다. 임금체계 전환은 정년연장, 즉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의 계속고용에 따른 사용자의 부담을 줄이면서도 고령자 고용의 불안정성을 줄일 수 있는 접근이기도 하다. 다만 기업의 고령자 고용 회피를 완화하고 동일노동-동일임금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단지 개별 기업 내에서의 임금체계 변화가 아니라 기업 횡단적 임금체계를 형성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정이환, 2010; 조성재, 2014).

아울러 고령자 고용을 지원하는 조치들도 중요하다. 고령 노동자를

계속 고용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은 현재도 운영되고 있다. 이런 정책은 경과 기간 동안 필요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고령자에게 적합한 직무가 공공과 민간에서 모두 개발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중요하다. 한편으로는 공공부문에서 고령자 적합 직무를 개발해 ‘모범적인 사용자’로서 역할하면서 다른 한 편으로는 민간부문의 기업들이 인구 고령화 추이에 맞추어 고령자에 맞는 직무 및 노동환경을 발전시킴으로써 고령자의 노동이 생산적이 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고령자 노동시장과 관련한 규제적 조치 역시 중요하다. 법정 정년의 연장 및 법정 정년이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 역시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현재의 촉탁 재고용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편법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 특히 촉탁 재고용을 프리랜서 형태로 계약하는 ‘가짜 자영업’은 노동법과 사회보장법을 회피하는 시도임과 동시에 정상적으로 고령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 규제차익(regulatory arbitrage)을 누리는 시도라는 점에서 근절할 필요가 있다.

넷째, 현재 국민연금 개혁이 논의되고 있는바, 연금개혁의 방향에 대한 제언은 본 장의 범위를 넘어서는 일이다. 다만 이해관계자와의 논의를 통해 한 가지 파악할 수 있었던 것은 현재의 연금개혁이 주로 재정 안정화를 염두에 두고 있지만, 재정 안정화와 함께 연금불평등을 개선하고 노후 소득보장의 효과성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점이다. 특히 이를 위해서는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를 염두에 두고 각 층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중요하다. 또한 연금불평등을 염두에 둔다면 연금 가입기간이 짧은 저소득 근로자나 지역가입자의 유효한 노후 소득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방안이 필요하다. 가입상한연령 연장은 그 자체로 이와 같은 효과를 갖지만, 보험료 지원의 확대나 크레딧 제도 등 취약한 노동시장 참여자의 국민연금 안정적 기여를 지원하는 정책이 결합

될 때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특히 최근 지역가입자 중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의존적 계약자(dependent contractor) 혹은 노무 제공자로 분류되는 집단이 증가하고 있다. 이들은 종전의 자영업자와 달리 타인의 사업을 위해 노무를 제공하기에 최근 ‘전 국민 고용보험’ 및 ‘전 국민 산재보험’에서는 이들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기업이 이들의 사회보험 수급권을 위해 일정한 기여를 하계끔 제도화하고 있다. 고용형태 다변화를 비롯한 노동시장의 변화 양상을 고려하면 국민연금에서도 이와 같은 변화의 방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제5장

### Dynamic micro simulation model을 활용한 가임상한연령 연장의 장기 전망

제1절 분석 개요

제2절 분석 모형과 시나리오

제3절 시뮬레이션 결과

제4절 소결



## 제 5 장

# Dynamic micro simulation model을 활용한 가입상한연령 연장의 장기 전망

### 제1절 분석 개요

이 장에서는 마이크로시뮬레이션 모형(microsimulation model, 이하 MSM)을 이용해 국민연금의 가입상한연령 연장이 장기적으로 노후소득 보장 및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가입상한연령 연장은 노동 공급 및 수요, 국민연금 가입 및 징수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가입상한연령 연장의 파급효과 역시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먼저, 가입상한연령 연장으로 인해 사용자의 보험료 부담이 증가하는 것은 노동수요를 감소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가입자의 가입기간이 늘어나 노령연금 수급률과 급여 수준이 높아지는 것은 노동 공급의 증가 요인이 될 수 있다. 한편으로, 가입종별에 따라 노동 공급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수 있다. 이미 임의계속가입 중인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가입상한연령이 연장되면 보험료 부담이 감소하게 되며, 이는 노동 공급의 증가 요인이 될 수 있다. 반면, 60세 이상 미가입자의 경우 의무가입으로 인해 보험료 부담이 증가하게 되며, 이는 노동 공급을 줄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가입상한연령 연장이 징수율에 미치는 영향 역시 상이하다. 먼저, 가입상한연령이 높아진 만큼 가입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노령연금 수급권 확보 가능성과 급여 수준이 높아질 수 있는데, 이는 징수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 반면, 가입상한연령 연장으로 인해 가입자로 편입되는 이들의 경우 보험료 부담이 증가하므로 가입을 회피할 여지도 있다.

이처럼 가입상한연령 연장 효과의 크기와 방향이 관련 요인들의 복합

적인 작용에 의해 결정되므로, 가입상한연령 연장이 고령자 노동시장과 노후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예단하기는 어렵다. 특히, 고령자의 소득수준과 고용 지위에 따라 가입상한연령 연장에 따른 가입기간 증대 효과가 달라질 수 있기에, 평균적 접근보다는 분포적 접근이 필요하다. 한편으로, 가입상한연령을 점진적으로 연장하는 경우 출생코호트별로 그 효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어, 장기간에 걸친 분석이 요구된다. 앞의 제2장에서 검토한 다수의 선행연구들은 60세 이후 경제활동 참가 증가를 근거로 가입상한연령 연장을 제안하였지만(김성숙, 홍성우, 2011; 우해봉, 한정림, 2017; 이다미 외, 2021; 성혜영 외, 2022 등), 가입상한연령 연장이 노후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지 못하였거나(김성숙, 홍성우, 2011; 이다미 외, 2021), 소득계층, 생애 근로이력에 따른 분포 변화를 살펴보지 못하였다(우해봉, 한정림, 2017; 성혜영 외, 2022).

이에 이 장에서는 Dynamic MSM인 KIHASA SIM을 이용해 가입상한연령 연장이 노후소득과 국민연금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가입상한연령 연장이 ① 국민연금의 가입기간, ② 노령연금 수급률, ③ A값 변화, ④ 급여 수준, ⑤ 소득대체율, ⑥ 연금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장기 전망한다. 이때, 가입상한연령의 연장 효과가 소득계층과 고용 지위, 그리고 제도 이행과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생애평균소득(B값) 분위별, 생애 기간의 상용근로기간 분위별, 출생코호트별 가입상한연령 연장의 효과를 살펴본다. 한편으로, 본 연구에서 활용하는 KIHASA SIM은 노동 공급 및 수요, 국민연금 가입률, 징수율 등을 내생적으로 결정하지 못하는 모형이므로, 본 연구는 시나리오 분석 시 노동 공급 및 수요 변화(고용률 변화)를 반영하지 않는다.

## 제2절 분석 모형과 시나리오

### 1. 분석 모형<sup>1)</sup>

#### 가. 모형 개요

이 장에서 활용하는 모형인 KIHASA SIM<sup>2)</sup>은 2015년 인구주택 총조사 2% 표본(998,459명)에 기초하여 각 개인의 결혼, 출산, 경제활동, 연금 가입 등 다양한 생애 사건들을 시뮬레이션하는 모형이다. 이는 시뮬레이션 기간 동안, 개인의 가상적인 생애 이력과 국민연금 가입 이력을 생성하므로, 가입상한연령 연장이 국민연금의 급여 분포 및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기에 적합하다.

동 모형은 전체 인구를 대상으로 시뮬레이션을 수행하는 전체 집단모형이며, 시뮬레이션 대상의 경제·사회적 상태가 상호작용하여 확률적으로 변화하는 순차 과정을 지닌 동태 모형이다. 이때, 순차 과정은 횡단면적으로 이루어진다.  $t$ 기 생존자의 사회·경제적 상태와 이들이 경험하는 생애 사건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수행한 뒤,  $t+1$ 기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수행하는 방식이다. 시뮬레이션은 연간 단위로 이루어지며, 기초자료(base set)에서 시뮬레이션을 시작한 뒤로는 외부로부터 새로운 개체들을 추가하지 않는 닫힌(closed) 모형이다.

동 모형은 여러 개의 모듈로 구성되어 있다([그림 5-1] 참조). 각 모듈에서는 개인/가구들의 상태 변화와 생애 사건에 관한 시뮬레이션을 수행한다. 이때, 각 사건별 시뮬레이션은 다양한 자료를 통해 미리 추정된 행태

1) 이 부분의 내용은 류재린 외(2023(발간예정), pp.37-139)를 주로 참고하였다.

2) 동 모형은 고제이 외(2016)가 개발한 DOSA를 전반적으로 업데이트한 것이다.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류재린 외(2023(발간예정))를 참고하기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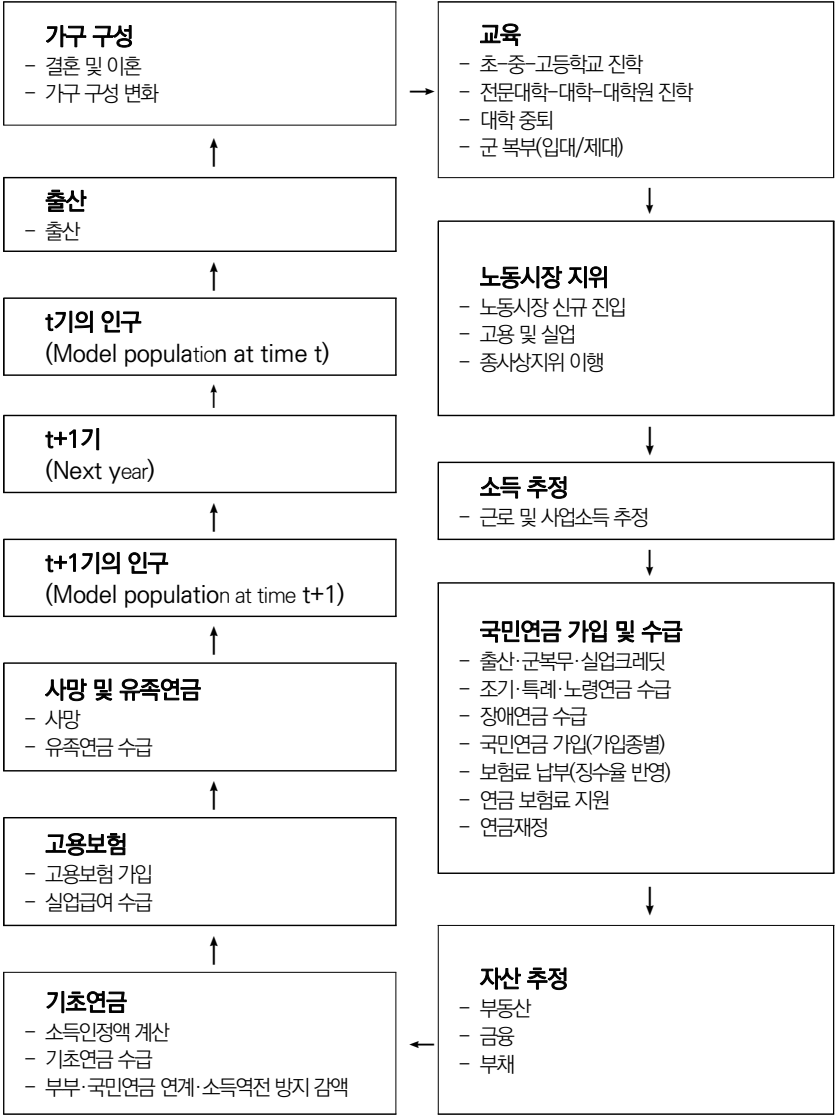
방정식의 모수 추정치를 이용해 수행되며, 외부의 거시 전망치를 이용하여 거시 집계치를 조정한다. 또한 행태방정식에 오차항을 포함하여, 확률적 요인(stochastic element)을 반영한다.<sup>3)</sup>

한편으로, 동 모형은 일부 모듈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외부의 거시 전망치와 비교·수정한다.<sup>4)</sup> 이러한 집계값 조정은 개인의 행태를 모형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식별오류를 낮추고, 시뮬레이션의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함이다. 집계값 조정 셋과 파라미터 셋을 추출하는 데 활용된 자료들은 <표 5-1>에 정리되어 있다.

3) 이는 KIHASA SIM의 시뮬레이션 결과가 일관되지만, 매번 완전히 동일한 결과를 내지는 않음을 의미한다.

4) 이는 몇몇 생애 사건들의 경우 이행확률의 절대적 크기보다는 상대적 크기가 더 중요해짐을 의미한다. 출산 과정을 예로 들어보면, 집계값 조정은 신생아 수를 시뮬레이션 내부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전망치(제4차 재정계산의 인구 가정)를 이용해 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출생아 수가 정해진다면, 시뮬레이션 과정에서는 ‘누가’ 아이를 낳을 것인지만 정하면 된다. 이 경우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출산확률이 높은 순서로 가입 여성을 줄을 세우고 출산자를 결정하는 것이다. 즉, 가입 여성의 출산확률의 절대적인 크기가 아니라 상대적인 크기에 따라 출산이 결정되는 것이다.

[그림 5-1] KIHASA SIM의 순환도



자료 : 류재린 외. (2023). 공적연금의 개혁 효과 분석을 위한 동태적 미시 모의실험 모형 개발. p. 42. [그림 3-2].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발간예정).

〈표 5-1〉 KIHASA SIM의 주요 생애사건과 활용 자료

| 구분         | 사건/변수          | 집계값 조정 셋                                                                                                    | 파라미터 셋                  |
|------------|----------------|-------------------------------------------------------------------------------------------------------------|-------------------------|
| 출산         | 출산             | (출생아 수) 송창길 외(2023)                                                                                         | (출산확률)<br>한국노동패널조사      |
| 가구<br>구성   | 결혼             | (초혼 및 재혼률) 인구동향조사                                                                                           | (결혼확률)<br>인구주택총조사       |
|            | 이혼             | (이혼률) 인구동향조사                                                                                                | -                       |
| 교육         | 상급학교 진학        | (학교급별 진학률) 한국교육개발원 교육<br>통계자료                                                                               | (대학진학률)<br>한국노동패널조사     |
|            | 대학 진학          |                                                                                                             |                         |
|            | 군대 입대/제대       | (군면제율) 병무청 자료                                                                                               |                         |
| 노동<br>시장   | 경제활동상태<br>이행   | (고용률) 2020년 기재부 장기재정전망<br>(종사상지위별 비율) 경제활동인구조사<br>(경제활동이행 비율) 한국노동패널                                        | (근로 및 사업소득)<br>한국노동패널조사 |
|            | 근로소득           |                                                                                                             |                         |
| 국민<br>연금   | 국민연금 가입        | (가입종별 가입률) 제5차 국민연금 재정<br>계산, 경제활동인구조사<br>(조기수급률)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br>(과거 가입 및 이력) 노후보장패널 및<br>행정자료(2005~2009) | (국민연금 가입확률)<br>경제활동인구조사 |
| 자산         | 부동산, 금융,<br>부채 | -                                                                                                           | (자산) 재정패널조사             |
| 기초<br>연금   | 신청/수급          | -                                                                                                           | -                       |
| 고용보<br>험   | 고용보험 가입        | (연간 고용보험 가입기간, 가입률) 경제<br>활동인구조사                                                                            | (고용보험 가입확률)<br>경제활동인구조사 |
| 사망         | 사망             | (사망률) 송창길 외(2023)                                                                                           |                         |
| 거시경<br>제변수 | 이자율,<br>임금상승률  | 2020년 기재부 장기재정전망                                                                                            |                         |

주: 자산과 기초연금의 경우 미래 전망치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집계값 조정을 하지 않음.  
 자료: 류재린 외. (2023). 공적연금의 개혁 효과 분석을 위한 동태적 미시 모의실험 모형 개발.  
 p.43. 〈표 3-2〉.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발간예정).

## 나. 주요 가정 및 시뮬레이션 방법

### 1) 인구 및 거시경제

본 연구는 통계청(2021)의 중위가정을 적용한 송창길 외(2023)의 인구 추계 결과를 이용한다.<sup>5)</sup> 동 추계는 통계청의 인구추계 방법론을 구현한 뒤 추계 기간을 2120년까지 확장한 것으로, 다소간의 방법론적 차이가 있으나 전반적인 추계 결과는 통계청(2021)과 매우 유사하다(송창길 외, 2023(발간예정)).<sup>6)</sup>

아래의 <표 5-2>는 통계청(2021)의 중위 가정을 적용한 양자의 추계 결과를 비교한 것이다. 이를 통해 천명 단위에서는 양자 간 차이가 거의 없음을 알 수 있다.<sup>7)</sup> 다음으로 <표 5-3>은 사망률 추정 시 LLG모형을 적용한 송창길 외(2023)의 추계 결과와 통계청(2021)의 인구추계 결과이다(송창길 외, 2023, p.102). 이에 따르면, 양자는 2120년 인구 기준 약 6천 명(약 0.03%p) 정도의 차이를 보인다. 마지막으로 [그림 5-2]의 인구피라미드 역시 통계청(2021)의 중위가정을 적용한 양 추계의 결과가 거의 동일함을 보여준다.

한편, 본 연구는 중위가정을 적용한 기획재정부(2020. 9. 3.)의 거시경제 전망치를 이용한다(<표 5-4> 참조). 이에 따르면, 실질 경제성장률은 장기적으로 은 0.3~0.5%로 둔화될 전망이며, 실질 임금상승률과 실질 금리 역시 점진적으로 하락할 전망이다. 경제활동 참가율은 2071~2080년

5) 이는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의 인구전망치와 동일한 가정을 적용한 셈이다.

6) 단, 송창길 외(2023(발간예정))와 통계청(2021)의 방법론은 출산율 추정 방법, 100세 이상자에 대한 추계 방법 등에서 차이가 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송창길 외(2023(발간예정))을 참조하기 바란다.

7) 단, 2070년의 사망자 수가 약 3천 명 정도 차이나는 것은 통계청의 인구가정이 2070년까지만 공개되어 2개년의 평균치 계산 시 2071년의 사망자 수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송창길 외(2023(발간예정), p.94)를 참조하기 바란다.

연평균 50.6% 수준까지 하락한 뒤, 소폭 상승하는 것으로 전망되며, 물가 상승률은 물가 안정 목표 수준(2.0%)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5-2〉 통계청(2021)과 송창길 외(2023(발간예정))의 인구변동요인 결과 비교(중위 가정 적용, 2070년까지)

(단위: 천 명)

| 구분 |   | 통계청(2021) (A) |        |        | 송창길 외(2023(발간예정)) (B) |        |        | 차이(B-A) |      |      |
|----|---|---------------|--------|--------|-----------------------|--------|--------|---------|------|------|
|    |   | 2030          | 2050   | 2070   | 2030                  | 2050   | 2070   | 2030    | 2050 | 2070 |
| 인구 | 계 | 51,199        | 47,359 | 37,656 | 51,199                | 47,358 | 37,656 | 0       | -1   | 0    |
|    | 남 | 25,534        | 23,495 | 18,788 | 25,534                | 23,494 | 18,787 | 0       | -1   | -1   |
|    | 여 | 25,665        | 23,864 | 18,868 | 25,665                | 23,864 | 18,869 | 0       | 0    | 1    |
| 출생 | 계 | 305           | 236    | 196    | 305                   | 236    | 196    | 0       | 0    | 0    |
|    | 남 | 156           | 121    | 101    | 156                   | 121    | 101    | 0       | 0    | 0    |
|    | 여 | 149           | 115    | 96     | 149                   | 115    | 96     | 0       | 0    | 0    |
| 사망 | 계 | 408           | 680    | 702    | 408                   | 680    | 705    | 0       | 0    | 3    |
|    | 남 | 215           | 345    | 345    | 215                   | 345    | 347    | 0       | 0    | 2    |
|    | 여 | 192           | 335    | 357    | 192                   | 335    | 358    | 0       | 0    | 1    |
| 이동 | 계 | 46            | 43     | 40     | 46                    | 43     | 40     | 0       | 0    | 0    |
|    | 남 | 25            | 23     | 20     | 25                    | 23     | 20     | 0       | 0    | 0    |
|    | 여 | 21            | 20     | 20     | 21                    | 20     | 20     | 0       | 0    | 0    |

자료 : 송창길 외, (2023). 인구추계모형 구축과 활용 방안.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발간예정). p. 95 〈표 4-1〉.

〈표 5-3〉 통계청(2021)과 송창길 외(2023(발간예정))의 인구변동요인 결과 비교(LLG 적용: 중위, 2120년까지)

(단위: 천 명)

| 구분 |   | 통계청(2021) (A) |        |        | 송창길 외(2023(발간예정)) (B) |        |        | 차이(B-A) |      |      |
|----|---|---------------|--------|--------|-----------------------|--------|--------|---------|------|------|
|    |   | 2030          | 2070   | 2120   | 2030                  | 2070   | 2120   | 2030    | 2070 | 2120 |
| 인구 | 계 | 51,199        | 37,656 | 20,953 | 51,196                | 37,650 | 20,946 | -3      | -6   | -8   |
|    | 남 | 25,534        | 18,788 | 10,571 | 25,532                | 18,784 | 10,562 | -2      | -4   | -9   |
|    | 여 | 25,665        | 18,868 | 10,383 | 25,664                | 18,866 | 10,384 | -1      | -2   | 2    |
| 출생 | 계 | 305           | 196    | 111    | 305                   | 196    | 111    | 0       | 0    | 0    |
|    | 남 | 156           | 101    | 57     | 156                   | 101    | 57     | 0       | 0    | 0    |
|    | 여 | 149           | 96     | 54     | 149                   | 96     | 54     | 0       | 0    | 0    |
| 사망 | 계 | 408           | 702    | 300    | 407                   | 702    | 300    | -1      | 0    | 0    |
|    | 남 | 215           | 345    | 151    | 215                   | 345    | 151    | 0       | 0    | 0    |
|    | 여 | 192           | 357    | 149    | 192                   | 357    | 149    | 0       | 0    | 0    |
| 이동 | 계 | 46            | 40     | 36     | 46                    | 40     | 36     | 0       | 0    | 0    |
|    | 남 | 25            | 20     | 18     | 25                    | 20     | 18     | 0       | 0    | 0    |
|    | 여 | 21            | 20     | 19     | 21                    | 20     | 19     | 0       | 0    | 0    |

자료 : 송창길 외, (2023). 인구추계모형 구축과 활용 방안.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발간예정). p. 102. 〈표 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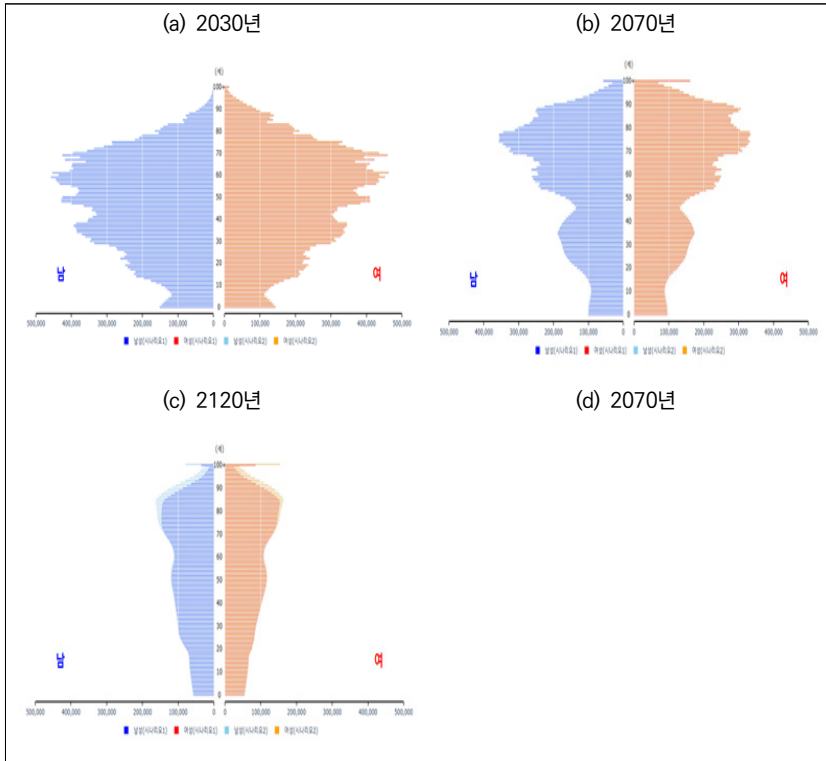
〈표 5-4〉 경제변수 가정(기획재정부(2020. 9. 3.))의 중위가정)

(단위: %)

| 구분      | 2023~2030 | 2031~2040 | 2041~2050 | 2051~2060 | 2061~2070 | 2071~2080 | 2081~2090 | 2091~2100 |
|---------|-----------|-----------|-----------|-----------|-----------|-----------|-----------|-----------|
| 실질경제성장률 | 2.2       | 1.3       | 0.8       | 0.5       | 0.3       | 0.3       | 0.4       | 0.4       |
| 실질임금상승률 | 2.1       | 2.1       | 2.1       | 2.0       | 1.9       | 1.7       | 1.7       | 1.6       |
| 실질금리    | 1.2       | 1.4       | 1.4       | 1.3       | 1.2       | 1.1       | 0.9       | 0.9       |
| 물가상승률   | 2.0       | 2.0       | 2.0       | 2.0       | 2.0       | 2.0       | 2.0       | 2.0       |
| 경제활동참가율 | 63.2      | 60.6      | 56.5      | 53.5      | 51.6      | 50.6      | 50.8      | 52.0      |

주 1) 제시된 경제변수 가정은 해당 기간의 단순평균임. 저자 작성.  
자료: 기획재정부. (2020. 9. 3.). 2020~2060년 장기재정전망.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별첨 자료. ([https://www.mof.go.kr/nw/nes/detailNesDtaView.do?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searchNttId1=MOSF\\_000000000045158&menuNo=4010100](https://www.mof.go.kr/nw/nes/detailNesDtaView.do?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searchNttId1=MOSF_000000000045158&menuNo=4010100) 에서 2023.11.3. 인출.)

[그림 5-2] 통계청(2021)과 송창길 외(2023(발간예정))의 인구피라미드 비교



주 : 1) 출산율-사망률-순이동률 가정 모두 통계청의 중위가정을 반영한 결과임.  
 2) 통계청(2021)과 송창길 외(2023)의 추계결과가 겹쳐있는 상태임.  
 자료 : 송창길 외. (2023). 인구추계모형 구축과 활용 방안. p.108. [그림 4-11].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발간예정).

## 2) 경제활동상태 및 소득추정

KIHASA SIM은 매년 개인의 경제활동상태 변화를 시뮬레이션 한다 ([그림 5-3] 참조). 이는 성-연령별 경제활동인구 비율 전망치와 경제활동 인구조사에서 추출한 경제활동상태별 인구 비율을 통해 매년의 경제활동 상태별 인원수를 산출하고, 경제활동상태 이행 확률을통해 개인의 경제

활동상태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sup>8)</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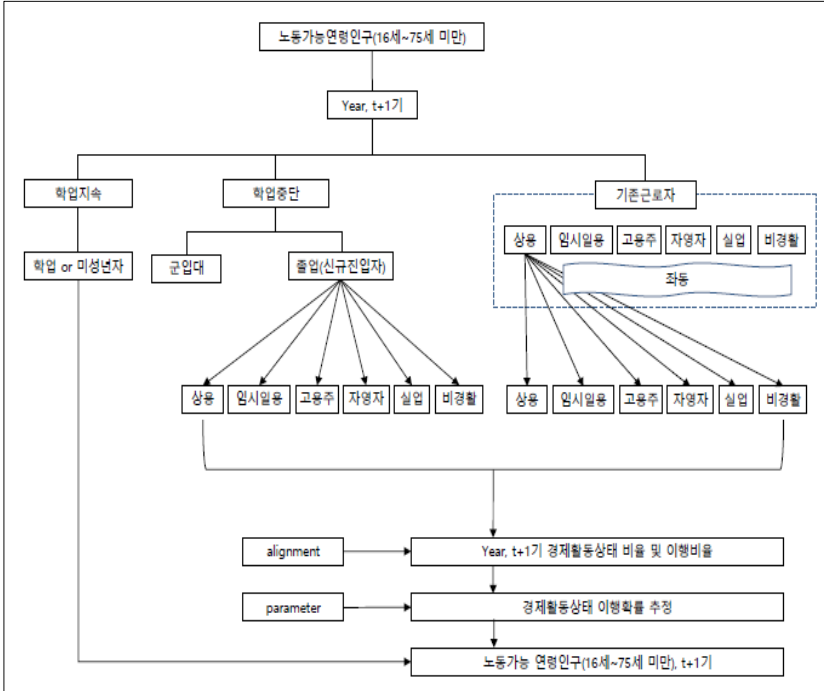
구체적인 시뮬레이션 과정은 다음과 같다. 시뮬레이션 자료에 성-연령-경제활동상태별 비율을 적용하여 16~75세의 성-연령별 경제활동인구수를 산출한다. 이때, 실적치가 존재하는 2016~2022년 동안에는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산출한 경제활동상태별 비율을 이용하며, 이후의 기간 동안에는 기획재정부(2020. 9. 3.)의 전망치를 이용한다.

성-연령-경제활동상태별 인원을 산출한 후에는 노동시장 신규 진입자와 기존 근로자(노동시장에 이미 진입한 자)를 구분하여 경제활동상태를 부여한다. 먼저, 노동시장 신규 진입자 중 석사 이상의 학위자는 상용임금근로자로 이행하는 것으로 가정하며, 학사 이하의 학위자의 경제활동상태는 무작위 추출(random)로 결정한다. 기존 근로자의 경제활동상태는 성별 이행확률을 적용하여 결정한다. 이때 활용하는 성별 이행확률은 15~22차(2012~2019년)<sup>9)</sup> 한국노동패널조사 자료를 이용해 다항로짓 분석으로 추정된 것이다(<부록 4> 참조).

8) 이때 적용되는 기본적인 가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모든 개인은 생애 기간 동안 노동과 학업을 동시에 수행하지 않고, 학업을 완전히 마친 이후 노동시장에 진입한다. 둘째, 한번 노동시장에 진입한 이후에는 다시 학업을 수행하지 않는다. 셋째, 개인의 경제활동상태는 상용근로자, 임시·일용근로자, 고용주, 자영자, 실업, 비경제 활동자의 6가지 유형만 존재한다고 가정한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류재린 외(2023(발간예정))를 참조하기 바란다.

9) 코로나19가 확산된 이후인 2020년과 2021년은 분석 기간에서 제외한다.

[그림 5-3] 경제활동상태 모듈의 결정 과정



자료 : 고재이 외. (2016). 미시모의실험 기반 중장기 사회 재정 영향 평가 모형 개발-노후 소득 보장 정책을 중심으로. p.117. [그림 5-5].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다음으로 근로소득(임금과 사업소득)은 15~22차(2012~2019년) 한국 노동패널조사 자료를 이용해 1계 자기상관을 가정한 확률효과 패널 모형을 이용해 추정한다(Zaidi & Harding, 2009). 이때, 오차항의 1계 자기상관이 존재하는 경우 효율적인 추정량을 얻을 수 없으므로 Baltagi & Wu (1999)가 제시하는 GLS(generalized least squares)로 추정한다.<sup>10)</sup>

10) 소득 추정 식 및 추정 결과는 〈부록 5〉를 참조하기 바란다.

### 3) 국민연금

국민연금의 시뮬레이션은 크게 국민연금의 가입과 수급으로 나눌 수 있는데, 국민연금의 수급 여부와 수급액은 가입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에 기반하여 산출된다. 이에 여기에서는 국민연금 가입과 관련된 시뮬레이션 방법에 대해서만 간단히 살펴본다.<sup>11)</sup>

국민연금의 가입 시뮬레이션은 성-연령-가입종별 가입자 규모를 산출한 뒤, 개인별 국민연금 가입 확률에 따라 가입자를 선별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먼저, 국민연금 가입자 규모는 실적치가 존재하는 2016~2022년까지는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성-연령-가입종별 가입 비율을 이용하여 산출하며,<sup>12)</sup> 2023년부터는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에서 설정한 가입률 가정에 경제활동인구조사를 이용해 계산한 성-연령-가입종별 가입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다(〈표 5-5〉 참조).<sup>13)</sup>

한편, 〈표 5-5〉는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의 가입률 가정을 보여준다. 여기에서 국민연금 가입률(1행)은 자격 취득자 기준의 국민연금 가입률로, 이는 실제로는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보험료 미납자(체납자)와 납부 예외자를 포괄한다. 여기에 가입종별 징수율을 적용하면 실제 보험료를 납부하고 기여를 인정받는 ‘보험료 납부자 비율’을 산출할 수 있다(5행).<sup>14)</sup> 다만, 아직까지 제5차 재정계산에 적용된 구체적인 제도변수 가정이 공개되지 않았기에, 본 연구는 〈표 5-6〉에 제시된 제4차 재정계산의 성-연령

11) 국민연금 수급 과정에 대해서는 류재린 외(2023(발간예정), pp.105-109)를 참조하기 바란다.

12)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를 사용하는 것은 국민연금 공표 통계에 성-연령별 경제활동인구 대비 국민연금 가입 비율에 대한 정보가 부재하기 때문이다.

13) 이는 제5차 재정계산의 ‘경제활동인구 대비 국민연금 가입 비율’과 동일한 비율을 적용한 셈이다.

14) 즉, 본 연구에서는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납부예외자만을 고려하며, 임의가입과 임의계속가입은 고려하지 않는다.

별 징수율 가정을 적용한다.

〈표 5-5〉 5차 재정계산의 가입률 가정

(단위: %)

| 구분         | 2023년 | 2025년 | 2030년 | 2035년 | 2040년 이후 |
|------------|-------|-------|-------|-------|----------|
| 국민연금 가입률   | 92.6  | 93.5  | 93.8  | 93.9  | 94.1     |
| 지역가입자 비중   | 31.4  | 30.9  | 27.9  | 25.5  | 23.6     |
| 납부예외자 비율   | 40    | 39.2  | 38    | 36.3  | 34.3     |
| 지역가입자 징수율  | 72.1  | 73.9  | 75.9  | 76.8  | 77.7     |
| 보험료 납부자 비율 | 75.2  | 76.7  | 79.0  | 80.7  | 82.2     |

- 주: 1) 국민연금 가입률은 경찰인구 대비 납부예외 혹은 보험료 미징수자를 포함한 가입자 비율임.  
 2) 보험료 납부자 비율(5행)은 경찰인구 대비 납부예외 혹은 보험료 미징수자를 제외한 가입자 비율임.  
 3) 보험료 납부자 비율 계산 시 사업장가입자의 징수율은 4차 재정계산의 가정인 98.6%를 적용함.
- 자료: 1) 국민연금재정계산위원회, 국민연금재정추계전문위원회, 국민연금기금운용발전전문위원회. (2023).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 발표자료 -. 2023.8.30. ([https://m.nps.or.kr/jsp/page/mobile/ne/HM\\_4D0002\\_01.jsp?hrnkMenuId=MW\\_NE&menuId=MW\\_NE\\_002&seq=28637](https://m.nps.or.kr/jsp/page/mobile/ne/HM_4D0002_01.jsp?hrnkMenuId=MW_NE&menuId=MW_NE_002&seq=28637)에서 2023.10.16. 인출). p.7. 〈표 5-5〉.  
 2) 류재린 외. (2023). 공적연금의 개혁 효과 분석을 위한 동태적 미시 모의실험 모형 개발.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발간예정). p.119. 〈표 5-22〉에서 재인용.

전술한 과정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종별 가입자 규모를 산출한 이후에는 국민연금 가입확률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자를 결정한다. 국민연금 가입 확률은 2016~2022년의 경제활동인구조사와 로짓 모형을 이용해 추정된 결과를 적용하며, 2022년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는 2022년의 추정 결과를 적용한다.<sup>15)</sup>

15) 국민연금 가입확률 추정에 사용된 변수는 개인적 요인(성별, 연령, 교육수준, 배우자 유무), 경제적 요인(평균임금), 노동요인(종사상지위) 등이다. 국민연금 가입확률 추정에 사용된 변수의 구성 및 특징 및 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류재린 외(2023(발간예정), pp. 122-126)를 참조하기 바란다.

〈표 5-6〉 지역가입자의 성별-연령별 징수율 지수

| 연령    | 남성    | 여성    | 연령 | 남성    | 여성    |
|-------|-------|-------|----|-------|-------|
| 18~25 | 0.943 | 0.881 | 43 | 0.899 | 0.874 |
| 26    | 0.887 | 0.830 | 44 | 0.915 | 0.879 |
| 27    | 0.907 | 0.849 | 45 | 0.928 | 0.894 |
| 28    | 0.894 | 0.845 | 46 | 0.941 | 0.903 |
| 29    | 0.885 | 0.838 | 47 | 0.962 | 0.928 |
| 30    | 0.884 | 0.845 | 48 | 0.980 | 0.949 |
| 31    | 0.871 | 0.843 | 49 | 1.000 | 0.974 |
| 32    | 0.861 | 0.826 | 50 | 1.025 | 1.001 |
| 33    | 0.857 | 0.827 | 51 | 1.055 | 1.035 |
| 34    | 0.853 | 0.827 | 52 | 1.077 | 1.064 |
| 35    | 0.851 | 0.834 | 53 | 1.098 | 1.088 |
| 36    | 0.853 | 0.832 | 54 | 1.121 | 1.112 |
| 37    | 0.859 | 0.835 | 55 | 1.143 | 1.138 |
| 38    | 0.860 | 0.836 | 56 | 1.169 | 1.164 |
| 39    | 0.862 | 0.846 | 57 | 1.192 | 1.183 |
| 40    | 0.876 | 0.855 | 58 | 1.207 | 1.191 |
| 41    | 0.881 | 0.859 | 59 | 1.216 | 1.191 |
| 42    | 0.890 | 0.865 | -  | -     | -     |

자료 :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 (2018). 2018 국민연금재정계산: 국민연금 장기재정추계. p.112.  
〈부록 표 1-37〉.

보험료 산정은 소득에 기초하여 이루어진다. 기준소득월액 상·하한 금액은 2023년까지는 실적치를 이용하고 이후에는 A값 상승률을 반영하여 조정한다. 가입기간은 상용근로자의 경우 연간 12개월을 모두 가입한 것으로 가정하며, 임금근로자 중 임시·일용근로자와 비임금근로자의 경우는 2005~2009년의 한국노후보장패널(KReIS)과 행정자료를 결합한 자료를 이용해 산출한 성-연령-가입종별 가입개월수 비율을 이용하여 가입개월수를 생성한다. 이때, 최근까지 지역가입자의 징수율이 증가하고 있음을 고려하며, 가입종별 평균 징수율을 이용해 성-연령-가입종별 평균 가입기간을 보정하여 사용한다. 이때, 관련 실적치가 존재하는 2022년까지는 실적치를 이용하며, 이후부터는 제4차 재정계산의 징수율 가정을 이용하여 이를 보정한다(〈표 5-5〉 참조).

### 3. 시나리오 설정

가입상한연령 연장의 시나리오는 징수율 가정, 기준소득월액 가정 등에 따라 다양하게 설정될 수 있다. 여기에서는 이들 중 몇 가지 요인들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짚고 넘어간다.

첫째, 앞의 제3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60~64세의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은 50대에 비해 낮다. 앞의 <표 3-2>에 따르면, 60~64세의 경제활동참가율은 64.3%로 50~59세 78.4%에 비하면 14%p나 낮다. 즉, 가입상한연령 연장 시 가입가능기간이 60개월 늘어나지만, 실질적인 가입기간 증가폭은 그보다 낮을 가능성이 높다.<sup>17)</sup>

둘째, 종사상지위와 고용형태에 따른 공적연금 가입률 차이가 존재한다. <표 5-7>을 보면, 상용직의 공적연금 가입률은 연령과 무관하게 99% 수준인 반면, 임시일용직은 연령대별로 60~67% 수준의 가입률을 보이고 있다. 고용주와 자영자는 임시일용직에 비해 양호한 편이지만 상용직에 비해서는 가입률이 낮다. 임금근로자의 가입률을 고용형태별로 살펴보면, 한시적, 시간제, 비전형 근로의 가입률은 정규직에 비해 낮다. 이때, 앞의 <표 3-3>에서 살펴본 것처럼 60~64세의 경우 임시일용직과 자영자의 비율이 높고 고용형태별로도 비정규직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가입상한연령의 연장 효과가 예상 외로 낮아질 수 있다. 한편으로, 앞에서 살펴본 종사상지위-고용형태에 따른 가입률 격차는 60세 이후에도 질 높은 일자리를 유지하는 집단과 그렇지 못한 집단 간 가입기

17) 2022년 8월 기준, 60~64세의 고용률이 63.6%임을 고려하면(통계청, 2023c), 취업자가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한다 하더라도 가입기간이 약 38개월 늘어나는 셈이다. 물론 이는 단순히 가입가능기간(60개월)에 고용률을 곱한 결과이며, 실질적으로 가입기간 증가분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복잡한 계산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노동 공급 및 수요 변화(경제활동참가율 변화)를 고려하지 않으므로, 본 연구의 시뮬레이션 결과 나타날 가입기간 증대 효과는 최대 38개월 전후임을 쉽게 예상할 수 있다.

간 격차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을 시사한다.

셋째, 60~64세의 소득수준은 이전 연령대에 비해 낮다. 앞의 〈표 3-6〉에서 살펴본 것처럼, 비정규직의 82.3%가 A값보다 낮은 소득을 얻고 있으며, 정규직도 절반 이상이 A값보다 낮은 소득을 얻고 있다. 즉, 가입상한연령 연장 시 60세 이상자를 A값 산정에 포함하는 경우 A값이 하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넷째, 고령자의 지역가입 비중이 높고, 지역가입자의 징수율이 낮다는 점은 가입상한연령의 연장 효과를 낮출 수 있는 요인 중 하나이다. [그림 5-4]를 보면,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에 약 25%p의 징수율 격차가 존재하는데, 이와 동시에 [그림 5-5]를 보면, 연령대가 증가할수록 지역 소득신고자의 비중이 점차 높아짐을 알 수 있다. 이는 가입상한연령이 연장된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보험료 납부자 비율이 그리 높지 않거나, 가입종별 간에 가입기간 격차가 심화될 가능성이 존재함을 시사한다.

〈표 5-7〉 종사상지위·고용형태·연령대별 공적연금 가입률

(2022년 8월 기준, 단위: %)

(a) 종사상지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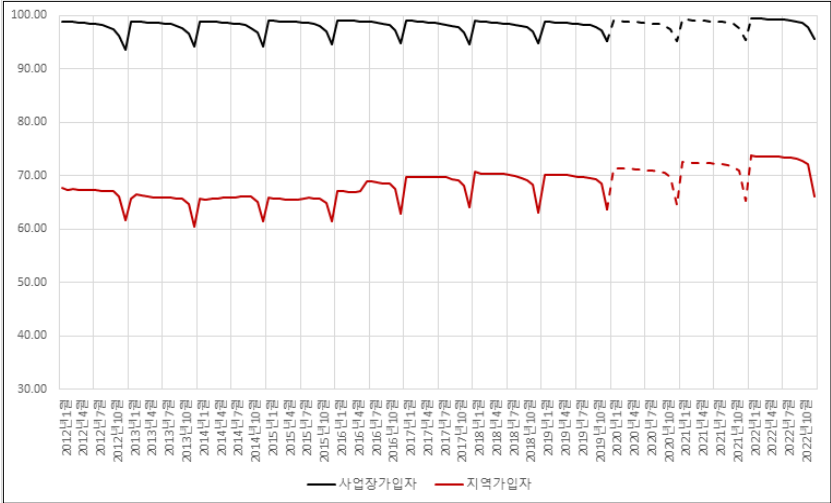
| 구분     | 상용    | 임시일용 | 고용주  | 자영자  |
|--------|-------|------|------|------|
| 18~19세 | 100.0 | 12.5 | 0.0  | 0.0  |
| 20~24세 | 99.3  | 28.8 | 57.9 | 16.9 |
| 25~29세 | 99.5  | 55.6 | 92.4 | 60.6 |
| 30~34세 | 99.7  | 66.7 | 89.5 | 70.6 |
| 35~39세 | 99.6  | 61.0 | 86.7 | 78.6 |
| 40~44세 | 99.4  | 64.2 | 95.1 | 78.3 |
| 45~49세 | 99.5  | 64.6 | 94.4 | 81.9 |
| 50~54세 | 99.6  | 63.0 | 97.6 | 80.7 |
| 55~59세 | 99.0  | 62.4 | 92.7 | 79.8 |

(b) 고용형태(임금근로자)

| 구분     | 정규직  | 한시직  | 시간제  | 비전형  |
|--------|------|------|------|------|
| 18~19세 | 87.1 | 78.9 | 9.5  | 0.0  |
| 20~24세 | 93.3 | 84.6 | 22.0 | 61.7 |
| 25~29세 | 96.6 | 93.4 | 45.6 | 78.8 |
| 30~34세 | 98.4 | 96.3 | 63.9 | 76.2 |
| 35~39세 | 98.6 | 94.1 | 65.6 | 74.9 |
| 40~44세 | 97.9 | 94.4 | 71.8 | 70.2 |
| 45~49세 | 98.3 | 95.8 | 65.6 | 71.6 |
| 50~54세 | 97.4 | 93.0 | 64.0 | 75.5 |
| 55~59세 | 96.7 | 92.5 | 65.7 | 74.4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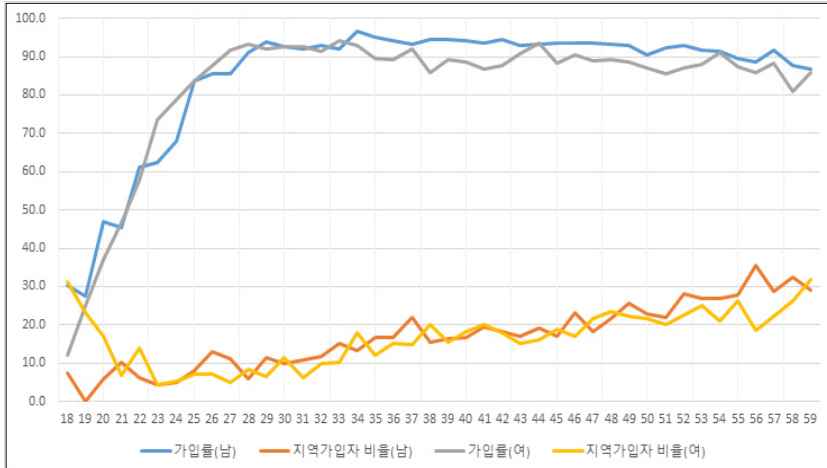
주 : 1) 가입률은 고용형태별 18~59세 임금근로자 대비 국민연금 가입자 비율을 의미함.  
2) 경제활동인구조사는 공적연금 가입 여부를 조사하고 있으므로, 가입자에는 특수직역연금 가입자가 포함되어 있음.  
자료: 통계청. (2022).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8월). 원자료.

[그림 5-4] 가입종별 징수율(금액) 추이(2012~2022년)



주1) 국민연금통계에서 제공하는 당월 징수율로, 징수권 소멸이 반영되지 않은 수치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2) 징수업무가 건강보험공단으로 이관됨에 따라 2020년과 2021년의 징수율 정보는 공개되지 않았음.  
자료: 국민연금공단. (각 연도). 국민연금통계연보. 전주: 국민연금공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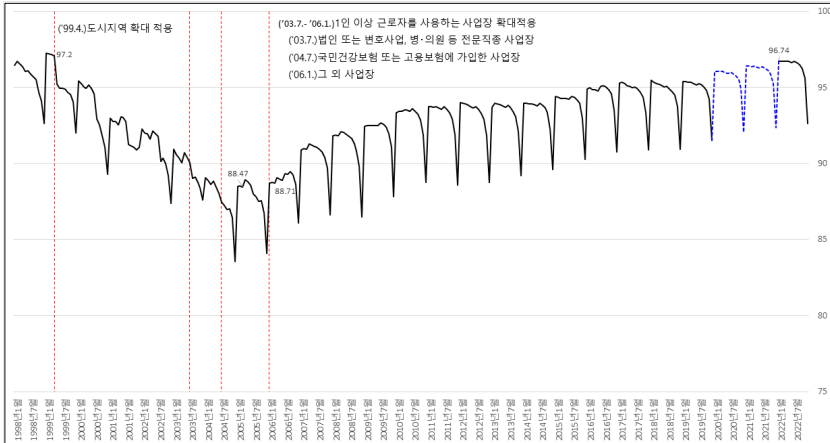
[그림 5-5] 성별·연령별 국민연금 가입률과 지역가입자(소득신고자) 비중



자료: 통계청. (2022).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8월). 원자료.

다섯째, 가입상한연령 연장 시 징수율이 하락할 수 있다. 국민연금제도는 도입 이후 여러 차례 의무가입 대상을 확대해왔다. 가장 대표적으로, 1999년 4월에 도시지역 자영자를 포괄하였고, 2003~2006년까지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가입 대상을 확대한 바 있다. 그런데, [그림 5-6]을 보면, 가입 대상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징수율이 크게 하락하였고, 최근에서야 가입 대상 확대 이전의 징수율 수준을 회복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가입상한연령 연장 시에도 60세 이상자 편입에 따라 징수율이 크게 하락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림 5-6] 국민연금 징수율(금액)추이



주: 1) 국민연금통계에서 제공하는 당월 징수율로, 징수권 소멸이 반영되지 않은 수치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2) 징수업무가 건강보험공단으로 이관됨에 따라 2020년과 2021년의 징수율 정보는 공개되지 않았음.  
 자료: 국민연금공단. (각 연도). 국민연금통계연보. 전주: 국민연금공단.

전술한 내용을 바탕으로 설정한 본 연구의 시나리오는 <표 5-8>과 같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기에 앞서, 모든 시나리오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2025년부터 2033년까지 2년마다 1세씩 순차적으로 가입상한 연령을 연장하는 시나리오를 가정한다. 이는 가입상한연령 연장의 충격을 최소화하고, 수급개시연령 조정이 완료되는 시점에 가입상한연령과 수급개시연령을 일치시키기 위함이다. 둘째, 60세 이상자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59세의 성-연령-종사상지위별 가입률이 60세 이후에도 지속되는 것으로 가정한다. 셋째, 가입상한연령 연장 시 기준소득 월액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시나리오별로 A값 산정 시 18~59세 만을 반영하는 경우와 60세 이상자를 모두 반영하는 경우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모두 살펴본다.

<표 5-8>의 세부 시나리오는 가입종별에 따른 순차 적용 여부와 징수율

수준을 고려하여 설정하였다. 첫 번째 시나리오에서는 사업장가입자부터 우선 적용하고, 지역가입자는 2033년부터 60~64세가 의무가입 대상으로 전환되는 것으로 가정한다. 이는 상대적으로 고용지위가 안정적이고 징수율이 높은 사업장가입자를 우선적으로 포괄하여 가입상한연령 연장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단,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더라도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지역가입자가 존재할 수 있기에, 지역가입 대상자들의 가입률을 현행 임의계속가입자 수준으로 설정한다. 징수율은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59세의 징수율과 동일한 것으로 가정하는데 이는 <표 5-9>와 같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사업장과 지역가입자의 가입상한연령을 동시에 연장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그 외의 가정은 첫 번째 시나리오와 동일하다.

세 번째 시나리오는 사업장과 지역가입자의 가입상한연령을 동시에 연장하되, 징수율이 높아지는 경우를 가정한다. 동 시나리오에서는 지역가입자에게 사업장가입자와 동일한 징수율 수준(98.6%)을 적용한다. 이처럼 지역가입자의 징수율이 높아진다는 가정은 현실 가능성이 다소 떨어지지만, 가입상한연령 연장의 최대 효과를 가늠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한편으로는 이미 59세 지역가입자의 징수율 수준이 장기적으로 약 95%에 근접할 것이라는 가정을 적용하고 있기에(<표 5-9> 참조), 이러한 가정이 크게 무리한 것은 아니라 판단된다.

네 번째 시나리오는 가입상한연령 연장으로 지역가입자의 징수율이 하락하였다가 점진적으로 회복하는 상황을 가정한다.<sup>18)</sup> 좀 더 구체적으로는 의무가입연령이 1세씩 높아질 때마다 지역가입자의 징수율이 2%p씩 낮아지는 것으로 가정한다. 즉 60~64세 지역가입자의 징수율이 2025년부터 2033년까지 총 10%p 하락했다가, 이후 10년간 점진적으로

18) 앞의 [그림 5-5]는 전체 가입자의 징수율이 하락한 것을 보여주지만, 최근 사업장가입자의 자격관리가 과거에 비해 엄격해졌음을 고려하여, 지역가입자의 징수율만 하락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증가하여 2044년에서야 59세의 평균 징수율 수준을 회복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이러한 징수율 하락폭 및 회복 추세 가정은 앞에서 살펴본 징수율 하락 경험을 고려한 것이다([그림 5-5] 참조).

〈표 5-8〉 시뮬레이션 분석을 위한 시나리오 구성

| 구분   | 의무가입연령                            | 적용 대상                                                  | 징수율                                                   | A값 산정 |
|------|-----------------------------------|--------------------------------------------------------|-------------------------------------------------------|-------|
| S0   | Baseline<br>(현행, 59세까지<br>의무가입)   | -                                                      | -                                                     | -     |
| S1   | 64세까지 의무가입<br>(2033년까지<br>단계적 연장) | 사업장가입자부터<br>우선 적용<br>(지역가입자는<br>2033년부터<br>64세까지 의무가입) | 59세 평균<br>징수율 적용                                      | 제외    |
| S1-2 |                                   |                                                        |                                                       | 포함    |
| S2   | 상동                                | 사업장가입자,<br>지역가입자 동시<br>적용                              | 상동                                                    | 제외    |
| S2-1 |                                   |                                                        |                                                       | 포함    |
| S3   | 상동                                | 상동                                                     | 사업장가입자<br>징수율(98.6%)<br>적용                            | 제외    |
| S3-1 |                                   |                                                        |                                                       | 포함    |
| S4   | 상동                                | 상동                                                     | 2033년까지<br>점진적 하락 후<br>2043년에 59세<br>평균 징수율<br>수준을 회복 | 제외    |
| S4-1 |                                   |                                                        |                                                       | 포함    |

자료: 저자 작성.

〈표 5-9〉 59세의 성-가입종별 징수율 가정

(단위: %)

| 구분         |    | 2023 | 2025년 | 2030년 | 2035년 | 2040년<br>이후 |
|------------|----|------|-------|-------|-------|-------------|
| 사업장<br>가입자 | 남성 | 98.6 |       |       |       |             |
|            | 여성 | 98.6 |       |       |       |             |
| 지역<br>가입자  | 남성 | 87.7 | 89.9  | 92.3  | 93.4  | 94.5        |
|            | 여성 | 85.9 | 88.0  | 90.4  | 91.5  | 92.5        |

주: 1)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의 징수율 가정에 제 4차 재정계산의 지역가입자의 성-연령별 징수율 가정을 적용한 결과임.

자료: 저자 작성.

### 제3절 시뮬레이션 결과

#### 1. 국민연금 가입 및 수급<sup>19)</sup>

여기에서는 가입상한연령의 연장 효과를 살펴보기에 앞서 국민연금 가입 및 수급과 관련된 기본적인 시뮬레이션 결과를 살펴본다. <표 5-10>는 가입상한연령 연장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2025~2033년 전후 기간 동안 59~64세의 국민연금 가입률을 보여준다. 시나리오별로 시뮬레이션 결과를 비교해보면, 먼저,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를 동시에 의무 가입 대상으로 편입하는 경우(S2)는 사업장가입자만 우선 적용하는 경우(S1)에 비해 가입률이 높다. 다만, 그 차이가 그리 크지는 않다. 두 시나리오 간에 효과가 가장 크게 벌어지는 2031년의 가입률 격차는 연령대별로 0.0~11.4%p 수준이다(<표 5-10> 참조).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모두 의무가입자로 편입되는 2033년부터는 두 시나리오에 동일한 가입률과 징수율이 적용되기에 양자 간 격차가 사라진다. 한편으로, 본 연구는 2040년까지 지역가입자의 징수율이 계속해서 높아진다는 낙관적 가정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2035년과 2043년의 가입률이 2033년에 비해 높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지역가입자에게 사업장가입자 수준의 높은 징수율을 적용하는 경우(S3), 앞의 두 시나리오(S1, S2)에 비해 가입률이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분석 기간 내내 계속되지만, 59세 지역가입자의 징수율이 90%가 넘는 수준이므로 그 차이가 크지는 않다. 특히, 국민연금

19) 이 부분에서 <표 5-10>을 제외한 나머지 그림들은 류재린 외(2023(발간예정))의 [그림 6-1]~[그림 6-5]와 동일하다. 이는 양자가 동일한 모형과 가정을 사용하여 산출한 결과이기 때문이다. 그림에도 본 연구에서 해당 그림들을 소개하는 것은 이에 대한 이해가 가입상한연령의 연장과 관련된 시뮬레이션 결과를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제도가 완전히 성숙된 이후에는 시나리오 간 격차가 거의 사라진다.

마지막으로, 가입상한연령 조정 시 징수율이 떨어지는 경우(S4), 앞의 시나리오들에 비해 가입률이 크게 떨어진다. 2025년을 예로 들어보면, 타 시나리오들은 지역가입자가 전체 60세 인구의 20% 내외를 차지하고 있으나, 시나리오 4는 15.3% 수준에 불과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가입률 차이가 가입상한연령 조정이 완료되는 2033년까지 심화된 후 2044년에 정상화되는 것으로 가정하였는데, <표 5-10>을 통해 2043년의 가입률이 타 시나리오들과 유사한 수준으로 회복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국민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과 관련된 주요 지표들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살펴본다. 각 지표별 시뮬레이션 결과는 생애 소득분위와 생애 상용근로 분위를 기준으로 제시된다. 이때, 생애 소득분위는 생애 기간(18~59세, 42년) 동안의 B값(즉, 근로/사업소득의 평균)을 기준으로 구분한 5분위를, 생애 상용근로 분위는 생애 기간 동안의 상용근로 종사 기간을 기준으로 구분한 5분위를 의미한다.

먼저, [그림 5-7]과 [그림 5-8]은 출생코호트별 가입기간 추이를 보여준다. 이에 따르면, 평균 가입기간은 후세대로 갈수록 꾸준히 증가하여 장기적으로 280개월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2040년부터 실질적인 보험료 납부자가 경제활동인구의 82.2% 수준에 이른다는 낙관적인 가정을 적용한 결과로 해석된다. 이처럼 가입기간이 증가함에 따라 노령연금 수급률 역시 장기적으로 90%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난다([그림 5-9], [그림 5-10]). 다만, [그림 5-7]부터 [그림 5-10]까지에 따르면, 가입기간과 노령연금 수급률 모두 생애 소득분위(B값)와 생애 상용기간 분위별 격차가 존재한다. 먼저 생애 소득분위별로 살펴보면, 5분위의 경우 1970년생부터 평균 가입기간이 300개월 이상인 반면, 1분위의 경우 1991년 코호트 이후에서야 평균 가입기간이 120개월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그림 5-7]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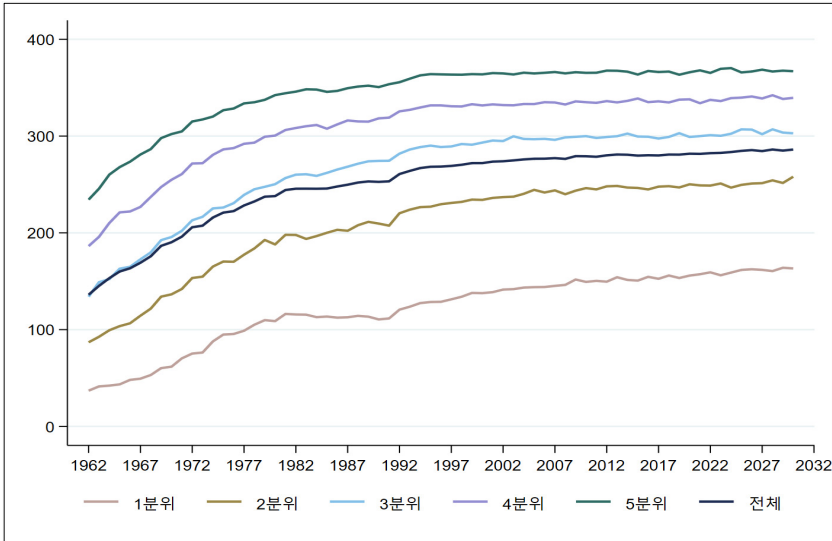
〈표 5-10〉 가입상한연령 조정 기간 동안의 59~64세의 가입률 변화

| 구분   | 연령 | 현행   |      |             | 시나리오 1 |      |             | 시나리오 2 |      |             | 시나리오 3 |      |             | 시나리오 4 |      |             |
|------|----|------|------|-------------|--------|------|-------------|--------|------|-------------|--------|------|-------------|--------|------|-------------|
|      |    | 사업장  | 지역   | 계           | 사업장    | 지역   | 계           | 사업장    | 지역   | 계           | 사업장    | 지역   | 계           | 사업장    | 지역   | 계           |
| 2025 | 59 | 35.6 | 21.1 | <b>56.6</b> | 35.6   | 21.1 | <b>56.6</b> | 35.6   | 21.1 | <b>56.6</b> | 35.6   | 21.1 | <b>56.6</b> | 35.6   | 21.1 | <b>56.6</b> |
|      | 60 |      |      |             | 33.0   | 19.9 | <b>53.0</b> | 33.0   | 20.5 | <b>53.6</b> | 33.0   | 21.8 | <b>54.9</b> | 33.0   | 15.3 | <b>48.3</b> |
| 2027 | 59 | 38.0 | 20.8 | <b>58.8</b> | 38.0   | 20.8 | <b>58.8</b> | 38.0   | 20.8 | <b>58.8</b> | 38.0   | 20.8 | <b>58.8</b> | 38.0   | 20.8 | <b>58.8</b> |
|      | 60 | 0.0  | 0.0  | <b>0.0</b>  | 34.3   | 20.7 | <b>55.0</b> | 34.3   | 20.8 | <b>55.1</b> | 34.3   | 21.5 | <b>55.9</b> | 34.3   | 14.3 | <b>48.6</b> |
|      | 61 | 0.0  | 0.0  | <b>0.0</b>  | 31.3   | 16.7 | <b>48.0</b> | 31.3   | 20.5 | <b>51.8</b> | 31.3   | 22.2 | <b>53.5</b> | 31.3   | 14.3 | <b>45.6</b> |
| 2029 | 59 | 40.4 | 20.7 | <b>61.1</b> | 40.4   | 20.7 | <b>61.1</b> | 40.4   | 20.7 | <b>61.1</b> | 40.4   | 20.7 | <b>61.1</b> | 40.4   | 20.7 | <b>61.1</b> |
|      | 60 | 0.0  | 0.0  | <b>0.0</b>  | 36.2   | 20.0 | <b>56.2</b> | 36.2   | 21.0 | <b>57.2</b> | 36.2   | 21.0 | <b>57.2</b> | 36.2   | 16.6 | <b>52.8</b> |
|      | 61 | 0.0  | 0.0  | <b>0.0</b>  | 32.6   | 16.8 | <b>49.4</b> | 32.6   | 20.0 | <b>52.7</b> | 32.6   | 21.2 | <b>53.8</b> | 32.6   | 17.6 | <b>50.2</b> |
|      | 62 | 0.0  | 0.0  | <b>0.0</b>  | 30.0   | 10.0 | <b>40.0</b> | 30.0   | 20.0 | <b>49.9</b> | 30.0   | 21.1 | <b>51.1</b> | 30.0   | 17.7 | <b>47.7</b> |
| 2031 | 59 | 42.0 | 20.4 | <b>62.4</b> | 42.0   | 20.4 | <b>62.4</b> | 42.0   | 20.4 | <b>62.4</b> | 42.0   | 20.4 | <b>62.4</b> | 42.0   | 20.4 | <b>62.4</b> |
|      | 60 |      |      |             | 37.5   | 21.4 | <b>58.9</b> | 37.5   | 21.4 | <b>58.9</b> | 37.5   | 21.4 | <b>58.9</b> | 37.5   | 17.2 | <b>54.7</b> |
|      | 61 |      |      |             | 34.5   | 17.1 | <b>51.6</b> | 34.5   | 20.0 | <b>54.5</b> | 34.5   | 20.9 | <b>55.4</b> | 34.5   | 17.9 | <b>52.4</b> |
|      | 62 |      |      |             | 31.7   | 10.2 | <b>41.9</b> | 31.7   | 19.8 | <b>51.5</b> | 31.7   | 21.1 | <b>52.8</b> | 31.7   | 18.0 | <b>49.7</b> |
|      | 63 |      |      |             | 28.6   | 8.2  | <b>36.8</b> | 28.6   | 19.6 | <b>48.2</b> | 28.6   | 20.7 | <b>49.3</b> | 28.6   | 18.0 | <b>46.6</b> |
| 2033 | 59 | 43.8 | 20.0 | <b>63.7</b> | 43.8   | 20.0 | <b>63.7</b> | 43.8   | 20.0 | <b>63.7</b> | 43.8   | 20.0 | <b>63.7</b> | 43.8   | 20.0 | <b>63.7</b> |
|      | 60 |      |      |             | 38.9   | 19.4 | <b>58.3</b> | 38.9   | 19.4 | <b>58.3</b> | 38.9   | 19.9 | <b>58.8</b> | 38.9   | 16.7 | <b>55.6</b> |

| 구분   | 연령 | 현행   |      |             | 시나리오 1 |      |             | 시나리오 2 |      |             | 시나리오 3 |      |             | 시나리오 4 |      |             |
|------|----|------|------|-------------|--------|------|-------------|--------|------|-------------|--------|------|-------------|--------|------|-------------|
|      |    | 사업장  | 지역   | 계           | 사업장    | 지역   | 계           | 사업장    | 지역   | 계           | 사업장    | 지역   | 계           | 사업장    | 지역   | 계           |
|      | 61 |      |      |             | 36.2   | 19.3 | <b>55.5</b> | 36.2   | 19.3 | <b>55.5</b> | 36.2   | 20.0 | <b>56.2</b> | 36.2   | 16.9 | <b>53.2</b> |
|      | 62 |      |      |             | 32.4   | 19.7 | <b>52.1</b> | 32.4   | 19.7 | <b>52.1</b> | 32.4   | 20.4 | <b>52.8</b> | 32.4   | 17.5 | <b>49.9</b> |
|      | 63 |      |      |             | 29.6   | 19.5 | <b>49.1</b> | 29.6   | 19.5 | <b>49.1</b> | 29.6   | 20.3 | <b>49.9</b> | 29.6   | 17.6 | <b>47.3</b> |
|      | 64 |      |      |             | 28.1   | 19.4 | <b>47.5</b> | 28.1   | 19.4 | <b>47.5</b> | 28.1   | 20.6 | <b>48.7</b> | 28.1   | 17.7 | <b>45.8</b> |
| 2035 | 59 | 44.0 | 19.6 | <b>63.6</b> | 44.0   | 19.6 | <b>63.6</b> | 44.0   | 19.6 | <b>63.6</b> | 44.0   | 19.6 | <b>63.6</b> | 44.0   | 19.6 | <b>63.6</b> |
|      | 60 |      |      |             | 40.5   | 19.0 | <b>59.5</b> | 40.5   | 19.0 | <b>59.5</b> | 40.5   | 19.2 | <b>59.7</b> | 40.5   | 16.8 | <b>57.3</b> |
|      | 61 |      |      |             | 37.0   | 18.8 | <b>55.8</b> | 37.0   | 18.8 | <b>55.8</b> | 37.0   | 19.3 | <b>56.3</b> | 37.0   | 17.0 | <b>54.0</b> |
|      | 62 |      |      |             | 33.5   | 18.9 | <b>52.3</b> | 33.5   | 18.9 | <b>52.3</b> | 33.5   | 19.3 | <b>52.8</b> | 33.5   | 17.5 | <b>51.0</b> |
|      | 63 |      |      |             | 31.2   | 18.9 | <b>50.1</b> | 31.2   | 18.9 | <b>50.1</b> | 31.2   | 19.7 | <b>50.9</b> | 31.2   | 17.5 | <b>48.7</b> |
|      | 64 |      |      |             | 28.8   | 19.1 | <b>48.0</b> | 28.8   | 19.1 | <b>48.0</b> | 28.8   | 19.4 | <b>48.3</b> | 28.8   | 17.3 | <b>46.2</b> |
| 2043 | 59 | 46.3 | 19.0 | <b>65.3</b> | 46.3   | 19.0 | <b>65.3</b> | 46.3   | 19.0 | <b>65.3</b> | 46.3   | 19.0 | <b>65.3</b> | 46.3   | 19.0 | <b>65.3</b> |
|      | 60 |      |      |             | 42.0   | 18.0 | <b>60.0</b> | 42.0   | 18.0 | <b>60.0</b> | 42.0   | 18.3 | <b>60.4</b> | 42.0   | 18.0 | <b>60.0</b> |
|      | 61 |      |      |             | 38.2   | 18.1 | <b>56.3</b> | 38.2   | 18.1 | <b>56.3</b> | 38.2   | 18.4 | <b>56.7</b> | 38.2   | 18.1 | <b>56.3</b> |
|      | 62 |      |      |             | 34.5   | 18.1 | <b>52.6</b> | 34.5   | 18.1 | <b>52.6</b> | 34.5   | 18.5 | <b>53.0</b> | 34.5   | 18.1 | <b>52.6</b> |
|      | 63 |      |      |             | 32.0   | 17.5 | <b>49.6</b> | 32.0   | 17.5 | <b>49.6</b> | 32.0   | 17.8 | <b>49.8</b> | 32.0   | 17.5 | <b>49.6</b> |
|      | 64 |      |      |             | 30.6   | 17.2 | <b>47.8</b> | 30.6   | 17.2 | <b>47.8</b> | 30.6   | 17.6 | <b>48.1</b> | 30.6   | 17.2 | <b>47.8</b>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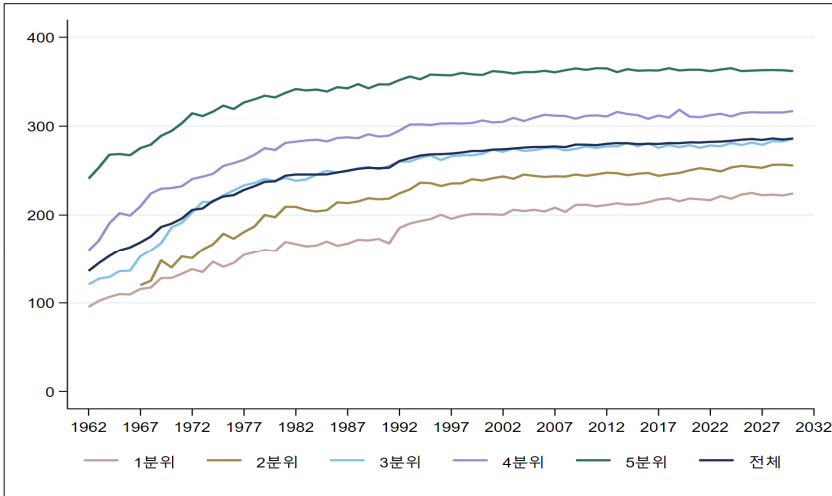
자료: 저자 작성.

[그림 5-7] 생애 소득분위별 가입기간



자료 : 류재린 외. (2023). 공적연금의 개혁 효과 분석을 위한 동태적 미시 모의실험 모형 개발. p.143. [그림 6-1].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발간예정).

[그림 5-8] 생애 상용기간 분위별 가입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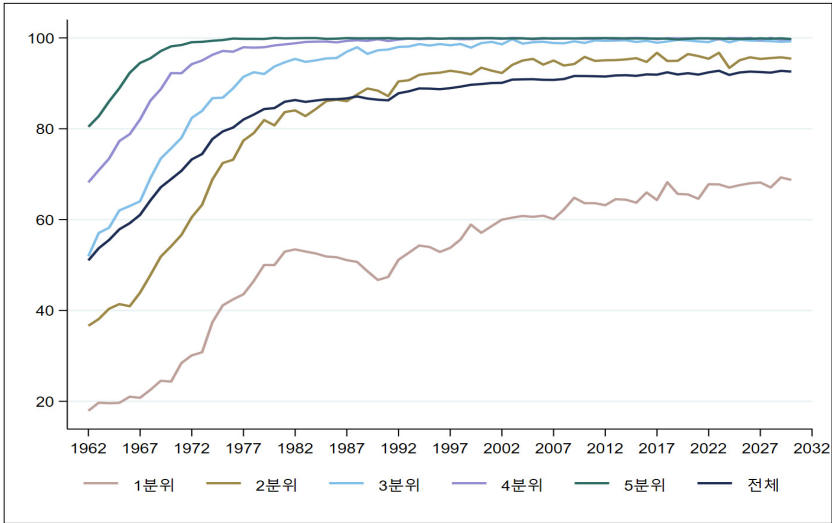


자료: 저자 작성.

국민연금의 노령연금 지급률 역시 이와 유사한 추이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상위 분위의 노령연금 지급률은 거의 100% 수준에 이르는 반면, 1분위의 노령연금 지급률은 2000년생 코호트 이후에서야 60% 수준에 도달하는 것으로 전망된다([그림 5-9] 참조). 한편, 생애 상용기간 분위별 추이도 소득분위별 추이와 유사하지만, 분위별 격차가 상당히 완화된 것처럼 보인다. 이는 생애 소득수준이 높지만 상용근로자로 일한 기간은 짧은 고소득 자영자들이 1분위에 속해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이처럼 일부 고소득자가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하위 분위의 가입기간은 1995년생 코호트 이후에서야 200개월 수준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생애 기간 동안의 노동 안정성에 따른 가입기간 격차가 존재한다는 신우진, 권혁진, 류재린(2016)의 결과를 재확인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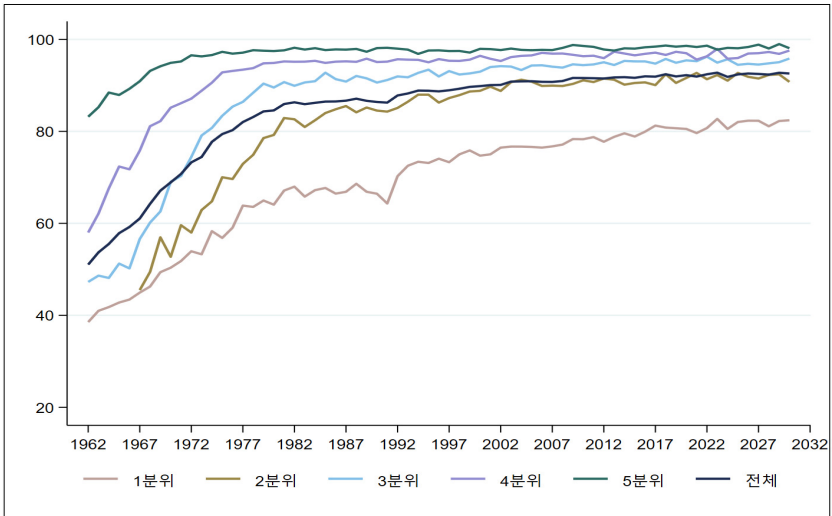
다음으로 [그림 5-11]~[그림 5-12]에 따르면, 노령연금 지급자의 급여 수준은 후세대로 갈수록 완만하게 감소하여 장기적으로 약 65만 원(2023년 불변가 기준)으로 수렴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같은 급여 수준의 감소는 2028년까지 점진적으로 인하되는 소득대체율의 영향으로 보인다. 소득분위별로 살펴보면, 상위 분위의 급여 하락폭에 비해 하위계층의 급여 하락폭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5-11] 참조).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하위계층의 가입기간과 노령연금 지급률이 증가하면서, 노령연금 지급자로 편입되는 저소득층이 늘어난 것도 하위 분위의 급여 수준이 낮아지는 요인 중 하나로 보인다. 생애 상용근로기간별 추이 역시 생애 소득분위별 추이와 유사하지만, 가입기간과 마찬가지로 분위별 격차가 감소한 양상을 보인다([그림 5-12]참조). 반면, 소득분위별 추이와 달리 명목 소득대체율이 인하되는 기간 동안 상위계층의 급여 수준이 계속해서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소득수준은 낮지만 생애 상용근로 기간은 긴 근로자들이 5분위에 포함되기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림 5-9] 생애 소득분위별 노령연금 수급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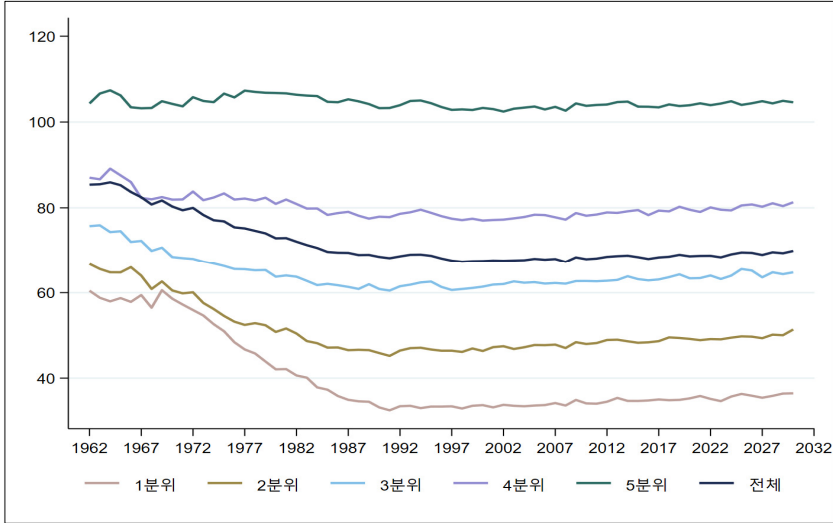
자료 : 류재린 외. (2023). 공적연금의 개혁 효과 분석을 위한 동태적 미시 모의실험 모형 개발. p.143. [그림 6-2].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발간예정).

[그림 5-10] 생애 상용기간 분위별 노령연금 수급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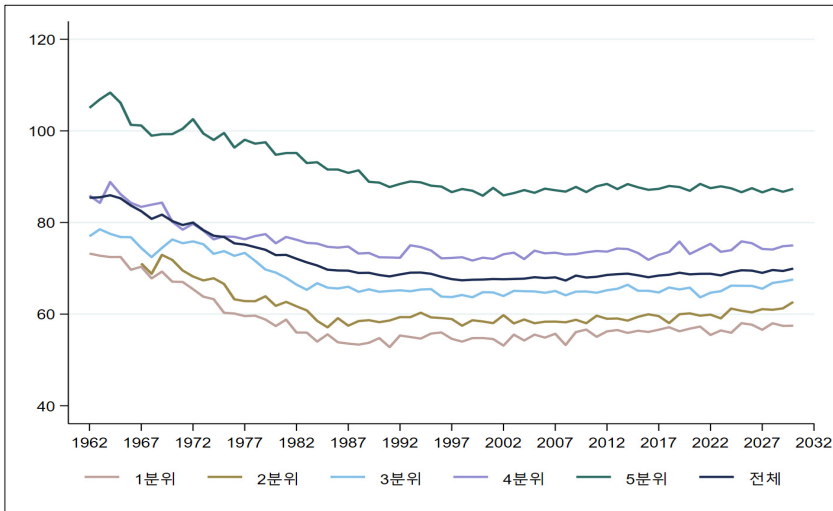
자료: 저자 작성.

[그림 5-11] 생애 소득분위별 노령연금 급여 수준



자료 : 류재린 외. (2023). 공적연금의 개혁 효과 분석을 위한 동태적 미시 모의실험 모형 개발. p.145. [그림 6-3].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발간예정).

[그림 5-12] 생애 상용기간 분위별 노령연금 급여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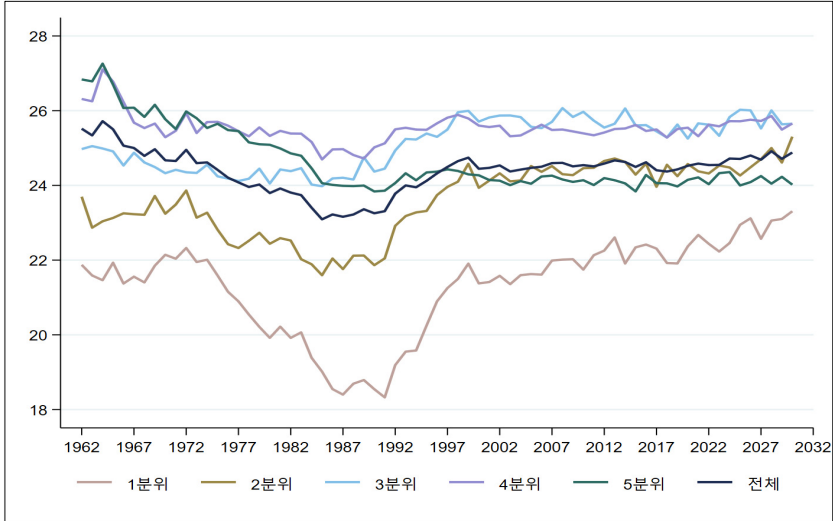
자료: 저자 작성.

실질 소득대체율은 명목 소득대체율 인하의 영향으로 감소하지만, 1987~1992년생 코호트부터 가입기간이 서서히 증가하여 장기적으로 명목 소득대체율 인하 이전의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된다([그림 5-13], [그림 5-14]). 소득분위별로 살펴보면([그림 5-13]), 소득대체율의 하락폭 역시 하위 분위가 더 큰데, 이는 하위 분위의 가입기간이 대체율 인하의 효과를 상쇄할 만큼 늘어나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편, 1996년생 코호트부터는 5분위의 소득대체율이 평균 소득대체율에 비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2~5분위 사이의 가입기간 격차가 상당히 완화되어 국민연금의 재분배 효과가 작동하기 시작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생애 상용기간 분위별로 살펴보면([그림 5-14]), 소득분위별 추이와 달리 상위계층의 소득대체율이 낮아지는 현상은 관찰되지 않는다. 이는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생애 상용근로 5분위에는 상용 근로기간이 길지만 소득수준이 높지 않은 임금근로자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그림 5-15]는 국민연금의 재정수지 전망을 보여준다. 이에 따르면, 적립기금은 수지적자가 발생하는 2039년부터 급속히 감소하여 2054년에 소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제5차 재정계산의 결과와 비교해 수지적자 시점은 2년, 기금소진 시점은 1년 앞당겨진 결과이다. 이 같은 차이는 제도변수 가정, 거시경제변수 가정의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sup>20)</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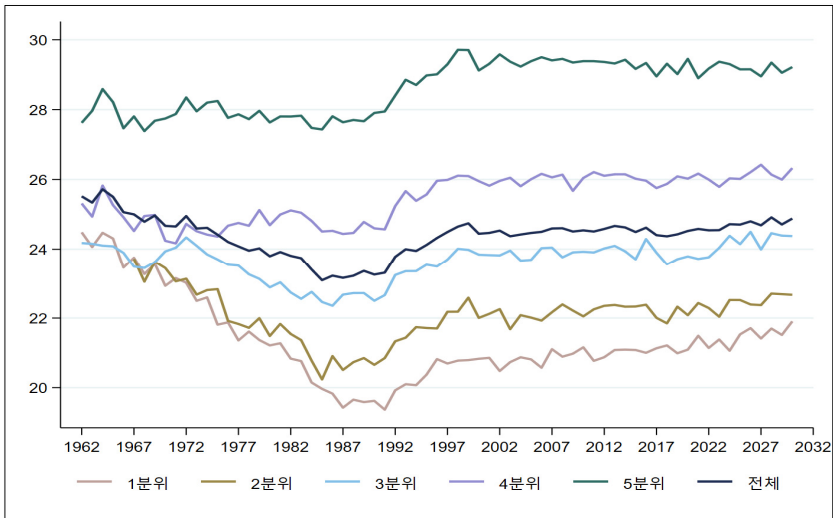
20) 이때, 두 제도는 국민연금 재정추계 모형과 KIHASA SIM은 모형의 구조와 주요 가정이 크게 다르므로, 시뮬레이션 결과를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다만, 서로 다른 두 모형의 재정추계 결과가 크게 차이 나지 않는다는 사실은 국민연금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이 매우 낮은 상태임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림 5-13] 생애 소득분위별 실질 소득대체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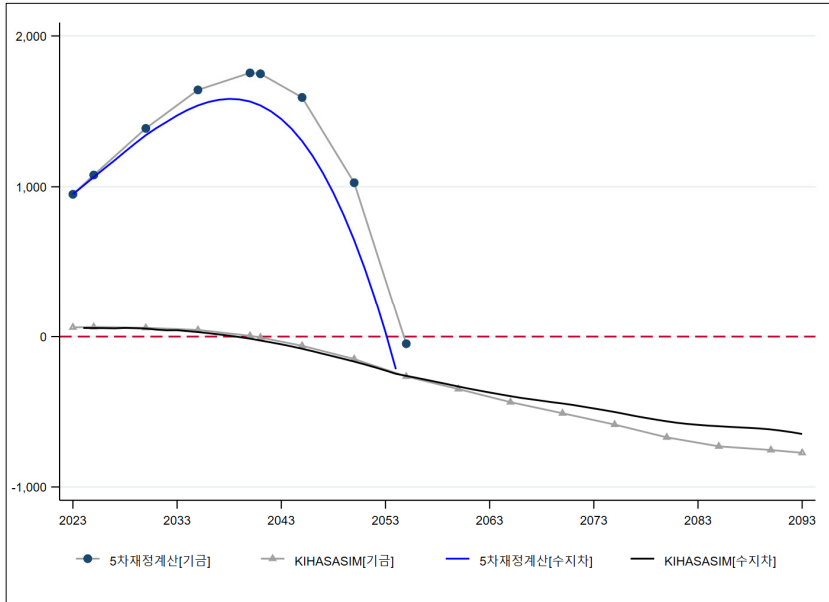
자료 : 류재린 외. (2023). 공적연금의 개혁 효과 분석을 위한 동태적 미시 모의실험 모형 개발. p.145. [그림 6-4].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발간예정).

[그림 5-14] 생애 상용기간 분위별 실질 소득대체율



자료: 저자 작성.

[그림 5-15] 국민연금 재정수지 전망



자료: 1) 국민연금재정계산위원회, 국민연금재정추계전문위원회, 국민연금기금운용발전전문위원회. (2023).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 발표자료 -. 2023.8.30. ([https://m.nps.or.kr/jsppage/mobile/ne/HM\\_4D0002\\_01.jsp?hrnkMenuId=MW\\_NE&menuId=MW\\_NE\\_02&seq=28637](https://m.nps.or.kr/jsppage/mobile/ne/HM_4D0002_01.jsp?hrnkMenuId=MW_NE&menuId=MW_NE_02&seq=28637)에서 2023.10.16. 인출.)의 p.15. <표 5>를 토대로 저자 작성.  
2) 자료: 류재린 외. (2023). 공적연금의 개혁 효과 분석을 위한 동태적 미시 모의실험 모형 개발. p.146. [그림 6-5].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발간예정).

## 2. 가입기간 및 노령연금 수급률

### 가. 가입기간

다음의 [그림 5-16], <표 5-11>, <표 5-12>는 가입상한연령 연장 시나리오별 가입기간 변화를 보여준다. 이에 따르면, 장기적으로 가입상한연령 연장으로 인해 평균 가입기간이 약 28개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그 효과는 코호트별로 상이하다. 예를 들어, 1965년생은 가입상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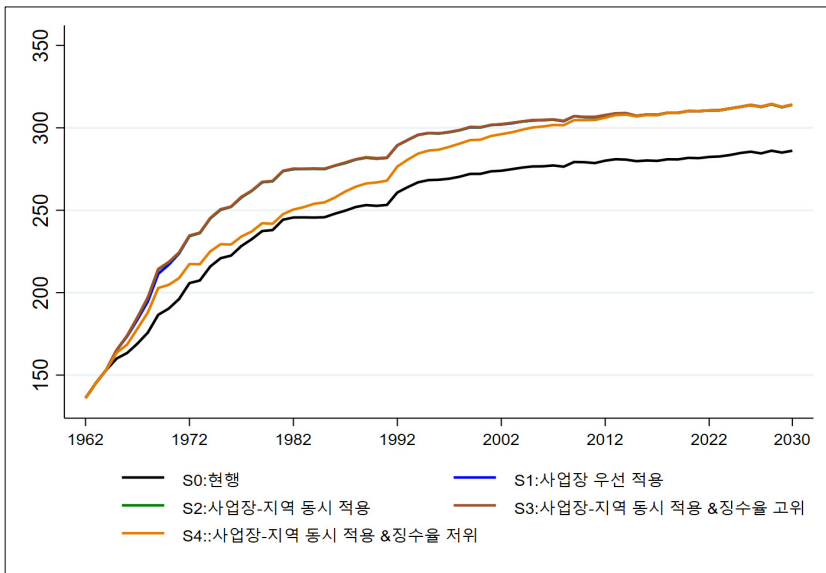
연령 연장이 시작되는 2025년에 만 60세에 진입하지만 가입상한연령 조정 속도보다 빠르게 수급개시연령에 도달하여 그 효과를 크게 누리지 못한다. 이들은 평균 가입기간이 약 5개월 증가하는 데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가입상한연령이 64세로 연장된 이후 64세가 되는 1970년생의 경우에는 시나리오별로 상이하지만, 평균 가입기간이 14.4~28.3개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민연금제도가 충분히 성숙된 이후 60세에 도달하는 후세대들은 장기적으로 평균 가입기간이 약 28개월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소득분위별로 살펴보면, 상위 소득분위에서의 가입기간 증가 효과가 더 큰 것으로 전망된다(〈표 5-11〉과 [그림 5-17] 참조). 연금제도가 성숙한 이후 수급개시연령에 도달하는 세대의 경우 5분위와 1분위 사이에 약 23개월의 격차가 존재한다. 예컨대, 1990년생의 경우 모든 시나리오에서 5분위의 평균 가입기간이 38.7개월 증가하지만, 1분위의 경우 약 15.5~16개월 증가하는 데 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때, 5분위의 가입기간 증가분은 가입가능기간(60개월)에 60~64세의 고용률(63.6%)을 곱한 수준과 유사하기에, 동 집단의 징수율이 거의 100%에 근접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한편, 가입상한연령 연장에 따라 징수율이 하락하는 경우(S4), 분위별 가입기간 격차가 더 크게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징수율 하락이 주로 하위 분위에서 나타나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림 5-17]을 통해 일부 코호트의 경우 하위 1분위와 2분위의 가입기간이 전혀 늘어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표 5-12〉, [그림 5-18]을 보면, 생애 상용기간 분위별 시뮬레이션 결과 역시 소득분위별 결과와 유사함을 알 수 있다. 다만, 소득분위별 격차에 비해 생애 상용기간 분위별 격차가 완화된 모습을 보인다. 예를 들어, 2020년생의 경우 5분위와 1분위의 평균 가입기간 증가분 격차가

약 5개월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생애 상용기간의 하위 분위에, 소득수준이 비교적 높지만 상용근로기간은 짧은 자영자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지역가입자의 징수율 하락 효과가 상용근로 기간 분위의 하위집단에서 더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5-18]에 따르면, 생애 상용근로기간 하위 1분위와 2분위에 속한 1970년대생들은 가입기간이 전혀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5-16] 출생코호트-시나리오별 가입기간



자료: 저자 작성.

〈표 5-11〉 출생코호트-생애 소득분위-시나리오별 가입기간 변화

(단위:개월)

| 출생<br>코호트  | 소득<br>분위 | Baseline<br>(S0) | 사업장 우선 적용<br>(S1) |      | 사업장-지역<br>동시 적용<br>(S2) |      | 사업장-지역<br>동시 적용<br>& 징수율 고위<br>(S3) |      | 사업장-지역<br>동시 적용<br>& 징수율 저위<br>(S4) |      |
|------------|----------|------------------|-------------------|------|-------------------------|------|-------------------------------------|------|-------------------------------------|------|
|            |          |                  | 증감                |      | 증감                      |      | 증감                                  |      | 증감                                  |      |
| 1965년<br>생 | 1        | 43.4             | 44.8              | 1.3  | 44.9                    | 1.4  | 44.9                                | 1.5  | 44.3                                | 0.8  |
|            | 2        | 103.6            | 106.7             | 3.1  | 106.6                   | 3.0  | 106.9                               | 3.3  | 105.8                               | 2.2  |
|            | 3        | 163.0            | 168.3             | 5.3  | 168.4                   | 5.5  | 168.6                               | 5.6  | 166.2                               | 3.3  |
|            | 4        | 221.2            | 228.0             | 6.8  | 228.2                   | 7.0  | 227.9                               | 6.8  | 225.5                               | 4.3  |
|            | 5        | 267.9            | 276.9             | 9.0  | 276.8                   | 8.9  | 276.8                               | 8.8  | 274.8                               | 6.9  |
|            | 평균       | 160.1            | 165.2             | 5.1  | 165.2                   | 5.2  | 165.3                               | 5.2  | 163.6                               | 3.5  |
| 1970년<br>생 | 1        | 61.7             | 71.6              | 9.9  | 73.2                    | 11.5 | 73.9                                | 12.2 | 64.9                                | 3.1  |
|            | 2        | 136.5            | 158.2             | 21.7 | 160.8                   | 24.3 | 161.6                               | 25.1 | 144.8                               | 8.4  |
|            | 3        | 195.7            | 224.1             | 28.4 | 225.9                   | 30.2 | 225.9                               | 30.2 | 209.2                               | 13.5 |
|            | 4        | 254.9            | 289.4             | 34.5 | 290.0                   | 35.1 | 290.1                               | 35.2 | 273.0                               | 18.2 |
|            | 5        | 302.1            | 340.5             | 38.4 | 340.8                   | 38.6 | 340.9                               | 38.8 | 331.0                               | 28.9 |
|            | 평균       | 190.3            | 216.9             | 26.6 | 218.3                   | 27.9 | 218.6                               | 28.3 | 204.7                               | 14.4 |
| 1980년<br>생 | 1        | 108.8            | 129.1             | 20.3 | 129.1                   | 20.3 | 129.5                               | 20.8 | 108.8                               | 0.0  |
|            | 2        | 188.0            | 214.2             | 26.1 | 214.2                   | 26.1 | 214.2                               | 26.1 | 191.1                               | 3.0  |
|            | 3        | 250.3            | 279.8             | 29.5 | 279.8                   | 29.5 | 280.5                               | 30.3 | 255.5                               | 5.2  |
|            | 4        | 300.5            | 334.3             | 33.7 | 334.3                   | 33.7 | 334.8                               | 34.3 | 314.2                               | 13.7 |
|            | 5        | 342.3            | 380.7             | 38.4 | 380.7                   | 38.4 | 380.8                               | 38.5 | 362.5                               | 20.2 |
|            | 평균       | 238.0            | 267.6             | 29.6 | 267.6                   | 29.6 | 267.8                               | 29.8 | 246.5                               | 8.5  |
| 1990년<br>생 | 1        | 110.5            | 126.0             | 15.5 | 126.0                   | 15.5 | 126.6                               | 16.0 | 126.0                               | 15.5 |
|            | 2        | 209.6            | 234.9             | 25.3 | 234.9                   | 25.3 | 235.2                               | 25.6 | 234.9                               | 25.3 |
|            | 3        | 274.4            | 304.2             | 29.8 | 304.2                   | 29.8 | 304.6                               | 30.3 | 304.2                               | 29.8 |
|            | 4        | 318.3            | 352.4             | 34.1 | 352.4                   | 34.1 | 353.0                               | 34.7 | 352.4                               | 34.1 |
|            | 5        | 350.6            | 389.3             | 38.7 | 389.3                   | 38.7 | 389.3                               | 38.7 | 389.3                               | 38.7 |
|            | 평균       | 252.7            | 281.4             | 28.7 | 281.4                   | 28.7 | 281.7                               | 29.0 | 281.4                               | 28.7 |
| 2000년<br>생 | 1        | 137.7            | 152.9             | 15.2 | 152.9                   | 15.2 | 152.9                               | 15.2 | 152.9                               | 15.2 |
|            | 2        | 234.1            | 257.9             | 23.8 | 257.9                   | 23.8 | 258.3                               | 24.2 | 257.9                               | 23.8 |
|            | 3        | 293.3            | 323.3             | 30.0 | 323.3                   | 30.0 | 323.4                               | 30.1 | 323.3                               | 30.0 |
|            | 4        | 331.7            | 364.9             | 33.2 | 364.9                   | 33.2 | 365.8                               | 34.1 | 364.9                               | 33.2 |
|            | 5        | 363.8            | 402.3             | 38.5 | 402.3                   | 38.5 | 402.4                               | 38.6 | 402.3                               | 38.5 |
|            | 평균       | 272.1            | 300.3             | 28.1 | 300.3                   | 28.1 | 300.4                               | 28.3 | 300.3                               | 28.1 |

주: 생애 소득분위는 18~69세까지 42년간의 근로(사업)소득, 즉 B값을 기준으로 구분함.  
자료: 저자 작성.

〈표 5-12〉 출생코호트-생애 상용기간 분위-시나리오별 가입기간 변화

(단위:개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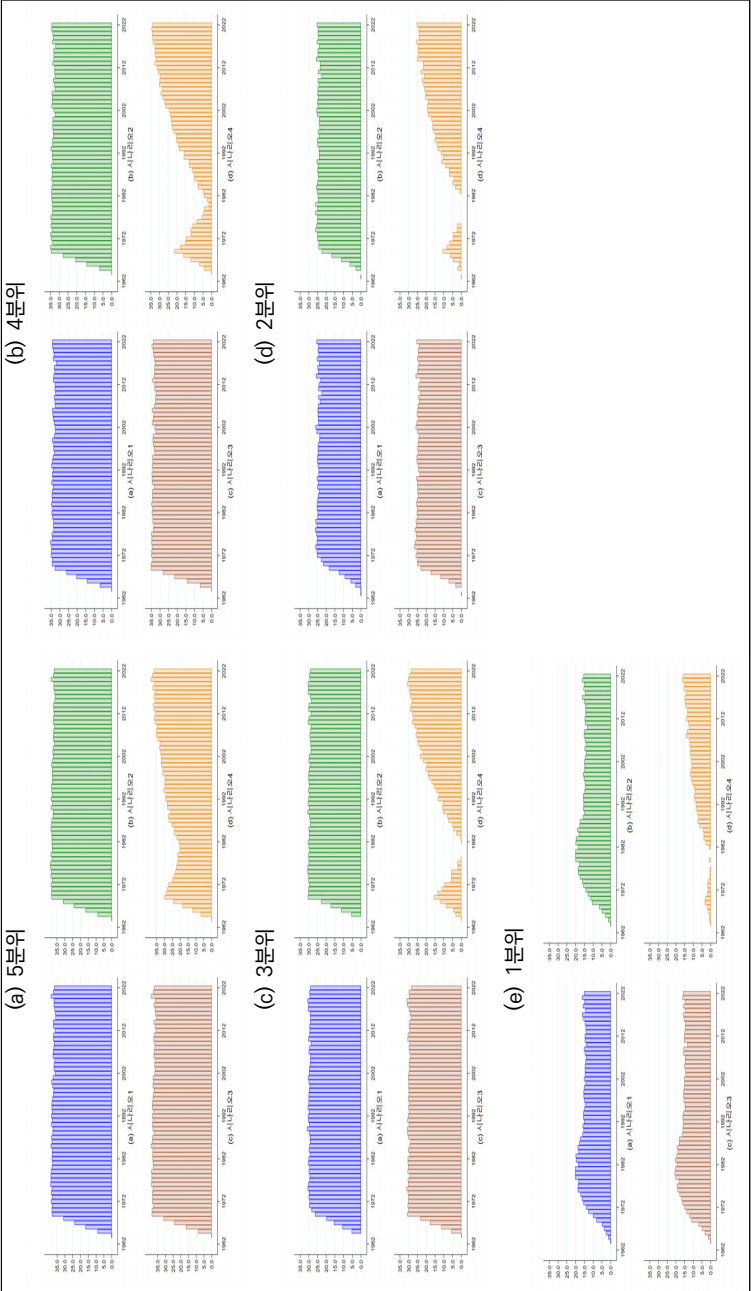
| 출생<br>코호트  | 소득<br>분위 | Baseline<br>(S0) | 사업장 우선 적용<br>(S1) |      | 사업장-지역<br>동시 적용<br>(S2) |      | 사업장-지역<br>동시 적용<br>& 징수율 고위<br>(S3) |      | 사업장-지역<br>동시 적용<br>& 징수율 저위<br>(S4) |      |
|------------|----------|------------------|-------------------|------|-------------------------|------|-------------------------------------|------|-------------------------------------|------|
|            |          |                  | 증감                |      | 증감                      |      | 증감                                  |      | 증감                                  |      |
| 1965년<br>생 | 1        | 109.9            | 114.0             | 4.1  | 114.1                   | 4.2  | 114.2                               | 4.3  | 111.9                               | 2.0  |
|            | 2        |                  |                   |      |                         |      |                                     |      |                                     |      |
|            | 3        | 135.9            | 140.1             | 4.2  | 140.1                   | 4.2  | 140.2                               | 4.3  | 138.6                               | 2.7  |
|            | 4        | 202.2            | 208.0             | 5.8  | 208.8                   | 6.6  | 208.9                               | 6.7  | 206.2                               | 4.0  |
|            | 5        | 268.7            | 276.8             | 8.1  | 276.9                   | 8.1  | 277.6                               | 8.9  | 276.4                               | 7.7  |
|            | 평균       | 160.1            | 165.2             | 5.1  | 165.2                   | 5.2  | 165.3                               | 5.2  | 163.6                               | 3.5  |
| 1970년<br>생 | 1        | 128.2            | 152.0             | 23.9 | 154.2                   | 26.0 | 154.7                               | 26.5 | 130.7                               | 2.6  |
|            | 2        | 140.1            | 165.5             | 25.4 | 167.6                   | 27.5 | 167.9                               | 27.8 | 150.8                               | 10.7 |
|            | 3        | 186.0            | 210.9             | 24.8 | 212.1                   | 26.1 | 212.5                               | 26.5 | 199.1                               | 13.0 |
|            | 4        | 230.4            | 257.8             | 27.4 | 259.2                   | 28.8 | 259.2                               | 28.8 | 252.5                               | 22.1 |
|            | 5        | 294.6            | 328.4             | 33.7 | 328.4                   | 33.8 | 328.7                               | 34.0 | 327.0                               | 32.4 |
|            | 평균       | 190.3            | 216.9             | 26.6 | 218.3                   | 27.9 | 218.6                               | 28.3 | 204.7                               | 14.4 |
| 1980년<br>생 | 1        | 159.1            | 187.2             | 28.1 | 187.2                   | 28.1 | 187.9                               | 28.8 | 159.1                               | 0.0  |
|            | 2        | 197.6            | 225.6             | 28.0 | 225.6                   | 28.0 | 225.7                               | 28.1 | 199.6                               | 2.0  |
|            | 3        | 238.6            | 268.0             | 29.5 | 268.0                   | 29.5 | 268.3                               | 29.7 | 244.9                               | 6.3  |
|            | 4        | 273.2            | 302.4             | 29.2 | 302.4                   | 29.2 | 302.7                               | 29.5 | 286.4                               | 13.3 |
|            | 5        | 332.3            | 366.0             | 33.7 | 366.0                   | 33.7 | 366.9                               | 34.6 | 350.9                               | 18.6 |
|            | 평균       | 238              | 267.6             | 29.6 | 267.6                   | 29.6 | 267.8                               | 29.8 | 246.5                               | 8.5  |
| 1990년<br>생 | 1        | 173.1            | 198.8             | 25.7 | 198.8                   | 25.7 | 199.4                               | 26.3 | 173.1                               | 0.0  |
|            | 2        | 217.8            | 244.3             | 26.5 | 244.3                   | 26.5 | 244.8                               | 27.1 | 244.3                               | 26.5 |
|            | 3        | 251.7            | 280.5             | 28.9 | 280.5                   | 28.9 | 280.6                               | 28.9 | 280.5                               | 28.9 |
|            | 4        | 288.3            | 318.7             | 30.5 | 318.7                   | 30.5 | 319.7                               | 31.4 | 318.7                               | 30.5 |
|            | 5        | 347.0            | 379.4             | 32.4 | 379.4                   | 32.4 | 379.5                               | 32.6 | 379.4                               | 32.4 |
|            | 평균       | 252.7            | 281.4             | 28.7 | 281.4                   | 28.7 | 281.7                               | 29   | 281.4                               | 28.7 |
| 2000년<br>생 | 1        | 201.1            | 227.0             | 25.9 | 227.0                   | 25.9 | 227.6                               | 26.5 | 227.0                               | 25.9 |
|            | 2        | 238.8            | 266.2             | 27.4 | 266.2                   | 27.4 | 266.7                               | 27.8 | 266.2                               | 27.4 |
|            | 3        | 269.0            | 297.3             | 28.4 | 297.3                   | 28.4 | 297.8                               | 28.8 | 297.3                               | 28.4 |
|            | 4        | 306.4            | 335.2             | 28.7 | 335.2                   | 28.7 | 335.4                               | 29.0 | 335.2                               | 28.7 |
|            | 5        | 357.6            | 388.4             | 30.8 | 388.4                   | 30.8 | 388.7                               | 31.1 | 388.4                               | 30.8 |
|            | 평균       | 272.1            | 300.3             | 28.1 | 300.3                   | 28.1 | 300.4                               | 28.3 | 300.3                               | 28.1 |

주: 1) 생애 상용기간 분위는 18~69세까지의 42년간 상용근로자였던 기간을 기준으로 구분함.

2) 1965년생 코호트의 경우 생애 상용기간의 1분위와 2분위가 구분되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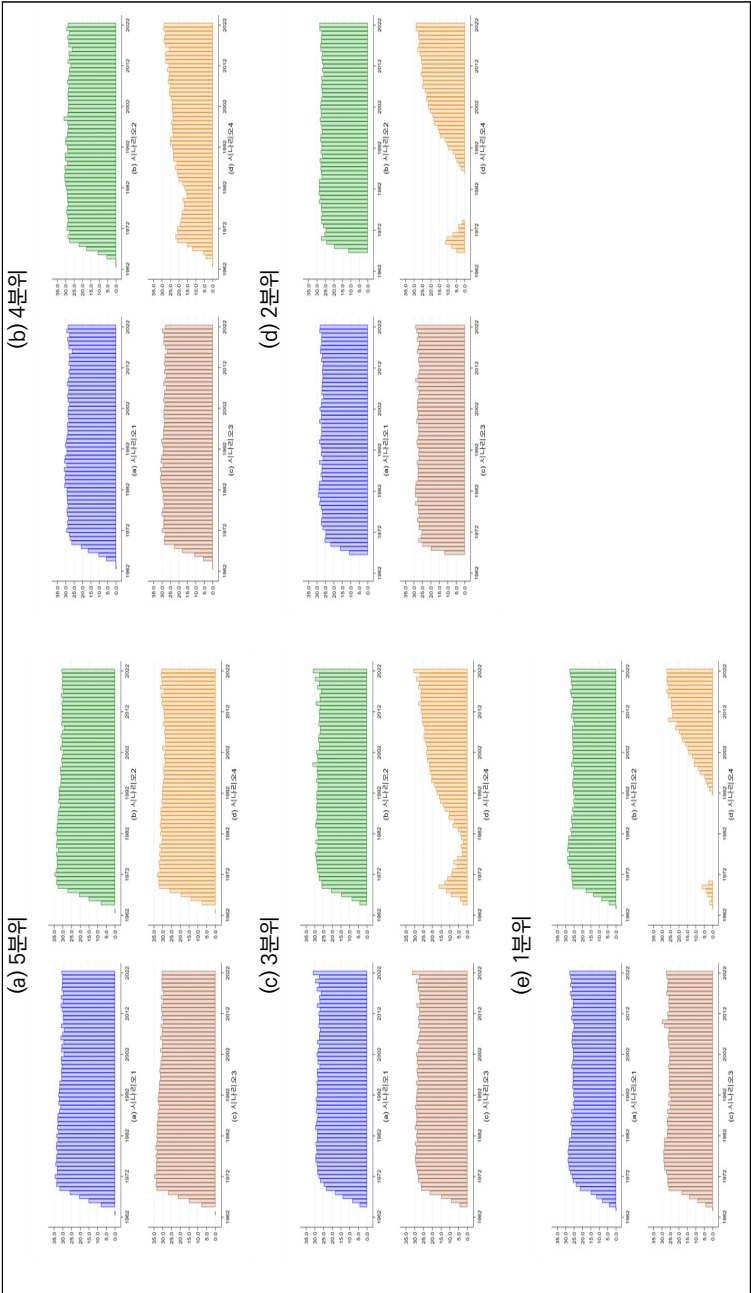
자료: 저자 작성.

[그림 5-17] 생애 소득분위-시니어-출생코호트별 가입기간 변화



자료: 저자 작성.

[그림 5-18] 생애 상용기간 분위-시나리오-출생코호트별 가입기간 변화



자료: 저자 작성.

## 나. 노령연금 수급률

다음으로, [그림 5-19], <표 5-13>, <표 5-14>은 가입상한연령 연장에 따른 노령연금 수급률 변화를 보여준다. 이에 따르면 가입상한연령 연장으로 인해 노령연금 수급률이 장기적으로 약 2%p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노령연금 수급률 증가 효과가 낮은 것은 연금제도가 성숙되어 노령연금 수급률이 충분히 높아짐에 따라 가입상한연령 연장으로 인한 가입기간 증가가 수급률 증가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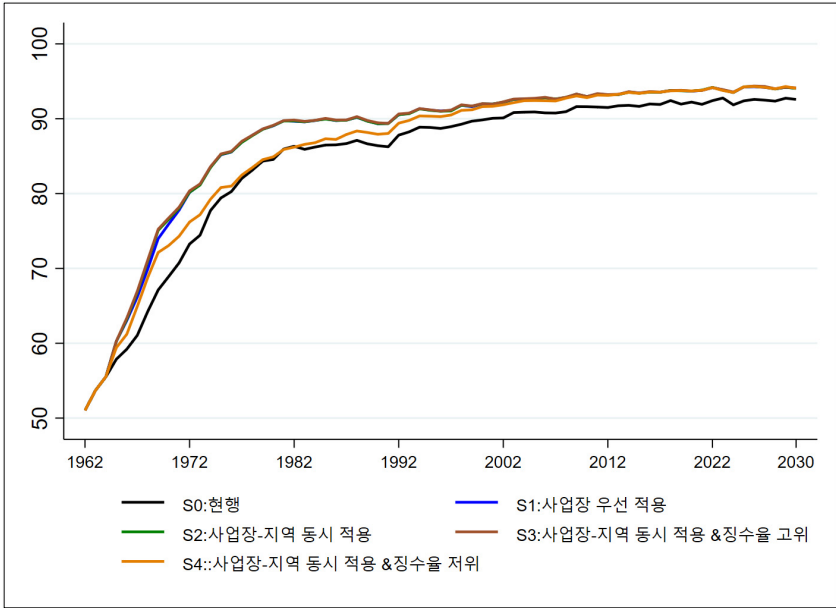
그러나 연금제도가 성숙되는 기간 동안에는 가입상한연령의 연장 효과가 더욱 클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5-20]과 [그림 5-21]을 보면, 1972년 생까지는 가입상한연령 연장에 따라 노령연금 수급률이 증가하지만, 그 이후로 수급률 증가폭이 서서히 감소함을 알 수 있다. <표 5-13>와 <표 5-14>에서도 1970년생의 가입률 증가폭이 이후의 세대에 비해 클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소득분위별로 살펴보면(<표 5-13>), 하위 분위의 노령연금 수급률 증가 효과가 상위 분위에 비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상위 분위의 경우 노령연금 수급권 확보자의 비중이 높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가지 주목할 점은 소득 하위 분위의 경우 후세대로 가더라도 상당한 수준의 노령연금 수급률 증가 효과가 나타난다는 점이다. [그림 5-20]에 따르면, 소득 1 분위의 경우 장기적으로 약 7%p의 노령연금 수급률 증가가 발생할 전망이다. 이는 가입상한연령 연장이 하위 분위의 노령연금 수급권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표 5-14>과 [그림 5-21]을 보면, 생애 상용기간 분위별 시뮬레이션 결과 역시 소득분위와 유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징수율이 하락하는 경우(S4), 하위 분위의 수급률 증가는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서야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앞의 [그림 5-18]에서 살펴본 것처럼, 정수율이 하락하는 경우 상당한 시간이 흐른 뒤에야 하위 분위의 가입기간이 증가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림 5-19] 출생코호트-시나리오별 노령연금 수급률



자료: 저자 작성.

〈표 5-13〉 출생코호트-생애 소득분위-시나리오별 노령연금 수급률 변화

(단위:개월)

| 출생<br>코호트  | 소득<br>분위 | Baseline<br>(S0) | 사업장 우선 적용<br>(S1) |      | 사업장-지역<br>동시 적용<br>(S2) |      | 사업장-지역<br>동시 적용<br>& 징수율 고위<br>(S3) |      | 사업장-지역<br>동시 적용<br>& 징수율 저위<br>(S4) |      |
|------------|----------|------------------|-------------------|------|-------------------------|------|-------------------------------------|------|-------------------------------------|------|
|            |          |                  | 증감                |      | 증감                      |      | 증감                                  |      | 증감                                  |      |
| 1965년<br>생 | 1        | 19.7             | 20.5              | 0.8  | 20.5                    | 0.8  | 20.5                                | 0.9  | 20.1                                | 0.5  |
|            | 2        | 41.4             | 42.9              | 1.5  | 42.9                    | 1.5  | 43.0                                | 1.6  | 42.3                                | 0.9  |
|            | 3        | 62.0             | 64.3              | 2.3  | 64.3                    | 2.3  | 64.4                                | 2.3  | 63.1                                | 1.1  |
|            | 4        | 77.3             | 80.5              | 3.2  | 80.9                    | 3.6  | 81.4                                | 4.1  | 79.2                                | 1.8  |
|            | 5        | 88.9             | 93.3              | 4.4  | 93.8                    | 4.8  | 94.2                                | 5.3  | 92.3                                | 3.4  |
|            | 평균       | 57.9             | 60.3              | 2.4  | 60.3                    | 2.4  | 60.3                                | 2.4  | 59.4                                | 1.5  |
| 1970년<br>생 | 1        | 24.3             | 30.9              | 6.6  | 31.6                    | 7.3  | 32.3                                | 8.0  | 28.7                                | 4.4  |
|            | 2        | 54.1             | 66.9              | 12.7 | 68.4                    | 14.2 | 68.8                                | 14.7 | 62.1                                | 7.9  |
|            | 3        | 75.7             | 85.8              | 10.1 | 86.4                    | 10.7 | 86.5                                | 10.8 | 81.4                                | 5.7  |
|            | 4        | 92.2             | 96.6              | 4.3  | 96.7                    | 4.4  | 96.7                                | 4.5  | 94.2                                | 1.9  |
|            | 5        | 98.1             | 99.4              | 1.2  | 99.4                    | 1.2  | 99.4                                | 1.2  | 98.9                                | 0.8  |
|            | 평균       | 68.9             | 75.9              | 7.0  | 76.5                    | 7.6  | 76.7                                | 7.8  | 73.1                                | 4.1  |
| 1980년<br>생 | 1        | 50.0             | 62.1              | 12.1 | 62.1                    | 12.1 | 62.4                                | 12.4 | 53.6                                | 3.6  |
|            | 2        | 80.7             | 87.9              | 7.1  | 87.9                    | 7.1  | 88.8                                | 8.1  | 80.9                                | 0.2  |
|            | 3        | 93.7             | 96.1              | 2.4  | 96.1                    | 2.4  | 96.2                                | 2.5  | 94.3                                | 0.6  |
|            | 4        | 98.3             | 99.1              | 0.8  | 99.1                    | 0.8  | 99.2                                | 0.8  | 98.8                                | 0.4  |
|            | 5        | 100.0            | 100.0             | 0.0  | 100.0                   | 0.0  | 100.0                               | 0.0  | 100.0                               | 0.0  |
|            | 평균       | 84.6             | 89.0              | 4.5  | 89.0                    | 4.5  | 89.1                                | 4.6  | 84.9                                | 0.3  |
| 1990년<br>생 | 1        | 46.7             | 56.8              | 10.1 | 56.8                    | 10.1 | 57.2                                | 10.5 | 56.8                                | 10.1 |
|            | 2        | 88.4             | 91.7              | 3.3  | 91.7                    | 3.3  | 91.9                                | 3.5  | 91.7                                | 3.3  |
|            | 3        | 97.3             | 98.4              | 1.2  | 98.4                    | 1.2  | 99.4                                | 2.2  | 98.4                                | 1.2  |
|            | 4        | 99.7             | 99.9              | 0.2  | 99.9                    | 0.2  | 99.9                                | 0.2  | 99.9                                | 0.2  |
|            | 5        | 99.9             | 99.9              | 0.0  | 99.9                    | 0.0  | 100.0                               | 0.1  | 99.9                                | 0.0  |
|            | 평균       | 86.4             | 89.3              | 2.9  | 89.3                    | 2.9  | 89.5                                | 3.1  | 89.3                                | 2.9  |
| 2000년<br>생 | 1        | 57.1             | 65.0              | 7.9  | 65.0                    | 7.9  | 65.2                                | 8.1  | 65.0                                | 7.9  |
|            | 2        | 93.4             | 95.7              | 2.3  | 95.7                    | 2.3  | 96.7                                | 3.3  | 95.7                                | 2.3  |
|            | 3        | 98.9             | 99.3              | 0.5  | 99.3                    | 0.5  | 99.7                                | 0.9  | 99.3                                | 0.5  |
|            | 4        | 99.9             | 99.9              | 0.0  | 99.9                    | 0.0  | 100.0                               | 0.1  | 99.9                                | 0.0  |
|            | 5        | 100.0            | 100.0             | 0.0  | 100.0                   | 0.0  | 100.0                               | 0.0  | 100.0                               | 0.0  |
|            | 평균       | 89.8             | 92.0              | 2.1  | 92.0                    | 2.1  | 92.0                                | 2.2  | 92.0                                | 2.1  |

주: 생애 소득분위는 18~69세까지 42년간의 근로(사업)소득, 즉 B값을 기준으로 구분함.  
자료: 저자 작성.

〈표 5-14〉 출생코호트-생애 상용기간 분위-시나리오별 노령연금 수급률 변화

(단위:개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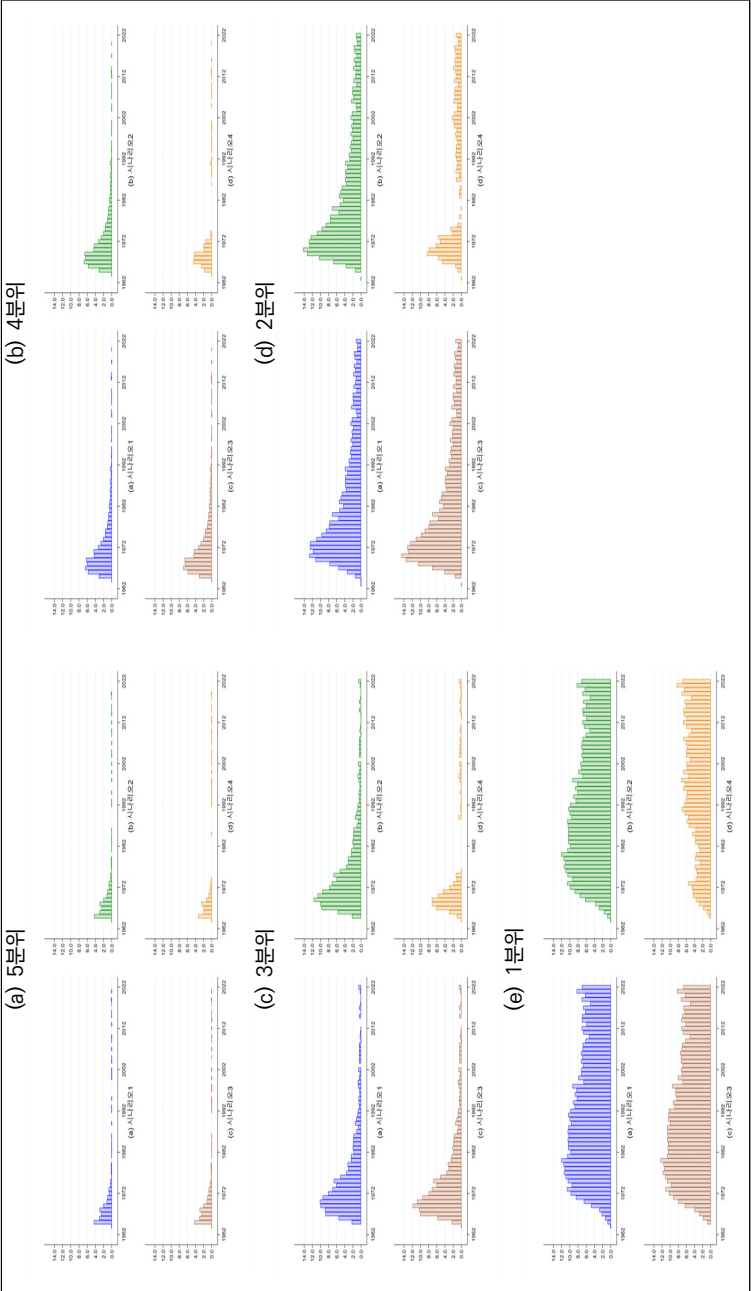
| 출생<br>코호트  | 소득<br>분위 | Baseline<br>(S0) | 사업장 우선 적용<br>(S1) |      | 사업장-지역<br>동시 적용<br>(S2) |      | 사업장-지역<br>동시 적용<br>& 징수율 고위<br>(S3) |      | 사업장-지역<br>동시 적용<br>& 징수율 저위<br>(S4) |     |
|------------|----------|------------------|-------------------|------|-------------------------|------|-------------------------------------|------|-------------------------------------|-----|
|            |          |                  | 증감                |      | 증감                      |      | 증감                                  |      | 증감                                  |     |
| 1965년<br>생 | 1        | 42.8             | 45.4              | 2.6  | 45.4                    | 2.6  | 45.4                                | 2.6  | 44.0                                | 1.2 |
|            | 2        |                  |                   |      |                         |      |                                     |      |                                     |     |
|            | 3        | 51.3             | 52.8              | 1.5  | 52.8                    | 1.5  | 52.8                                | 1.6  | 52.1                                | 0.8 |
|            | 4        | 72.4             | 74.8              | 2.5  | 74.9                    | 2.5  | 74.9                                | 2.5  | 74.2                                | 1.9 |
|            | 5        | 87.9             | 91.0              | 3.1  | 92.0                    | 4.1  | 92.0                                | 4.1  | 90.9                                | 2.9 |
|            | 평균       | 57.9             | 60.3              | 2.4  | 60.3                    | 2.4  | 60.3                                | 2.4  | 59.4                                | 1.5 |
| 1970년<br>생 | 1        | 50.4             | 59.2              | 8.9  | 60.2                    | 9.9  | 60.5                                | 10.2 | 53.3                                | 3.0 |
|            | 2        | 52.7             | 64.8              | 12.1 | 65.7                    | 13.0 | 66.1                                | 13.3 | 60.2                                | 7.5 |
|            | 3        | 69.0             | 76.5              | 7.5  | 77.2                    | 8.1  | 77.3                                | 8.3  | 74.7                                | 5.6 |
|            | 4        | 85.2             | 90.7              | 5.5  | 91.1                    | 6.0  | 91.2                                | 6.0  | 90.2                                | 5.0 |
|            | 5        | 94.9             | 96.8              | 1.9  | 96.8                    | 1.9  | 96.8                                | 1.9  | 96.6                                | 1.7 |
|            | 평균       | 68.9             | 75.9              | 7.0  | 76.5                    | 7.6  | 76.7                                | 7.8  | 73.1                                | 4.1 |
| 1980년<br>생 | 1        | 64.1             | 73.9              | 9.8  | 73.9                    | 9.8  | 74.0                                | 9.9  | 64.1                                | 0.0 |
|            | 2        | 79.2             | 85.3              | 6.1  | 85.3                    | 6.1  | 85.4                                | 6.1  | 80.0                                | 0.7 |
|            | 3        | 89.5             | 92.9              | 3.4  | 92.9                    | 3.4  | 93.1                                | 3.5  | 91.1                                | 1.6 |
|            | 4        | 94.9             | 96.5              | 1.6  | 96.5                    | 1.6  | 96.5                                | 1.6  | 96.1                                | 1.2 |
|            | 5        | 97.5             | 98.4              | 0.9  | 98.4                    | 0.9  | 98.4                                | 0.9  | 98.3                                | 0.8 |
|            | 평균       | 84.6             | 89.0              | 4.5  | 89.0                    | 4.5  | 89.1                                | 4.6  | 84.9                                | 0.3 |
| 1990년<br>생 | 1        | 66.4             | 74.0              | 7.6  | 74.0                    | 7.6  | 74.2                                | 7.7  | 74.0                                | 7.6 |
|            | 2        | 84.5             | 87.5              | 2.9  | 87.5                    | 2.9  | 87.6                                | 3.1  | 87.5                                | 2.9 |
|            | 3        | 90.6             | 92.8              | 2.1  | 92.8                    | 2.1  | 92.8                                | 2.2  | 92.8                                | 2.1 |
|            | 4        | 95.1             | 96.1              | 1.0  | 96.1                    | 1.0  | 96.2                                | 1.1  | 96.1                                | 1.0 |
|            | 5        | 98.1             | 98.5              | 0.4  | 98.5                    | 0.4  | 98.6                                | 0.5  | 98.5                                | 0.4 |
|            | 평균       | 86.4             | 89.3              | 2.9  | 89.3                    | 2.9  | 89.5                                | 3.1  | 89.3                                | 2.9 |
| 2000년<br>생 | 1        | 74.7             | 80.7              | 5.9  | 80.7                    | 5.9  | 80.8                                | 6.1  | 80.7                                | 5.9 |
|            | 2        | 88.8             | 91.5              | 2.7  | 91.5                    | 2.7  | 91.6                                | 2.7  | 91.5                                | 2.7 |
|            | 3        | 93.0             | 93.9              | 0.9  | 93.9                    | 0.9  | 93.9                                | 0.9  | 93.9                                | 0.9 |
|            | 4        | 96.4             | 96.9              | 0.4  | 96.9                    | 0.4  | 96.9                                | 0.5  | 96.9                                | 0.4 |
|            | 5        | 98.0             | 98.2              | 0.2  | 98.2                    | 0.2  | 98.2                                | 0.3  | 98.2                                | 0.2 |
|            | 평균       | 89.8             | 92.0              | 2.1  | 92.0                    | 2.1  | 92.0                                | 2.2  | 92.0                                | 2.1 |

주: 1) 생애 상용기간 분위는 18~69세까지의 42년간 상용근로자였던 기간을 기준으로 구분함.

2) 1965년생 코호트의 경우 생애 상용기간의 1분위와 2분위가 구분되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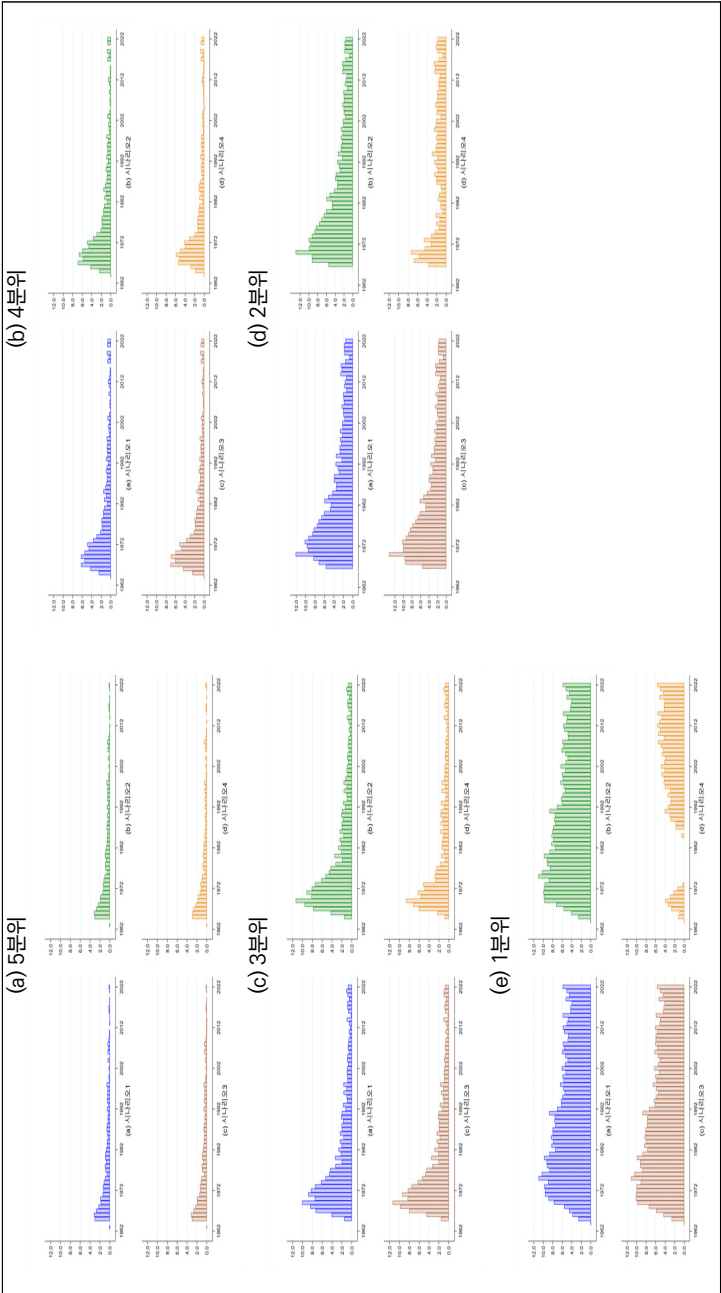
자료: 저자 작성.

[그림 5-20] 생애 소득분위-시니어-출생코호트별 노령연금 수급률 변화



자료: 저자 작성

[그림 5-21] 생애 상용기간 분위-시나리오-출생코호트별 노령연금 수급률 변화



주: 생애 상용기간 분위는 18~69세까지의 42년간 상용근로자였던 기간을 기준으로 구분함.  
자료: 저자 작성.

### 3. 급여액과 소득대체율

#### 가. 노령연금 급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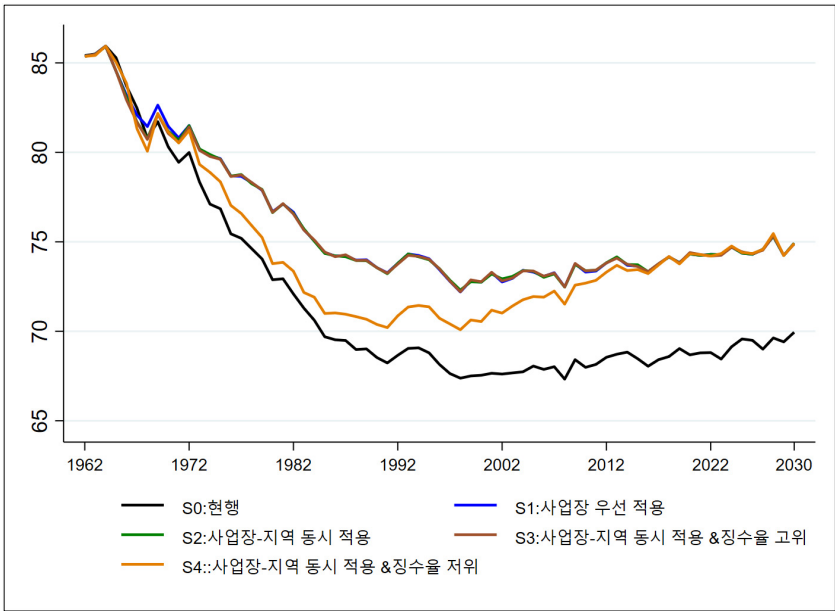
[그림 5-22], <표 5-15>, 그리고 <표 5-16>는 가입상한연령 연장에 따른 급여액의 변화 추이를 보여준다. 먼저, [그림 5-22]에 따르면, 노령연금 급여 수준은 서서히 낮아진 뒤, 1990년대 후반 코호트부터 서서히 높아져 장기적으로 약 70만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2028년까지 명목 소득대체율이 인하되기 때문에 풀이된다. 그런데 <표 5-15>와 <표 5-16>를 보면, 가입상한연령 연장으로 이 같은 급여 수준 하락이 상당히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르면, 가입상한연령 연장을 통해 월평균 노령연금 급여액이 장기적으로 약 5만 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때, <표 5-15>에 따르면, 소득 상위 분위의 급여액 증가폭이 하위 분위에 비해 훨씬 클 것으로 전망된다. 예를 들어, 2000년생의 경우 소득 5분위의 평균 노령연금액이 113.3만 원 내외로 현행 제도에 비해 약 10만 원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생애 상용기간별 시뮬레이션 결과 역시 상위 분위의 급여액 증가폭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으나(<표 5-16>), 앞의 지표들과 마찬가지로 분위 간 격차는 소득분위별 격차에 비해 작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징수율이 하락하는 경우(S4), 상당히 후세대에서야 급여액 증가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는 징수율 하락으로 인해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야 가입기간이 늘어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그림 5-23]은 생애 소득분위별 노령연금 급여 변화를 보여준다. 이를 통해 가입상한연령 연장이 급여액에 미치는 영향이 상위 분위에서 더 크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시나리오와 무관하게 관찰된다. 특히, 징수율이 하락하는 경우(S4), 상위 분위는 비교적 빠르게 급여

액이 증가하는 반면, 하위 1분위는 1980년생 코호트 이후에서야 서서히 급여액이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5-24]의 생애 상용기간 분위별 추이 역시 소득분위별 추이와 비슷하지만, 징수율 하락 이후 하위 분위의 급여액이 다시 증가하기까지 더욱 오랜 기간이 필요한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5-22] 출생코호트-시나리오별 신규 수급자의 노령연금 급여 추이



자료: 저자 작성.

〈표 5-15〉 출생코호트-생애 소득분위-시나리오별 노령연금 급여 변화

(단위:만 원)

| 출생<br>코호트  | 소득<br>분위 | Baseline<br>(S0) | 사업장 우선<br>적용<br>(S1) |       | 사업장-지역<br>동시 적용<br>(S2) |       | 사업장-지역<br>동시 적용<br>& 징수율 고위<br>(S3) |       | 사업장-지역<br>동시 적용<br>& 징수율 저위<br>(S4) |      |
|------------|----------|------------------|----------------------|-------|-------------------------|-------|-------------------------------------|-------|-------------------------------------|------|
|            |          |                  |                      | 증감    |                         | 증감    |                                     | 증감    |                                     | 증감   |
| 1965년<br>생 | 1        | 58.7             | 58.8                 | 0.08  | 58.9                    | 0.13  | 58.9                                | 0.16  | 58.9                                | 0.16 |
|            | 2        | 64.8             | 65.0                 | 0.27  | 65.2                    | 0.46  | 65.3                                | 0.51  | 65.3                                | 0.51 |
|            | 3        | 74.5             | 75.0                 | 0.46  | 75.3                    | 0.78  | 75.3                                | 0.80  | 75.3                                | 0.80 |
|            | 4        | 87.6             | 87.9                 | 0.34  | 88.0                    | 0.39  | 88.2                                | 0.65  | 88.2                                | 0.65 |
|            | 5        | 106.2            | 106.5                | 0.26  | 106.5                   | 0.29  | 106.8                               | 0.62  | 106.8                               | 0.62 |
|            | 평균       | 85.3             | 86.5                 | 1.25  | 87.6                    | 2.36  | 86.7                                | 1.38  | 85.4                                | 0.15 |
| 1970년<br>생 | 1        | 58.6             | 58.9                 | 0.28  | 59.0                    | 0.41  | 59.1                                | 0.50  | 58.8                                | 0.20 |
|            | 2        | 60.5             | 60.7                 | 0.16  | 60.9                    | 0.34  | 61.1                                | 0.54  | 60.7                                | 0.23 |
|            | 3        | 68.5             | 68.7                 | 0.17  | 68.7                    | 0.19  | 69.3                                | 0.79  | 68.5                                | 0.04 |
|            | 4        | 81.9             | 85.9                 | 3.95  | 86.0                    | 4.07  | 86.3                                | 4.42  | 84.2                                | 2.25 |
|            | 5        | 104.2            | 113.1                | 8.89  | 113.2                   | 8.98  | 113.3                               | 9.05  | 110.8                               | 6.53 |
|            | 평균       | 80.3             | 81.5                 | 1.15  | 81.6                    | 1.27  | 81.7                                | 1.35  | 81.1                                | 0.83 |
| 1980년<br>생 | 1        | 42.1             | 42.1                 | 0.01  | 42.1                    | 0.01  | 42.5                                | 0.39  | 42.3                                | 0.27 |
|            | 2        | 50.8             | 53.0                 | 2.19  | 53.0                    | 2.19  | 53.0                                | 2.23  | 50.9                                | 0.06 |
|            | 3        | 63.7             | 68.1                 | 4.40  | 68.1                    | 4.40  | 68.5                                | 4.72  | 64.4                                | 0.63 |
|            | 4        | 80.9             | 87.1                 | 6.13  | 87.1                    | 6.13  | 87.6                                | 6.68  | 81.2                                | 0.26 |
|            | 5        | 106.8            | 116.9                | 10.15 | 116.9                   | 10.15 | 117.3                               | 10.53 | 111.3                               | 4.54 |
|            | 평균       | 72.9             | 76.7                 | 3.80  | 76.7                    | 3.80  | 76.8                                | 3.97  | 73.8                                | 0.90 |
| 1990년<br>생 | 1        | 33.2             | 34.8                 | 1.68  | 34.8                    | 1.68  | 35.0                                | 1.80  | 34.0                                | 0.88 |
|            | 2        | 45.9             | 49.8                 | 3.96  | 49.8                    | 3.96  | 49.9                                | 4.05  | 47.4                                | 1.53 |
|            | 3        | 60.9             | 66.1                 | 5.25  | 66.1                    | 5.25  | 66.5                                | 5.69  | 62.0                                | 1.12 |
|            | 4        | 77.9             | 84.7                 | 6.74  | 84.7                    | 6.74  | 85.1                                | 7.17  | 79.2                                | 1.31 |
|            | 5        | 103.2            | 113.6                | 10.36 | 113.6                   | 10.36 | 113.6                               | 10.42 | 109.7                               | 6.47 |
|            | 평균       | 68.5             | 73.6                 | 5.02  | 73.6                    | 5.02  | 73.6                                | 5.03  | 70.4                                | 1.85 |
| 2000년<br>생 | 1        | 33.7             | 35.7                 | 2.03  | 35.7                    | 2.03  | 35.8                                | 2.13  | 34.9                                | 1.22 |
|            | 2        | 46.3             | 50.1                 | 3.76  | 50.1                    | 3.76  | 50.1                                | 3.77  | 48.3                                | 1.99 |
|            | 3        | 61.4             | 66.8                 | 5.37  | 66.8                    | 5.37  | 66.9                                | 5.45  | 64.0                                | 2.63 |
|            | 4        | 77.0             | 83.9                 | 6.84  | 83.9                    | 6.84  | 84.4                                | 7.35  | 81.1                                | 4.11 |
|            | 5        | 103.3            | 113.3                | 10.03 | 113.3                   | 10.03 | 113.4                               | 10.10 | 110.3                               | 7.05 |
|            | 평균       | 67.5             | 72.7                 | 5.20  | 72.7                    | 5.20  | 72.8                                | 5.23  | 70.5                                | 3.00 |

주: 생애 소득분위는 18~69세까지 42년간의 근로(사업)소득, 즉 B값을 기준으로 구분함.  
자료: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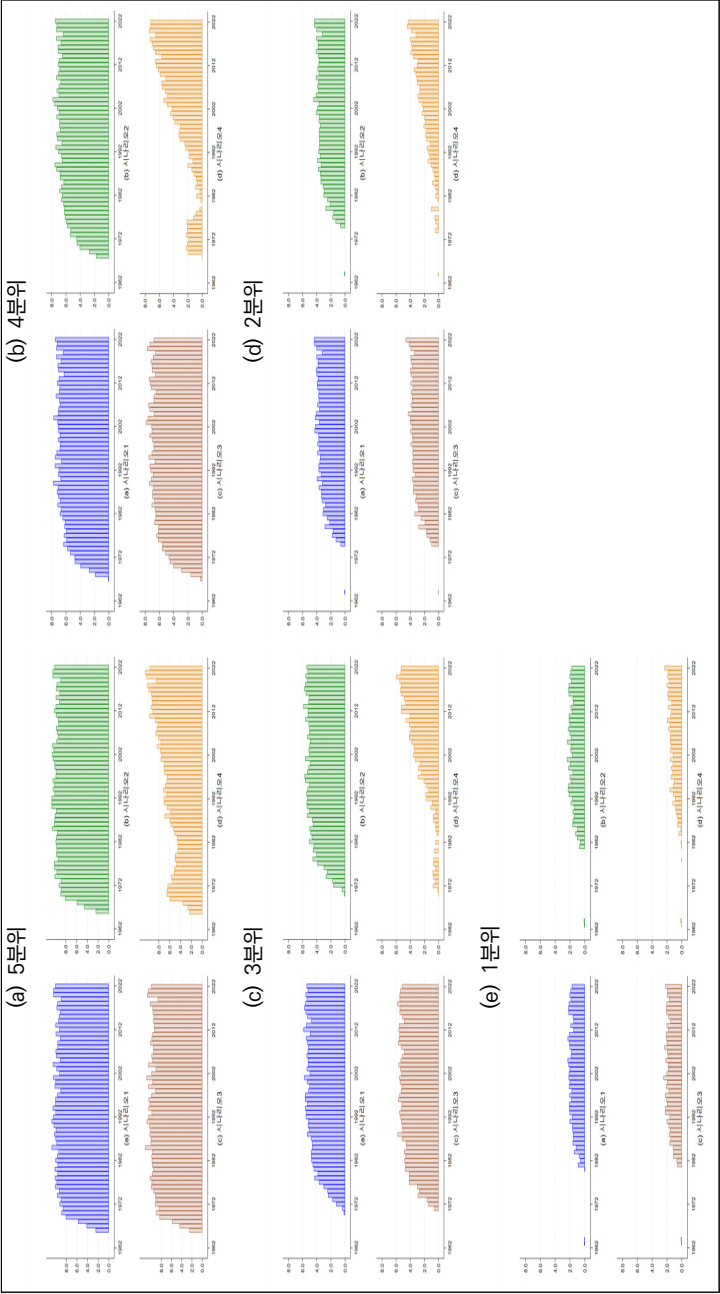
〈표 5-16〉 출생코호트-생애 상용기간 분위-시나리오별 노령연금 급여 변화

(단위:만 원)

| 출생<br>코호트 | 소득<br>분위 | Baseli<br>ne<br>(S0) | 사업장 우선<br>적용<br>(S1) |             | 사업장-지역<br>동시 적용<br>(S2) |             | 사업장-지역<br>동시 적용<br>& 징수율 고위<br>(S3) |             | 사업장-지역<br>동시 적용<br>& 징수율 저위<br>(S4) |             |
|-----------|----------|----------------------|----------------------|-------------|-------------------------|-------------|-------------------------------------|-------------|-------------------------------------|-------------|
|           |          |                      | 증감                   |             | 증감                      |             | 증감                                  |             | 증감                                  |             |
| 1965년생    | 1        | 72.47                | 72.56                | 0.09        | 72.65                   | 0.18        | 73.63                               | 1.16        | 73.36                               | 0.89        |
|           | 2        |                      |                      |             |                         |             |                                     |             |                                     |             |
|           | 3        | 76.83                | 76.91                | 0.08        | 77.00                   | 0.17        | 76.96                               | 0.13        | 76.96                               | 0.13        |
|           | 4        | 86.18                | 86.64                | 0.46        | 87.10                   | 0.92        | 86.30                               | 0.13        | 86.36                               | 0.18        |
|           | 5        | 106.13               | 106.32               | 0.19        | 106.50                  | 0.37        | 106.98                              | 0.85        | 107.81                              | 1.68        |
|           | 평균       | <b>85.3</b>          | <b>86.5</b>          | <b>1.25</b> | <b>87.6</b>             | <b>2.36</b> | <b>86.7</b>                         | <b>1.38</b> | <b>85.4</b>                         | <b>0.15</b> |
| 1970년생    | 1        | 67.08                | 67.88                | 0.80        | 68.64                   | 1.56        | 68.84                               | 1.76        | 67.41                               | 0.33        |
|           | 2        | 71.83                | 71.97                | 0.14        | 72.16                   | 0.33        | 72.24                               | 0.41        | 77.30                               | 5.47        |
|           | 3        | 76.29                | 77.16                | 0.87        | 77.29                   | 1.00        | 76.71                               | 0.42        | 77.52                               | 1.23        |
|           | 4        | 80.17                | 82.51                | 2.34        | 82.69                   | 2.52        | 82.41                               | 2.24        | 81.39                               | 1.23        |
|           | 5        | 99.30                | 105.39               | 6.09        | 105.44                  | 5.74        | 105.85                              | 5.95        | 104.54                              | 5.24        |
|           | 평균       | <b>80.3</b>          | <b>81.5</b>          | <b>1.15</b> | <b>81.6</b>             | <b>1.27</b> | <b>81.7</b>                         | <b>1.35</b> | <b>81.1</b>                         | <b>0.83</b> |
| 1980년생    | 1        | 57.40                | 58.64                | 1.25        | 58.64                   | 1.25        | 59.08                               | 1.68        | 58.18                               | 0.78        |
|           | 2        | 61.80                | 64.71                | 2.91        | 64.71                   | 2.91        | 64.50                               | 2.69        | 62.12                               | 0.32        |
|           | 3        | 69.07                | 73.30                | 4.23        | 73.30                   | 4.23        | 73.26                               | 4.20        | 69.49                               | 0.42        |
|           | 4        | 75.47                | 80.56                | 5.09        | 80.56                   | 5.09        | 80.62                               | 5.15        | 77.14                               | 1.67        |
|           | 5        | 94.78                | 102.22               | 7.44        | 102.22                  | 7.44        | 101.87                              | 7.09        | 90.02                               | 4.76        |
|           | 평균       | <b>72.9</b>          | <b>76.7</b>          | <b>3.80</b> | <b>76.7</b>             | <b>3.80</b> | <b>76.8</b>                         | <b>3.97</b> | <b>73.8</b>                         | <b>0.90</b> |
| 1990년생    | 1        | 54.76                | 57.59                | 2.83        | 57.59                   | 2.83        | 57.55                               | 2.79        | 55.63                               | 0.87        |
|           | 2        | 58.24                | 62.55                | 4.30        | 62.55                   | 4.30        | 62.89                               | 4.65        | 58.31                               | 0.07        |
|           | 3        | 64.87                | 69.98                | 5.11        | 69.98                   | 5.11        | 70.08                               | 5.20        | 66.82                               | 1.94        |
|           | 4        | 72.40                | 78.85                | 6.45        | 78.85                   | 6.45        | 78.76                               | 6.35        | 76.21                               | 3.81        |
|           | 5        | 88.71                | 96.30                | 7.59        | 96.30                   | 7.59        | 95.99                               | 7.28        | 94.04                               | 5.32        |
|           | 평균       | <b>68.5</b>          | <b>73.6</b>          | <b>5.02</b> | <b>73.6</b>             | <b>5.02</b> | <b>73.6</b>                         | <b>5.03</b> | <b>70.4</b>                         | <b>1.85</b> |
| 2000년생    | 1        | 54.78                | 58.35                | 3.57        | 58.35                   | 3.57        | 58.06                               | 3.27        | 55.09                               | 0.31        |
|           | 2        | 58.39                | 63.14                | 4.75        | 63.14                   | 4.75        | 63.18                               | 4.79        | 60.90                               | 2.50        |
|           | 3        | 64.79                | 69.98                | 5.19        | 69.98                   | 5.19        | 70.25                               | 5.46        | 68.05                               | 3.26        |
|           | 4        | 72.32                | 78.41                | 6.09        | 78.41                   | 6.09        | 78.50                               | 6.18        | 76.58                               | 4.26        |
|           | 5        | 85.85                | 93.27                | 7.43        | 93.27                   | 7.43        | 93.33                               | 7.48        | 91.24                               | 5.39        |
|           | 평균       | <b>67.5</b>          | <b>72.7</b>          | <b>5.20</b> | <b>72.7</b>             | <b>5.20</b> | <b>72.8</b>                         | <b>5.23</b> | <b>70.5</b>                         | <b>3.00</b>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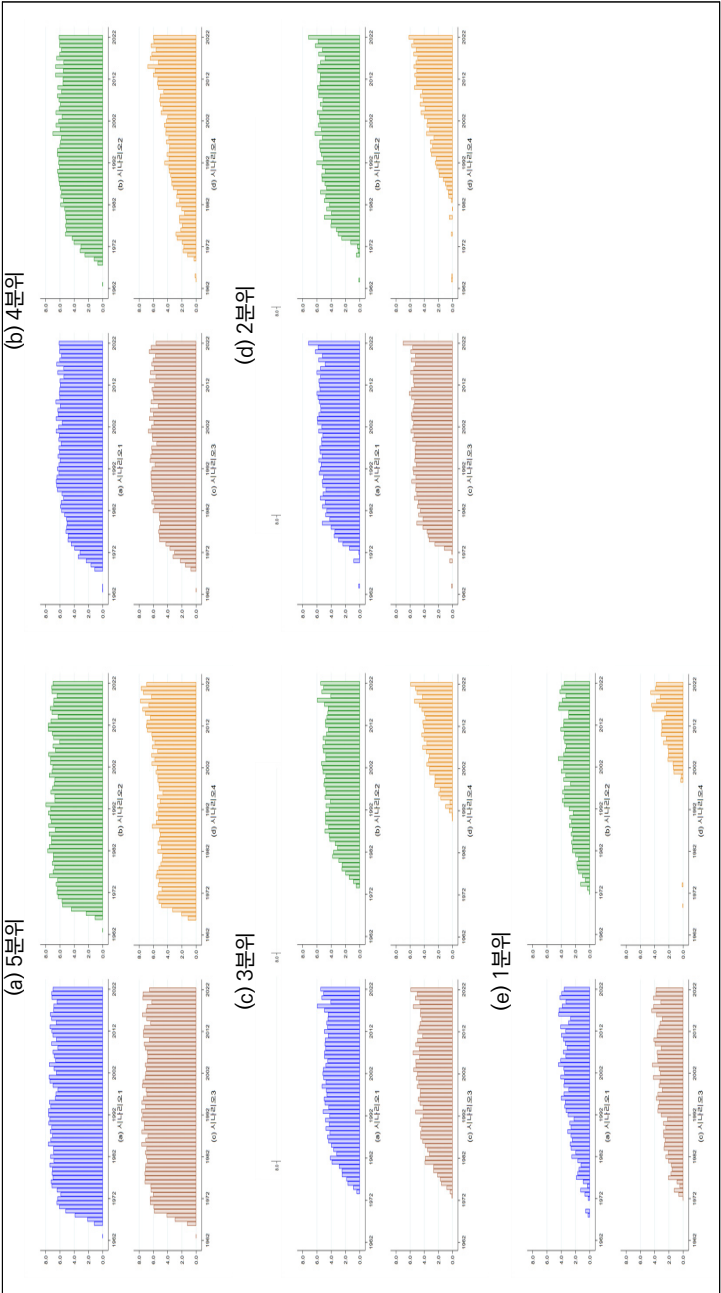
주: 생애 상용기간 분위는 18~69세까지의 42년간 상용근로자였던 기간을 기준으로 구분함.  
자료: 저자 작성.

[그림 5-23] 생애 소득분위-시나리오-출생코호트별 노령연금 급여 변화



주: 생애 소득분위는 18~69세까지 42년간의 근로(사업)소득, 즉 B값을 기준으로 구분함.  
자료: 저자 작성.

[그림 5-24] 생애 상용기간 분위-시나리오-출생코호트별 노령연금 급여 변화



주: 생애 상용기간 분위는 18-69세까지의 42년간 상용근로자였던 기간을 기준으로 구분함.  
자료: 저자 작성.

## 나. A값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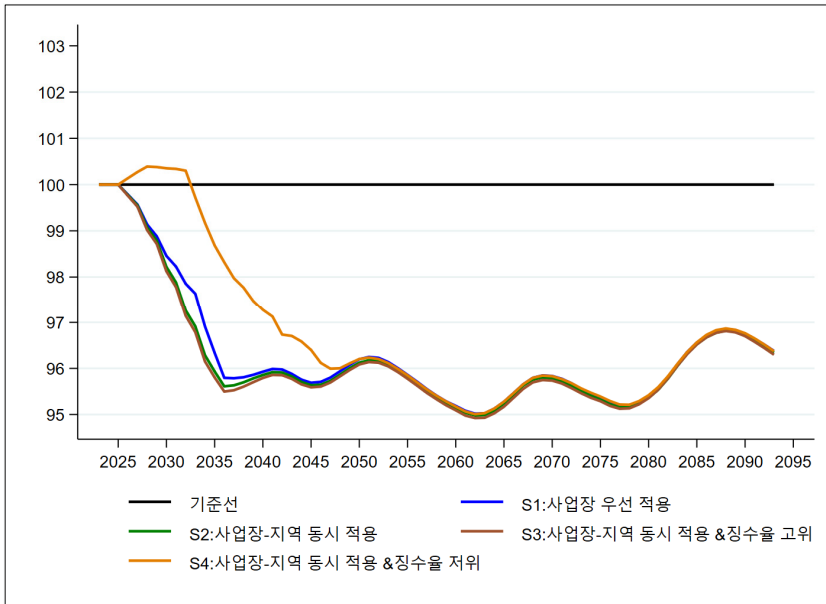
다음의 [그림 5-25]와 <표 5-17>은 가입상한연령의 단계적 연장에 따른 A값의 변화를 보여준다. 이에 따르면, 60세 이상자를 포함하는 경우 모든 시나리오에서 A값이 조금씩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표 5-17>에 따르면, A값은 장기적으로 현행 A값 대비 약 4~5%p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나리오별로 살펴보면, 사업장가입자의 가입상한연령을 우선적으로 연장하는 경우(S1)보다는 가입상한연령 연장을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에게 동시에 적용하는 경우(S2)에 A값의 하락폭이 크고, 징수율 고위 가정을 함께 적용하는 경우(S3)에는 그보다 A값이 더 크게 하락하는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60세 이상자가 가입자로 많이 편입될수록 A값이 더욱 크게 하락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다만, 가입상한연령 연장이 끝난 이후에는 모든 시나리오의 A값 하락폭이 동일한 수준으로 수렴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가입상한연령 조정으로 60세 이상자의 징수율이 하락하는 경우(S4), 오히려 A값이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5-17>에 따르면, 시나리오 4 적용 시 가입자 감소가 완료되는 2033년까지 A값이 0.14~0.38%p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60세 이상자 중 보험료 납부를 지속할 수 있을 만큼 사회경제적 상태가 양호한 고소득자들만이 가입자로 편입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이후 가입상한연령 연장이 완료되어 저소득층이 가입자로 편입되기 시작하면, 다른 시나리오들과 유사한 수준으로 A값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A값 하락은 신규 노령연금 수급자의 급여액 하락을 동반한다. <표 5-18>에 따르면, A값 산정 시 60세 이상자를 포함하는 경우 월평균 노령연금액은 각 시나리오에 비해 약 2천 원에서 1만 2천 원 하락할 것

으로 전망된다. 징수율이 하락하는 경우(S4)에도, 2033년 이후에는 A값이 현행보다 낮아지므로, 이후에 수급개시연령에 도달하는 1970년생 코호트는 급여가 소폭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이처럼 급여가 하락한다 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현행 제도보다는 급여수준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표 5-19〉). 이는 A값 하락 효과보다 가입기간 기간 증가 효과가 더욱 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림 5-25] 연도-시나리오별 기준시나리오 대비 A값 비율



자료: 시뮬레이션 결과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표 5-17〉 시나리오별 A값 변화

(단위:%, %p)

| 구분   | Baseline<br>(S0) | 사업장 우선<br>적용<br>(S1) |       | 사업장-지역<br>동시 적용<br>(S2) |       | 사업장-지역<br>동시 적용<br>& 징수율 고위<br>(S3) |       | 사업장-지역<br>동시 적용<br>& 징수율 저위<br>(S4) |       |
|------|------------------|----------------------|-------|-------------------------|-------|-------------------------------------|-------|-------------------------------------|-------|
|      |                  |                      | 증감    |                         | 증감    |                                     | 증감    |                                     | 증감    |
| 2023 | 100.0            | 100.00               | 0.00  | 100.00                  | 0.00  | 100.00                              | 0.00  | 100.00                              | 0.00  |
| 2025 | 100.0            | 100.00               | 0.00  | 100.00                  | 0.00  | 100.00                              | 0.00  | 100.00                              | 0.00  |
| 2026 | 100.0            | 99.79                | -0.21 | 99.77                   | -0.23 | 99.76                               | -0.24 | 100.14                              | 0.14  |
| 2027 | 100.0            | 99.57                | -0.43 | 99.55                   | -0.45 | 99.52                               | -0.48 | 100.27                              | 0.27  |
| 2028 | 100.0            | 99.14                | -0.86 | 99.07                   | -0.93 | 99.01                               | -0.99 | 100.39                              | 0.39  |
| 2029 | 100.0            | 98.88                | -1.12 | 98.79                   | -1.21 | 98.72                               | -1.28 | 100.38                              | 0.38  |
| 2030 | 100.0            | 98.46                | -1.54 | 98.22                   | -1.78 | 98.12                               | -1.88 | 100.35                              | 0.35  |
| 2031 | 100.0            | 98.23                | -1.77 | 97.88                   | -2.12 | 97.78                               | -2.22 | 100.34                              | 0.34  |
| 2032 | 100.0            | 97.85                | -2.15 | 97.26                   | -2.74 | 97.14                               | -2.86 | 100.30                              | 0.30  |
| 2033 | 100.0            | 97.64                | -2.36 | 96.91                   | -3.09 | 96.78                               | -3.22 | 99.72                               | -0.28 |
| 2034 | 100.0            | 96.91                | -3.09 | 96.29                   | -3.71 | 96.15                               | -3.85 | 99.17                               | -0.83 |
| 2035 | 100.0            | 96.34                | -3.66 | 95.93                   | -4.07 | 95.80                               | -4.20 | 98.69                               | -1.31 |
| 2040 | 100.0            | 95.93                | -4.07 | 95.86                   | -4.14 | 95.79                               | -4.21 | 97.28                               | -2.72 |
| 2050 | 100.0            | 96.20                | -3.80 | 96.20                   | -3.80 | 96.20                               | -3.80 | 96.20                               | -3.80 |
| 2060 | 100.0            | 95.19                | -4.81 | 95.19                   | -4.81 | 95.19                               | -4.81 | 95.19                               | -4.81 |
| 2070 | 100.0            | 95.84                | -4.16 | 95.84                   | -4.16 | 95.84                               | -4.16 | 95.84                               | -4.16 |
| 2080 | 100.0            | 95.40                | -4.60 | 95.40                   | -4.60 | 95.40                               | -4.60 | 95.40                               | -4.60 |

주: 2023년 불변가격임.  
자료: 저자 작성.

〈표 5-18〉 A값 변화에 따른 급여액 변화(각 시나리오 대비)

(단위:만 원)

| 출생<br>코호트 | 사업장 우선 적용<br>(S1) |      |      | 사업장-지역<br>동시 적용<br>(S2) |      |      | 사업장-지역<br>동시 적용<br>& 징수율 고위<br>(S3) |      |      | 사업장-지역<br>동시 적용<br>& 징수율 저위<br>(S4) |      |      |
|-----------|-------------------|------|------|-------------------------|------|------|-------------------------------------|------|------|-------------------------------------|------|------|
|           |                   | S1-1 | 증감   |                         | S2-1 | 증감   |                                     | S3-1 | 증감   |                                     | S4-1 | 증감   |
| 1965년생    | 86.5              | 86.5 | -    | 87.6                    | 87.6 | -    | 86.7                                | 86.7 | -    | 85.4                                | 85.4 | -    |
| 1970년생    | 81.5              | 81.3 | -0.2 | 81.6                    | 81.4 | -0.2 | 81.7                                | 81.4 | -0.2 | 81.1                                | 80.9 | -0.3 |
| 1980년생    | 76.7              | 76.2 | -0.5 | 76.7                    | 76.2 | -0.5 | 76.8                                | 76.2 | -0.6 | 73.8                                | 73.2 | -0.6 |
| 1990년생    | 73.6              | 72.8 | -0.8 | 73.6                    | 72.8 | -0.8 | 73.6                                | 72.6 | -0.9 | 70.4                                | 69.6 | -0.8 |
| 2000년생    | 72.7              | 71.6 | -1.2 | 72.7                    | 71.5 | -1.2 | 72.8                                | 71.6 | -1.2 | 70.5                                | 69.2 | -1.3 |

주: 2023년 불변가격임.  
자료: 저자 작성.

〈표 5-19〉 A값 변화에 따른 급여액(현행 대비)

(단위:만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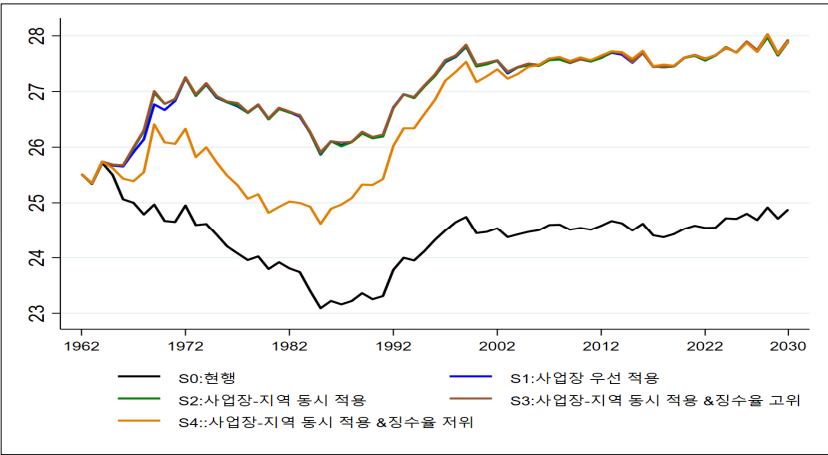
| 출생<br>코호트 | Baseline<br>(S0) | 사업장 우선<br>적용<br>(S1-1) |     | 사업장-지역<br>동시 적용<br>(S2-1) |     | 사업장-지역<br>동시 적용<br>& 정수율 고위<br>(S3-1) |     | 사업장-지역<br>동시 적용<br>& 정수율 저위<br>(S4-1) |     |
|-----------|------------------|------------------------|-----|---------------------------|-----|---------------------------------------|-----|---------------------------------------|-----|
|           |                  | 증감                     |     | 증감                        |     | 증감                                    |     | 증감                                    |     |
| 1965년생    | 85.3             | 86.5                   | 1.2 | 87.6                      | 2.3 | 86.7                                  | 1.4 | 85.4                                  | 0.1 |
| 1970년생    | 80.3             | 81.3                   | 1   | 81.4                      | 1.1 | 81.4                                  | 1.1 | 80.9                                  | 0.6 |
| 1980년생    | 72.9             | 76.2                   | 3.3 | 76.2                      | 3.3 | 76.2                                  | 3.3 | 73.2                                  | 0.3 |
| 1990년생    | 68.5             | 72.8                   | 4.3 | 72.8                      | 4.3 | 72.6                                  | 4.1 | 69.6                                  | 1.1 |
| 2000년생    | 67.5             | 71.6                   | 4.1 | 71.5                      | 4   | 71.6                                  | 4.1 | 69.2                                  | 1.7 |

주: 2023년 불변가격임.  
자료: 저자 작성.

다. 소득대체를 변화

다음의 [그림 5-26], 〈표 5-20〉, 그리고 〈표 5-21〉는 코호트별 소득 대체율 변화를 보여준다. 이에 따르면, 가입상한연령 연장의 소득대체율 인상 효과는 후세대로 갈수록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5-26] 출생코호트- 시나리오별 소득대체율



자료: 시뮬레이션 결과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그림 5-26]에 따르면 가입상한연령 연장은 실질 소득대체율을 장기적으로 약 3%p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가입상한연령의 연장이 명목 소득대체율 하락으로 감소하는 실질 소득대체율 수준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소득분위별로 살펴보면(〈표 5-20〉), 상위 분위의 소득대체율 인상폭이 더 큰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는 상위 분위의 가입기간 증가폭이 더 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다만, 후세대로 갈수록 상위 분위와 하위 분위의 소득대체율 인상폭이 비슷해지는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는 후세대로 갈수록 하위 분위의 가입기간 증가폭이 커지고 소득계층별 가입기간 격차가 감소하여 국민연금의 재분배 기능이 작동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생애 상용기간 분위별 급여액 변화 역시 소득분위별 변화와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표 5-21〉 참조).

〈표 5-20〉 출생코호트-생애 소득분위-시나리오별 소득대체율 변화

(단위:만 원)

| 출생<br>코호트  | 소득<br>분위 | Baseline<br>(S0) | 사업장 우선 적용<br>(S1) |     | 사업장-지역<br>동시 적용<br>(S2) |     | 사업장-지역<br>동시 적용<br>& 징수율 고위<br>(S3) |     | 사업장-지역<br>동시 적용<br>& 징수율 저위<br>(S4) |     |
|------------|----------|------------------|-------------------|-----|-------------------------|-----|-------------------------------------|-----|-------------------------------------|-----|
|            |          |                  |                   | 증감  |                         | 증감  |                                     | 증감  |                                     | 증감  |
| 1965<br>년생 | 1        | 21.9             | 22.0              | 0.0 | 22.0                    | 0.0 | 22.1                                | 0.2 | 22.0                                | 0.1 |
|            | 2        | 23.1             | 23.4              | 0.3 | 23.4                    | 0.3 | 23.4                                | 0.3 | 23.3                                | 0.2 |
|            | 3        | 24.9             | 25.2              | 0.3 | 25.3                    | 0.4 | 25.3                                | 0.4 | 25.2                                | 0.3 |
|            | 4        | 26.8             | 27.0              | 0.2 | 27.1                    | 0.3 | 27.1                                | 0.3 | 27.0                                | 0.2 |
|            | 5        | 26.7             | 26.7              | 0.0 | 26.7                    | 0.0 | 26.7                                | 0.0 | 26.7                                | 0.0 |
|            | 평균       | 25.5             | 25.7              | 0.2 | 25.7                    | 0.2 | 25.7                                | 0.2 | 25.6                                | 0.1 |
| 1970<br>년생 | 1        | 22.1             | 23.0              | 0.8 | 23.1                    | 1.0 | 23.3                                | 1.2 | 22.7                                | 0.5 |
|            | 2        | 23.2             | 24.3              | 1.1 | 24.6                    | 1.3 | 24.6                                | 1.4 | 23.8                                | 0.6 |
|            | 3        | 24.3             | 26.2              | 1.9 | 26.4                    | 2.1 | 26.4                                | 2.1 | 25.6                                | 1.2 |
|            | 4        | 25.3             | 27.9              | 2.6 | 28.0                    | 2.7 | 28.0                                | 2.7 | 27.0                                | 1.7 |
|            | 5        | 25.8             | 28.6              | 2.8 | 28.6                    | 2.9 | 28.6                                | 2.9 | 28.1                                | 2.3 |
|            | 평균       | 24.7             | 26.7              | 2.0 | 26.8                    | 2.1 | 26.8                                | 2.1 | 26.1                                | 1.4 |
| 1980<br>년생 | 1        | 19.9             | 22.3              | 2.4 | 22.3                    | 2.4 | 22.3                                | 2.4 | 21.0                                | 1.1 |
|            | 2        | 22.4             | 25.0              | 2.6 | 25.0                    | 2.6 | 25.1                                | 2.6 | 23.2                                | 0.8 |
|            | 3        | 24.1             | 27.0              | 3.0 | 27.0                    | 3.0 | 27.2                                | 3.1 | 25.0                                | 1.0 |
|            | 4        | 25.3             | 28.3              | 3.0 | 28.3                    | 3.0 | 28.5                                | 3.2 | 26.0                                | 0.7 |
|            | 5        | 25.1             | 28.1              | 3.0 | 28.1                    | 3.0 | 28.1                                | 3.1 | 26.9                                | 1.8 |
|            | 평균       | 23.8             | 26.5              | 2.7 | 26.5                    | 2.7 | 26.5                                | 2.7 | 24.8                                | 1.0 |
| 1990<br>년생 | 1        | 18.5             | 21.4              | 2.8 | 21.4                    | 2.8 | 21.4                                | 2.9 | 21.2                                | 2.7 |
|            | 2        | 21.9             | 25.0              | 3.2 | 25.0                    | 3.2 | 25.2                                | 3.3 | 24.3                                | 2.4 |
|            | 3        | 24.4             | 27.5              | 3.1 | 27.5                    | 3.1 | 27.6                                | 3.2 | 26.3                                | 1.9 |
|            | 4        | 25.0             | 28.1              | 3.0 | 28.1                    | 3.0 | 28.2                                | 3.2 | 26.6                                | 1.6 |
|            | 5        | 23.8             | 26.8              | 2.9 | 26.8                    | 2.9 | 26.9                                | 3.1 | 26.2                                | 2.4 |
|            | 평균       | 23.3             | 26.2              | 2.9 | 26.2                    | 2.9 | 26.2                                | 2.9 | 25.3                                | 2.1 |
| 2000<br>년생 | 1        | 21.4             | 24.4              | 3.1 | 24.4                    | 3.1 | 24.4                                | 3.1 | 24.5                                | 3.2 |
|            | 2        | 23.9             | 27.0              | 3.1 | 27.0                    | 3.1 | 27.0                                | 3.1 | 26.8                                | 2.9 |
|            | 3        | 25.7             | 29.0              | 3.3 | 29.0                    | 3.3 | 29.0                                | 3.3 | 28.5                                | 2.8 |
|            | 4        | 25.6             | 28.6              | 3.0 | 28.6                    | 3.0 | 28.8                                | 3.2 | 28.2                                | 2.6 |
|            | 5        | 24.3             | 27.1              | 2.9 | 27.1                    | 2.9 | 27.1                                | 2.9 | 26.8                                | 2.6 |
|            | 평균       | 24.4             | 27.5              | 3.0 | 27.5                    | 3.0 | 27.5                                | 3.0 | 27.2                                | 2.7 |

주: 생애 소득분위는 18~69세까지 42년간의 근로(사업)소득, 즉 B값을 기준으로 구분함.  
자료: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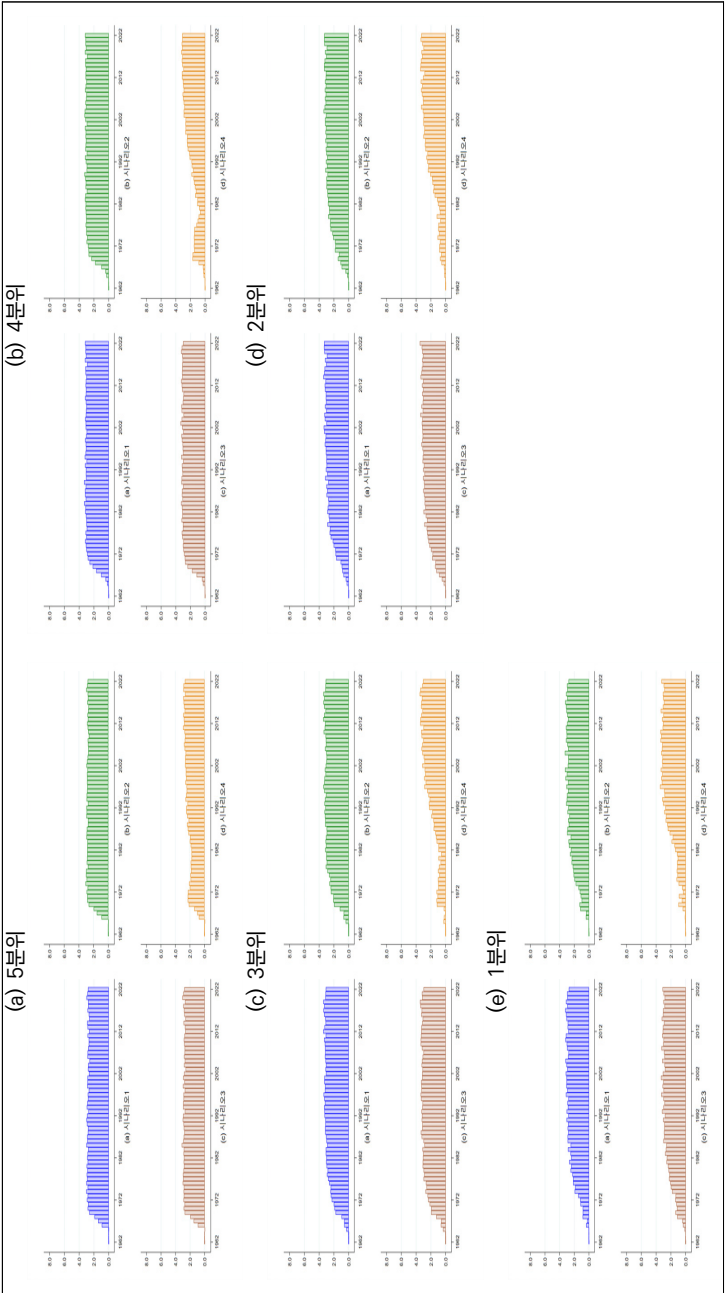
〈표 5-21〉 출생코호트-생애 상용기간 분위-시나리오별 노령연금 소득대체율 변화

(단위:만 원)

| 출생<br>코호트  | 소득<br>분위 | Baseline<br>(S0) | 사업장 우선 적용<br>(S1) |     | 사업장-지역<br>동시 적용<br>(S2) |     | 사업장-지역<br>동시 적용<br>& 징수율 고위<br>(S3) |     | 사업장-지역<br>동시 적용<br>& 징수율 저위<br>(S4) |     |
|------------|----------|------------------|-------------------|-----|-------------------------|-----|-------------------------------------|-----|-------------------------------------|-----|
|            |          |                  | 증감                |     | 증감                      |     | 증감                                  |     | 증감                                  |     |
| 1965<br>년생 | 1        | 24.3             | 24.4              | 0.1 | 24.5                    | 0.2 | 24.5                                | 0.2 | 24.4                                | 0.1 |
|            | 2        |                  |                   |     |                         |     |                                     |     |                                     |     |
|            | 3        | 24.1             | 24.4              | 0.3 | 24.4                    | 0.3 | 24.4                                | 0.3 | 24.3                                | 0.2 |
|            | 4        | 25.3             | 25.5              | 0.3 | 25.6                    | 0.3 | 25.6                                | 0.3 | 25.5                                | 0.2 |
|            | 5        | 28.2             | 28.3              | 0.1 | 28.3                    | 0.1 | 28.3                                | 0.1 | 28.2                                | 0.0 |
|            | 평균       | 25.5             | 25.7              | 0.2 | 25.7                    | 0.2 | 25.7                                | 0.2 | 25.6                                | 0.1 |
| 1970<br>년생 | 1        | 22.9             | 25.0              | 2.1 | 25.3                    | 2.3 | 25.3                                | 2.4 | 23.7                                | 0.7 |
|            | 2        | 23.4             | 24.6              | 1.1 | 24.9                    | 1.4 | 25.0                                | 1.5 | 23.8                                | 0.3 |
|            | 3        | 23.9             | 25.8              | 1.8 | 25.8                    | 1.9 | 25.8                                | 1.9 | 24.8                                | 0.9 |
|            | 4        | 24.2             | 26.2              | 2.0 | 26.4                    | 2.2 | 26.5                                | 2.2 | 25.9                                | 1.7 |
|            | 5        | 27.7             | 30.5              | 2.8 | 30.6                    | 2.8 | 30.6                                | 2.8 | 30.7                                | 2.9 |
|            | 평균       | 24.7             | 26.7              | 2.0 | 26.8                    | 2.1 | 26.8                                | 2.1 | 26.1                                | 1.4 |
| 1980<br>년생 | 1        | 21.2             | 24.0              | 2.8 | 24.2                    | 2.9 | 24.2                                | 3.0 | 21.5                                | 0.3 |
|            | 2        | 21.5             | 24.1              | 2.7 | 24.2                    | 2.7 | 24.3                                | 2.8 | 21.7                                | 0.2 |
|            | 3        | 22.9             | 25.7              | 2.8 | 25.8                    | 2.9 | 25.8                                | 2.9 | 23.4                                | 0.6 |
|            | 4        | 24.7             | 27.4              | 2.7 | 27.4                    | 2.8 | 27.5                                | 2.8 | 26.4                                | 1.7 |
|            | 5        | 27.6             | 30.6              | 3.0 | 30.8                    | 3.1 | 30.8                                | 3.1 | 30.7                                | 3.0 |
|            | 평균       | 23.8             | 26.5              | 2.7 | 26.5                    | 2.7 | 26.5                                | 2.7 | 24.8                                | 1.0 |
| 1990<br>년생 | 1        | 19.6             | 22.7              | 3.1 | 22.7                    | 3.1 | 22.7                                | 3.1 | 20.1                                | 0.5 |
|            | 2        | 20.7             | 23.7              | 3.0 | 23.8                    | 3.1 | 23.8                                | 3.2 | 21.9                                | 1.3 |
|            | 3        | 22.5             | 25.4              | 2.9 | 25.6                    | 3.1 | 25.6                                | 3.1 | 24.6                                | 2.1 |
|            | 4        | 24.6             | 27.7              | 3.1 | 27.7                    | 3.1 | 27.6                                | 3.0 | 27.5                                | 2.9 |
|            | 5        | 27.9             | 30.9              | 2.9 | 30.9                    | 3.0 | 30.9                                | 3.0 | 31.2                                | 3.3 |
|            | 평균       | 23.3             | 26.2              | 2.9 | 26.2                    | 2.9 | 26.2                                | 2.9 | 25.3                                | 2.1 |
| 2000<br>년생 | 1        | 20.8             | 24.3              | 3.5 | 24.4                    | 3.5 | 24.4                                | 3.5 | 22.9                                | 2.1 |
|            | 2        | 22.0             | 25.1              | 3.1 | 25.1                    | 3.1 | 25.1                                | 3.1 | 24.7                                | 2.7 |
|            | 3        | 23.8             | 26.8              | 2.9 | 26.9                    | 3.0 | 26.9                                | 3.1 | 26.8                                | 2.9 |
|            | 4        | 26.0             | 28.9              | 2.9 | 28.9                    | 2.9 | 28.9                                | 3.0 | 28.9                                | 3.0 |
|            | 5        | 29.1             | 32.1              | 3.0 | 32.1                    | 3.0 | 32.1                                | 3.0 | 32.3                                | 3.2 |
|            | 평균       | 24.4             | 27.5              | 3.0 | 27.5                    | 3.0 | 27.5                                | 3.0 | 27.2                                | 2.7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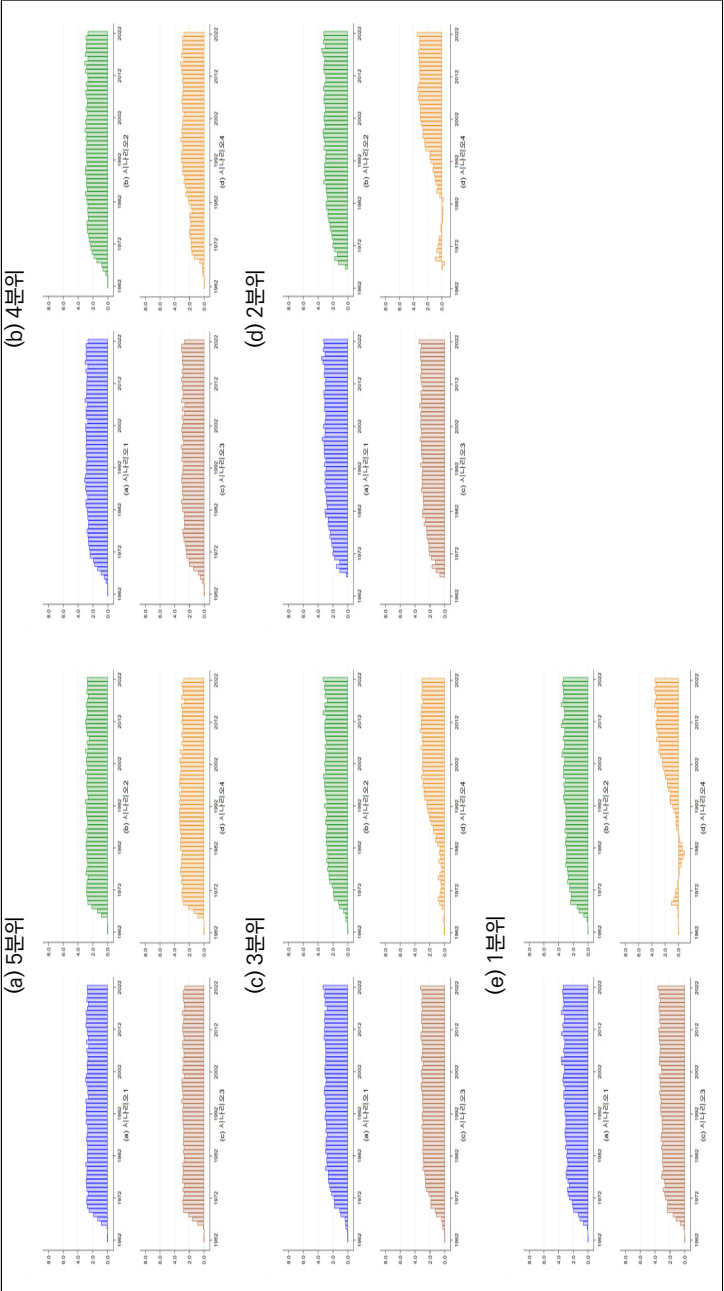
주: 생애 상용기간 분위는 18~69세까지의 42년간 상용근로자였던 기간을 기준으로 구분함.  
자료: 저자 작성.

[그림 5-27] 생애 소득분위-시나리오-출생코호트별 소득대체를 변화



주: 생애 소득분위는 18~69세까지 42년간의 근로(사업)소득, 즉 B값을 기준으로 구분함.  
자료: 저자 작성.

[그림 5-28] 생애 상용기간 분위-시니리오-출생코호트별 소득대체율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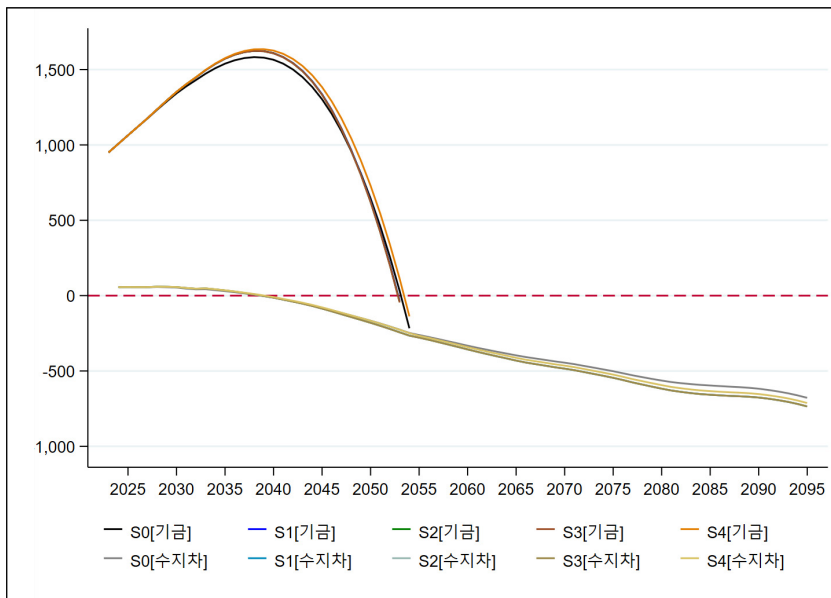


주: 생애 상용기간 분위는 18~69세까지의 42년간 상용근로자였던 기간을 기준으로 구분함.  
자료: 저자 작성.

#### 4. 재정 전망

[그림 5-29]는 시나리오별 국민연금 재정수지 전망을 보여준다. 이에 따르면 가입상한연령의 연장이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미미한 것으로 전망된다. <표 5-22>에 따르면, 시나리오 1~시나리오 3을 적용하는 경우, 수지적자 시점과 기금소진 시점이 현행에 비해 각각 1년씩 앞당겨질 것으로 전망된다. 적립기금은 현행보다 더 많이 적립되지만, 더욱 빠르게 소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가입상한연령 연장 초기에는 가입기간 증가로 인한 급여지출보다 60세 이상 가입자의 유입에 따른 보험료 수입 증가의 폭이 더 크지만, 시간이 흘러 가입상한연령 연장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기금소진 시점이 앞당겨지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림 5-29] 시나리오별 재정수지전망



자료: 저자 작성.

〈표 5-22〉 시나리오별 재정 전망

| 구분     | 보험료 수입<br>〈급여지출 시점 | 수지적자<br>시점 | 기금소진 시점<br>(적자 규모) | 최대 적립 시점<br>(기금 규모)<br>(GDP 대비 비율) |
|--------|--------------------|------------|--------------------|------------------------------------|
| (현행)   | 2029년              | 2039년      | 2054년<br>(-217조 원) | 2038년<br>(1,583조 원)<br>(43.3%)     |
| 시나리오 1 | 2029년              | 2039년      | 2053년<br>(-37조 원)  | 2038년<br>(1,625조 원)<br>(44.5%)     |
| 시나리오 2 | 2029년              | 2039년      | 2053년<br>(-42조 원)  | 2038년<br>(1,624조 원)<br>(44.5%)     |
| 시나리오 3 | 2029년              | 2039년      | 2053년<br>(-45조 원)  | 2038년<br>(1,624조 원)<br>(44.5%)     |
| 시나리오 4 | 2029년              | 2040년      | 2054<br>(-137조 원)  | 2039년<br>(1,635조 원)<br>(43.6%)     |

자료: 저자 작성.

## 제4절 소결

이 장에서는 Dynamic MSM을 이용한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국민 연금의 가입상한연령 연장이 노후소득보장 및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이 장에서 설정한 시나리오는 가입상한연령을 2025년부터 2033년까지 2년마다 1세씩 순차적으로 연장하되, 첫째, 사업장가입자만 우선적으로 적용하는 경우(S1), 둘째,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모두에게 동시에 적용하는 경우(S2), 셋째,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모두에게 동시에 적용하되 높은 징수율을 가정하는 경우(S3), 넷째,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모두에게 동시에 적용하되 징수율 하락을 가정하는 경우(S4)이다.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가입상한연령 연장으로 인해 장기적으로 전체 가입자의 평균 가입기간이 약 28개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가입상한연령 연장의 가입기간 증대 효과는 후세대로 갈수록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소득분위별로는 상위 분위의 가입기간 증가폭이 하위 분위에 비해 클 것으로 전망된다. 최상위 분위(5분위)의 가입기간 증가폭은 약 38개월로 고용률 수준에 수렴하지만, 최하위 분위(1분위)의 가입기간은 약 16개월 증가하는 데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결과는 모든 시나리오에서 관찰되며, 생애 상용분위별 가입기간의 변화 역시 이와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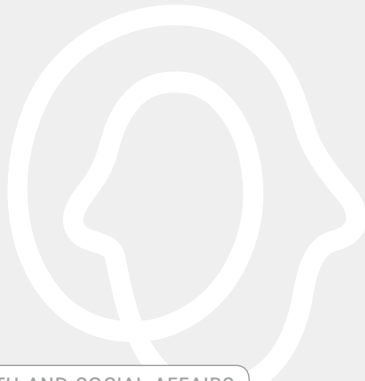
둘째, 가입상한연령 연장에 따라 노령연금 수급률이 장기적으로 약 2%p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노령연금 수급률 증가 효과가 가입기간 증가 효과에 비해 낮은 것은, 연금제도가 성숙하여 상위계층의 노령연금 수급률이 이미 100% 수준에 근접하기 때문이다. 소득계층별로 살펴보면, 하위계층의 수급률 증가폭은 약 7%p로 상위계층에 비해 클 것으로 전망된다. 이 역시 모든 시나리오에서 관찰되며, 생애 상용분위별 현황에서도 이와 유사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셋째, 앞에서 설명한 가입기간의 증가는 장기적으로 월평균 노령연금 급여액을 약 5만 원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노령연금 급여액의 증가 폭은 상위 소득분위에서 더욱 클 것으로 전망된다. 최상위 분위(5분위)의 노령연금 급여액은 약 10만 원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나, 최하위 분위(1분위)의 급여 인상액은 약 2만 원에 그칠 전망이다. 이러한 현상 역시 시나리오와 무관하며, 생애 상용분위별 현황도 이와 유사할 전망이다.

넷째, 소득대체율은 가입상한연령의 연장에 따라 장기적으로 약 3%p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소득대체율의 경우 소득분위나 생애 상용기간에 따른 격차가 관찰되지 않았는데, 이는 후세대로 갈수록 제도가 성숙되어 소득 및 상용기간 분위별 가입기간 격차가 완화되기 때문으로 보인다.

다섯째, 가입상한연령 연장 시 가입종별로 순차 적용하는 경우( $S1 \leftrightarrow S2$ )와, 징수율의 증가( $S2 \leftrightarrow S3$ )는 가입자의 가입기간, 노령연금 수급률, 급여액, 소득대체율 등에 그리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전망이다. 다만, 징수율이 하락하는 경우( $S4$ ) 소득 및 생애 상용기간 분위에 따른 격차가 심화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특히, 하위 분위의 경우 상당한 시간이 흐른 뒤에야 가입상한연령 연장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섯째, 가입상한연령이 국민연금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미미한 것으로 전망된다. 시나리오별로 적립금 규모는 다소 상이하지만, 수지적자 발생 시점, 기금소진 시점은 모두 현행 대비 1년식 앞당겨질 것으로 전망된다.



## 제6장

### 결론 및 시사점

제1절 국민연금 가입상한연령 연장을 위한 정책 제언

제2절 연구의 한계 및 후속 연구 제언



##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 제1절 국민연금 가입상한연령 연장을 위한 정책 제언

본 연구는 국민연금의 가입상한연령 연장 시 주요 정책 수혜 계층을 예측하고, 노후소득보장 효과 및 재정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각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인식과 선호 - 정책 요구 방향 - 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가입상한연령 연장은 전반적으로 가입기간 증가에 따라 노후소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며, 결과 측면에서 발생하게 될 계층별 격차는 필연적일 것으로 보인다. 60세 이후에도 고령자가 경제활동을 이어나가는 것이 이제는 일반적인 상황에서 최대 5년까지 가입기간을 추가로 확보하는 것은 수급권 획득과 급여액 인상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다만, 노동시장 여건이 안정적이고, 비교적 소득이 높은 집단에서 급여 인상의 폭이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고 예측됨에 따라 가입상한연령 연장 시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사용자(기업)와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심층면접 결과는 가입상한연령 연장이라는 단일 변수가 반드시 고령자 고용 기피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보여준다. 사용자가 60세 이상 고령자의 채용을 꺼리는 가장 큰 이유는 연공성이 높은 현 임금체계가 주는 부담이 크기 때문이며, 사회보험료 부담 같은 비임금비용 부담은 부수적인 제약 요인에 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최근 노동시장 개혁에 관한 논의 속에서 고령 인력의 활용을 통한 생산성 제고가 핵심인 것을 고려하면, 가입상한연령 연장에 관한 고령자 고용 논의가 마냥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근로자 입장에서 가입상한연령 연장을 꺼리는 원인은 연금제도에 대한

오인과 제도 불신이 가장 컸다. 가입상한연령 연장으로 인한 추가 기여가 자신들의 급여 인상으로 이어진다고 인식하기보다는 단순히 재정 안정화를 위한 보험료 부담으로 바라보는 제도 '오인'에서 비롯된 것이다. 한편 중소기업장의 경우, 현재 고령 인력 고용 자체가 드물어 가입상한연령 연장으로 인한 인건비 상승 부담이 현재는 낮은 편이지만 향후 고령 인력 고용이 활성화될 경우, 이들 사업장에서 근로자 평균 연령은 점차 높아질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자들은 현재 실시 중인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의 확대 등 정부 차원의 재정지원에 대하여 강한 욕구를 나타냈다.

마지막으로, 시뮬레이션 분석 결과, 가입상한연령 연장 조치는 평균적으로 28개월의 가입기간 증가를 가져오며, 노동시장 지위가 비교적 안정적인 집단에서 급여 인상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다. 60세 이상 사업장 가입자 우선 적용 등 다양한 조합 시나리오를 분석하였으나, 모든 시나리오에서 일시적으로 A값이 하락하였다가 반등하는 모습을 나타냈다. 제도 변화에 따른 재정 변화는 미미한 수준으로, 기금소진 시점이 1년 앞당겨지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가입상한연령을 그대로 두기로 결정한 시기에서 어느덧 30여 년이 지나, 이제는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국회연금특위 등 연금개혁 논의에서 가입상한연령 연장은 가장 동의 수준이 높은 모수 개혁의 하나로 이야기되고 있다. 본 연구는 지금 당장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는 대신, 현재 60세 이상 고령자의 경제활동 특성과 이해관계자의 정책 요구 방향을 다면적으로 검토하고, 가장 현실성 있는 대안들로 시나리오를 구성하여 그 결과를 제시하는 것에 의미를 두고 있다. 특히 이해관계자 인터뷰에서는 가입상한연령 연장을 두고 발생하는 사용자와 근로자 집단 내, 집단 간 의견 차이를 파악하여 국민연금에 국한하지 않고, 노동시장과의 정합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 방향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상의 내용들은 전반적인 임금체계의 개편과 고령 인력의 생산성 강화, 그리고 취약계층에 대한 정부 재정지원과 같은 정책적 노력이 동반되어야만 가입상한연령 연장의 추진이 가능하며, 정책 개편에 따른 부작용 역시 줄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 제2절 연구의 한계 및 후속 연구 제언

본 연구의 한계 및 후속 연구 관련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60세 이상 고령자의 노동시장 여건을 분석하기 위해 한국노동패널의 직업력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 대상의 일자리 정보를 월별 패널자료로 구축하고, 이들의 생애 근로 및 연금가입기간을 산출,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즉 해당 변수들이 60~64세의 취업과 소득 수준에 미치는 영향들을 분석하고, 나아가 가입상한연령 연장에 따른 정책적 수혜집단의 특성을 파악하고자 한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의 목적을 충분하게 달성하기에 생애 근로 및 연금가입기간에 대한 정보만으로는 한계가 크다. 특히 분석자료의 특성상 1999년 이전 일자리에 대한 정보는 회고적 설문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제도 특유의 복잡성으로 인해 일반적인 패널자료만으로는 각 개인의 생애 소득수준과 정확한 연금 급여액을 파악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행정자료 등 이러한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양질의 자료를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분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둘째, 이해관계자 인터뷰 시 이미 60세 이상에 도달한 고령 근로자를 면접 대상자로 포함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당장 가입상한연령 연장을 실시한다고 가정하면,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이들은 곧 은퇴할 예정

이거나 이미 은퇴한 후 재취업 또는 고용연장을 통해 일하고 있는 60세 이상 고령 근로자일 것이다. 그런데 본 연구에서는 섭외의 어려움으로 인해 면접자 규모를 충분히 채우지 못해 이들의 정책 인식과 선호를 파악할 수 없었다.

셋째, 실제 기업을 경영하고 있는 고용주 대신 관리자급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했는데, 이들이 어느 정도 근로자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는 점에서 분명 한계가 있다. 아울러, 지역가입자라 할 수 있는 자영자를 인터뷰 대상에 포함하지 못하고, 단체 대표만을 인터뷰한 것은 가입상한연령 연장 시 지역가입자에 대한 고려사항을 도출하기에 한계가 있다.

이상의 연구 한계를 보완하는 방식으로 향후 더 구체적인 가입상한연령 연장 방안들이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 강성호, 전승훈, 임병인. (2008). 국민연금법 개정의 소득분배 및 노동공급 효과 분석, **경제학연구**, 56(3), 75-107.
- 강소랑. (2015). 국민연금이 고령자의 노동시장 참여에 미치는 영향. **정책분석 평가학회보**, 25(2), 165-195.
- 고제이, 권혁진, 신우진, 류재린, 하솔잎, 조남운. (2016). **미시모의실험 기반 중장기 사회 재정 영향 평가 모형 개발-노후 소득 보장 정책을 중심으로**.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국민연금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668호 (2023).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921호 (2022).
- 국민연금공단. (각 연도). **국민연금통계연보**. 전주: 국민연금공단.
-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 도입과 발전. [https://www.nps.or.kr/jsppage/info/easy/easy\\_01\\_02.jsp](https://www.nps.or.kr/jsppage/info/easy/easy_01_02.jsp)에서 2024. 1. 20. 인출
- 국민연금재정계산위원회, 국민연금재정추계전문위원회, 국민연금기금운용발전 전문위원회. (2023).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 발표자료 -**. 2023.8.30. [https://m.nps.or.kr/jsppage/mobile/ne/HM\\_4D0002\\_01.jsp?hrnkMenuId=MW\\_NE&menuId=MW\\_NE\\_002&seq=28637](https://m.nps.or.kr/jsppage/mobile/ne/HM_4D0002_01.jsp?hrnkMenuId=MW_NE&menuId=MW_NE_002&seq=28637) 에서 2023. 10.16. 인출.
-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 (2018). **2018 국민연금재정계산: 국민연금 장기재정추계**.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
- 국회연금개혁특별위원회 민간전문가자문위원회 활동보고서. (2023). **한국형 노후소득보장의 쟁점과 추진방안**. 서울: 국회연금개혁특별위원회 민간전문가자문위원회.
- 권혁진, 류재린. (2018).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공적연금의 적정성과 개인안정성에 대한 전망. **공공사회연구**, 8(1), 38-82.
- 권혁진. (2011). 우리나라 중·고령자의 퇴직 결정과 재무적 유인 -연기연금 확대

- 방안의 효과에 대한 모의실험-. **보험금융연구**, 22(4), 32-66.
- 권혁진. (2019). 중고령층 노동시장의 코호트 효과 분석.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2018~2028**(이시균 외 16인)의 6장, 94-141. 음성: 한국고용정보원.
- 기획재정부. (2020. 9. 3.). 2020~2060년 장기재정전망.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별첨자료**. [https://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028&searchNttId1=MOSF\\_00000000045158&menuNo=4010100](https://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028&searchNttId1=MOSF_00000000045158&menuNo=4010100) 에서 2023.11.3. 인출.
- 김성숙, 홍성우. (2011). **국민연금 가입연령의 타당성 검토**. 서울: 국민연금연구원.
- 김영순. (2014). **코끼리 쉽게 옮기기: 영국 연금 개혁의 정치**. 서울: 후마니타스.
- 김영아, 김주봉. (2020). **중·고령자의 은퇴의도와 은퇴행동**. 세종: 한국노동연구원.
- 김태일, 신영민. (2022). OECD 국가 비교를 통한 국민연금 보장성 강화 방안. **정부학연구**, 28(3), 225-253.
- 김혜진, 김현수, 이은실, 김아람. (2020). **국민연금 적용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과제**. 전주: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
- 김혜진, 신승희, 유현경. (2018). **임의계속가입제도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전주: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
- 남재량. (2018). **정년 60세 이상 의무제 시행의 고용효과 연구**. 세종: 한국노동연구원.
- 류재린, 권혁진, 우선희. (2022).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제도의 효과 추정 - 마이크로시뮬레이션 모형을 중심으로**.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류재린, 이다미, 이원진, 권혁진, 남윤재, 이병재. (2023, 발간 예정). **공적연금의 개혁 효과 분석을 위한 동태적 미시 모의실험 모형 개발**.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문무기. (2022). 세대 상생형 임금체계 구현을 위한 단상. **법학논총**, 39(2), 389-415.
- 문현경, 김혜진, 김아람. (2021). **연금개혁의 주요 행위자로서 사용자에게 대한 기초 연구**. 전주: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
- 박경하. (2011). 우리나라 중고령자의 은퇴과정 유형화 연구 : 다양성과 불평등

-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42(3), 291-327.
- 박명준, 김주현, 노광표, 이호창, 임상훈, Schröder, H. (2015). **노동력 고령화에 대한 노사관계적 대응: 양산과 과제**. 세종: 한국노동연구원.
- 박철성, 최강식. (2018). 국민연금이 취업과 은퇴에 미치는 영향. **산업관계연구**, 28(3), 1-16.
- 보건복지부. (2023. 1. 8.). 2023년 국민연금 급여액 5.1% 인상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 반영, 1월 25일 지급부터 적용-.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10100&bid=0027&cg\\_code=](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10100&bid=0027&cg_code=) 예서 2023. 10. 19. 인출.
- 성재민. (2021). 기업 규모 간 임금 격차 추이와 정책 방향. **노동리뷰**, 196, 3-5.
- 성재민. (2023). 향후 인구변동과 60세 이상 정년 의무화 이후 노동시장 변화. **노동리뷰**, 215, 7-28.
- 성혜영, 한정림, 김아람. (2022). **국민연금 가입연령 상한 조정을 위한 기초연구**. 전주: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
- 손종칠. (2010). 중고령자 은퇴 및 은퇴 만족도 결정요인 분석. **노동정책연구**, 10(2), 125-153.
- 송창길, 나원희, 백주하, 류한별, 한신실, 고경표. (2023, 발간 예정). **인구추계모형 구축과 활용 방안**.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신우진, 권혁진, 류재린. (2016). 불안정 노동이 국민연금 노후소득 보장기능에 미치는 영향. **사회보장연구**, 32(1), 33-55.
- 오계택. (2022). 임금체계 개선을 위한 노동정책 방향과 과제. **노동리뷰**, 205, 49-54.
- 우해봉, 한정림. (2017). 국민연금 의무 가입 연령 조정의 세대별 노후소득보장 효과 분석. **사회복지정책**, 44(2), 5-27.
- 윤하림, 홍백의. (2020). 한국 중·장년층 남성의 노동생애 불안정은 보편화되고 있는가? : 세대 및 학력 간 노동관계적 비교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47(2), 31-58.
- 이기주, 석재은. (2011). 국민연금제도가 중고령 남성 임금근로자의 은퇴결정에

- 미치는 영향. **사회보장연구**, 27(1), 55-88.
- 이다미, 권혁진. (2019). 국민연금 실업크레딧의 노후소득보장 효과 - 미시 시뮬레이션을 활용한 장기 전망. **사회보장연구**, 35(3), 39-72.
- 이다미, 정해식, 전지현. (2021). **국민연금 가입상한연령 연장의 적절성 연구**.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승렬, 최강식. (2007). 국민연금이 중고령자의 은퇴 행위에 미치는 영향. **사회보장연구**, 23(4), 83-103.
- 이승렬. (2017). **노령연금 수급자의 노동공급과 정책과제**. 세종: 한국노동연구원.
- 이승호. (2019). 한국 노인 노동의 변화에 영향을 미친 요인: 2008~2016년 고용률 변화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서울). <https://s-space.snu.ac.kr/handle/10371/152417>에서 인출.
- 이승호, 변금선, 고혜진. (2019). **근로생애와 고령노동**. 세종: 한국노동연구원.
- 이승호, 이원진, 김수영. (2020). **고령 노동과 빈곤**. 세종: 한국노동연구원.
- 이주영. (2020). 중·고령자의 주된 일 퇴직과 재취업 동향 분석. **한국정책학회보**, 29(3), 29-62.
- 이철희. (2006). **한국의 고령노동: 경제활동과 고용구조의 장기적 변화**.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 이철희. (2009). 인구고령화 및 고령남성 경제활동참가의 변화가 노동인구구조에 미치는 영향. **한국경제연구**, 25, 5-44.
- 장지연, 이혜정. (2008). 중·고령자의 근로생애 유형: 사건계열분석기법을 이용한 취업력 분석. **노동리뷰**, 42, 76-86.
- 장지연, 호정화. (2002). 취업자 평균 은퇴연령의 변화와 인구특성별 차이. **노동정책연구**, 2(2), 1-21.
- 전성진. (2023). 고령 저임금근로자의 현황과 소득 감소에 따른 노동결정 변화. **월간 노동리뷰**, 217, 43-55.
- 전승훈. (2010). 생애 연금급여가 은퇴시기결정 및 은퇴자의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 **재정정책논집**, 12(1), 3-32.
- 정이환. (2010). 기업내부노동시장을 넘어?: 일본에서의 기업 내 연공임금 극복

- 시도. **경제와사회**. 86, 233-265.
- 정인영, 민기채. (2017). 국민연금의 고령근로 유인기제 개선방안 연구. **사회복지정책**, 44(3), 39-68.
- 정진호. (2022). 60세 정년의무화의 고용효과. **고령사회대응연구회 활동보고서** (pp. 159-174). 서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 정찬미, 이상은. (2022). 기초연금의 형평성 평가: 국민연금과의 관계를 고려한 종합적 접근을 중심으로. **비판사회정책**, 74, 209-236.
- 정해식, 권혁진, 주은선, 최옥금. (2020). 노령층소득보장 제도 재구조화 방안. **소득보장체계 재구조화 방안 연구: 제도간 연계·조정을 중심으로**(pp. 181-333). 세종: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조성재. (2014). 임금구조 합리화를 지향하는 노사 교섭 전략. **노동리뷰**, 112, 19-36.
- 최옥금. (2021).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제도의 관계를 둘러싼 쟁점과 발전방향**. 전주: 국민연금연구원.
- 통계청. (2021.12.9.). 장래인구추계: 2020~2070년. 통계청 사회통계국 인구동향과 보도자료. [https://kostat.go.kr/board.es?mid=a10301020600&bid=207&act=view&list\\_no=415453](https://kostat.go.kr/board.es?mid=a10301020600&bid=207&act=view&list_no=415453) 에서 2023.11.3. 인출.
- 통계청. (2021). 2021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
- 통계청. (각 연도).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8월). 원자료.
- 통계청. (각 연도).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5월). 원자료.
- 통계청. (2023a). 국민연금 가입자: 종별·연령별·성별 가입자 현황.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322&tblId=DT\\_32202\\_B012](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322&tblId=DT_32202_B012)에서 2023.10.6. 인출.
- 통계청. (2023b). 성 및 연령별 추계인구(1세별, 5세별) / 전국.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P A001&conn\\_path=I3](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P A001&conn_path=I3) 에서 2023.9.27. 인출.
- 통계청. (2023c). 경제활동인구조사-연령별 경제활동인구조사 총괄.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DA7](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DA7)

- 002S&vw\_cd=MT\_ZTITLE&list\_id=B11&scrid=&seqNo=&lang\_mode=ko&obj\_var\_id=&itm\_id=&conn\_path=MT\_ZTITLE&path=%252FstatisticsList%252FstatisticsListIndex.do 에서 2023.9.5. 인출.
- 한국노동연구원. (2022). 한국노동패널 24차 직업력 원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각 연도). KLI 노동통계. 원자료.
- 한신실. (2018). 이행노동시장과 중고령자의 노동경력.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2018년 춘계학술대회**, 서울: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411-432.
- 한신실. (2021). 국민연금 가입종별 기여격차 요인분해. **한국사회정책**, 28(1), 161-189.
- 한정림, 김경아. (2014). 우리나라 자영업자의 국민연금 가입형태와 연금수혜 분석. **산업경제연구**, 27(6), 2277-2300.
- 홍백의, 김혜연. (2010). 중고령자의 고용형태별 퇴직과정 유형과 그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정책**, 17(1), 291-319.
- Baltagi, B. H. & Wu, P. X. (1999). Unequally spaced panel data regressions with AR (1) disturbances. *Econometric theory*, 15(6), 814-823.
- Börsch-Supan, A. & Coile, C. C. (Ed.). (2020). *Social Security Programs and Retirement around the World: Reforms and Retirement Incentive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Cahill, K. E., Giandrea, M. D., & Quinn, J. F. (2011). Reentering the labor force after retirement. *Monthly Labor Review*. 134(6), 34-42.
- Creswell, J. W. & Poth, C. N. (2021). **질적연구방법론: 다섯 가지 접근**. (조홍식, 정선옥, 김진숙, 권지성, 윤킴). 서울: 학지사.
- Ilmarinen, J. (2005). *Towards a longer worklife -Ageing and the quality of worklife in the European Union*, Helsinki: Finnish Institute of Occupational Health(FIOH).
- Moser, A. & Korstjens, I. (2018). Series: practical guidance to qualitative research. Part 3: sampling, data collection and analysis, *European Journal of General Practice*, 24(1), 9-18.

- OECD. (2021). *Pensions at a Glance 2021: OECD and G20 Indicators*. Paris: OECD Publishing.
- Weber, R. P. (1990). *Basic Content Analysis*. CA: Sage Publications, Newbury Park.
- Zaidi, A., Harding, A. & Williamson, P. (Ed.). (2009). *New Frontiers in Microsimulation Modelling*. Farnham: Ashgate.





## [부록 1] 이해관계자 면접조사 질문지

〈부표 1-1〉 사용자 및 소상공인 단체, 노조 대상 1:1 심층면접 질문사항

| 구분                                             | 질문 예시                                                                                                                                                                                                                                                                          |
|------------------------------------------------|--------------------------------------------------------------------------------------------------------------------------------------------------------------------------------------------------------------------------------------------------------------------------------|
| 자기소개                                           | - 현재 소속기관에서 담당하고 있는 일에 대한 간략한 소개                                                                                                                                                                                                                                               |
| 국민연금<br>가입상한연령과<br>수급개시연령<br>불일치 관련 이해<br>및 인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전안내서를 확인하기 전에 국민연금 가입상한연령과 수급개시연령 불일치에 대하여 알고 있었는가?</li> <li>- 가입상한연령과 수급개시연령을 일치시키기 위해 가입상한연령을 64세까지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는가? 동의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li> <li>- 동의하지 않는다면 현재와 같은 연령 공백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기는가? 혹은 다른 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가?</li> </ul> |
| 가입상한연령 연장<br>관련 주요 이슈에<br>관한 견해                | - 국민연금 가입상한연령을 64세까지 연장한다면 어떤 문제점 또는 기대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가?                                                                                                                                                                                                                       |
| 가입상한연령<br>연장의 조건 및<br>방식에 관한 견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민연금 가입상한연령 연장을 위한 적절한 시점이 있다고 보는가? 있다면 언제인가?</li> <li>- 정부가 연금개혁 시 가입상한연령 연장을 추진한다면 어떠한 방법과 과정을 거쳐야 이해관계자가 동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li> <li>- 국민연금 가입상한연령 연장을 위해 수반되어야 하는 다른 제도 개혁이나 정부 정책이 있다면 무엇인가? (예: 정년연장, 고령자 고용지원 등)</li> </ul>      |

〈부표 1-2〉 사용자(기업) 대상 FGI 질문사항

| 구분                                             | 질문 예시                                                                                                                                                                                                                                                                                                            |
|------------------------------------------------|------------------------------------------------------------------------------------------------------------------------------------------------------------------------------------------------------------------------------------------------------------------------------------------------------------------|
| 자기소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재 재직 중인 기업에서의 재직기간 및 직무에 대한 간략한 소개</li> </ul>                                                                                                                                                                                                                          |
| 국민연금<br>가입상한연령과<br>수급개시연령<br>불일치 관련 이해<br>및 인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전안내서를 확인하기 전에 국민연금 가입상한연령과 수급개시연령 불일치에 대하여 알고 있었는가?</li> <li>- 가입상한연령과 수급개시연령을 일치시키기 위해 가입상한연령을 64세까지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는가? 동의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li> <li>- 동의하지 않는다면 현재와 같은 연령 공백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기는가? 혹은 다른 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가?</li> </ul>                                   |
| 가입상한연령 연장<br>관련 주요 이슈에<br>관한 견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민연금 가입상한연령을 연장한다면 귀 기업에 어떠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가?</li> <li>- 국민연금 가입상한연령을 연장한다면 기업 입장에서 볼 때 보험료 부담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는가?</li> <li>- 국민연금 가입상한연령 연장이 기업의 고령 근로자 고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하는가?</li> <li>-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와 급여수준 증가를 위해 국민연금 가입상한연령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가?</li> </ul> |
| 가입상한연령<br>연장의 조건 및<br>방식에 관한 견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민연금 가입상한연령 연장을 위한 적절한 시점이 있다고 보는가? 있다면 언제인가?</li> <li>- 정부가 연금개혁 시 가입상한연령 연장을 추진한다면 어떠한 방법과 과정을 거쳐야 기업이 동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li> <li>- 기업 입장에서 국민연금 가입상한연령 연장을 위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 다른 제도 개혁이나 정부 정책이 있다면 무엇인가? (예: 정년연장, 고령자 고용지원 등)</li> </ul>                               |

〈부표 1-3〉 개별 근로자 대상 FGI 질문사항

| 구분                                 | 질문 예시                                                                                                                                                                                                                                                                                                                         |
|------------------------------------|-------------------------------------------------------------------------------------------------------------------------------------------------------------------------------------------------------------------------------------------------------------------------------------------------------------------------------|
| 자기소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재 재직 중인 기업에서의 총 재직기간 및 담당 직무에 대한 간략한 소개</li> <li>-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있는가? 현재까지의 가입기간은 어떠한가? 국민연금 예상 수급액은 어느 정도인가?</li> <li>- 본인의 은퇴 시점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본인이 희망하는 은퇴 연령과 예상되는 은퇴 연령은 각각 어떠한가? 둘 사이에 차이가 있다면 어떻게 해결할 생각인가?</li> <li>- 은퇴 후 연금 수급이 시작되기 전까지 생활비는 어떻게 마련할 계획인가?</li> </ul> |
| 국민연금 가입상한연령과 수급개시연령 불일치 관련 이해 및 인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전안내서를 확인하기 전에 국민연금 가입상한연령과 수급개시연령 불일치에 대하여 알고 있었는가?</li> <li>- 가입상한연령과 수급개시연령을 일치시키기 위해 가입상한연령을 64세까지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는가? 동의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li> <li>- 동의하지 않는다면 현재와 같은 연령 공백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기는가? 혹은 다른 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가?</li> </ul>                                                |
| 가입상한연령 연장 관련 주요 이슈에 관한 견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만약 선택할 수 있다면 귀하는 수급이 시작되기 전인 60~64세 사이에 국민연금 보험료를 계속 납부할 의사가 있는가? (추가납부 여부를 떠나) 그 이유는 무엇인가?</li> <li>- 국민연금 가입상한연령이 연장되면 고령자가 계속 고용되거나, 신규 취업하는 것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li> <li>- 인구 고령화로 경제활동 기간이 증가하면서 국민연금 가입상한연령도 연장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가?</li> </ul>            |
| 가입상한연령 연장의 조건 및 방식에 관한 견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민연금 가입상한연령 연장을 위한 적절한 시점이 있다고 보는가? 있다면 언제인가?</li> <li>- 정부가 연금개혁 시 가입상한연령 연장을 추진한다면 어떠한 방법과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생각하는가?</li> <li>- 근로자 입장에서 볼 때 국민연금 가입상한연령 연장을 위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 다른 제도 개혁이나 정부 정책이 있다면 무엇인가? (예: 정년연장, 고령자 고용지원 등)</li> </ul>                                                 |

## [부록 2] 취업확률에 대한 로짓분석 결과

〈부표 2-1〉 취업확률에 대한 로짓분석 결과: odds-ratio

| 구분               |          | 단순모형       |         | 확장모형 1     |         | 확장모형 2     |         |
|------------------|----------|------------|---------|------------|---------|------------|---------|
| ln(생애 근로개월수)     |          | 0.6412***  | (0.024) | 0.5496***  | (0.022) | 0.5242***  | (0.022) |
| ln(생애 국민연금 가입월수) |          | 0.1253***  | (0.017) | 0.1562***  | (0.033) | 0.1445***  | (0.035) |
| d.국민연금 수급        |          | 0.3134**   | (0.132) | 0.2567**   | (0.130) | 0.4382***  | (0.149) |
| 월평균 연금액 비율       |          | -0.0412*** | (0.007) | -0.0488*** | (0.008) | -0.0585*** | (0.009) |
| 성별터미(남성=1)       |          |            |         | 0.8835***  | (0.086) | 0.3801***  | (0.138) |
| 남성#LPP           |          |            |         | -0.0779**  | (0.035) | -0.1151*** | (0.037) |
| d.교육수<br>준       | 중졸 이하    |            |         | 0.0804     | (0.080) | 0.3171***  | (0.084) |
|                  | (초)대졸 이하 |            |         | 0.1874     | (0.123) | 0.1891     | (0.138) |
| d.중졸 이하*LPP      |          |            |         | 0.0294     | (0.036) | 0.009      | (0.039) |
| d.(초)대졸 이하*LPP   |          |            |         | -0.0446    | (0.051) | -0.0519    | (0.056) |
| 연령               |          |            |         |            |         | -0.0882*** | (0.025) |
| d.건강(보통 이상)      |          |            |         |            |         | 0.7560***  | (0.105) |
| d.장애 및 활동제약 유무   |          |            |         |            |         | -1.3472*** | (0.112) |
| d.가구주 여부         |          |            |         |            |         | 1.0335***  | (0.138) |
| 가구원 수            |          |            |         |            |         | 0.0811**   | (0.040) |
| d.배우자 유무         |          |            |         |            |         | 0.1842     | (0.129) |
| d.자가 여부          |          |            |         |            |         | 0.0918     | (0.081) |
| d.수도권 거주         |          |            |         |            |         | -0.1109    | (0.070) |
| d.분가 자녀에게 도움 줌   |          |            |         |            |         | 0.4380***  | (0.086) |
| d.분가 자녀한테 도움받음   |          |            |         |            |         | -0.1167    | (0.081) |
| d.순자산 유무         |          |            |         |            |         | 0.1611*    | (0.096) |
| ln(순자산 배율)       |          |            |         |            |         | -0.0863*** | (0.029) |
| 연도터미             | 2017     | 0.0455     | (0.110) | 0.0551     | (0.113) | 0.0863     | (0.123) |
|                  | 2018     | 0.4582***  | (0.100) | 0.4250***  | (0.102) | 0.4316***  | (0.108) |
|                  | 2019     | 0.3628***  | (0.099) | 0.3469***  | (0.101) | 0.3040***  | (0.108) |
|                  | 2020     | 0.3403***  | (0.098) | 0.3324***  | (0.100) | 0.2959***  | (0.108) |
| 상수항              |          | -2.9042*** | (0.145) | -2.8265*** | (0.139) | 1.5382     | (1.556) |
| N                |          | 8,078      |         | 8,078      |         | 8,078      |         |
| Pseudo R2        |          | 0.1943     |         | 0.2110     |         | 0.2793     |         |

주: 1) \*\*\* p<.01, \*\* p<.05, \* p<.1이며, 괄호(-)는 표준오차임.

2) LPP는 ln(생애 국민연금 가입월수), d.(변수명)은 터미변수를 의미하며, 교육수준 터미변수의 기준값은 '고졸'임.

### [부록 3] 소득지수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표준오차

〈부표 3-1〉 소득지수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표준오차

| 구분               |           | reg_1_Life | reg_2_Job | reg_3_Prn | reg_4_Hou |
|------------------|-----------|------------|-----------|-----------|-----------|
| ln(생애 근로개월수)     |           | (0.688)    | (0.425)   | (0.375)   | (0.383)   |
| ln(생애 국민연금 가입월수) |           | (0.579)    | (0.409)   | (0.571)   | (0.566)   |
| d.국민연금 수급        |           | (4.668)    | (4.013)   | (4.300)   | (4.487)   |
| 월평균 연금액 비율       |           | (0.467)    | (0.411)   | (0.437)   | (0.420)   |
| 직종               | 농림어업숙련    |            | (3.109)   | (2.938)   | (2.983)   |
|                  | 서비스/판매직   |            | (1.639)   | (1.604)   | (1.631)   |
|                  | 기능 및 조립   |            | (1.221)   | (1.272)   | (1.316)   |
|                  | 전문/관리/사무직 |            | (3.713)   | (4.407)   | (4.158)   |
| 종사<br>상지<br>위    | 임시        |            | (1.356)   | (1.329)   | (1.329)   |
|                  | 일용(기타 포함) |            | (1.673)   | (1.738)   | (1.592)   |
|                  | 고용주       |            | (9.358)   | (8.573)   | (8.090)   |
|                  | 자영자       |            | (1.868)   | (1.912)   | (1.903)   |
| d.성별(남성=1)       |           |            |           | (1.809)   | (1.973)   |
| d.남성*LPP         |           |            |           | (0.506)   | (0.485)   |
| 교육<br>수준         | 중졸 이하     |            |           | (1.992)   | (1.910)   |
|                  | (초)대졸 이하  |            |           | (5.273)   | (4.816)   |
| d.중졸 이하*LPP      |           |            |           | (0.523)   | (0.508)   |
| d.(초)대졸 이하*LPP   |           |            |           | (1.657)   | (1.574)   |
| 연령               |           |            |           |           | (0.582)   |
| d.건강(보통 이상)      |           |            |           |           | (4.489)   |
| d.장애 및 활동제한 유무   |           |            |           |           | (5.629)   |
| d.가구주 여부         |           |            |           |           | (1.665)   |
| 가구원 수            |           |            |           |           | (0.900)   |
| d.배우자 유무         |           |            |           |           | (1.864)   |
| d.자가 여부          |           |            |           |           | (1.425)   |
| d.수도권 거주         |           |            |           |           | (1.832)   |
| d.분가 자녀에게 도움 줌   |           |            |           |           | (2.024)   |
| d.분가 자녀한테 도움받음   |           |            |           |           | (1.437)   |
| d.순자산 유무         |           |            |           |           | (7.543)   |
| ln(순자산 비율)       |           |            |           |           | (1.242)   |
| 연도               | 2017      | (3.782)    | (2.948)   | (2.781)   | (2.699)   |
|                  | 2018      | (3.108)    | (2.464)   | (2.375)   | (2.341)   |
|                  | 2019      | (3.895)    | (3.358)   | (3.326)   | (3.476)   |
|                  | 2020      | (3.267)    | (2.656)   | (2.594)   | (2.611)   |
| 상수항              |           | (3.974)    | (3.438)   | (4.193)   | (35.916)  |

주: 1) \*\*\* p<.01, \*\* p<.05, \* p<.1이며, 괄호(-)는 표준오차임.

2) LPP는 ln(생애 국민연금 가입월수), d.(변수명)은 더미변수를 의미하며, 교육수준 더미변수의 기준값은 '고졸'임.

## [부록 4] KIHASA SIM의 경제활동상태 이행확률 추정<sup>3)</sup>

KIHASA SIM에서는 15~22차(2012~2019년) 한국노동패널조사 자료를 이용해 남녀의 경제활동상태 이행확률을 추정한다. 이때, 추정식은 아래의 식(부2-1)와 같은데, 여기에서 경제활동상태에 대한 선택확률  $\Pr(y_j = j)$ 는 0과 1 사이의 값을 지니며, 모든  $j$ 에 대한 확률의 합은 1이다. 이행확률 추정에 사용된 변수는 연령, 연령 제곱, 교육연수, 혼인상태(미혼, 기혼, 이혼/사별), 가구주 여부, 5세 미만 자녀 수, 전기(t-1)의 경제활동상태이다. 남성과 여성의 경제활동상태 이행확률의 추정 결과는 〈부표 4-1〉, 〈부표 4-2〉와 같다.

$$\Pr(y_j = j) = \frac{\exp(X'_{ij}\beta)}{1 + \exp(X'_{i2}\beta) + \exp(X'_{i3}\beta) + \dots + \exp(X'_{ik}\beta)}, j = 2, \dots, 6$$

$$\Pr(y_j = j) = \frac{1}{1 + \exp(X'_{i2}\beta) + \exp(X'_{i3}\beta) + \dots + \exp(X'_{ik}\beta)}, j = 1 \quad (\text{부 4-1})$$

3) 이 부분의 내용은 류재린 외(2023(발간예정), pp.90-104)를 주로 참고하였다.

〈부표 4-1〉 경제활동상태 이행확률 추정 결과(남성)

|                            |                 | 상용                   | 임시/일용                | 고용주                   | 자영자                  | 실업                   |
|----------------------------|-----------------|----------------------|----------------------|-----------------------|----------------------|----------------------|
| 가구주<br>(=1)                |                 | 0.988***<br>(0.152)  | 0.904***<br>(0.149)  | 0.936***<br>(0.232)   | 1.105***<br>(0.223)  | 0.34*<br>(0.178)     |
| 연령                         |                 | 0.194***<br>(0.018)  | 0.172***<br>(0.016)  | 0.223***<br>(0.031)   | 0.155***<br>(0.024)  | 0.224***<br>(0.022)  |
| 연령 제곱                      |                 | -0.003***<br>(0.000) | -0.002***<br>(0.000) | -0.003***<br>(0.000)  | -0.002***<br>(0.000) | -0.003***<br>(0.000) |
| 혼인상태<br>(기준: 미혼)           | 기혼<br>(=1)      | 0.120<br>(0.150)     | -0.303**<br>(0.152)  | 0.672***<br>(0.244)   | 0.783***<br>(0.245)  | -0.844***<br>(0.193) |
|                            | 이혼/사별<br>(=1)   | -0.242<br>(0.183)    | -0.345*<br>(0.178)   | -0.031<br>(0.326)     | 0.605**<br>(0.272)   | -0.556*<br>(0.286)   |
| 교육<br>연수                   |                 | 0.135***<br>(0.012)  | -0.003<br>(0.012)    | 0.085***<br>(0.017)   | 0.008<br>(0.015)     | 0.105***<br>(0.019)  |
| 5세 미만<br>자녀 수(=1)          |                 | 0.360<br>(0.230)     | 0.162<br>(0.239)     | 0.655**<br>(0.272)    | 0.562**<br>(0.267)   | -0.068<br>(0.301)    |
| 전기<br>경제활동상태<br>(기준: 비경제활) | 전기(상용)<br>(=1)  | 5.295***<br>(0.106)  | 1.466***<br>(0.143)  | 2.525***<br>(0.283)   | 2.159***<br>(0.191)  | 2.323***<br>(0.178)  |
|                            | 전기(임시)<br>(=1)  | 2.135***<br>(0.136)  | 4.751***<br>(0.109)  | 1.185***<br>(0.439)   | 2.144***<br>(0.202)  | 1.884***<br>(0.200)  |
|                            | 전기(고용주)<br>(=1) | 1.880***<br>(0.268)  | 1.324***<br>(0.307)  | 7.682***<br>(0.277)   | 5.680***<br>(0.211)  | 2.270***<br>(0.429)  |
|                            | 전기(자영자)<br>(=1) | 1.955***<br>(0.188)  | 1.745***<br>(0.187)  | 5.465***<br>(0.256)   | 6.824***<br>(0.151)  | 1.310***<br>(0.363)  |
|                            | 전기(실업)<br>(=1)  | 1.920***<br>(0.180)  | 1.988***<br>(0.173)  | 0.959*<br>(0.497)     | 1.550***<br>(0.321)  | 2.305***<br>(0.209)  |
| 상수                         |                 | -7.778***<br>(0.367) | -6.163***<br>(0.380) | -10.782***<br>(0.724) | -8.048***<br>(0.568) | -8.756***<br>(0.452) |
| log pseudolikelihood       |                 |                      |                      | -60,636,372           |                      |                      |
| Wald chi2                  |                 |                      |                      | 20,412.73             |                      |                      |
| Pseudo R2                  |                 |                      |                      | 0.6599                |                      |                      |
| Obs.                       |                 |                      |                      | 38,249                |                      |                      |

주: 1) ()는 표준오차임.

2) \*\*\*, \*\*, \*는 각각 1%, 5%, 10%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는 것을 나타냄.

자료: 류재린 외. (2023). 공적연금의 개혁 효과 분석을 위한 동태적 미시 모의실험 모형 개발. 한국 보건사회연구원. (발간 예정). p. 98. <표 5-13>.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표 4-2〉 경제활동상태 이행확률 추정 결과(여성)

|                           |                 | 상용                   | 임시/일용                | 고용주                  | 자영자                  | 실업                   |
|---------------------------|-----------------|----------------------|----------------------|----------------------|----------------------|----------------------|
| 가구주<br>(=1)               |                 | 0.344***<br>(0.112)  | 0.264**<br>(0.110)   | 0.413<br>(0.257)     | 0.564**<br>(0.219)   | -0.047<br>(0.209)    |
| 연령                        |                 | 0.194***<br>(0.016)  | 0.154***<br>(0.014)  | 0.322***<br>(0.050)  | 0.218***<br>(0.023)  | 0.197***<br>(0.030)  |
| 연령 제곱                     |                 | -0.002***<br>(0.000) | -0.002***<br>(0.000) | -0.003***<br>(0.000) | -0.002***<br>(0.000) | -0.002***<br>(0.000) |
| 혼인상태<br>(기준: 미혼)          | 기혼<br>(=1)      | -0.901***<br>(0.135) | -0.88***<br>(0.146)  | -1.048***<br>(0.364) | -0.963***<br>(0.258) | -2.053***<br>(0.238) |
|                           | 이혼/사별<br>(=1)   | -0.606***<br>(0.171) | -0.468***<br>(0.168) | -0.757*<br>(0.444)   | -0.705**<br>(0.287)  | -1.132***<br>(0.307) |
| 교육<br>연수                  |                 | 0.109***<br>(0.010)  | 0.032***<br>(0.010)  | 0.106***<br>(0.026)  | 0.052***<br>(0.017)  | 0.119***<br>(0.026)  |
| 5세 미만<br>자녀 수(=1)         |                 | -0.355***<br>(0.081) | -0.504***<br>(0.108) | 0.053<br>(0.289)     | 0.102<br>(0.199)     | -0.737**<br>(0.314)  |
| 전기<br>경제활동상태<br>(기준: 비경활) | 전기(상용)<br>(=1)  | 5.217***<br>(0.073)  | 1.394***<br>(0.114)  | 2.04***<br>(0.352)   | 2.263***<br>(0.196)  | 2.406***<br>(0.173)  |
|                           | 전기(임시)<br>(=1)  | 2.424***<br>(0.100)  | 4.607***<br>(0.068)  | 1.682***<br>(0.365)  | 2.258***<br>(0.182)  | 2.227***<br>(0.192)  |
|                           | 전기(고용주)<br>(=1) | 0.777*<br>(0.437)    | 0.718<br>(0.475)     | 7.943***<br>(0.250)  | 5.65***<br>(0.223)   | -0.571<br>(1.025)    |
|                           | 전기(자영자)<br>(=1) | 2.316***<br>(0.186)  | 1.993***<br>(0.172)  | 5.446***<br>(0.230)  | 7.11***<br>(0.136)   | 1.104**<br>(0.438)   |
|                           | 전기(실업)<br>(=1)  | 2.226***<br>(0.173)  | 1.979***<br>(0.206)  | 0.109<br>(1.031)     | 1.849***<br>(0.514)  | 2.208***<br>(0.277)  |
| 상수                        |                 | -7.415***<br>(0.315) | -6.122***<br>(0.300) | -13.89***<br>(1.112) | -9.962***<br>(0.555) | -8.558***<br>(0.504) |
| log pseudolikelihood      |                 |                      |                      | -62,648.587          |                      |                      |
| Wald chi2                 |                 |                      |                      | 20925.16             |                      |                      |
| Pseudo R2                 |                 |                      |                      | 0.5856               |                      |                      |
| Obs.                      |                 |                      |                      | 43,105               |                      |                      |

주: 1) ()는 표준오차임.

2) \*\*\*, \*\*, \*는 각각 1%, 5%, 10%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는 것을 나타냄.

자료: 류재린 외. (2023). 공적연금의 개혁 효과 분석을 위한 동태적 미시 모의실험 모형 개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발간 예정). p. 99. 〈표 5-14〉.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부록 5] KIHASA SIM의 소득추정 방법과 결과<sup>4)</sup>

KIHASA SIM에서는 15~22차(2012~2019년) 한국노동패널조사 자료와와 1계 자기상관을 가정한 확률효과 패널 모형(random effect model)을 이용해 근로소득(임금과 사업소득)을 추정한다(Zaidi et. al., 2009). 소득추정식은 아래의 식(부5-1)과 같다. 분석에 활용하는 변수들은 기초자료에서 활용 가능한 변수들로 구성하였다.

$$\ln(w_{it}) = \beta_0 + \gamma X + u_i + \epsilon_{it} \quad (\text{부5-1})$$

단,  $\epsilon_{it} = \rho\epsilon_{i,t-1} + \nu_{it}$  ( $j = 1, \dots, N; t = 1, \dots, t_i$ )

$w_{it}$ :  $i$ 의  $t$ 년도 연간소득 (2020년 기준 불변가격)

$X$ : 연령, 교육, 고용이력 등의 설명변수 벡터

위의 식(1)에서  $u_i$ 는 시간불변 개인고유 오차항을 의미하며,  $\epsilon_{it}$ 는 시간 가변 오차항을 의미한다. 또한  $|\rho| < 1$ ,  $\nu_{it} \sim i.i.d(0, \delta_v)$ 라고 가정한다. 한편,  $w_{it}$ 는 개인  $i$ 의  $t$ 년도 연간소득으로 월평균 소득×12개월로 연간화 하여 산출한 뒤, 소비자물가지수를 이용하여 2020년 기준 불변가격으로 환산한 값에 자연로그를 취하여 추정한다. 이를 통해 개인별로 추정된 소득은 연도별 경상가격으로 전환하는데, 실질치가 존재하는 기간 이후의 소득금액은 기획재정부(2020. 9. 3.)의 임금상승률(명목) 전망치를 이용하여 전환하였다. 고용이력더미( $D_{it,ej}$ 는 동기( $t$ )의 경제활동상태( $e$ )에 있는 자를 대상으로 전기( $t-1$ )의 경제활동상태, 즉 전기에도 경제활동 상태인 경우, 실업( $u$ ), 비경활( $n$ ), 혹은 처음으로 노동시장에 진입한 경우( $s$ )로 구분하여 구성한다. 이 외에도 연령, 연령 제곱, 종사상지위(상용

4) 이 부분의 내용은 류재원 외(2023(발간예정), pp.105-117)를 주로 참고하였다.

근로자, 임시·일용근로자, 고용주, 자영자), 가구주 여부, 배우자 유무, 배우자 취업 유무, 학력, 두 기간 동안의 고용 이력, 연도 터미 등의 변수를 사용하였다. 여성의 경우 8세 미만의 자녀 수의 변수를 추가하였다. AR(1) 확률효과 GLS 모형을 활용하여 추정한 결과는 <부표 5-1>과 같다.

<부표 5-1> 소득방정식 패널분석 결과(AR(1) 확률효과 GLS 모형)

| 구분                     |            | 남성        |         | 여성        |         |
|------------------------|------------|-----------|---------|-----------|---------|
|                        |            | 추정계수      |         | 추정계수      |         |
| 연령                     |            | 0.106***  | (0.002) | 0.079***  | (0.002) |
| 연령 제곱                  |            | -0.001*** | (0.000) | -0.001*** | (0.000) |
| 종사상지위<br>(기준:<br>임시일용) | 상용근로(=1)   | 0.26***   | (0.009) | 0.366***  | (0.009) |
|                        | 고용주(=1)    | 0.374***  | (0.013) | 0.543***  | (0.019) |
|                        | 자영자(=1)    | 0.127***  | (0.011) | 0.185***  | (0.013) |
| 가구주(=1)                |            | 0.09***   | (0.012) | 0.027**   | (0.014) |
| 배우자(유=1)               |            | 0.183***  | (0.011) | 0.008     | (0.015) |
| 배우자 취업(=1)             |            | 0.13***   | (0.011) | -0.044*** | (0.014) |
| 8세 미만 자녀 수             |            |           |         |           |         |
| 학력<br>(기준:<br>전문대학)    | 중졸 이하(=1)  | -0.23***  | (0.015) | -0.099*** | (0.019) |
|                        | 고졸(=1)     | 0.092***  | (0.014) | 0.147***  | (0.017) |
|                        | 4년제 대졸(=1) | 0.189***  | (0.012) | 0.265***  | (0.015) |
|                        | 대학원 졸(=1)  | 0.306***  | (0.022) | 0.388***  | (0.032) |
| 고용이력<br>(기준:<br>취업-취업) | 실업-취업터미    | -0.061*** | (0.018) | -0.068*** | (0.023) |
|                        | 비경활-취업터미   | -0.039*** | (0.005) | -0.052*** | (0.006) |
| 상수                     |            | 14.694*** | (0.048) | 15.049*** | (0.053) |
| rho_ar                 |            | 0.320     |         | 0.346     |         |
| sigma_u                |            | 0.402     |         | 0.408     |         |
| sigma_e                |            | 0.281     |         | 0.298     |         |
| rho_fov                |            | 0.672     |         | 0.651     |         |
| within R-sq            |            | 0.0689    |         | 0.0689    |         |
| between R-sq           |            | 0.5417    |         | 0.5417    |         |
| overall R-sq           |            | 0.4729    |         | 0.4729    |         |
| Number of obs          |            | 37,761    |         | 24,131    |         |
| Number of groups       |            | 9,319     |         | 6,747     |         |

주 : 1) 종속변수는 (월평균 임금(원)×12개월)을 자연로그를 취한 값임.

2) 연도터미를 포함하여 추정한 결과임.

3) \*\*\*, \*\*, \*는 각각 1%, 5%, 10%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는 것을 나타냄.

자료: 류재린 외. (2023). 공적연금의 개혁 효과 분석을 위한 동태적 미시 모의실험 모형 개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발간 예정). p. 108. <표 5-18>.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